연구보고 20-R01

청소년의 혐오표현 노출실태 및 대응 방안 연구

김영한 이유진 조아미 임성택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연구보고 20-R01

청소년의 혐오표현 노출실태 및 대응 방안 연구

저 자 **김영한, 이유진, 조아미, 임성택**

연 구 진 연구책임자_김영한(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_이유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_조아미(명지대학교 · 교수)
_임성택(강원대학교 · 교수)
연구보조원_변주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연구사업운영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Abstract

국문초록

이 연구는 편견과 차별, 혐오표현에 관한 청소년 대상 최초의 대규모 조사로서 다양한 유형의 혐오집단과 혐오표현 형태에 대한 청소년의 노출 실태를 파악하여 이에 필요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를 통하여 혐오표현 문제의 개념적 논의와 주요 연구내용을 구상하였고, 외국사례 분석을 통해 교육프로그램과 제도적 장치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조사연구로써 전국단위의 설문조사를 통해 초·중·고등학교 청소년 6,000명에 대한 혐오 실태를 분석하였고, 청소년 면접조사와 전문가 면접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혐오표현 문제가 앞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해 더욱 확대되고, 더 큰 사회문제가 되고, 인권 침해를 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청소년이 많았다. 청소년이 혐오나 차별 표현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곳은 인터넷, 커뮤니티, SNS이고, 다음으로 신문, 방송 등 대중매체로 미디어가 노출경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혐오나 차별 표현을 하는 사람은 언론인이나 정치인도 많았지만 가장 많은 사람은 친구였다. 소수집단의 혐오표현 피해는 범죄청소년, 페미니스트, 성소수자의 순으로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혐오표현 대응방안 중에는 교육현장에서의 혐오표현 교육 필요성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다.

전문가 면접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 입장이고, 청소년을 위해서도 반드시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청소년 혐오표현은 과거에 비해 증가했고, 향후로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혐오표현의 원인으로는 학업성적 중심의 학교문화와 질서, 나이와 서열을 중시하는 문화, 혐오표현이 정당하다는 잘못된 믿음, 집단 내에서 강해보이고 싶거나 일탈적인 하위문화를 공유하는 청소년기 발달특성과 재미로 혐오표현을 하는 측면을 제시했다.

청소년 면접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혐오표현을 한 가해자들은 그들 주위에 있는 친구, 교사, 지인, 가족, 친척 등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피해를 당한 장소도 온라인 뿐 아니라 교실이나 학교, 학원, 길거리, 집, 직장 등 일상 생활공간이었다. 피해를 당한 이유는 자신이 가진 약점 때문이라 생각하고 있고, 자퇴를 고민했으며, 스트레스로 인해 잔병치레를 하기도 했고, 왕따 피해를 당하기도 했다. 그로 인해 트라우마가 생기고, 두려움이 2년 이상 지속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가 도출되었다.

첫째, 법 제도적 대응방안으로써 정책 추진 기반 조성을 위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정부부처의 협업체계 구축, 청소년 시설 종사자에 대한 관리 강화, 학생인권조례 제정 활성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미디어 대응방안으로써 자율규제 및 인식개선을 위해 청소년 보호를 위한 온라인 자율규제의 내실화, 청소년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강화,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미디어 홍보 강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교육적 대응방안으로써 인권감수성 함양을 위해 혐오표현 예방교육 실시, 여성혐오 예방을 위한 포괄적 성교육 실시, 청소년 혐오표현 예방 대응 가이드라인 보급 활성화, 혐오표현 대항문화 활성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

넷째, 피해자 지원방안으로써 소수집단 청소년 보호를 위해 피해자 신고 및 상담 · 심리치료 지원, 회복적 정의 실천 프로그램 운영, 특별보호가 필요한 소수집단 청소년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

주제어 : 혐오표현, 편견, 차별, 소수집단, 대항문화

연구요약

1. 연구목적

● 이 연구는 편견과 차별, 혐오표현에 관한 청소년 대상 최초의 대규모 조사로서 다양한 유형의 혐오집단과 혐오표현 형태에 대한 청소년의 노출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이에 필요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음.

2. 연구방법

● 문헌연구를 통해 혐오표현 문제의 개념적 논의와 주요 연구내용을 구상하고, 외국사례 분석을 통해 교육프로그램과 제도적 장치에 대한 시사점 도출

● 전국단위의 설문조사를 통해 초·중·고등학교 청소년 6,000명에 대한 실태 파악

● 질적 연구방법으로 청소년 면접조사와 전문가 면접조사를 통해 사례 중심의 심층적인 해결방안 모색

3. 주요결과

1) 외국사례 분석결과

● 혐오표현 관련 교육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아직까지는 혐오표현 관련 교육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인성교육, 시민교육, 인권교육, 미디어교육의 일부로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음. 혐오표현 관련 교육은 인권의 측면에서 다룰 수도 있고 미디어나 시민성의 측면으로도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함. 또한

혐오표현 관련 교육에 대한 다양한 시각은 이것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음.

● 혐오표현 관련 교육의 내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현재 세계적으로 실시되는 혐오표현 관련 교육의 내용은 유사하고 내용이 많지 않음. 혐오표현 관련 교육에서는 주로 혐오나 혐오표현이 무엇인지, 그리고 혐오표현의 결과, 혐오표현에 대한 경험, 대처방법을 다루고 있음. 교육방법의 다양화를 통하여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온라인 혐오표현 관련 교육이 핵심임. 과거와 달리 현재는 오프라인만큼 아니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을 통한 소통이 많아지고 중요해졌음. 이것은 긍정적인 측면이나 부정적인 측면 모두에게 통용됨.

● 혐오표현 관련 교육은 편견부터 시작해야 함. 혐오의 피라미드 단계별 규제 및 대응방안을 보면, 피라미드의 가장 아래 단계인 편견은 교육이나 의식개선 등으로 해결하도록 되어 있음. 그 이후의 단계에서는 교육보다는 다른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음.

● 혐오표현은 학교폭력과 관련이 있음. 학교폭력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 피해자에 대한 혐오나 차별은 주요 원인이 됨.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ADL의 대표적인 혐오표현 교육인 No Place for Hate는 학교폭력, 편견, 혐오에 대항하기 위한 학교분위기 향상 프로그램임. 이것은 혐오표현 관련 교육이 학교폭력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함.

2) 설문조사 분석결과

(1) 혐오표현 문제의 인식도

● 외국인 차별 혐오는 평균이하로 낮은 편으로 성별에서는 남자가 평균 2.03,

경제수준에서는 최하위계층 2.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피부색에 따른 인종차별은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여성, 그리고 학급이 올라갈수록 높음.

● 타종교 혐오에서는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심한 편이며, 소수자에 대한 혐오 문제는 여성과 학급이 올라 갈수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음. 학교유형에서 고등학교가 2.8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에서는 여자가 2.52로 남자보다 조금 높은 편임.

● 장애인 혐오는 낮은 경제수준과 고등학교에서 높게 느끼고 있으며, 성소수자에 대해서는 성별로는 여성이 2.71로 높으며, 경제수준에서는 최하위가 3.44이고, 학교유형에서는 고등학교가 3.09로 매우 높은 편임.

● 페미니스트에 대해서는 성별로는 남자가 2.79로 높고, 모든 개인특성에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학교유형별로는 고학년일수록 우리사회의 페미니스트 혐오 문제에 동의하는 바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교의 경우 3.35로 높게 나타났음.

●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응답자 대부분 평균이하로 낮은 편이며, 청소년에 대한 혐오는 고등학교가 3.19로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여성이 2.85로 남성 2.67보다 높아 청소년 혐오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음.

● 노인에 대한 혐오는 평균 값에 가까운 편이며, 다만 경제수준이 하인 집단이 3.24, 최하위가 3.56으로 높게 나타났음. 빈곤층과 부모직업, 학벌, 출신지역에 대한 혐오 문제는 경제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평균이하 수준으로 나타났음.

(2) 혐오표현의 사회적 영향

● 혐오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해 더욱 확대되고, 더 큰 사회문제가 되고, 인권침해를 할 것이라고 5점 만점에 3점 이상으로 동의하는 청소년이

많았음. 통계적으로 성별, 경제수준, 학교유형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였음.

● 혐오표현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확대 항목에서는 여성 3.10, 최하위계층이 3.70, 고등학교가 3.36으로 혐오 표현 문제가 사회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혐오표현 문제의 다양화 항목에서는 성별, 경제수준별, 학교유형별 응답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평균분석에서 여성이 3.23, 최하위계층이 3.09, 고등학교 3.45 높게 나타나 앞으로 혐오문제가 여러 분야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음.

● 혐오표현 문제의 폭력 등 사회문제로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학교유형에서는 고등학교가 3.40로 높게 나타났음. 즉, 혐오가 심각해질 경우 폭력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 세대 및 지역 갈등의 강화 문항에서는 대부분 3점대로 나타나 응답자들은 장래에 혐오문제가 사회적 갈등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음.

● 혐오를 이용하는 세력과 집단이 확대에 대한 응답결과는 경제수준과 학교유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경제수준에서는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고, 학교 유형에서는 고등학교가 3.3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혐오문제가 앞으로 개인의 자유 침해를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응답에서는 성별로는 남성보다 여성이 3.12로 높으며, 학교별로는 고등학교가 3.36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수준별로는 하위계층으로 갈수록 혐오문제가 추후 자유를 침해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 혐오문제가 민주적 의사결정 대한 침해를 확대 할 것이라는 응답에서는 여성집단의 평균치가 남성 집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수준별로 분석한 결과, 최하 집단의 평균치가 3.50으로 가장 높았고, 최상 집단의 평균치가 가장 2.56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인간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 할 것이라는 응답에서 여자 청소년들이 3.02, 남자청소년 2.94에 비해 혐오표현으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생각

함을 반영하고 있음. 국제사회의 공통기준을 위배하게 될 것이라는데 청소년은 높은 동의를 보이고 있으며, 학교유형별에 따른 분석에서는 고등학교 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년이 높을수록 혐오표현 문제가 국제사회의 보편적 공통기준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3) 혐오표현의 심각성

● 외국인 혐오 문제는 성별로는 여성이 2.55, 경제수준별로는 최하위가 3.50, 학교유형별 고등학생이 2.67로 심각성을 높게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피부색에 따른 타인종 혐오는 성별로는 여성이 2.61, 경제수준별로는 최하위가 3.60, 학교유형별 고등학생이 2.70로 심각성을 높게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타종교에 대한 혐오의 심각성은 응답자의 대부분이 평균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유형별로 고등학교가 2.61로 다소 높게 나타났음.

● 성소수자 혐오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여성이 3.06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최상위 경제수준이 2.55로 가장 낮게 나타났음. 즉, 여성들은 이 문제에 민감한 반면에 부자들은 성소수자 혐오문제를 심각하게 보지 않는다고 보여짐. 장애인에 대한 혐오에서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학급이 올라 갈수록 높게 나타나 장애인 혐오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음.

● 페미니스트 혐오 심각성에서는 고등학생이 3.47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경제적으로 부유한 계층은 2.54로 평균수준에 머물고 있음. 또한 페미니스트에 대한 감성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음.

● 다문화가정, 노인, 청소년, 빈곤층, 출신지역에 대한 혐오 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평균이하로 나타나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해외이주노동자에 대한 혐오의 심각성에 대해 학교유형별로는 고등학교가 2.63으로 높으며, 경제수준별로는 하2.69, 최하 3.40으로 나타났음. 즉, 경제수준이 낮을

수록, 학급이 높을수록 심각하다고 인지하고 있음. 탈북민/고려인/국내거주 교포 집단에 대한 혐오 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응답이 평균이라고 나타났으나 고등학교 2.65, 경제수준 하위와 최하위 각각 2.7, 3.3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근로청소년집단에 대한 혐오문제는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범죄청소년에 대한 혐오는 모든 응답자들이 평균이상으로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성별로는 여성이 3.21이고, 학교유형별로는 고등학생이 3.35 나타났음.

(4) 혐오표현의 가해 정도

● 편견-비난-모욕-차별-폭력으로 이어지는 혐오 가해 수준에서 전체적인 응답결과는 편견-차별-비난 또는 모욕-폭력 수준으로 나타났음. 즉 우리사회의 대부분은 4단계로 볼 수 있는 차별이하의 가해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폭력으로의 확대는 거의 없는 편임.

● 외국인 혐오에 대한 가해 수준은 편견이 57.5%, 차별 26.8%, 비난 8.0% 순으로 나타났음. 성별로는 편견은 남성이 59.6% 여성 55.4%보다 높은 반면에 차별에서는 여성이 29.3%이고 남성은 24.4%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타인종에 대한 혐오에서는 남성은 여성보다 편견이 높고, 차별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음. 전체적으로는 편견이 53.7%, 차별 28.6%, 비난 9%의 순으로 나타났음.

● 타종교에 대한 혐오 가해 수준은 앞의 외국인 및 인종 혐오 결과와는 다른 양상을 보임. 전체적으로 편견이 45.1%, 비난 27.8%, 차별 15.4%, 모욕 10.8% 순으로 나타나 종교인에 대해서는 차별보다는 비난이 높게 나타났음. 성별로는 남성은 여성보다 편견이 높고, 여성은 남성보다 비난이 높게 나타났음. 즉, 남성은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여성은 실제적인 혐오 행위를 주로 한다고 볼 수 있음. 경제수준별로는 중간이하는 비난이 높은 반면에 상위이상은 편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음.

●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가해 정도는 편견 37.8%이고 비난 25.7% 순으로 나타나 성소수자 문제는 비난, 모욕, 차별 등 직접적인 가해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음. 성별로는 남성은 여성보다 편견이 높은 편이나, 여성은 비난과 모욕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음. 경제수준별 성소수자에 대한 가해 정도는 폭력행위가 2.9% 수준으로 나타났음. 장애인에 대한 가해 수준은 편견 47.5%, 차별이 30.8%, 모욕 10.2% 순으로 나타났음. 성별로는 여성의 경우 차별이 남성보다 높은 반면에, 남성은 편견이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장애인에 대한 폭력도 2.4%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혐오 문제 대안이 필요함. 경제수준별로는 상위계층으로 갈수록 가해 수준이 편견이 가장 높으나 하위계층으로 갈수록 비난과 차별 그리고 폭력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여성 페미니스트에 대한 가해정도는 비난이 33%, 편견 32% 순으로 나타났으며, 폭력 행위도 4.5%임. 이 결과는 타 집단과는 다르게 페미니스트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혐오 가해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다문화가정에 대한 혐오 가해 정도는 편견이 58.2%, 차별이 25.1% 순으로 나타났음. 성별로는 남성은 편견이 여성에 비해 높고, 여성은 차별에서 남성보다 높음. 범죄청소년에 대한 가해수준은 비난 33.3%, 편견 31.9% 순으로 나타났으며, 폭력 행위도 7.8%로 나타나 다른 소수집단 혐오 가해수준과 비교해 볼 때, 가해의 정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즉, 범죄청소년에 대해서는 우리사회가 생각보다는 행동으로 더 나타난다고 볼 수 있음.

(5) 혐오표현의 생산 수단 및 전달자

● 청소년이 혐오나 차별 표현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곳은 “인터넷, 커뮤니티, SNS(79.1%)”이고, 다음으로 “신문, 방송 등 대중매체(8.6%)”로 이들 미디어가

노출경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이 결과는 성별, 경제수준별, 학교유형별로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음. 특히 학교유형별로는 중고등학교는 각 82.9%, 88.7% 초등학교는 51.6%로 학급이 높을수록 온라인을 통한 혐오문제가 증가한다고 볼 수 있음. 다음으로는 10%전후로 방송 및 매체에서 발생하였으며, 학교나 학원에서는 5%미만임.

● 혐오 차별 표현을 만들거나 전달하는 집단으로 가장 높은 집단은 친구집단 22.3%이고, 다음으로 언론인 18.2%, 정치인이 16.5%, 종교인 6.5%로 나타났음.

(6) 혐오표현의 정책적 대응방안

● 혐오표현 정책과제 필요성 동의비율은 규제강화(61.3%), 교육현장에서의 혐오표현 교육(67.5%), 혐오표현 개선방법 홍보(63.1%), 혐오가해자 사법처리(59.4%), 학교내 혐오 및 차별 방지 제도화(62.4%), 온라인 혐오표현 기준 제시(64.9%), 언론매체의 혐오 및 차별 표현 윤리기준 강화(64.3%) 등 대부분 60%이상의 동의율을 보이고 있음.

● 그 중에서도 교육현장에서의 혐오표현 교육 필요성에 대한 동의율이 가장 높았고, 응답자 중에서 여성 응답자의 동조가 매우 높았음.

(7) 혐오표현의 심리적 피해 행위 및 혐오표현의 동기

● 혐오표현이나 차별적 행위를 보았을 때나 직접 당했을 때 느낀 감정으로 “흥분감과 분노(35.6%)”가 가장 많았으나, “개인적으로 저항(25.1%)”한 경우와 “위축감을 느끼고 침묵(22.8%)”한 경우가 비슷하게 나타났고, “주변에 알리고 공동 대응(19.1%)”한 경우는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 학교유형별로 나타난 심리적 피해는 초등학교에서는 대부분 평균이하로 나타

났으나 고등학교의 경우 모든 항목에서 피해가 매우 높게 나타나 심리적 피해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음. 대항적 행위에서는 개인저항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학교유형별로는 초등학교에서는 개인저항과 공동대응이 비슷하지만 학급이 높을수록 개인저항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청소년들이 혐오표현을 사용하게 된 동기에 대한 분석에서는 친구와 동조는 평균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혐오 표현을 잘 모르거나, 친구들간 사용 무지는 낮은 편이며, 신문 방송매체 사용, 온라인 대화 사용, 정치인 모방, 청소년만의 언어 사용, 세대차이로 인한 사용 항목 모두 평균이하로 나타났음.

3) 전문가 면접조사 분석결과

(1) 청소년의 혐오표현 노출실태

● 우리 사회의 청소년 혐오표현 노출실태는 청소년에 의한/대한 혐오표현 모두 심각하지만 혐오표현의 주체였던 청소년이 나중에 객체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어느 쪽이 심각한지는 중요하지 않음. 빈도나 강도 모두 온라인 공간에서 혐오표현 노출이 더 심각함. 성소수자 청소년의 경우 쉼터와 같은 청소년시설에서 차별을 받기도 하고, 토론방송이나 뉴스 댓글 때문에 혐오피해를 받기도 함.

● 청소년에 의한 혐오표현 내용은 주로 여성이나 성소수자, 장애인 같은 '소수자 정체성'에 관한 것인 반면, 청소년에 대한 혐오표현은 주로 나이가 어리다는 '연령 정체성'에 관한 것임.

● 혐오표현의 원인은 현재 청소년의 삶이 행복하지 않은 점, 학업성적 중심의 학교문화와 질서, 집단 내에서 강해보이고 싶거나 일탈적인 하위문화를 공유하는 청소년기 발달특성, 혐오표현을 통한 재미추구, 보수적인 성교육으로 인한 성의식 왜곡, 나이와 서열을 중시하는 문화, 혐오표현이 정당하다는 잘못된 믿음 등이

중층적으로 작용함. 익명성은 혐오표현의 발화원인이라기 보다는 '강도'에 영향을 미침. 우리 사회의 혐오표현은 증가해왔고 앞으로도 증가할 전망임.

(2) 청소년의 혐오표현 가피해 경험의 영향

● 혐오표현 피해의 영향력은 성인에 비해 청소년에게 미치는 강도와 지속성이 강함. 이로 인한 2차 피해는 감정적 피해의 지속, 사회생활의 어려움, 피해를 목격한 주변 청소년의 정서적 피해 등임.

● 청소년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신고센터나 상담센터와 같은 다양한 기제를 마련하고, 공동체 내에서 공개적인 지지 발언을 하며, 상담과 구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함. 학교폭력 중 언어폭력이나 성희롱 처리방식에 준하는 정책화가 가능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집단교육과 공동체 선언을 통해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것임.

(3) 청소년 혐오표현 제한

● 초·중·고등학교에서의 현행 대처방법은 경미한 사안의 경우 교사의 개별 지도와 집단 인권교육, 상담, 보호자 통지 등이 이루어지고, 심각한 사안의 경우 선도위원회나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회부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현행법으로도 혐오표현을 제재할 수는 있지만, 사회적 윤리 기준 및 혐오표현 예방교육, 하위 법령과 조례 제정의 근거로써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함. 교육기관의 교사와 청소년기관의 청소년지도자에 대해서는 강화된 기준이 필요함.

● 인권교육의 일환으로 혐오표현 예방교육이 필요하고, 전달식 보다는 민주적 토론식 교육 및 학생자치 사건처리를 통한 환류시스템이 필요함. 교육대상은 학교 내 모든 구성원과 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 부모까지 포함하고, 학생보다는 교사나 관리자의 우선순위가 높음.

(4) 피해청소년 지원과 인식개선

● 피해청소년 지원을 위해서는 피해자와 공동체가 혐오표현을 인권침해로 인식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고, 익명 신고 절차, 피해청소년 상담과 보호 절차, 회복적 정의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인권교육과 홍보가 중요하고, 특히 방관자 집단의 개선을 위해 주기적인 토론식 인권교육이 필요함. 당사자 뿐 아니라 주변인까지 대항표현이 가능하도록 시뮬레이션 방식의 트레이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4) 청소년 면접조사 분석결과

(1) 청소년의 혐오표현 노출경험

● 청소년에게 혐오표현을 하는 주체는 학교의 친구, 교사, 교회 교인, 가족, 친척 등 청소년 주위의 모든 사람이고, 경험한 시기는 주로 중학교 때임. 빈도는 SNS가 높지만, 청소년이 더 강하게 체감하는 곳은 일상 생활공간임. 혐오표현의 내용은 이주배경 차별, 여성혐오, 장애인 차별, 성소수자 혐오, 소년범죄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 등이고, 혐오표현의 유형은 욕설, 비난, 편견, 차별, 따돌림 등으로 나타났음.

● 피해를 입은 이유로는 자신이 가진 약점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있고, 피해 이후에 자퇴를 고민하거나 스트레스로 잔병치레를 한 경험을 갖고 있음. 혐오표현을 그 자체로 언어폭력이고 학교폭력일 뿐 아니라 대부분 왕따를 경험했고, 성소수자의 경우 아웃팅 피해를 보기도 했음.

(2) 청소년의 혐오표현 피해경험의 영향

● 충격으로 인해 트라우마가 되었고, 학교 가기가 두려웠으며, 취업에 대하 두려움이 생겼음. 그 기간은 한두 달부터 2년이나 그 이상까지 지속되었음.

● 피해 당시 도움을 받은 청소년은 소수였고,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은 자신을 지지해줄 친구 또는 교사에게 신고해줄 누군가임. 피해 이후 대부분이 대처를 못했거나 도움을 받지 못했는데, 대처하지 못한 이유는 무서웠기 때문임.

(3) 청소년의 혐오표현에 대한 의식

● 우리 사회는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혐오표현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문제의식도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혐오표현이 빈발하는 원인은 소수자이기 때문에 무시하면서 우월감을 느끼기 때문임.

● 인터넷에서의 혐오표현은 익명성 때문도 있지만 주목받기 위한 측면과 가짜 뉴스로 인한 조장도 있고, 우리 사회는 혐오표현에 관대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향후 혐오표현은 문제의식을 얼마나 갖느냐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

(4) 청소년의 혐오표현 제한과 피해청소년 지원

● 대부분의 청소년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했고, 공직자에 대한 특별한 규제에 동의했으며, 특히 교사와 유튜버의 강력한 영향력을 지적했음. 혐오표현 예방교육이 어려서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가치관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음.

●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으로는 상담과 심리치료, 예방교육을 제안했고, 성소

수자를 위한 별도의 학교나 지원센터, 쉼터 등도 제안되었음. 친구나 가족, 지인들로부터 대부분 대항표현에 의한 지지를 받은 경험이 있었으나, 정작 영향력이 강한 교사나 청소년지도자로부터 대항표현을 들은 경험은 없었음.

4. 정책제언

1) 법·제도적 대응방안

●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함. 청소년 혐오표현 대응을 위해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는 차별과 혐오표현이 옳지 않다는 사회적 윤리 기준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혐오표현에 대한 윤리기준이 생긴다면 당연한 수순으로 혐오표현 예방을 위한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차별금지법은 차별과 혐오표현이 금지되는 기본법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하위 법령과 조례 제정이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임.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현재 일부 교육청에만 제정되어 있는 학생인권조례가 전국적으로 제정될 것이고,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청소년기본법도 개정될 수 있을 것임.

● 정부부처의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함. 혐오표현은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 공공기관, 언론, 온라인 등 우리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예방과 대응이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련 정부부처의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함.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혐오표현에 관한 안내서를 만들어 일선 초·중·고등학교에 배포한 사례가 좋은 본보기라고 할 수 있음. 이러한 사례를 초·중·고등학교에 그치지 않고, 대학교나 공공기관. 언론기관, 그리고 청소년 시설이나 단체 등 관련 기관에 대해서도 확산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 시설 종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함. 청소년 쉼터와 같이 혐오

표현의 피해 위험성이 높은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에 대해서는 혐오와 차별에 대한 감수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혐오발언을 한 사람이 교사와 같이 권위 있는 사람일 때도 청소년들의 혐오표현이 활발해지고 피해자의 대응은 어려워짐. 교사나 지도자의 혐오표현은 직접적으로 피해 청소년을 발생시킬 뿐 아니라 다른 청소년들의 혐오표현을 부추기는 효과도 있음. 차별금지법안에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교육과정 이수에 대한 규정은 없음. 향후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교사나 청소년지도자에게 혐오표현 관련 인권교육 과정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할 필요도 있음.

●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활성화해야 함. 학생인권조례가 있으면 학생이 혐오표현에 의해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구제받을 수 있고, 소수자 학생은 특별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혐오표현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현재 전국 교육청 중에서 4개청에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있음. 이와 같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부진한 이유는 학부모들의 극심한 반대여론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임. 이러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더욱 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여 소수자 학생들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편견과 혐오에 대한 감수성을 높여야 함.

2) 미디어 대응방안

● 청소년 보호를 위한 온라인 자율규제의 내실화가 이루어져야 함. 온라인 상의 쌍방향 소통에서의 익명성으로 인해 빈발하고 있는 혐오표현이 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청소년 혐오표현 미디어 대응방안으로써 온라인 자율규제는 그 중요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음. 청소년 보호를 위한 온라인 자율규제를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맥락을 고려할 수 있는 수준의 AI 필터링 프로그램 개발이 더욱 발전되어야 할 것이고, 이용자 자율규제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함. 청소년

보호를 위한 온라인 자율규제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청소년보호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여성혐오나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혐오를 조장하는 것”이라는 심의 기준 항목을 추가할 필요도 있음.

● 청소년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강화가 필요함.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수업이 확대되면서 청소년이 온라인에서 경험하는 혐오표현도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혐오표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강화에 비중을 둘 필요가 있음. 특히 소셜미디어 리터러시 역량강화를 위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할 필요가 있음.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갖춘 청소년이 혐오표현의 목격자가 되었을 때 동조자가 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항발화를 함으로써 미디어 환경의 자율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미디어 홍보를 강화해야 함. 혐오표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혐오표현은 인권침해이고 더 나아가서는 범죄가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사회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이러한 인식개선이 이루어지려면 우리 사회의 모든 공동체가 자율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지만, 홍보의 영향력이 가장 큰 영역은 역시나 미디어라고 할 수 있음. 미디어는 청소년 혐오표현의 발화지인 동시에 혐오표현을 개선할 수 있는 선두주자가 될 수도 있음. 그동안 공익광고가 성범죄나 아동학대 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높이는데 일조했던 것처럼 편견과 차별, 혐오표현에 대해서도 공익광고나 방송프로그램, 소셜미디어 등에서 홍보활동을 펼칠 필요가 있음.

3) 교육적 대응방안

● 혐오표현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함. 학업성적 중심의 학교문화와 질서, 나이와 서열을 중시하는 문화, 혐오표현이 정당하다는 잘못된 믿음 등이 혐오표현의 원인으로 제시되었으므로 교육을 통해 이러한 문화와 믿음을 개선해 나가야 함. 이를

위해 교사와 학생 전체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필요함. 교육방식은 일방적인 전달식 교육보다는 민주적인 토론 방식의 교육이 실시되어야 하고, 학생들이 자치적으로 직접 사건처리를 경험해보는 과정을 교육의 일환을 진행하는 환류시스템도 필요함. 혐오표현의 피해경험이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시작되었고, 전문가들은 향후 저연령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방교육의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음. 법정교육이 갖는 효과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급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과목별 수업내용을 재구성하여 혐오표현에 관한 주제를 다루는 교육도 필요함.

● 여성혐오 예방을 위한 포괄적 성교육을 실시해야 함. 여성이나 페미니스트에 대한 편견과 차별, 그리고 여성을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로 보는 관점에 대해 많은 젊은 또는 어린 남성들은 노골적인 반발심을 드러냄. 지금 시대는 여성보다 남성이 더 차별받고 있다고 항변함. 하지만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여성혐오가 만연한 우리나라의 학교문화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이 주목된 상황임. 여성혐오와 차별, 성폭력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성평등 교육을 포함하는 포괄적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학생 대상의 성교육 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 대상의 성교육이 병행되어야 함. 또한 여성혐오에 대항하기 위한 미러링으로써의 남성혐오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내용도 성교육에 포함되어야 하고, 미러링에 대해 혐오표현과 동일한 잣대로 제재하는 일이 없어야 함.

● 청소년 혐오표현 예방 대응 가이드라인의 보급을 활성화해야 함. 혐오표현은 방치할 경우 인권 감수성이 낮아지고 소수자 집단에 대한 차별은 더욱 심화되어 언제든지 혐오범죄로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학교나 청소년시설 등 청소년이 있는 공동체에서는 예방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대처할 필요가 있음.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교육 자료를 일선학교에 보급하고 있음. 교육 자료와 가이드라인이 제공되면 각 학교에서는 이것을 자료로만 보관할 것이 아니라 학교별 혐오표현 예방 대응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함. 학교

밖 청소년 역시 혐오표현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므로 청소년 시설이나 단체 등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의 혐오표현 예방 대응 가이드라인과 인권존중 학교를 위한 평등 실천 안내 해설서에 준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혐오표현 대항문화를 활성화해야 함. 대항표현을 하려면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하기 때문에 그러한 힘을 기르기 위해 평소에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함. 시뮬레이션 하는 방식으로 트레이닝해서 대항표현이 익숙해지도록 해야 함. 이러한 대항표현은 당사자보다 주변인의 집단적 대항이 더 큰 영향력이 있고, 피해자 못지않게 피해를 목격한 주변 청소년도 우울감이나 분노를 경험하고 다양성을 해치는 간접적인 피해를 입기 때문에 공동체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대항문화 형성이 필요함. 대항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학교 등 청소년이 속해있는 공동체에서 공개적인 지지 발언이 필요함. 혐오표현은 가피해의 문제라기보다는 공동체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화를 개선하는 노력이 더 중요하기 때문임.

4) 피해자 지원방안

● 피해자 신고 및 상담 · 심리치료 지원이 필요함. 청소년이 받은 피해에 비해 대응이 미온적인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신고하기 용이하도록 익명의 신고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학교내 신고센터, 상담센터, 교육청 학생인권센터,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음으로는 피해 청소년이 자책하지 않고 피해 경험이 트라우마가 되지 않도록 상담이 필요함. 청소년의 피해는 성인에 비해 강도가 강하고 지속적 영향력도 강하기 때문에 2차 피해가 우려됨.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사실에 대한 홍보가 필요함. 또한 전문가에 의한 상담과 심리치료 및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병행되어

야 함. 상담과 심리치료를 위해 자기방어 워크북을 개발해 보급하고, 상담의 일환으로 자존감 회복 및 자기방어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 회복적 정의 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함.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방안은 가피해자를 분리하기 보다는 관계의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임. 가피해 청소년과 공동체 전체의 회복을 위해서는 회복적 정의 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혐오표현에 최적화된 실천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지만 기존의 운영해온 또래조정 프로그램을 적용한 회복적 실천도 고려해볼 수 있음. 혐오표현 사건을 학교폭력 담당교사에게 맡길 경우 현행 학교폭력 처리절차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음. 가피해 청소년을 분리하고 가해청소년의 인성문제로 축소하게 될 것임. 하지만 혐오표현은 차별의 문제이고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은 지양해야 함. 피해자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가해청소년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이루어져야 하고, 공동체의 문화까지 개선되어야만 완전한 문제해결이라고 볼 수 있음.

● 특별 보호가 필요한 성소수자 청소년과 범죄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함. 성소수자 청소년의 특성상 법적인 성별과 본인의 성적지향이 다른 경우나 외모의 차이 때문에 기존의 남녀로 구분된 청소년 쉼터를 함께 이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따라서 이들을 위한 별도의 쉼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중 일부에 성소수자 전문센터를 지정하여 성소수자 청소년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상담자가 배치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혐오표현 피해가 가장 심각하다는 범죄청소년 집단 중에서도 특히 편견과 차별을 받고 있는 소년원 출원 청소년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함. 이들에 대한 지원은 법무부 산하 '한국소년보호협회'에서 주거지원, 취업지원, 창업지원, 장학지원, 원호사업 등을 하고 있는데, 출원생 중에 극히 일부에게만 도움을 주고 있음. 한국소년보호협회에 대한 홍보와 인력 및 예산 확충을 통해 소년원 출원 청소년 등 범죄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 사업이 활성화되어야 함.

차 례

청소년의 혐오표현 노출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연구보고 20-R01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내용 ····· 7
   1) 청소년 혐오 및 차별 표현에 대한 선행 연구 검토 ·· 7
   2) 청소년의 혐오 및 차별표현에 따른 실태 조사 ····· 8
   3) 전문가 및 청소년 심층면접을 통한 정책적 대응방안 제시 ··· 8
   4) 외국사례 분석 ····· 8
3. 연구방법 ····· 9
   1) 문헌연구 ····· 9
   2) 전문가 자문 ····· 9
   3) 조사연구 ····· 10
4. 연구추진체계 ····· 11

Ⅱ. 이론적 배경

1. 개념적 논의 ····· 15
   1) 혐오의 개념적 정의 ····· 15

2) 우리 사회의 혐오표현 실태 ····· 20
2. 청소년 혐오표현 조사 내용구성 ····· 24

Ⅲ. 혐오표현에 대한 국제기구와 각국의 대응방안

1. 국제기구의 대응방안 ····· 32
1) 세계인권선언 ····· 32
2)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 33
3)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 34
4)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 ····· 35
5) 소결 ····· 35
2. 각국의 법적 대응방안 ····· 38
1) 영국 ····· 38
2) 독일 ····· 41
3) 프랑스 ····· 45
4) 미국 ····· 47
5) 캐나다 ····· 49
6) 일본 ····· 51
7) 소결 ····· 54
3. 외국의 교육적 대응방안 ····· 57
1) Against Hate Speech ····· 60
2) Common Sense ····· 64
3) Generation Global ····· 67
4) No place for hate ····· 70
5) Facing online hate ····· 72
6) 소결 ····· 73

Ⅳ. 설문조사 결과분석

1. 조사방법 ····· 79
1) 조사추진 및 표본설계 ····· 79
2) 조사내용 구성 및 문항 개발 ····· 92
3) 자료분석 방법 ····· 96
4) 분석대상자의 배경특성 ····· 96

2. 설문조사 결과분석 ····· 98
1) 혐오표현에 대한 인식도 ····· 98
2) 혐오표현 문제가 우리 사회에 주는 변화 ····· 114
3) 소수집단에 대한 혐오문제의 심각정도 ····· 126
4) 소수집단에 대한 혐오 가해수준 ····· 144
5) 혐오표현을 주로 경험하는 장소나 매체 ····· 190
6) 혐오표현을 주로 듣게 되는 대상 ····· 194
7)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방안의 필요성 ····· 199
8) 혐오표현 피해의 영향 ····· 203
9) 편견이나 차별적 행위를 하게 된 이유 ····· 206

Ⅴ. 면접조사 결과분석

1. 조사방법 ····· 217
1) 대상과 방법 ····· 217
2) 내용과 도구 ····· 220
2. 전문가 면접조사 결과분석 ····· 221
1) 청소년의 혐오표현 노출실태에 대한 의견 ····· 221
2) 청소년의 혐오표현 가피해 경험의 영향 ····· 234
3) 혐오표현 제한에 대한 의견 ····· 243
4) 청소년 혐오표현의 예시 ····· 258
3. 청소년 면접조사 결과분석 ····· 260
1) 혐오표현 노출경험 ····· 260
2) 혐오표현 가피해 경험의 영향 ····· 269
3) 혐오표현에 대한 의식 ····· 273
4) 혐오표현 제한에 대한 의식 ····· 277

Ⅵ. 결론 및 정책제언

1. 주요결과 ····· 285
1) 연구개요 ····· 285
2) 외국사례 분석결과 ····· 286
3) 설문조사 분석결과 ····· 287
4) 면접조사 분석결과 ····· 294

2. 정책제언 ····· 298
1) 법·제도적 대응방안 ····· 300
2) 미디어 대응방안 ····· 306
3) 교육적 대응방안 ····· 312
4) 피해자 지원방안 ····· 321

참고문헌 ····· 327

부 록

부록1. 청소년 설문지 ····· 343
부록2. 전문가 면접조사지 ····· 352
부록3. 청소년 면접조사지 ····· 355
부록4. 기초통계표 ····· 358

Abstract ····· 369

표 목차

표 Ⅰ-1 차별적 표현의 대상에 따른 혐오표현 인식 정도 ····· 6
표 Ⅰ-2 사회생활 공간에서 혐오표현 유형별 '들어본 적 있다' 비율 ··· 6
표 Ⅰ-3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 찬반 비율 ····· 7
표 Ⅰ-4 설문조사 개요 ····· 10

표 Ⅱ-1 혐오표현에 대한 정의 ····· 16
표 Ⅱ-2 성별에 따른 혐오표현 인정 비율 비교 ····· 20
표 Ⅱ-3 차별적 표현의 대상에 다른 혐오표현 규제 동의 정도 ····· 21
표 Ⅱ-4 혐오표현을 가장 많이 접하는 경로 ····· 21

표 Ⅲ-1 혐오표현 관련 국제규약의 주요 내용 ····· 37
표 Ⅲ-2 각국의 혐오표현 대응 관련법의 주요 내용 ····· 54
표 Ⅲ-3 BRICKS의 수업구성 ····· 61
표 Ⅲ-4 BRICKS의 13개 교육 프로그램 ····· 62
표 Ⅲ-5 Hate speech in the lives of teenagers ····· 62
표 Ⅲ-6 수업계획안(Lesson Plan) ····· 65
표 Ⅲ-7 교실활동(Classroom Activities) ····· 68

표 Ⅳ-1 초등학교, 중학교 지역×학년별 학생 수, 학교 수 ····· 81
표 Ⅳ-2 고등학교 지역×학년별 학생 수, 학교 수 ····· 82
표 Ⅳ-3 학교급×학년별 모집단 크기, 목표 표본크기 ····· 85
표 Ⅳ-4 단순비례배분에 의한 표본크기 할당: 학생 수, 학교 수 ····· 86
표 Ⅳ-5 변형비례배분에 의한 예상 표본크기: 학교 수, 학생 수 ····· 87
표 Ⅳ-6 혐오표현 실태 조사내용의 구성 ····· 93
표 Ⅳ-7 설문문항 개발의 근거 ····· 93
표 Ⅳ-8 설문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97
표 Ⅳ-9 외국인에 대한 차별 혐오 인식 ····· 99

표 Ⅳ-10 타 인종에 대한 차별 혐오 인식 ····· 100
표 Ⅳ-11 타 종교에 대한 혐오 인식 ····· 101
표 Ⅳ-12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인식 ····· 102
표 Ⅳ-13 장애인에 대한 혐오 인식 ····· 103
표 Ⅳ-14 여성 페미니스트에 대한 혐오 인식 ····· 105
표 Ⅳ-15 다문화가정에 대한 혐오 인식 ····· 106
표 Ⅳ-16 청소년에 대한 혐오 인식 ····· 107
표 Ⅳ-17 노인에 대한 혐오 인식 ····· 109
표 Ⅳ-18 경제적 약자에 대한 혐오 인식 ····· 110
표 Ⅳ-19 부모 직업에 따른 차별 혐오 인식 ····· 111
표 Ⅳ-20 학벌에 따른 차별 혐오 인식 ····· 112
표 Ⅳ-21 출신지역에 따른 혐오 인식 ····· 113
표 Ⅳ-22 사회 전반으로 더욱 확대 ····· 115
표 Ⅳ-23 혐오 문제의 다양화 ····· 116
표 Ⅳ-24 더 큰 사회문제로 발전 ····· 117
표 Ⅳ-25 세대 및 지역 갈등이 더욱 강화 ····· 119
표 Ⅳ-26 혐오를 이용하는 집단과 세력의 확대 ····· 120
표 Ⅳ-27 개인의 자유 침해 확대 ····· 121
표 Ⅳ-28 민주적 의사결정 침해 확대 ····· 122
표 Ⅳ-29 인간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 ····· 124
표 Ⅳ-30 국제사회 공통기준 침해 ····· 125
표 Ⅳ-31 외국인에 대한 혐오의 심각성 ····· 126
표 Ⅳ-32 타인종 피부색에 따른 혐오의 심각성 ····· 128
표 Ⅳ-33 타 종교에 대한 혐오의 심각성 ····· 129
표 Ⅳ-34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의 심각성 ····· 130
표 Ⅳ-35 장애인에 대한 혐오의 심각성 ····· 131
표 Ⅳ-36 페미니스트에 대한 혐오의 심각성 ····· 133
표 Ⅳ-37 다문화가정에 대한 혐오의 심각성 ····· 134
표 Ⅳ-38 노인에 대한 혐오의 심각성 ····· 135
표 Ⅳ-39 청소년에 대한 혐오의 심각성 ····· 136
표 Ⅳ-40 빈곤층에 대한 혐오의 심각성 ····· 137
표 Ⅳ-41 출신지역에 따른 혐오의 심각성 ····· 139
표 Ⅳ-42 해외이주노동자에 대한 혐오의 심각성 ····· 140
표 Ⅳ-43 국내거주 교포집단에 대한 혐오의 심각성 ····· 141
표 Ⅳ-44 근로청소년에 대한 혐오의 심각성 ····· 142

표 Ⅳ-45 범죄청소년에 대한 혐오의 심각성 ····· 144
표 Ⅳ-46 성별 외국인 가해 정도 ····· 145
표 Ⅳ-47 장애여부별 외국인 가해 정도 ····· 146
표 Ⅳ-48 경제수준별 외국인 가해 정도 ····· 146
표 Ⅳ-49 다문화가정 여부별 외국인 가해 정도 ····· 147
표 Ⅳ-50 성별 타인종 가해 정도 ····· 148
표 Ⅳ-51 장애여부별 타인종 가해 정도 ····· 148
표 Ⅳ-52 경제수준별 타인종 가해 정도 ····· 149
표 Ⅳ-53 다문화가정여부별 타인종 가해 정도 ····· 150
표 Ⅳ-54 성별 타종교 가해 정도 ····· 151
표 Ⅳ-55 장애여부별 타종교 가해 정도 ····· 152
표 Ⅳ-56 경제수준별 타종교 가해 정도 ····· 152
표 Ⅳ-57 다문화가정여부별 타종교 가해 정도 ····· 153
표 Ⅳ-58 성별 성소수자에 대한 가해 정도 ····· 154
표 Ⅳ-59 장애여부별 성소수자에 대한 가해 정도 ····· 155
표 Ⅳ-60 경제수준별 성소수자에 대한 가해 정도 ····· 156
표 Ⅳ-61 다문화가정여부별 성소수자에 대한 가해 정도 ····· 156
표 Ⅳ-62 성별 장애인에 대한 가해 정도 ····· 157
표 Ⅳ-63 장애여부별 장애인에 대한 가해 정도 ····· 158
표 Ⅳ-64 경제수준별 장애인에 대한 가해 정도 ····· 159
표 Ⅳ-65 다문화가정여부별 장애인에 대한 가해 정도 ····· 159
표 Ⅳ-66 성별 페미니스트에 대한 가해 정도 ····· 160
표 Ⅳ-67 장애여부별 페미니스트에 대한 가해 정도 ····· 161
표 Ⅳ-68 경제수준별 페미니스트에 대한 가해 정도 ····· 162
표 Ⅳ-69 다문화가정여부별 페미니스트에 대한 가해 정도 ····· 162
표 Ⅳ-70 성별 다문화가정에 대한 가해 정도 ····· 163
표 Ⅳ-71 장애여부별 다문화가정에 대한 가해 정도 ····· 164
표 Ⅳ-72 경제수준별 다문화가정에 대한 가해 정도 ····· 165
표 Ⅳ-73 다문화가정여부별 다문화가정에 대한 가해 정도 ····· 165
표 Ⅳ-74 성별 노인에 대한 가해 정도 ····· 166
표 Ⅳ-75 장애여부별 노인에 대한 가해 정도 ····· 167
표 Ⅳ-76 경제수준별 노인에 대한 가해 정도 ····· 168
표 Ⅳ-77 다문화가정여부별 노인에 대한 가해 정도 ····· 168
표 Ⅳ-78 성별 청소년에 대한 가해 정도 ····· 169
표 Ⅳ-79 장애여부별 청소년에 대한 가해 정도 ····· 170

표 Ⅳ-80 경제수준별 청소년에 대한 가해 정도 ····· 171
표 Ⅳ-81 다문화가정여부별 청소년에 대한 가해 정도 ····· 171
표 Ⅳ-82 성별 빈곤층에 대한 가해 정도 ····· 172
표 Ⅳ-83 장애여부별 빈곤층에 대한 가해 정도 ····· 173
표 Ⅳ-84 경제수준별 빈곤층에 대한 가해 정도 ····· 174
표 Ⅳ-85 다문화가정여부별 빈곤층에 대한 가해 정도 ····· 174
표 Ⅳ-86 성별 출신지역에 따른 가해 정도 ····· 175
표 Ⅳ-87 장애여부별 출신지역에 따른 가해 정도 ····· 176
표 Ⅳ-88 경제수준별 출신지역에 따른 가해 정도 ····· 177
표 Ⅳ-89 다문화가정여부별 출신지역에 따른 가해 정도 ····· 177
표 Ⅳ-90 성별 해외이주노동자 집단에 대한 가해 정도 ····· 178
표 Ⅳ-91 장애여부별 해외이주노동자 집단에 대한 가해 정도 ····· 179
표 Ⅳ-92 경제수준별 해외이주노동자 집단에 대한 가해 정도 ····· 180
표 Ⅳ-93 다문화가정여부별 해외이주노동자 집단에 대한 가해 정도 ··· 180
표 Ⅳ-94 성별 국내거주 교포집단에 대한 가해 정도 ····· 181
표 Ⅳ-95 장애여부별 국내거주 교포 집단에 대한 가해 정도 ····· 182
표 Ⅳ-96 경제수준별 국내거주 교포 집단에 대한 가해 정도 ····· 183
표 Ⅳ-97 다문화가정여부별 국내거주 교포 집단에 대한 가해 정도 ···· 183
표 Ⅳ-98 성별 근로청소년에 대한 가해 정도 ····· 184
표 Ⅳ-99 장애여부별 근로청소년에 대한 가해 정도 ····· 185
표 Ⅳ-100 경제수준별 근로청소년에 대한 가해 정도 ····· 186
표 Ⅳ-101 다문화가정여부별 근로청소년에 대한 가해 정도 ····· 186
표 Ⅳ-102 성별 범죄청소년 집단에 대한 가해 정도 ····· 187
표 Ⅳ-103 장애여부별 범죄청소년 집단에 대한 가해 정도 ····· 188
표 Ⅳ-104 경제수준별 범죄청소년 집단에 대한 가해 정도 ····· 189
표 Ⅳ-105 다문화가정여부별 범죄청소년 집단에 대한 가해 정도 ···· 189
표 Ⅳ-106 성별 혐오 및 차별 표현 생산 및 가해 공간 ····· 190
표 Ⅳ-107 장애여부별 혐오 및 차별 표현 생산 및 가해 공간 ····· 191
표 Ⅳ-108 경제수준별 혐오 및 차별 표현 생산 및 가해 공간 ····· 192
표 Ⅳ-109 다문화가정여부별 혐오 및 차별 표현 생산 및 가해 공간 ··· 193
표 Ⅳ-110 학교유형별 혐오 및 차별 표현 생산 및 가해 공간 ····· 194
표 Ⅳ-111 성별 혐오나 차별 표현 생산 및 가해자 ····· 195
표 Ⅳ-112 장애여부별 혐오나 차별 표현 생산 및 가해자 ····· 196
표 Ⅳ-113 경제수준별 혐오나 차별 표현 생산 및 가해자 ····· 196
표 Ⅳ-114 다문화가정별 혐오나 차별 표현 생산 및 가해자 ····· 197

표 Ⅳ-115 학교유형별 혐오나 차별 표현 생산 및 가해자 ····· 198
표 Ⅳ-116 규제강화의 필요성 ····· 199
표 Ⅳ-117 교육현장에서의 혐오표현 교육 필요성 ····· 200
표 Ⅳ-118 혐오표현 개선방법 홍보 필요성 ····· 200
표 Ⅳ-119 혐오 가해자 사법처리 필요성 ····· 201
표 Ⅳ-120 학교내 혐오 및 차별 방지 제도화 필요성 ····· 201
표 Ⅳ-121 온라인 혐오표현 기준 제시 필요성 ····· 202
표 Ⅳ-122 언론매체의 혐오 및 차별 표현 윤리기준 강화 필요성 ··· 202
표 Ⅳ-123 성별 혐오 및 차별적 행위에 따른 심리적 피해 ····· 203
표 Ⅳ-124 학교유형별 혐오 및 차별적 행위에 따른 심리적 피해 ··· 206
표 Ⅳ-125 또래집단에의 동조화 ····· 207
표 Ⅳ-126 편견과 차별 표현 인식 부족 ····· 208
표 Ⅳ-127 친구집단과의 관계유지 필요성 ····· 209
표 Ⅳ-128 언론 행태 모방 ····· 209
표 Ⅳ-129 온라인 대화에서 필요 ····· 210
표 Ⅳ-130 정치인 언어 모방 ····· 211
표 Ⅳ-131 청소년 언어 하위문화 ····· 212
표 Ⅳ-132 어른과의 세대차이 ····· 213

표 Ⅴ-1 면접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219

그림 목차

그림 Ⅰ-1 연구추진체계 ····· 12

그림 Ⅵ-1 청소년 혐오표현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 ····· 299
그림 Ⅵ-2 청소년 관련 기관의 혐오표현 사후 처리절차 ····· 319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4. 연구추진체계

1 서 론[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우리나라는 다양한 사회적 집단을 대상으로 각종 혐오표현이 넘쳐나고 있다. 혐오표현과 관련된 중요한 국제협약인 '모든 형태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에서는 "만인은 존엄과 권리에 있어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함을 선언하고 또한 특히 인종, 피부색 또는 출생지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하지 않고 동 선언에 언급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구나 향유할 수 있음을 선언하고 있음을 고려하고,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며 어떠한 차별에 대해서도 그리고 어떠한 차별의 고무에 대해서도 법의 균등한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2)].

역사적으로 여성, 지역, 장애인, 성소수자, 소수인종, 타민족 등에 대해 대상 집단을 열등한 존재, 무가치한 사람, 위험하거나 오염된 집단으로 낙인찍고 차별해온 것이 우리 사회의 의식과 무의식의 가치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혐오표현은 이러한 편견과 차별을 사회적으로 나타내고 부추기는 행위이다. 더 나아가서는 혐오의 대상이나 집단에 대해 지속적인 차별을 확대 재생산함으로써 그들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을 만들고, 국가적 사회적 가치인 민주적 가치를

1) 제1장은 김영한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2) 외교부. 인종차별철폐협약, http://www.mofa.go.kr/www/brd/m_3998/view.do?seq=303433에서 2020년 12월 30일 인출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국가인권위원회, 2019b: 20-23).

혐오현상의 실제적인 피해사례로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으로 여성혐오 범죄가 발생하였고, 그 후 미투운동 등으로 사회적 반향을 가져왔다. 2020년에는 남성이었던 청소년이 성전환을 통해 법적으로 여성이 되었고, 2020년 수능시험을 통해 여대에 합격하였음도 불구하고 해당학교의 재학생과 동문들이 입학을 반대하는 서명 등을 조직으로 전개하였다. 그 결과 이 청소년은 해당 여대에 대한 진학을 포기하였다. 또 다른 사례로 남성이었던 군대 하사관이 성전환을 통해 여성이 되었고, 여군으로 근무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전역토록 하였다(파이낸셜뉴스 (2020.2.10).

또한 각종 미디어에 코로나19로 인한 중국인, 조선족, 대림동, 안산지역 등에 대해 '우한폐렴' 등 혐오표현이 발생했고, 몇 년 전 제주도 예멘 난민 500명에 대해서도 무차별적인 혐오표현을 양산하였다.

이러한 혐오 현상의 확대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2019년에 조사한 '혐오차별 국민인식조사'에서 유경험자가 64.2%에 달하고 있다. 대상별 혐오표현 경험에서도 아동·청소년의 경우는 36.9%가 혐오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가인권위원회, 2019a: 21). 혐오표현의 조장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49.1%가 언론이 혐오표현을 조장하는 부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응답자의 87.2%가 혐오표현 대응 정책 중에서 '언론에서 혐오를 부추길 수 있는 표현이나 보도를 자세할 것'을 꼽았다. 혐오표현을 언론이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해결 역시 언론이 해야 한다고 본 셈이다(뉴스1 (2020.1.16).

이상과 같은 사회적 혐오 현상에 따라 청소년의 혐오 표현 또한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에는 청소년의 언어표현과 관련하여 주로 욕설이나 은어, 인터넷 상의 댓글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다루어졌고, 정책적으로도 이에 대한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청소년과 관련된 혐오표현 문제의 최근 경향을 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심각성이 있다.

첫째는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혐오표현과 혐오자의 확산 문제이다. 즉, 청소년을 사회적 약자로 보호나 육성의 대상이 아니라 혐오의 대상으로 낙인 되는 것이다. 이 것은 청소년외의 사회구성원들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급식충, 중2병, 교복충, 등골브레이커 등 일상적 용어들이 혐오관련 표현이 높아지고 있고 이제는 휴먼급식체(10대들의 인터넷 말투에 대한 표현), 룸나무(룸살롱+꿈나무의 합성어로 청소년이 짧은 치마를 입거나 화장을 했을 때 비하하는 표현) 등 확대 재생산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의 청소년 혐오자들은 청소년범죄가 형사처벌로부터 보호된다는데 분노하고 있고 이를 세력화 하고 있다.

둘째는 청소년 내에서 이루어지는 혐오표현과 혐오행위의 확대 문제이다. 과거의 집단따돌림 현상에서 이제는 경제적 약자, 신체적 약자, 지역적 약자(지방, 보육원 등 시설출신), 소수인종(고려인, 다문화가정, 이민자, 난민 등 이주배경가정 등)에 대한 차별적인 혐오 표현이 청소년전반에 여과없이 확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3)]

최근은 편견, 차별적 인식을 통해 온라인커뮤니티나 각종 콘텐츠를 기반으로 여혐, 남혐, 젠더, 장애인, 청소년 등에 대해 혐오 등이 사회적 문제로 발전하고 있고. 특히 혐오표현은 인권과 공존, 평화, 민주적 가치 등 보편적 가치창출을 막는 강력한 사회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에 따른 혐오표현에 대한 인식은 인종이나 민족에 대한 혐오가 71.4%로 가장 높고, 성적기호, 출신지역, 성별이 모두 60%이상이다. 종교의 경우도 52.8%이나 정치/이념성향은 42.6%로 다른 항목에 비해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혐오 유형별 경험도를 보면 대부분 30%이상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성별과 지역에 대한 혐오가 각45.5%, 41.9로 높게 나타났다(박아란, 양정애, 2016: 6).

3) 한국일보 (2018.11.21). 혐오사회에서 청소년 구하기,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11201313027321 에서 2020년 12월 30일 인출

표 Ⅰ-1 차별적 표현의 대상에 따른 혐오표현 인식 정도

(단위 : %)

구분	인종 / 민족	성적 기호	출신지역	성별	종교	정치 / 이념성향
그렇다	71.4	64.7	61.5	60.3	52.8	42.6
아니다	20.7	23.8	29.3	31.9	33.5	42.6
잘 모르겠다	7.9	11.5	9.2	7.8	13.7	14.7

* 출처 : 박아란, 양정애, 2016: 2, 재구성.

* 주 : *N*=1,039

표 Ⅰ-2 사회생활 공간에서 혐오표현 유형별 '들어본 적 있다' 비율

(단위 : %)

구분	성별	출신지역	인종 / 민족	성적 기호	정치 / 이념 성향	종교
비율	45.5	41.9	37.3	37.0	36.0	30.8

* 출처 : 박아란, 양정애, 2016: 6, 재구성.

* 주 : *N*=1,039

이 문제와 관련하여 유럽 등에서는 단순한 의견표현이라는 수준을 넘어 범죄로 취급하고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혐오 표현에 대한 세계적인 대응 체계를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UN의'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인종차별 철폐조약)'과'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에 따라 제재를 포함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하며, 차별금지 교육을 교육현장에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혐오표현 또는 증오표현 (Hate Speech)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 및 현황 분석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있으며, 또한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 및 대응 방안 마련이 미미한 실정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에 따르면 혐오 표현에 대한 규제 찬성이 77.1%로 혐오표현에 대한 제도적 개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박아란, 양정애, 2016: 6).

표 Ⅰ-3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 찬반 비율

(단위 : %)

구분	찬성	반대
비율	77.1	22.9

* 출처 : 박아란, 양정애, 2016: 6, 재구성.

* 주 : *N*=1,071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또는 청소년에 의한 다양한 유형의 혐오집단과 혐오형태에 대한 노출 실태를 파악하고, 청소년의 혐오표현 피해 내용을 분석하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국내·외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내용

1) 청소년 혐오 및 차별 표현에 대한 선행 연구 검토

연구목적에서 제시된 청소년 혐오 및 차별 표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청소년 분야의 혐오표현 문제에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존 일반을 대상으로 연구 및 조사가 이루어진 선행연구 검토를 실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혐오표현 문제와 관련한 연구적 논의가 5년 정도에 불과하여 혐오표현에 대한 개념적 논의가 구체화되지 않고 있으며, 연구의 범위에서도 학자들간의 포괄적 혐의가 없는 상태이다.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학문적 논의문제보다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혐오표현의 개념적 문제는 국제적 기준과 법적 기준에 따르고 있다. 실태조사 내용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루어진 일반인 조사내용을 일부포함하고 연구진이 제한된 범위에서 수정하였다.

이 결과 본 연구에서는 혐오표현의 인식문제, 혐오표현의 사회적 영향, 혐오표현의 심각성, 현재 우리나라 혐오 표현의 강도(수준), 혐오표현의 생산자 및 생산수단, 그리고 혐오표현에 대한 청소년의 심리적 피해 행위와 정책적 대응방안 9개영역을 청소년 혐오실태의 주요 관점으로 설정하였다.

2) 청소년의 혐오 및 차별표현에 따른 실태 조사

본 연구의 핵심내용으로 청소년들의 혐오 및 차별표현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과 사회적 영향도, 소수집단에 대한 혐오표현의 심각성과 가해수준, 청소년의 혐오표현 경험과 피해내용, 청소년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였다. 이 조사를 통하여 청소년들이 우리사회에 퍼지고 있는 혐오표현과 관련된 내용으로부터 노출 수준과 피해 정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혐오표현, 혐오동기, 혐오생산 그룹, 혐오의 확대 수단에 대해 파악이 이루어졌다.

3) 전문가 및 청소년 심층면접을 통한 정책적 대응방안 제시

본 연구의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 청소년 혐오표현의 노출 실태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면접을 통하여 청소년 혐오분야의 노출경험, 노출장소, 노출내용 및 방법, 원인과 전망, 2차 피해에 대한 방지 방안, 정책적 대응방안에 대해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혐오 표현이 대상이 되는 소수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통하여 혐오 표현에 따른 실제적인 가해관련 경험 및 피해사례와 더불어 해당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보호욕구에 대한 파악을 통해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였다.

4) 외국사례 분석

혐오표현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성과사례를 파악하기 위하여 오랜 기간 이와

관련 정책이 마련된 유럽과 미국의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청소년분야의 법제도적 장치의 유용성을 탐색하고, 교육활동으로 혐오문제 관련 프로그램을 제시함으로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3. 연구방법

1) 문헌연구

혐오표현의 정의와 개념 등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와 차별금지법에 대한 검토 및 선행연구 분석을 통하여 청소년 혐오표현의 포괄적 의미를 제시하고 있으며, 혐오표현과 관련된 국내외의 법률과 제도적 환경 및 규제 장치 등을 분석하여 청소년의 혐오표현 노출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최근의 소수집단 대상인 외국인, 인종, 종교, 성, 페미니스트, 국내이주 교포집단 등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장애인, 노인, 다문화 가정, 빈곤층, 청소년 대상의 혐오문제, 그리고 출신지역, 학벌, 부모직업 등 사회적 신분에 대한 혐오 문제를 주요 연구내용으로 포함하였다. 본 연구의 정책적 과제 개발을 위한 방법으로 외국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서 국제사회의 대응 체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2) 전문가 자문

청소년 혐오표현 실태 조사내용 구성 및 정책 수단 마련을 위해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전문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센터 전문가, 대학교수 등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화상회의 및 전화로 실시하였다.

자문회의에서는 설문 및 면접내용 구성, 혐오 표현 문제의 사회적 저변성과

청소년분야에서 고려되어야할 사항, 청소년혐오 정책 과제에 포함되어야할 내용 등을 실시하였다.

3) 조사연구[4)]

(1) 청소년 설문조사

조사대상의 모집단은 조사시점 기준으로 전국 17개시도 2020년 4월 교육통계 DB를 기준으로 전체 조사대상 학생 수는 4,063,251명이며 각 학교급별 학생 수는 초등학교 1,357,865명, 중학교 1,294,359명, 고등학교 1,411,027명(34.7%)이다. 모집단을 대상으로 확률비례추출법으로 표본학교를 선정하고, 초·중·고 각각 2,000명 수준으로 총 6,057여명을 추출하였다.

표 Ⅰ-4 설문조사 개요

주요요소	내용	비고
모집단	전국 17개시도의 초5, 중2, 고2 재학생 전체	
표집 틀	2020년 교육통계DB 기반	
표본 수	초5, 중2, 고2 재학생 총 6,057명	
표집방법	확률비례추출법 (전국17개시도 / 학교 구분 / 학년 및 학급 구분)	
조사시기	6월1일 ~ 9월 30일	
통합조사 참여	한국리서치 통합조사 참여	

4) 조사연구에 관해 제1장 서론에서는 개요만 소개하고, 구체적인 조사방법에 대해서는 설문조사의 경우 제4장 제1절 조사방법에서 기술하고, 면접조사의 경우 제5장 제1절 조사방법에서 기술하고자 한다.

설문자료 분석방법은 청소년대상 혐오표현에 대한 설문조사가 최초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정책부서에서의 자료 활용도의 유용성을 위해 기술통계분석과 카이검증, *t*-test, *F*-test 등 기본적인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2) 청소년 및 전문가 면접조사

면접조사의 대상자는 전문가 및 청소년이다. 전문가는 혐오표현에 관해 연구하고 있는 학자 2명, 혐오표현 정책담당 공무원 1명, 혐오표현 예방교육이나 피해자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교사 3명과 민간단체 활동가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소년은 혐오표현 피해 경험이 있는 이주배경 청소년 1명, 장애 청소년 1명, 성소수자 청소년 2명, 학생 청소년 3명, 소년원 출원생 2명 등 총 9명이다.

전문가 조사는 조사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이메일로 서면 답변을 먼저 받은 후에 보충질문만 화상면접을 실시하거나 화상면접 만을 실시하는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였고, 청소년 조사는 화상면접만 실시했다. 전문가 서면조사는 8월 20일부터 9월 10일까지 진행되었고, 화상면접은 화상 인터뷰만 실시하는 대상자부터 시작해 서면 답변을 회신한 차례대로 실시했다. 전문가와 청소년의 화상면접은 2020년 8월 28일부터 9월 14일 사이에 Zoom을 사용해 실시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해 분석했다.

4. 연구추진체계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등을 반영한 연구추진체계는 다음 표와 같다.

연구목적	◇ 청소년 혐오표현 노출 실태 파악 ◇ 청소년분야 혐오 대응 정책과제 개발

▼

선행연구 검토	◇ 혐오 및 차별표현의 법적 정책적 기준 적용 ◇ 국가인권위원회의 혐오 조사내용을 중심으로 청소년 분야에의 수정 검토 ◇ 혐오표현 관련 기초이론 및 개념 추출

▼

외국사례 검토	◇ 유럽 및 미국의 법, 제도적 체계 분석 ◇ 유럽 및 미국의 혐오표현 관련 교육 프로그램 분석

▪

	조사내용	분석방법
설문조사 분석	◇ 청소년의 혐오 및 차별 표현에 따른 전 과정을 9개영역(인지도, 사회적 현상, 심각성, 가해수준, 가해대상, 경험도, 가해자, 대응방안, 피해내용, 사용동기)으로 구분하여 조사	◇ 기술통계 분석 ◇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 분석 (카이검정, T검정, F검정)

▪

	면접내용	분석방법
면접조사 분석	◇ 청소년 혐오표현 노출과 관련하여 경험도, 방법 및 유형, 원인과 인식, 혐오범죄, 의식, 2차피해 등 심층면접	◇ 소수집단 청소년대상 면접 ◇ 공무원, 학계 등 전문가 면접

▼

정책방안 도출	◇ 청소년 혐오노출 실태에 따른 정책과제 도출 ◇ 기본방향제시, 교육프로그램 제시

그림 Ⅰ-1 연구추진체계

제2장 이론적 배경

1. 개념적 논의
2. 청소년 혐오표현 조사 내용구성

2 이론적 배경[5)]

1. 개념적 논의

1) 혐오의 개념적 정의

혐오표현에 대한 개념적 논의는 사회적 통념과 도덕적 가치에 따라 그 시대의 상황을 반영하여 진화하고 형성되는 개념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혐오표현에 대해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서는, '사회적 그룹인 인종, 섹슈얼리티에 대한 적대감이나 불관용 발언, 적의적 폭언'으로 제시되고 있고, 콜린스 영어사전에서는 '인종적, 성적, 민족적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폄하하는 발언'으로 정의하고 있다(조소영, 김종철, 이승현, 2016: 10).

제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 Anthony Cortese는 '인종이나 민족적 기원, 종교, 성, 연령, 신체적 조건, 장애, 성적 취향과 이에 근거하여 폄하하는 것', Jennifer Hornsby는 '성, 인종, 장애, 성적취향 등을 모욕하고자 하는 의도적인 표현'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혐오표현의 범주로 ① 개인이나 소수의 개인들을 상대로 그들의 성, 인종, 피부색, 장애, 성적취향 등을 모욕 또는 낙인하고, ② 모욕하고자 하는 개인들에게 직접적인 행위가 가해지며, ③ 직접적인 증오나 경멸을 표현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용어를 활용한다(전경옥외, 2019: 37-38).

5) 제2장은 김영한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Brian Levin[6]은 '혐오표현은 그 자체가 언어적 폭력인 동시에 물리적 폭력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표현을 넘어서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하며, 혐오표현과 폭력과의 관계를 '편견, 편견에 의한 행위, 차별, 폭력, 제노사이드'의 5단계로 제시하고 이를 '증오의 피라미드(Pyramid of Hate)'라고 지칭하였다. 5단계에는 언어폭력적인 혐오표현(hate speech)과 유형력을 행사한 범죄로 처벌받아야 하는 증오범죄(hate crime)가 담겨있다 이것은 혐오 표현의 기반이 편견과 차별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으며, 혐오 표현의 보다 큰 문제는 혐오집단에 대한 낙인이다.

반면에 한국사회에서의 혐오라는 용어는 주로 혐오시설, 혐오식품 등 물리적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이는 Hate Speech의 한국식 표현에 따른 논란으로 혐오와 증오의 개념적 분리가 필요하다(전경옥 외, 2019: 14). 즉, 혐오시설과 혐오식품 등의 혐오는 위험, 더러움, 비위생 등 피하거나 싫어하는 감정적 표현으로 볼 수 있으나, 차별과 배제의 사회적 집단 간의 문제를 간과할 수 있거나 큰 문제로 보지 않을 수도 있게 된다(김세은, 이설희, 홍남희, 김현정, 2019: 11).

표 II-1 혐오표현에 대한 정의

협의	광의	연구자
인종, 성별, 민족, 국적, 종교, 장애등 객관적으로 해악성이 큰 차별사유를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혐오하거나 폭력을 선동하는 표현	기타 차별적 사유를 이유로 하는 경우	박해영
역사적·사회적으로 소수자에 속하여 왔으며, 편견과 조롱의 대상으로 정식적·신체적으로 핍박을 받아온 경험을 가진 집단에 대한 차별,적대, 혹은 폭력이라는 구체적인 결과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선동/유도 행위	역사적·사회적으로 소수자에 속하여 왔으며,편견과 조롱의 대상으로 정식적·신체적으로 핍박을 받아온 경험을 가진 집단에 대해 혐오의 감정을 옹호, 확산, 조장, 정당화하는 모든 표현 행위	김민정

6) 교육내시경 (2017.12.10). hate speech 금지론. https://blog.naver.com/herrihm103/221159908469 에서 2020년 2월 13일 인출

협의	광의	연구자
집단의 소속을 이유로 하는 비합리적 차별 행위로서 해당 집단에 대한 공공의 적개심을 고취하거나 차별 혹은 폭력을 유도하려는 고의성, 즉 악의적 의도를 포함하고 사람들을 일정한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유도 즉 선동하는 적극적 행위		김지혜
인종, 민족, 종교, 성별 및 성적지향·성별 정체성 등에 기하여 역사적으로 차별을 받아온 집단에 대한 부정적 편견에 기반한 적대적 표현 행위(협의의 혐오표현)	협의의 혐오표현+폭력 및 제노사이드 선동표현	이승현
개인의 인격권 등의 권익을 침해하는 혐오표현	소수자 집단에 대한 차별을 유발하는 혐오표현(다른 사회 구성원에 대한 적의적인 공격행위로서의 혐오표현(최광의))	김현귀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순수한 혐오표현 + 인격권과 평등권을 동시에 제약하는 차별적혐오표현		이준일
인종, 성별, 장애, 성적지향 등의 속성을 이유로 특정 개인(들)에게 언어를 통해 수치심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괴롭힘)의 범주+어떤 집단에 대한 증오를 고취하여 불특정한 혹은 다수의 청자로 하여금 그 집단에 대해 적대감을 갖도록 유도하고, 나아가 차별, 또는 폭력과 같은 구체적 행동을 조장할 수 있는 표현(증오선동)		이주영

* 출처 : 조소영 외, 2016: 20-21

우리나라에서의 혐오 확산이 빠르게 나타나는 것은 사회적 문화적 배경이 공동체적 삶을 기반한 집단주의 문화, 동화주의 문화, 단일민족주의 문화, 급격한 다인종의 유입에 따른 소수집단 증대, 반공이데올로기에 따른 이념적 대립 등으로 인한 타인종, 타민족, 타문화에 대한 수용성이 매우 낮다(홍성수, 2019a: 18).

혐오표현과 관련된 국제사회의 연관 규약에서의 개념적 정의를 보면, 1966년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제20조 제2항은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는 법률에 의하여 금지한다. 유엔의 라바트 행동계획(Rabat Plan of Action on the prohibition of advocacy of national,

racial or religious hatred that constitutes incitement to discrimination, hostility or violence)에 나타난 혐오표현은 국제 시민단체 'Article 19'에서 자유권규약 제20조 제2항을 참고하여 혐오표현을 '차별, 적의, 폭력을 선동하는 국가적, 인종적, 종교적 적대감의 고취'로 정의하는 동시에, Camden원칙이 제시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즉, '적의'는 표적집단에 대한 경멸, 적의 및 혐오를 격렬하고 비이성적인 감정으로 나타내는 것(principle 12.1i), '고취'는 표적집단에게 공연하게 향해진 증오를 촉진할 의도를 요건으로 하는것(principle 12.1ii), '선동'은 표적집단(target group)에 속하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이라는 임박한 위험을 불러오는 국민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인 발언(principle 12.1iii)이라고 명시하고 있다(조소영 외, 2016: 14).

또한 2차 대전에서 일어나 극단적인 제노사이드 문제를 방지하고자 1948년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Genocide Convention)」[7]과 1965년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ICERD)」[8]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른 UN의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는 혐오표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9]

7) "제노사이드란 특정의 민족이나 집단의 절멸을 목적으로 그 구성원을 살해하거나 생활조건을 박탈하는 것을 의미하며,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나치스 독일과 일본에 의한 전쟁범죄인 '인간에 관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에 대한 비판으로서 국제연합이 1948년 12월 제3차 총회에서 채택, 51년 발효시킨 조약이다. 이 조약은 국민·인종·민족·종교 등의 집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박해하고 살해하는 행위를 국제범죄로 규정하였다. 또한 이 조약에 의하면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① 집단의 구성원을 살해하는 일, ② 육체적·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일, ③ 육체적 파괴를 가져올 생활조건을 과하는 일, ④ 출생을 방해하는 조치를 취하는 일, ⑤ 어린이를 다른 집단으로 강제 이송하는 일 등의 집단살해를 행한 자는 전시·평시를 불문하고, 또 통치자·공무원·사인(私人)의 구별 없이 처벌된다. 그리고 이를 위한 공동모의에 참가한 자·교사자·공범자도 함께 처벌된다. 심리(審理)·처벌은 각국이 자국의 법원을 통하여 실시한다"(두산백과, 제노사이드조약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41084&cid=40942&categoryId=31659에서 2020년 2월 13일 인출).

8) 외교부. 인종차별철폐협약, http://www.mofa.go.kr/www/brd/m_3998/view.do?seq=303433 에서 2020년 12월 30일 인출

"선주민, 혈통기반집단, 이주노동자·난민· 망명신청인 등의 이주민이나 비시민과 같이 제1조(인종, 피부색, 혈통 또는 민족적·종족적 기원에 근거한 차별금지)에서 인정된 집단들에 대한 제4조상의 모든 구체적 언어표현 형태를 비롯하여 이러한 집단들의 여성 및 여타 취약집단들을 대상으로 한 언어표현들을 포함한다. 교차성의 원칙에 비추어, 그리고 "종교지도자에 대한 비판 또는 종교적 교리나 신조에 관한 논평"이 금지되거나 처벌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원회는 이슬람혐오, 반유대주의, 민족종교집단에 대한 여타의 유사한 혐오양상 등 비주류 종교를 실천하는 특정 민족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는 혐오표현, 그리고 집단학살 및 테러를 선동하는 극단적 혐오표현에 관심을 두어 왔다. 선주민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과 낙인화 역시 위원회의 우려와 권고의 대상이 되어왔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혐오 현상과 관련된 논의의 발전은 아직까지 기초실태를 파악하는 수준으로, 논란의 범주화가 학문적으로 진행 중이다. 혐오표현에 대한 집중적 논의는 비교적 최근의 일로 2010년 이후, 일베의 등장으로 혐오표현의 사회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대두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언론에서 일베의 문제를 제시하기 시작하였고, 2014년에 와서 학술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혐오표현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나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관련 연구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법·제도적으로 혐오와 연관된 법령을 보면, 형법에서는 제307조 명예훼손, 제311조 모욕,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3호 라목 성희롱,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제76조의3 직장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 제32조 괴롭힘 등의 금지, 청소년보호법 제9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9조 사회통합 · 제30조 양성평등 · 문화의 다양성 존중,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13조 차별금지, 정보

9) 국가인권위원회. 인종차별협약_일반권고 35호_인종주의적 혐오표현의 근절,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currentpage=5&menuid=001003007007&pagesize=10&boardtypeid=7065&boardid=7603379 에서 2020년 12월 30일 인출

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6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등 유사적용이 가능하지만 혐오 및 차별문제와 관련된 직접적인 법제도는 없다고 볼 수 있다.

2) 우리 사회의 혐오표현 실태

우리나라에서 혐오 및 차별 표현과 관련된 연구는 2010년 이후에 나타난 것으로 최근에 와서야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아직까지 주로 우리나라 혐오 실태에 대해 주로 연구하거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혐오표현의 사회적 현상에 대한 연구로 박아란, 양정애(2016: 1-14)의 연구에서는 여성 혐오에 대한 사회적 확산과 경험이나 여성 혐오의 경로 등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였다. 주요내용으로 성별에 따른 혐오표현 인정 수준에서는 인종과 민족, 성적 기호, 출신지역에 대한 표현은 남녀모두 60%이상의 높은 인정도를 보이고 있다. 성별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5%정도 높은 편이며, 종교에 있어서도 50%이상이 혐오표현으로 인지하고 있다.

표 II-2 성별에 따른 혐오표현 인정 비율 비교

(단위 : %)

구분	인종 / 민족	성적 기호	출신지역	성별	종교	정치 / 이념성향
여성	69.4	67.4	60.3	62.8	50.5	42.5
남성	73.4	61.9	62.7	57.8	55.3	42.8

* 출처 : 박아란, 양정애, 2016: 3, 재구성.

* 주 : *N*=1,039

표 II-3 차별적 표현의 대상에 다른 혐오표현 규제 동의 정도

(단위 : %)

구분	인종 / 민족	성적 기호	출신지역	성별	종교	정치 / 이념성향
비율	62.7	50.4	45.5	43.6	31.9	28.2

* 출처 : 박아란, 양정애, 2016: 4, 재구성.

* 주 : N=1,039

인종과 민족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 62.7%로 가장 높으며, 성별에 의한 차별적 표현이 50.4%, 출신지역에 관련된 차별적 표현이 45.5%로 나타났다.

혐오표현에 대한 접촉 경로에서는 인터넷이 65.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대중매체가 16.5%이다.

표 II-4 혐오표현을 가장 많이 접하는 경로

(단위 : %)

구분	인터넷	대중매체	사회생활 공간	사적 모임	거의 접한 적 없음
비율	65.8	16.5	7.2	3.8	6.6

* 출처 : 박아란, 양정애, 2016: 5, 재구성.

* 주 : N=1,071

이 연구에서 제시된 혐오표현으로는 인종과 민족, 성적 기호나 성별 및 종교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 혐오표현으로 50%이상 높게 인지하고 있고, 혐오표현에 규제에 대해서도 77.1%로 찬성입장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조소영 외(2016: 10) 연구에서는 국가기관차원에서 혐오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제도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로서 혐오표현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사이버 공간을 중심으로 혐오표현의 심각성과 폐해를 논의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국내 정보통신법의 개정을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다.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적 측면을 다루기 위하여 혐오표현의 개념화와 범주화를 우선 시도하고 있으며, 이와 연관되어 제학자들의 혐오표현에 대한 개념적 정의와 더불어 국제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련 조약들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혐오표현의 개념화와 정의 및 범주화는 '역사적 · 사회적으로 지속적인 차별을 받아온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차별기반 표적 집단성 또는 차별성, 대상 표적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선동하는 적의적 표현 즉, 적대감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혐오의 해악성에 대해서는 표적 집단이나 해당 구성원의 인간적 존엄성을 침해하고, 혐오표현이 표적 집단이나 해당구성원의 사회적 공적 참여를 박탈함으로써 표적 집단에 대한 적대적 사상을 확산시킴으로 공론을 왜곡하며, 표적 집단의 차별을 공고화하여 불평등한 사회를 지속화 시키는데 있다.

국제사회 및 외국의 사례분석에서는 「제노사이드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자유권규약」을 통하여 민족·인종·종교에 대한 증오 또는 혐오의 표현을 법률로 금지할 것 요청하고 있다. 유럽연합에서는 2008년 '형사법에 의한, 인종주의와 외국인혐오의 특정 형태 및 표현 방지에 관한 프레임 결정'에 따라 인종, 피부색, 종교, 혈통 또는 출신 국적 및 민족과 관련해 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인 폭력과 증오의 선동 등을 형법상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따른 처벌을 의무화 하였다.

영국의 「공공질서법(1986)」, 독일의 형법, 프랑스의 「언론법」과 형법 국사원령, 캐나다의 형법 등에서 혐오표현을 규제하고 있다. 일본은 혐오표현의 사회적 심각성에 따라 2016년 「본방 외국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향한 대응 추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터넷 혐오 표현에 대한 규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정보통신망법」 개정 사항으로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때 침해할 수 없는 타인의 권리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둘째,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서 혐오 표현에 대한 근거 규정이 혐오성과 차별성으로 구분되어지는데 이를 통합하여 규정해야한다.

셋째, 현행 자율규제의 내용에 있어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내용들을 법으로 규정 인터넷의 특수성에 보다 부합하는 혐오표현의 규제를 유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에 불구하고 이 연구는 혐오에 대한 접근이 포괄적이기 보다는 심의규정이라는 제도적 측면으로 인해 매우 협소한 측면이 있다. 또한 혐오에 대한 국가적 기준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혐오의 동기와 더불어 확산과정에 요구되는 국가적 개입과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즉, 예방적 측면은 일정수준 성과를 제시하고 있으나 치료나 대응측면의 전략은 부재하다고 볼 수 있다.

최근의 실증적 연구로는 전경옥 외(2019:14)는 혐오표현 위험성 조사를 통해 경기도를 중심으로 혐오표현의 실태와 정책동향을 제시하고, 온라인 빅데이터를 통한 혐오표현의 양상을 제시함으로써 혐오표현의 경향을 제시하였으며, 혐오표현에 대한 질적 연구 접근으로 구체적인 혐오표현의 영역을 탐색하고 있다. 첫째는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마련 측면에서 혐오표현의 현장의 심각성과 문제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규제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① 한국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포괄적 차별 금지법 도입 검토 ② 미국의 스피치 코드와 유사한 자율적인 규제안 제시 ③ 자율적 규정, 규칙을 가지고 실행하는 기관에 대해 정부지원과 정책적 인센티브 제공하고, 소수자 약자에 대한 혐오표현에 대한 가중처벌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청소년 혐오표현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연구가 이루지지 않았으나 청소년 폭력의 한 유형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언어폭력 연구(이성식, 2004)가 2004년도에 이루어졌다. 여기에서는 주로 청소년의 언어사용과 연관하여 사이버 공간에서의 언어 폭력에 대한 개념적 논의와 사이버 공간에서의 행동 특성, 사이버상의 언어폭력 유발 원인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사이버 언어 폭력 원인간 영향력 상호비교를 통하여 언어폭력에서 익명의 상황이 사이버에서의 언어폭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익명성의 영향력은 공적 자아의식, 사적 자아의식, 언어폭력 용인태도, 사왕충동성, 상대인지도, 상대피해인지도, 처벌인지도 등이

매개변수 중 처벌인지도에서 약간 낮게 나타났다.

사이버상의 언어폭력 문제는 인터넷 실명제에 따른 문제나 해결 방안 마련보다는 허위정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며, 교육적 측면에서 사이버상의 행동과 태도에 대한 성장과정을 윤리적 측면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2. 청소년 혐오표현 조사 내용구성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의 혐오 표현 노출 실태에 관련된 사항은 인권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특히 차별적 내용과 직접적 인과관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청소년 혐오 표현의 출발이 편견과 차별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청소년의 행위를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그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혐오표현에 대한 인식부분이다. 이는 혐오표현이 무엇인지, 혐오의 분야와 영역 등에 대해 청소년이 얼마나 인식하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여성, 지역, 장애인, 성소수자, 소수인종, 타민족 등에 대해 대상 집단을 열등한 존재, 무가치한 사람, 위험하거나 오염된 집단으로 낙인찍고 차별한 것으로 구분하였다. 홍성수(2019)의 연구에서도 여성 및 청소년, 노인, 특정지역출신, 페미니스트, 성소수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을 혐오의 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혐오표현 인식부분을 혐오대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혐오 표현에 대한 것과 누가 혐오표현을 주로 사용하는가, 어디에서 주로 사용하는가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을 파악하고자하였다. 혐오대상으로는, 국적별, 인종별, 종교별, 성소수자, 장애인, 성별, 다문화가정, 노인, 청소년, 경제력, 사회적 직위, 학벌, 지역 등, 혐오표현 사용자로는 학교(교사, 친구), 지역사회(어른) 국가(정치인, 언론인) 등, 혐오표현 장소는 학교, 지역사회, 방송, 신문, 온라인 등을

포함하였다.

둘째, 혐오표현의 강도와 청소년이 생각하는 개선 요구 수준이다. 이는 청소년이 어떤 대상을 주요 혐오대상으로 여기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 어떤 분야에 대해 개선요구사항이 높은가에 대한 내용이다. 이에 대해 한국언론재단의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는 인종/민족, 성적기호, 출신지역, 성별, 종교, 정치/이념성향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국적별, 인종별, 종교별, 성소수자, 장애인, 성별, 다문화가정, 노인, 청소년, 빈곤층, 지역 분야를 구성하였다.

셋째, 혐오대상에 대한 혐오표현 행위에 대한 것이다. 이 문제는 청소년들이 위에서 제시된 혐오집단에 대해 주로 어떤 혐오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혐오표현의 행위는 혐오표현의 개념적 정의 제시되고 있는 혐오표현과 폭력과의 관계를 '편견, 편견에 의한 행위, 차별, 폭력, 제노사이드'의 증오의 피라미드 5단계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본 연구에서는 인종학살 부분인 제노사이드 영역을 제외하고 편견, 편견에 의한 행위(비난/모욕), 차별, 폭력 등 4단계 해당분야 중심으로 그 혐오 수준을 구분하고자 한다.

넷째, 청소년의 혐오경험 실태이다. 이는 혐오 표현 노출이 청소년에게 얼마나 확산되어 있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2016)의 연구에 따르면 성별, 출신지역, 인종, 민족, 성적 기호, 정치 및 이념 성향, 종교 부분에 대한 온라인 조사에서 해당분야에 대한 혐오가 우리사회전반에 펴져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혐오내용과 대상에 대한 청소년내의 확산 수준을 포함하고자 하였다.

다섯째, 혐오 접촉경로이다. 이는 청소년이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혐오관련 내용을 접하고 있는가이다. 국가인권위원회(2019c)의 조사결과와 한국언론진흥재단(2016)의 연구에서는 인터넷, 대중매체, 사회생활 공간, 사적모임 등을 포함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여기에 학교와 학원을 포함하였다.

여섯째, 혐오가해 및 피해와 관련된 실태이다. 이 부분은 청소년이 혐오와 관련

된 행위와 더불어 피해에 따른 심리적 행위적 행동을 포함하고 있다. 혐오 가해부분은 행위를 중심으로 두고 있으며, 피해부분은 심리적 영향과 행태적 내용을 아래의 구분과 같이 포함한다.

기분이 나쁨	전경옥, 김영란, 김현숙, 황혜미(2019)
상처를 받음	전경옥, 김영란, 김현숙, 황혜미(2019)
위축	국가인권위원회(2019c)
두려움 / 공포심	김정은(2017), 국가인권위원회(2019c), Jay, T.(2009 재인용)
회피	국가인권위원회(2019c), Abu-Ras, W. & Suarez, Z.(2009 재인용)
불신	박미숙, 추지현 (2017)
분노	김정은(2017), Bandermann, K. M. & Szymanski, D. M.(2014 재인용), Abu-Ras, W. & Suarez, Z.(2009)
고립감 / 소외감	박미숙, 추지현 (2017), Abu-Ras, W. & Suarez, Z.(2009)
우울	박미숙, 추지현 (2017) 김정은(2017), Cheng, H., McDermott, R. C., Wong, Y. J., & McCullough, K. M.(2020), Matsumoto, A., Santelices, C., & Lincoln, A. K.(2020), Bandermann, K. M. & Szymanski, D. M.(2014 재인용)
자존감 저하	박미숙, 추지현 (2017), Szymanski, D. M. & Balsam, K. F.(2011)
자살(생각)	박미숙, 추지현 (2017), Bandermann, K. M. & Szymanski, D. M.(2014 재인용), Abu-Ras, W. & Suarez, Z.(2009), Jay, T.(2009 재인용)
차별에 맞섬	국가인권위원회(2019c)
삶이 향상됨(영적, 예방적, 탄력적)	김정은(2017), Abu-Ras, W. & Suarez, Z.(2009 재인용)
불안	Matsumoto, A., Santelices, C., & Lincoln, A. K.(2020), 김정은(2017), Bandermann, K. M. & Szymanski, D. M.(2014 재인용), Abu-Ras, W. & Suarez, Z.(2009), Jay, T.(2009 재인용)
대인관계 문제	김정은(2017), Abu-Ras, W. & Suarez, Z.(2009 재인용)
자기비난 / 자기혐오 / 자기의심	전경옥, 김영란, 김현숙, 황혜미(2019)
수치심	김정은(2017), Abu-Ras, W. & Suarez, Z.(2009 재인용

일곱째, 청소년은 왜 혐오표현을 사용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이 문제는 학문적 논의에 대한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 측면에서 청소년의 생활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혐오표현 노출 정도와 혐오표현 생산자와 가해자 그룹을 파악하는 것이다.

제3장 혐오표현에 대한 국제기구와 각국의 대응방안

1. 국제기구의 대응방안
2. 각국의 법적 대응방안
3. 외국의 교육적 대응방안

3 혐오표현에 대한 국제기구와 각국의 대응방안[10]

혐오표현에 대한 국제기구와 세계 각국의 대응에는 크게 법적인 접근과 교육적 접근의 두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 법적 규제는 교육적 접근에 비해 강력한 제재 수단이다. 혐오표현은 소수자에 대한 해악이나 혐오표현의 행동화 등을 고려해 볼 때 법적 제재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홍성수 외, 2016: 31-32). 그러나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는 현행법상의 한계, 표현의 자유 제한 우려, 법적 규제의 실효성으로 인하여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이승현, 2017: 9). 또한 법조계에서는 혐오표현 규제와 관련된 찬반론이 팽팽하게 각을 세우고 있는 실정이다(이승현, 2016: 108, 118). 이와 유사하게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세계 각국은 각자의 입장에 따라 혐오표현에 대해 법적 규제의 정도에 차이를 두고 있다.

반면, 교육적 측면에서 보면, 혐오표현은 예방이 중요하고, 이를 규제하기 보다 교육을 통하여 편견, 차별, 고정관념 등의 잘못된 점을 깨닫고 혐오표현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의는 많지 않다.

10) 제3장은 조아미 교수가 집필하였음.

1. 국제기구의 대응방안[11)]

여기에서는 국제기구의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혐오표현 규제와 관련된 국제기구의 핵심적인 대응책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세계인권선언(1948년),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1948),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1965),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1966)의 순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순차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세계인권선언

1948년 유엔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에서는 평등과 차별금지의 원칙을 최초로 선언하였다(김지혜, 2015: 49). 세계인권선언 제7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을 위반하는 어떠한 차별이나 그러한 차별의 선동에 대하여도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12)] 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개인이 혐오표현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한위수, 2019: 155). 세계인권선언은 혐오표현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최초로 제시하였다는 데에는 의의가 있지만,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11) 혐오표현에 대한 국제기구의 대응방안은 법적인 것이라기 보다 협약, 규약 등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세계 각국에 법만큼의 영향력이 있고, 이러한 규약 등이 각국의 법제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므로 여기에서 다루기로 한다.

12) 세계인권선언.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홈페이지. 세계인권선언, https://amnesty.or.kr/resource/%EC%84%B8%EA%B3%84%EC%9D%B8%EA%B6%8C%EC%84%A0%EC%96%B8/ 에서 2020년 12월 30일 인출

2)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은 혐오표현의 개념과 내용에 관한 국제인권조약이다. 여기에서는 국민, 종교, 인종, 민족 등을 이유로 하는 특정 집단의 파괴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김성희 외, 2019: 11). 동 협약에서는 제2조, 제3조, 제5조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제2조에서는 집단살해의 개념과 내용, 제3조와 제5조에서는 혐오표현의 규제와 관련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동 협약 제2조에서는 집단살해를 "국민적, 인종적, 민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을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할 의도로" 그 집단 구성원에 대한 살해, 중대한 정신적·육체적 위해, 과도한 생활조건의 부과, 출생방지를 위한 의도된 조치, 강제이동과 같은 행위라고 하였다[13]. 제3조에서는 집단살해 행위 자체만이 아니라 집단살해를 범하기 위한 공모, 집단살해를 범하기 위한 직접 또는 공연한 교사, 집단살해의 미수, 집단살해의 공범도 처벌된다고 하고 있다[14].

제5조에서는 "체약국은 각국의 헌법에 따라서 본 협약의 규정을 실시하고, 특히 집단살해 또는 제3조에 열거된 기타 행위의 죄가 있는 자에 대해 유효한 형벌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을 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5]. 이것으로 집단살

13)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세계법제정보센터.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jsessionid=LJUYOx6BskP2r46OCVDg7qgKvMe1YXIi7wxDDdGcVUlbIF0p0X5URpYRap1BKYqX.eduweb_servlet_engine7?A=A&AST_SEQ=309&CTS_SEQ=5100&ETC=2& 에서 2020년 8월 10일 인출

14)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세계법제정보센터.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jsessionid=LJUYOx6BskP2r46OCVDg7qgKvMe1YXIi7wxDDdGcVUlbIF0p0X5URpYRap1BKYqX.eduweb_servlet_engine7?A=A&AST_SEQ=309&CTS_SEQ=5100&ETC=2& 에서 2020년 8월 10일 인출

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은 각국에서 그러한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입법 마련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김지혜, 2015: 49-50).

3)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에서는 피부색이나 인종, 혈통, 민족, 국가 등의 우월성을 근거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김성희 외, 2019: 11). 동 협약 제1조 제1항은 "인종차별"을 "인종, 피부색, 가문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근거를 둔 어떠한 구별, 배척, 제한 또는 우선권"으로 정의하고,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는 기타 어떠한 공공생활의 분야에 있어서든 평등하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인정, 향유 또는 행사를 무효화시키거나 침해하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고 하였다.[16]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4조에서는 차별선동의 행위 외에도, 단순한 "인종우월주의나 인종증오에 바탕을 둔 관념의 전파"나 "인종주의적 활동에 대한 원조의 제공"까지도 규율대상에 포함하고 있다[17]. 동 협약에서는 이 모든 행위들을 "법률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김지혜, 2015: 52). 또한, 동 협약 제8조에서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설치, 제9조에서는 체약국과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의무와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한위수, 2019: 159).

15)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세계법제정보센터.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jsessionid=LJUYOx6BskP2r46OCVDg7qgKvMe1YXIi7wxDDdGcVUlbIF0p0X5URpYRap1BKYqX.eduweb_servlet_engine7?A=A&AST_SEQ=309&CTS_SEQ=5100&ETC=2& 에서 2020년 8월 10일 인출

16) 세계법제정보센터.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CTS_SEQ=46882&AST_SEQ=309& 에서 2020년 8월 10일 인출

17) 세계법제정보센터.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CTS_SEQ=46882&AST_SEQ=309& 에서 2020년 8월 10일 인출

4)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

1966년 UN총회에서 채택되고 1976년에 발효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B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은 도덕적 구속력만을 가진 세계인권선언과 달리 이를 바탕으로 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진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국제인권법이다(한위수, 2019: 156). 동 규약은 혐오표현에 대해 강력하고 포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차별선동의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지만 그 제한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로 보고 있다(김지혜, 2015: 50). 즉,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제2항과 제3항에서는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를 갖는다고 규정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차별적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인종적 혹은 종교적 증오의 고취는 법률에 의해 금지 된다"고 하였다[18]. 따라서 혐오표현은 표현의 자유를 벗어나는 유형의 표현이며, 혐오표현에 해당하는 표현은 금지된다고 볼 수 있다(박미숙, 추지현, 2017: 49). 또한 제20조 제2항에서는 국가가 이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구체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김지혜, 2015: 50-51). 제28조에서는 인권이사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당사국은 동 협약에서 제공되는 권리와 관련된 사항을 인권이사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고, 인권이사회에서는 이에 대해 이사회의 의견을 당사국에 송부하도록 되어 있다(한위수, 2019: 157).

5) 소결

세계인권선언(1948년),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1948),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1965),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

18) 세계법제정보센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AST_SEQ=309&(2020.8.10.=&CTS_SEQ=5235& 에서 2020년 8월 10일 인출

규약(1966)을 중심으로 혐오표현에 대한 국제기구의 대응방안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인권선언은 혐오표현을 적극적으로 규제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최초로 혐오표현으로부터 보호받을 개인의 권리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은 집단살해의 개념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러한 행위와 이에 대한 선동을 처벌할 수 있게 하고, 혐오표현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입법 마련을 주장함으로써 세계인권선언의 선언적 의미와 다르게 혐오표현에 대해 실질적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은 인종차별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와 관련된 행동에 대한 형사적 규제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인종차별철폐위원회를 두고 동 협정의 규정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등의 활동을 하게 하고 있다.

넷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은 도덕적 구속력만이 있는 세계인권선언과 달리 법적 구속력을 가진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국제인권법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혐오표현 대응과 관련된 각 선언이나 협약의 주요내용을 제시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Ⅲ-1 혐오표현 관련 국제규약의 주요 내용

협약	주요 내용
세계인권선언(1948)	평등과 차별금지(제7조)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1948)	집단살해의 개념과 내용(제2조) 집단살해행위와 이에 대한 선동의 처벌(제3조) 혐오표현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위한 입법(제5조)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1965)	인종차별의 개념(제1조제1항) 인종주의적 사고의 보급, 인종차별 촉진·고무 등에 대한 형사적 규제(제4조)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설치(제8조) 협정의 규정 시행을 위한 체약국의 보고서 제출과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활동(제9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66)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의 실현을 위한 입법조치 약속(제2조제2항)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 금지(제20조 제2항) 인권이사회의 설치(제28조)와 역할(제40조)

* 출처 : 각주의 자료들을 재구성[19]

19)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홈페이지. 세계인권선언, https://amnesty.or.kr/resource/%EC%84%B8%EA%B3%84%EC%9D%B8%EA%B6%8C%EC%84%A0%EC%96%B8/ 에서 2020년 12월 30일 인출
세계법제정보센터.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jsessionid=LJUYOx6BskP2r46OCVDg7qgKvMe1YXIi7wxDDdGcVUlbIF0p0X5URpYRap1BKYqX.eduweb_servlet_engine7?A=A&AST_SEQ=309&CTS_SEQ=5100&ETC=2& 에서 2020년 8월 10일 인출
세계법제정보센터.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CTS_SEQ=46882&AST_SEQ=309& 에서 2020년 8월 10일 인출
세계법제정보센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AST_SEQ=309&(2020.8.10.=&CTS_SEQ=5235& 에서 2020년 8월 10일 인출

2. 각국의 법적 대응방안

유럽의 경우, 각 국가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의 수준에서도 유럽인권재판소(유럽인권위원회) 관련 판례 등이 혐오표현 규제와 관련하여 있어서 그 내용이 방대하다. 혐오표현에 관한 유럽 전체와 유럽 각국의 모든 대응책을 살펴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혐오표현 관련 역사적 배경이 상이하고 대응방안이 차별화되는 영국, 독일, 프랑스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어서 미국, 캐나다, 일본의 사례를 차례로 소개하고자 한다.

1) 영국

전통적으로 영국에서는 표현의 자유보다 보호법익의 보호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2013년 명예훼손법 개정을 기점으로 보호법익보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다시 변화하는 추세에 있다(이준석, 2019: 82). 그 결과, 영국의 대중매체에서는 이민자나 이슬람인 등 이방인을 모욕하는 표현들이 가득하게 되었지만, 이것이 치안불안을 야기되지 않으면 이에 대해 소극적인 대처만을 하고 있다(신선미, 2017: 77).

한편, 영국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는 있으나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다양한 법이 존재한다. 여기에는 범죄 및 무질서 관련 법률, 형사법, 인권법 등이 포함된다. 이들 법에 대해 중요한 내용만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범죄 및 무질서 관련 법률은 인종적 및 종교적 범죄를 가중범죄로 규정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20]. 이 법에서 규정한 인종적 및 종교적 가중범죄는 형사법에서 처벌된다[21]. 2000년에 시행된 인권법의 목적은 유럽인권협

20) legislation.gov.uk. 범죄 및 무질서 관련 법률,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1998/37/part/II/crossheading/raciallyaggravated-offences-england-and-wales 에서 2020년 8월 10일 인출

약의 보호조항들을 영국 법률에 구체화시킨 것이다. 이 법은 법원, 경찰, 지방정부, 병원, 공공교육기관 등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되고 모든 해당 기관은 협약에 규정된 권리들을 준수하여야 한다.[22]

그러나 영국에서 혐오표현 규제는 공공질서법과 평등법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공공질서법(Public Order Act 1986)

영국의 공공질서법 제3장은 차별금지의 내용을 담은 1965년 인종관계법이 폐지되고 1976년 인종관계법으로 개정된 것이 1986년 승계된 것이다(한위수, 2019: 160). 공공질서법 제17조에는 인종혐오의 의미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피부색, 인종, 국적 또는 민족이나 출신 국가가 그 대상으로 되어 있다[23]. 공공질서법 제18조부터 제23조에서는 인종적 혐오표현의 형태를 다음과 같이 6가지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범죄로 규정하였다[24]. 여기에는 ① 문서의 게시 또는 단어의 사용 또는 행위, ② 문서의 출판 또는 배포, ③ 연극공연, ④ 녹음·녹화물의 배포·상영·재생, ⑤ 방송, ⑥ 선동적 자료의 소유가 포함된다(박지원, 2016: 114-116; 정다영, 2018: 131). 인종적 혐오표현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25]. 즉결판결의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과 법정최고금액을 초과

21) legislation.gov.uk. 형사법,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03/44/contents에서 2020년 8월 10일 인출
22) legislation.gov.uk. 인권법,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1998/42/contents에서 2020년 8월 10일 인출
23) 국회도서관 정보시스템. 공공질서법, http://dl.nanet.go.kr/law/SearchDetailView.do?cn=TLAW1201700655 에서 2020년 8월 10일 인출
24) 국회도서관 정보시스템. 공공질서법, http://dl.nanet.go.kr/law/SearchDetailView.do?cn=TLAW1201700655 에서 2020년 8월 10일 인출

하지 않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26]

한편, 기존의 공공질서법에서는 종교나 성적 지향 혐오와 관련된 혐오표현의 규제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2006년 인종·종교혐오금지법과 2008년 형사사법 및 이민법에 의해 종교와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도 혐오의 정의에 포함시킴으로써 혐오표현의 처벌 범위를 확대하였다(박지원, 2016: 117).

공공질서법에서 인종혐오·종교혐오·성적 지향 혐오와 같은 혐오표현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구성요건으로서 반드시 이와 같은 혐오를 선동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한위수, 2019: 161). 그러나 인종혐오의 경우, 인종혐오를 선동하려는 의사가 없어도 자신의 표현만으로도 인종혐오가 선동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면 혐오표현죄가 인정될 수 있다(박지원, 2016: 119; 한위수, 2019: 161). 이것은 종교혐오·성적 지향 혐오죄보다 인종혐오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2) 평등법(Equality Act 2010)

평등법은 1975년 성차별방지법, 1976년 인종관계법, 1995년 장애차별방지법 등에서 규정하던 내용을 담은 차별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이다[27]. 동 법의 제정 목적은 차별관련 법의 조화와 평등을 지지하는 법을 강조하는 것이다.[28]

평등법의 제2장 제1절 제4조에서는 보호되는 특성(연령, 장애, 성전환, 혼인과 민사동반자관계, 인종, 종교 또는 신앙, 성별, 성적지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

25) legislation.gov.uk. 공공질서법, http://www.legislation.gov.uk/ukpga/1986/64에서2020년 8월 10일 인출
26) legislation.gov.uk. 공공질서법, http://www.legislation.gov.uk/ukpga/1986/64에서2020년 8월 10일 인출
27) legislation.gov.uk. 평등법,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10/15/contents에서 2020년 8월 17일 인출
28) legislation.gov.uk. 평등법,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10/15/contents에서 2020년 8월 17일 인출

고, 제2장 제2절에서는 금지되는 행위가 규정되어 있다[29]. 금지되는 행위는 제2장 제1절 제4조에서 보호되는 특성을 이유로 한 직접적 차별(제13조), 복합적 차별(제14조), 간접적 차별(제19조)이다(김지혜 외, 2019: 200-210). 이것은 공공질서법에서는 주로 괴롭힘, 불안, 고통을 야기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반면, 평등법에서는 차별을 통해 혐오표현을 규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국의 평등법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것은 이외에도 6장 교육에 관한 것이다. 평등법 제6장 제1절에서는 학교의 책무를 법률이 정하는 개인의 보호된 특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홍성수 외, 2018: 25). 교사와 학교 행정가는 인종이나 성별, 장애 등과 관련된 혐오표현이 수업의 구성 및 학교 환경, 게시물이나 안내사항 등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홍성수 외, 2018: 25). 학생들 간의 혐오표현 문제는 주로 학교폭력 예방 정책의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홍성수 외, 2018: 25). 이것은 일부 학교폭력이 평등법에서 보호되는 특성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편견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육이나 규범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2) 독일

독일에서 최고의 헌법적 가치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이다(박지원, 2016: 123-124; 이준석, 2019: 174). 독일에서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표현은 보호받지 못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정당의 활동과 설립도 금지된다(이준석, 2019: 174). 이에 따라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평등이나 인간의 존엄성과 같은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합헌으로 결정한 바 있다(박지원, 2016: 124). 이것은 타인의 인간존엄성을 침해한다면, 표현의

29) legislation.gov.uk. 평등법,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10/15/contents에서 2020년 8월 17일 인출

자유는 그보다 덜 중요하다는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원칙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김지혜, 2015: 56).

한편, 혐오표현에 대한 독일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나치시대에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 경험으로 인해 혐오표현의 잠재적 위험성을 민감하게 인식한 것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박지원, 2016: 124). 독일의 이러한 태도는 차별선동을 포함한 혐오표현의 규제 방식에서 잘 드러난다(김지혜, 2015: 57). 독일의 경우, 혐오표현 규제는 주로 형법, 네트워크집행법, 일반평등대우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이 법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형법

형법의 경우, 제130조와 제185조에서 주로 혐오표현에 대한 처벌을 다루고 있다. 독일의 혐오표현 제한 법률인 형법 제130조는 총 4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은 다시 제1, 2항과 제3, 4항으로 나누어져 있다[30]. 제130조 제1항과 제2항은 대중선동죄에 관한 규정이다. 이 조항은 제2차 세계대전 종결 후에도 반유대주의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1950년대 이후 더욱 증가하는 데 대응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성중탁, 2018: 158). 독일 형법 제130조의 보호대상은 '국적, 인종, 종교 또는 그 민족적 출신에 따라 특정되는 집단이나 주민의 일부 또는 개인'으로 규정하고 있다[31]. 독일 형법 제130조 제1항은 혐오표현이 공공의 평온을 어지럽히는 방식으로 행해진 때에 한하여 처벌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제130조 제2항은 치안방해의 여부와 관계없이 혐오표현 자체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0) 세계법령정보센터. 독일 형법,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AST_SEQ=69&CTS_SEQ=17831&ETC=0& 에서 2020년 8월 10일 인출

31) 세계법령정보센터. 독일 형법,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AST_SEQ=69&CTS_SEQ=17831&ETC=0& 에서 2020년 8월 10일 인출

는 점에서 독일은 혐오표현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박지원, 2018: 124-125). 그러나 모욕적인 발언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피해자가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권리나 인격의 핵심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위 조항의 규율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한위수, 2019: 163).

한편, 독일에서는 1994년에 독일형법 제130조 제3항으로 나치에 의한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2005년에는 같은 조 제4항으로 나치폭력지배를 찬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나치에 의해 행해진 혐오행위에 동조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도록 하였다(한위수, 2019: 163). 독일형법 제130조 제3항과 제4항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논란이 많았지만, 1994년 독일헌법재판소는 위 조항들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김지혜, 2015: 56, 58; 지성우, 2019: 417).

독일에서는 일반적으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인 형법상 모욕 또는 명예훼손죄(제185조 내지 제187조)가 넓은 의미의 혐오표현 규제에 적용되기도 한다(김지혜, 2015: 57). 독일 형법 제185조에서는 모욕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고, 제186조에서는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이승현, 2016: 86).

(2) 네트워크집행법

독일에서는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의 위법 혐오 게시글을 모니터링한 결과, 많은 형법 위반 사항이 있었고, 이를 계기로 소셜 네트워크의 가짜 뉴스와 여기서 이루어지는 혐오발언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심나리, 2017: 100). 그 결과, 네트워크집행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의 적용대상은 독일에 등록된 이용자 수가 2백만 명 이상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제공자인데, 이들에게는 보고의무와 이의제기 처리 의무가 부과된다(권형둔, 2020: 17). 여기에는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뿐만 아니라 사이트 싱, 이달링, 왓츠앱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사업자도 적용대상이 된다(심나리, 2017: 101). 네트워크집행법에서 규제되는 행위는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혐오표현과 관련된 것으로는 제130조, 제185조, 제186조 등이 있다. 예를 들어, 네트워크법에 따르면, 독일 형법 제130조에 규정된 국민선동과 관련된 정보는 불법콘텐츠이므로 이와 관련된 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최종선, 2018: 46). 이 보고서에는 불법 콘텐츠에 관한 이의 제기 절차, 불법 콘텐츠 삭제 및 차단 기준에 관한 설명, 불법 콘텐츠 삭제 및 차단까지 걸린 시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최종선, 2018: 46).

(3) 일반평등대우법

독일에서는 형사규제법적인 측면에서 다양하게 혐오표현을 규제해 왔기 때문에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인 특별법은 오랫동안 제정되지 않았다(황수옥, 2015: 27-28). 일반평등대우법은 유럽연합의 평등대우에 관한 4개 지침을 모두 수용한 법률이다(신선미, 2017: 102). 일반평등대우법은 유럽연합의 평등대우실현을 위한 지침 등 차별금지원칙에 따르면서 독일기본법 제3조의 평등권의 구체화를 위한 것이다(전경옥 외, 2019: 133). 처음에는 '차별금지법'이라는 명칭으로 입법 추진되었는데, 법의 명칭이 다소 공격적인 느낌이 들어서 '일반평등대우법'으로 변경하였다(신선미, 2017: 102).

일반평등대우법 제1조에서는 인종, 민족출신, 성, 종교 또는 신념, 장애, 나이, 성적 취향을 이유로 차별을 예방 또는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32] 이것은 일반평등대우법에서 차별적 괴롭힘, 차별적 성적 괴롭힘, 그

32) 세계법령정보센터. 독일 일반평등법,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CTS_SEQ=11471&AST_SEQ=1254& 에서 2020년 2월 10일 인출

리고 차별 지시가 혐오표현과 관련 있는 것인데 이러한 차별행위 등이 금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전경옥 외, 2019: 133).

3) 프랑스

프랑스의 경우,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는 언론법과 형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형법상 경범죄로 취급된다(이승현, 2017: 11; 김성희 외, 2019: 14). 프랑스에서는 혐오표현 중, 인종과 관련된 혐오표현에 국가적 관심이 높다(김성희 외, 2019: 14). 프랑스가 혐오표현에 대해 법적 규제를 하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이와 관련된 국가 행동계획의 내용 중, 중점적인 것들이 교육을 통한 대응이라는 것을 볼 때, 프랑스의 혐오표현에 대한 근본적 대응책은 교육적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이승현, 2017: 16). 프랑스의 혐오표현 규제를 언론법과 형법을 중심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1) 언론법

프랑스 언론법 제4장은 언론과 광고에 대한 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표현 범죄를 명시하고 있다(이승현, 2016: 72). 제1절은 범죄선동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제23조에서는 선동죄, 제24조에서는 차별선동죄등, 제24조a에서는 홀로코스트부인죄를 규정하고 있다(이승현, 2016: 72). 특히 제24조 제5항과 제6항에서는 '민족, 국가, 인종 또는 종교에 속하는지 유무를 이유'로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해 '차별, 적대감, 폭력을 선동'하거나, '성, 성적지향 또는 정체성, 장애를 이유'로 '적대감과 폭력을 선동'하는 행위 및 경제활동, 공공서비스 제공, 고용과 직업훈련, 사회보장제도와 공직 임용·해임에 있어서의 차별을 선동하는 행위가 처벌된다고 하였다(이승현, 2016: 73). 동 법에서는 2004년

개정을 통하여 '성,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 장애와 관련하여 차별, 증오 또는 폭력을 유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Barendt, 2009, 한위수, 2019: 164 재인용). 또한 프랑스는 독일과 마찬가지로 1990년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표현을 처벌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형법 제24조a에 신설하여 홀로코스트 부정표현을 처벌하고 있고, 프랑스 법원은 홀로코스트 부정표현에 대한 처벌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입장이고, 유럽인권재판소도 이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한위수, 2019: 164).

또한 언론법 제32조와 제33조에서는 표적집단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규정함으로써 혐오표현을 규제하고 있다(이승현, 2016: 73-74). 제32조 제2항과 제3항에서는 민족, 국가, 인종 또는 종교, 성, 성적지향 또는 정체성, 장애를 이유로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해 명예 훼손 행위, 제33조 제3항과 제4항에서는 모욕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이승현, 2016: 74).

(2) 형법

프랑스에서는 형법 제132-76조에 증오범죄의 처벌을 제시하고 있다(김지혜 외, 2019: 261). 형법에 열거된 모든 범죄에 대하여 그 범죄가 '피해자가 민족, 국적, 인종이나 종교 집단에 실제로 또는 추정되는 구성원이거나 구성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범행을 한 경우' 중범죄나 경범죄에 처벌이 가중된다고 제시되어 있다(김지혜 외, 2019: 261). 또한 성, 성적지향 또는 장애를 이유로 사람 또는 집단에 대하여 증오 또는 폭행을 비공연하게 선동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벌금이 부과된다(이승현, 2016: 74).

이러한 흐름 속에 2020년 5월13일 인터넷 혐오표현 금지법이 통과되었다(슬로우뉴스, 2020.05.21).[33] 동 법에 의하면,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소셜

33) 슬로우뉴스. (2020.5.21). 프랑스 '인터넷 혐오 표현 금지법', 결국 통과하다. *slow news,* https://slownews.kr/76333 에서 2020년 8월 10일 인출

미디어는 차별과 혐오가 명백한 콘텐츠에 대한 게시물이 올라온 뒤, 이를 24시간 안에 삭제하거나 접근을 차단하지 않는 경우 최대 16억 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한겨레, 2019. 7.10).[34]

4) 미국

미국은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 유럽 국가들에 비해 소극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혐오표현 규제와 관련하여 유럽각국과 자주 비교되곤 한다(이승현, 2016: 90). 미국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을 비준하기는 하였지만, 혐오표현 금지에 관한 규정들이 미국 헌법의 정신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관련조항을 유보하였다(신선미, 2017: 120). 일반적으로 미국 연방대법원은 표현의 자유에 우선적 지위를 부여하는 기본 입장에 따라 혐오표현의 규제에 엄격하고 편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한위수, 2019: 170; 홍성수 외, 2016: 58). 미국은 혐오표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없고, 민사배상의 범위도 비교적 제한적이다(노재철, 고준기, 2016: 12). 그러나 미국에서 혐오표현 처벌 법규가 없다고 해서 혐오표현에 대한 자유가 무제한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노재철, 고준기, 2016: 13). 여기에서는 미국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수정헌법, 혐오범죄통계법, 혐오범죄예방법을 중심으로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수정헌법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는 명문상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한계를 명시하지 않고

34) 한겨레. (2019.7.10). 프, 온라인서 '혐오' 철퇴…곧장 삭제 않으면 16억 벌금.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901266.html 에서 2020년 8월 10일 인출

절대적인 자유로 규정하고 있다(이승현, 2016: 91). 미국은 혐오표현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연방 법률을 제정한 적이 없지만, 혐오범죄에 대해서는 형법의 연방차원의 보호할 활동과 혐오범죄행위 조항에서 인종·피부색·종교·민족출신 등으로 보호할 활동을 방해하거나 차별사유와 관련된 범죄를 제시하고 있다(신선미, 2017: 120). 또한 미국 연방대법원은 모든 언론이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하여 절대적으로 보호받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보호받지 못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내용이 수정헌법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하였다(이승현, 2016: 91; 한위수, 2019: 170).

(2) 혐오범죄예방법

미국에서는 혐오표현 그 자체는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받지만, 이것이 직접적으로 차별적 혹은 폭력적인 행위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처벌하고 있다(김성희 외, 2019: 12). 혐오범죄예방법(Matthew Shepard and James Byrd, Jr. Hate Crimes Prevention Act 2009)에서는 동 법의 적용대상을 피해자의 실질적 또는 인지적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또는 장애를 이유로 범해진 범죄에까지 확대하였다(김성희 외, 2019: 12). 미국의 혐오범죄예방법에서는 편견에 기반한 범죄 혹은 보복성 범죄가 피해자와 사회공동체에 정서적 피해와 불안감을 일으킨다고 보기 때문에 가중처벌지향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김성희 외, 2019: 12). 1990년에는 연방법으로 혐오범죄(인종, 종교, 피부색, 국적, 민족,성, 장애 또는 성적 지향에 대한 편견으로 저지른 범죄)를 기본 형량의 3할까지 가중할 수 있는 혐오범죄가중처벌법(Hate Crimes Sentencing Enhancement Act)이 제정되었고, 연방대법원은 이러한 가중처벌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하였다(한위수, 2019: 164). 그 결과, 동 법에서는 최고 종신형도 가능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판결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은 합헌결정을 하였다(이승현, 2016: 95).

(3) 혐오범죄통계법

1990년 제정된 혐오범죄통계법(Hate Crime Statistics Act)에서 "법무부장관은 인종, 성별, 성별 인식, (강조하여 추가) 종교, 장애, 성적 취향, 또는 민족성에 근거한 편견의 증거가 명백한 범죄에 관한 데이터를 매년 수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혐오범죄의 범위를 제시하였다(신선미, 2017: 121). 연방수사국(FBI)는 이에 대한 '범죄자의 편견의 전부 또는 일부로 유발된 사람 또는 재산에 대한 범죄'를 혐오범죄라고 정의)[35]. 하고, 혐오 그 자체는 범죄가 아니라고 명시하였다(김지혜 외, 2019: 254-255)

미국에는 46개 주(D.C. 포함)에서 혐오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며, 30개 주에서 혐오범죄에 대한 통계를 수집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김지혜 외, 2019: 255). 혐오범죄통계법이 없는 주에서도 FBI에 혐오범죄의 피해자나 목격자가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김지혜 외, 2019: 256).

5) 캐나다

캐나다는 문화의 다양성과 민족 모자이크라는 사상을 강조하고 있다(신선미, 2017: 108). 혐오표현에 있어서 캐나다의 접근방식은 단순히 폭력의 직접적인 위협보다는 사회통합에 생길 점진적이고 장기적인 위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를 크게 선동행위와 차별행위로 구분하여 접근하고 있다. 선동행위는 형법, 그리고 차별행위는 인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대중적으로 증오를 선동하거나 대량학살을 선전하는 행위는 형법, 차별 또는 차별할 의도를 표현하는 것과 괴롭힘은

35) 미 연방 정부 공식 웹사이트. Hate Crimes, https://www.fbi.gov/investigate/civil-rights/hate-crimes 에서 2020년 8월 10일 인출

차별행위로 인권위원회에서 규제하는데, 인권위원회가 조사를 통하여 인권분야 전담 인권심판원이 차별중지 또는 배상금 지급을 명령하는 행정법의 형태로 인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신선미, 2017: 110).

캐나다에서는 형법을 중심으로 혐오표현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형법 이외에 인권법이 있었으나 이 법은 1977년 제정되었다가 2014년 폐지되었다. 그러나 인권법을 통하여 캐나다의 혐오표현 규제 방향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에 대해 간단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또한 여기에서 다루지는 않지만 캐나다 문화주의법(Canadian Multiculturalism Act)은 다문화주의 정책을 공식적으로 채택한 법률로서(김지혜 외, 2019: 225) 이를 통하여 캐나다가 가지고 있는 혐오표현 규제의 방향을 살펴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캐나다의 인권법과 형법을 중심으로 캐나다에서의 혐오표현 대응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인권법(Canadian Human Rights Act)

연방차원의 차별금지법인 인권법은 차별행위에 대해 제13조에 명시하였다(이승현, 2016: 74). 제13조는 '차별이 금지되는 기준에 기하여 인식되는 사실', 즉 '인종, 국적 또는 민족적 출신, 피부색, 종교, 연령, 성(임신, 출산 포함), 성적지향, 결혼상태, 가족상태, 장애 및 사면받은 유죄판결'에 의해 식별가능한 집단에 대해 '적대감이나 경멸을 표출할 우려가 있는 사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회가 규정한 전기통신 시설을 이용하여 전화상으로 반복하여 전달하거나 또는 전달되도록 하는 것'을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김지혜 외, 2019: 215; 이승현, 2016: 74). 2001년에는 인터넷을 포함한 컴퓨터 및 유사기기를 통한 전달이 동 조 제2항에 추가되었다(이승현, 2016: 75).

그러나 차별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과잉제한이라는 캐나다 인권심판소의 견해와 제13조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에 따라 캐나

다 연방의회는 2013년 인권법 제13조를 폐지하였다(한위수, 2019: 167).

(2) 형법

캐나다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세기 선주민과 아시아계 이주민 등 소수민족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한편, 유엔의 인종차별철폐협약의 채택하면서 혐오표현 규제를 위한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이승현, 2016: 66). 캐나다 의회는 1970년 유보 없이 인종차별철폐협약을 비준하고, 같은 해 형법개정을 통해 형법 제8장 개인과 명예에 대한 범죄(Offences Against The Person And Reputation) 제319조 및 제318조에 혐오표현 규제를 도입하였다(이승현, 2016: 66).

이것은 캐나다에서의 혐오표현 규제가 소수자 집단에 대한 해악성, 개인·집단의 명예와 관련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이승현, 2016: 67). 혐오표현은 그것에 노출되는 표적집단 구성원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사회로부터 그들을 소외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혐오표현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만듦으로서 사회의 다양한 문화집단 간의 조화를 깨뜨리는 악영향을 사회 전체에 미친다(이승현, 2016: 67). 특히 다문화주의를 법에 명시한 캐나다는 동 조가 혐오선전의 근절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이승현, 2016: 67).

캐나다의 혐오표현 규제에 있어서 형법 제318조 및 제319조는 적대적인 표현 자체가 아니라 적대감을 조장, 선동, 촉진하는 표현을 규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동죄의 형태를 띠고 있다(신선미, 2017: 110; 이승현, 2016: 71). 이 점은 혐오선전의 절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이승현, 2016: 72).

6) 일본

일본은 헌법 제21조에서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미국의

법리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이승현, 2016: 98). 일본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있기는 하지만, 외설, 협박, 명예훼손, 위법행위로서의 선동과 같이 형사규제의 대상이 된 표현들은 헌법 제21조의 보호를 받는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이승현, 2016: 99).

일본은 인종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하였으나 혐오표현의 범죄화 의무를 규정한 제4조 (a), (b)항은 유보하였고, 혐오표현의 규제에 관하여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노재철, 고준기, 2016: 16; 한위수, 2019: 167). 일본은 최근까지 혐오표현이나 차별을 규제하는 법을 제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에서 극우파들에 의한 재일 외국인, 그중에서도 특히 재일 한국인에 대한 혐오표현이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이것이 큰 사회문제가 되었다(한위수, 2019: 168). 그 결과, 2015년 오사카시 헤이트스피치 대처에 관한 조례, 2016년 헤이트스피치 억제법을 제정하여, 출신 민족 및 국적 등에 기반한 혐오표현을 규제하고 있다(홍성수 외, 2016: 71).

(1) 오사카시 헤이트스피치 대처에 관한 조례

오사카시 헤이트스피치 대처에 관한 조례는 일본 전체가 아니라 오사카시에만 해당한다는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일본 최초의 혐오표현에 대한 대처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조례의 목적은 ㉮ 인종 또는 민족에 관한 특정 속성을 가지는 개인 또는 집단을 사회로부터 배제하는 것, ㉯ 이들의 권리 또는 자유를 제한하는 것, ㉰ 이들에 대한 증오 혹은 차별의식 또는 폭력을 부추기는 것 중 하나이다(홍성수 외, 2016: 72). 이 조례에서 의미하는 혐오표현은 ㉮ 상당한 정도로 모멸하거나 비방중상하는 것, ㉯ 위협을 느끼게 하는 것, ㉰ 불특정 다수가 표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행해지는 것 중 하나에 해당하는 표현이다(홍성수 외, 2016: 72). 또한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혐오표현 활동은 ㉮ 표현 그 자체뿐 아니라, ㉯ 표현의 내용을 기록한 인쇄물, 디스크 및 그외의 물건의 판매, 배포, 반포 또는 상영,

㈐ 인터넷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 그 외 표현물의 내용을 확산하는 활동이다(홍성수 외, 2016: 72).

(2) 헤이트스피치 억제법

헤이트스피치 억제법에서는 부당한 차별적 언동을 정의하고, 이것이 없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일본국민과 국가의 책무, 동 법의 기본 시책이 제시되어 있다(홍성수 외, 2016: 71). 동 법에서 규정하는 부당한 차별적 언동은 일본 외 출신자에 대해 차별 의식을 조장하거나 유발할 목적으로 일본 외 출신자를 지역사회에서 배제할 것을 선동하는 언동이고, 헤이트스피치 억제법에서는 이것이 용납될 수 없음을 명시적으로 선언하였다(홍성수 외, 2016: 71). 또한,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이러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의 책임이 있음을 확실하게 하였다(한위수, 2019: 168; 홍성수 외, 2016: 71). 이를 위한 기본 시책의 내용에는 상담체제의 정비, 교육 및 홍보활동의 실시 등이 있다(홍성수 외, 2016: 71).

이 법률은 법률로써 혐오표현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선언한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헤이트스피치 억제법에는 혐오표현의 금지와 처벌에 대한 규정을 담지 못하고, 일종의 훈시적·선언적 규정만을 담았다는 한계가 있다(배상균, 2017: 74). 또한, 이 법률의 목적과 시책을 고려할 때, 헤이트스피치 억제법은 실효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문연주, 2017: 115). 그러나 동 법은 이에 근거하여 행정에서의 각종 대책 입안 및 시행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하고, 인터넷상의 혐오표현 동영상을 삭제 조치하는 등의 행정집행에 있어서도 중요 근거규정이 된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입법으로 평가되기도 한다(배상균, 2017: 88; 한위수, 2019: 169).

7) 소결

혐오표현에 대한 세계 각국의 법적 대응을 살펴보면,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한다. 공통점은 혐오표현 자체가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 생명을 경시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든지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각 국에서는 나라마다의 문화, 역사, 사회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내용과 방법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각국의 혐오표현 대응 관련법을 요약해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Ⅲ-2 각국의 혐오표현 대응 관련법의 주요 내용

국가	대표적인 법	주요 내용 및 특징
영국	공공질서법, 평등법 등	- 범죄 및 무질서 관련 법률에서는 인종적 및 종교적 범죄를 가중범죄로 규정 - 공공질서법에서는 인종혐오를 피부색, 인종, 국적, 출신 국가나 민족에 대한 것으로 규정하고, 이후 인종혐오와 더불어 종교, 성적 취향까지 혐오표현 규제 대상으로 확장함 - 공공질서법에서는 인종혐오 · 종교혐오 · 성적 지향 혐오를 선동하는 발언, 출판, 연극, 방송 등의 혐오표현을 한 자를 형사처벌하고 있고, 심지어 그러한 내용의 문서나 녹음 · 녹화물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까지도 형사처벌 - 평등법은 차별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로 괴롭힘과 차별 조항을 통해 혐오표현을 규제. 여기에서 보호되는 특성은 연령, 장애, 성전환, 혼인과 민사동반자관계, 인종, 종교 또는 신앙, 성별, 성적지향임
독일	형법, 네트워크집행법, 일반평등대우법	- 형법에서는 혐오표현 자체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 - 형법에서는 나치에 의한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나치폭력지배를 찬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 형법상 모욕 또는 명예훼손죄가 넓은 의미의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데 적용 - 네트워크집행법은 인터넷상 혐오표현을 규제하기 위한 법으로 형법에 규정된 국민선동과 관련된 정보를 불법 콘텐츠로 규정함

국가	대표적인 법	주요 내용 및 특징
		- 일반평등대우법에서는 인종, 민족출신, 성, 종교 또는 신념, 장애, 나이, 성적 취향을 이유로 차별을 예방 또는 금지하는 것이 목적임
프랑스	언론법, 형법 등	- 언론법에서는 선동죄, 차별선동죄 등, 홀로코스트부인죄를 범죄선동에 관한 것으로 규정 - 언론법에서는 민족, 국가, 인종 또는 종교, 성,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 장애와 관련하여 차별, 증오, 또는 폭력을 유발하는 행위를 처벌 - 형법에서는 피해자가 민족, 국적, 인종이나 종교 집단에 실제로 또는 추정되는 구성원이거나 구성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범행을 한 경우' 중범죄나 경범죄에 처벌이 가중된다고 규정 - 2020년 5월13일 인터넷 혐오표현 금지법 제정
미국	수정헌법, 혐외범죄통계법, 혐오범죄예방법	- 수정헌법에서는 명문상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한계를 명시하지 않고 절대적인 자유로 규정하고 있고, 혐오범죄에 대해서는 형법의 연방차원의 보호할 활동과 혐오범죄행위 조항에서 인종·피부색·종교·민족출신 등으로 보호할 활동을 방해하거나 차별사유와 관련된 범죄를 규제하고 있음 - 혐오범죄예방법에서는 편견에 기반 한 범죄 혹은 보복성 범죄를 유발하며 피해자와 사회공동체에 정서적 피해와 불안감을 일으킨다고 보기 때문에 가중처벌지향적인 성격을 띠고 있음 - 혐오범죄통계법에서는 연방수사국(FBI)은 통계 수집 목적을 위하여 혐오범죄를 '인종, 종교, 장애, 성적 취향, 민족성, 성별, 성별 인식에 대한 범죄자의 편견의 전부 또는 일부로 유발된 사람 또는 재산에 대한 범죄'라고 정의하며 혐오 그 자체는 범죄가 아니라고 명시
캐나다	인권법, 형법 등	- 인권법에서 인종, 국적 또는 민족적 출신, 피부색, 종교, 연령, 성(임신, 출산 포함), 성적지향, 결혼상태, 가족상태, 장애 및 사면 받은 유죄판결에 의해 식별가능한 집단에 대해 적대감이나 경멸을 표출할 우려가 있는 사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회가 규정한 전기통신 시설을 이용하여 전화상으로 반복하여 전달하거나 또는 전달되도록 하는 것을 차별행위로 규정 - 형법에서는 형사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적대적인 표현자체가 아니라 적대감을 조장, 선동, 촉진하는 표현을 규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동죄의 형태를 띠고 있음

국가	대표적인 법	주요 내용 및 특징
일본	오사카시 헤이트스피치 대처에 관한 조례, 헤이트스피치 억제법	- 오사카시 헤이트스피치 대처에 관한 조례는 일본 전체가 아니라 오사카시에만 해당한다는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일본 최초의 혐오표현에 대한 대처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헤이트스피치 억제법은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정의, 일본 국민과 국가의 책무, 동 법의 기본 시책인 헤이트스피치 피해상담체제의 정비, 교육의 충실, 계몽활동 등이 제시되어 있으나 표현의 자유 등과 중첩되는 부분에 대한 염려로 인하여 벌칙 규정을 두지 못한 채, 일종의 훈시적·선언적 규정만을 담은 법이 됨

* 출처 : 각주의 자료들을 재구성[36]

36) 영국의 경우, legislation.gov.uk. 범죄 및 무질서 관련 법률,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1998/37/part/II/crossheading/raciallyaggravated-offences-england-and-wales 에서 2020년 8월 10일 인출
legislation.gov.uk. 공공질서법, http://www.legislation.gov.uk/ukpga/1986/64 에서 2020년 8월 10일 인출
legislation.gov.uk. 평등법,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10/15/contents 에서 2020년 8월 17일 인출
독일의 경우, 세계법령정보센터. 독일 형법,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AST_SEQ=69&CTS_SEQ=17831&ETC=0& 에서 2020년 8월 10일 인출
최종선(2018: 46), file:///C:/Users/cam15/Downloads/%EA%B0%81%EA%B5%AD%EC%9D%98%EC%B0%A8%EB%B3%84%EA%B8%88%EC%A7%80%EB%B2%95%20%EC%A0%9C1%EA%B6%8C(%EB%8F%85%EC%9D%BC,EU,%EC%BA%90%EB%82%98%EB%8B%A4).pdf(2020.12.10. 방문), 프랑스의 경우, 이승현(2019: 72, 74), 김지혜 외(2019: 261), 미국의 경우, 김지혜 외(2019: 254), 김성희 외(2019: 12), 이승현(2016: 91). 신선미(2017: 120), 캐나다의 경우, 김지혜 외(2019: 215), 이승현(2016: 68, 72), 일본의 경우, 배상균(2017: 74-75) 한위수(2019: 169).

3. 외국의 교육적 대응방안

혐오표현 대응방안 중, 교육은 세계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다. 유엔에서는 2019년 국제 교육의 날을 맞아 혐오표현과 싸우는데 있어서 교육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유엔은 교육이 인간의 건강, 평등, 세계시민의식 뿐만 아니라 혐오표현에 대항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하다고 하였다.[37] Maltese Safer Internet Centre (SIC)에서도 혐오표현과 싸우는데 있어서 교육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38] 또한, 혐오의 피라미드 단계별 규제 및 대응방안을 보면, 교육은 피라미드의 가장 아래 단계인 편견 단계의 대응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홍성수, 2020: 138). 이것은 혐오 피라미드의 위로 갈수록 교육만으로 개인의 변화가 어려울 수 있지만 아래로 갈수록 교육이나 의식개선 등으로 혐오표현이 예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혐오표현 대응에 있어서 교육의 역할은 예방뿐만 아니라 편견에 대한 좋은 대책이 될 수 있다. 편견에 대한 의식개선을 통하여 그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혐오표현, 차별, 증오범죄, 집단학살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교육의 역할은 크다고 할 수 있다.

37) Arroio. A(2019), Education as a human right against hate speech and intolerance. http://www.scientiasocialis.lt/pec/node/files/pdf/vol77/314-316 Arroio_Vol.77-3_PEC.pdf 에서 2020년 8월 10일 인출

38) Maltese Safer Internet Centre. Education and hate speech, https://www.betterinternetforkids.eu/web/portal/practice/awareness/detail?articleId=2596586에서 2020년 8월 17일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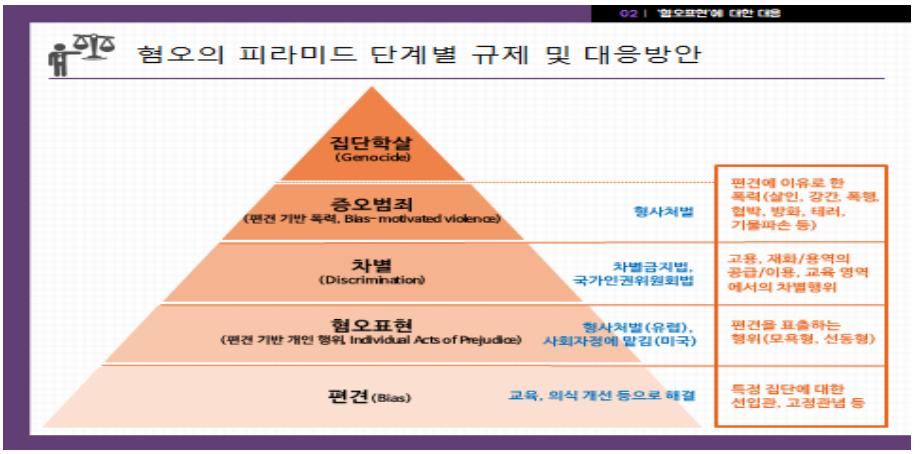

* 출처 : 홍성수, 2020: 138.

한편, 혐오표현 대응교육은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다. 교육의 목적이 혐오표현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인지(혐오표현 대응교육, hate speech education), 아니면 인성교육, 시민교육, 인권교육, 미디어교육 등에서 그 일부로 다루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이루어지는지(통합사회, 국어 등) 아니면 학교 이외에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진행되는지에 따라서도 다르다. 교육 방법의 경우, 문화예술을 활용할 수도 있고 토론을 통할 수도 있다.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을 모두 고려한 쌍방향 교육이 필요하다.[39] 또한 실질적인 내용과 관련해서 볼 때, 아직 많은 논의가 있거나 동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고려해볼 수 있는 내용이 있다. 이혜정(2019: 10)은 혐오표현 예방교육에 있어서 평등한 학급 운영과 소수자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는 수업 재구성, 학교 민주주의 실현, 성평등교육 실시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유엔에

39) 청소년 성소수자 인권침해에 대처하는 '무지개파워 나를 지키는 워크북,'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는 인권침해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에서 자신을 지키는 법을 담고 있음

서는 유엔의 원칙, 가치, 프로그램을 위협하는 혐오표현 예방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유엔 혐오표현 전략과 행동계획(UNITED NATIONS STRATEGY AND PLAN OF ACTION ON HATE SPEECH)을 마련하였다.[40] 여기에는 혐오표현 모니터링 및 분석하기, 혐오표현 피해자 지지하기 등 13가지 핵심전략이 제시되어 있다. 이것은 혐오표현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과 행동계획이지만 교육에 이 전략들을 활용한다면 교육의 내용이 될 수도 있다.

혐오표현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최근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교육도 많지 않은 실정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혐오표현과 관련된 교육은 인권교육, 시민교육, 인성교육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 왔고 최근에는 미디어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실제로 유럽회의(Council of Europe)에서는 2017년 인권교육과 이야기를 통한 혐오표현 대항이라는 세미나를 실시했는데 이것은 실제로 혐오표현 교육이 인권교육에서 다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41].

최근에는 혐오표현이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특히 온라인 혐오표현(online hate speech)이라는 용어가 독립적으로 존재할 만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COVID-19로 인하여 청소년들은 온라인을 활용할 시간과 기회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온라인 혐오표현 대응교육이 중요하다. 유엔에서도 2020년 6월5일 "COVID-19와 같은 전세계유행병 시대에 허위정보와 혐오표현: 어떻게 교육과 디지털시민성이 이를 도울 것인가?"라는 주제로 웹세미나를 열었다.[42] 이것은 과거에는 인권교육, 시민교육 등에서 혐오표현 교육을 다루던 것에서

40) United Nations. Strategy and plan of Action and hate speech, https://www.un.org/en/genocideprevention/documents/UN%20Strategy%20and%20Plan%20of%20Action%20on%20Hate%20Speech%2018%20June%20SYNOPSIS.pdf에서 2020년 8월 10일 인출

41) Council of Europe. No hate speech youth campaign, https://www.coe.int/en/web/no-hate-campaign/compendium/-/asset_publisher/PyHuON7WYezs/content/report-on-training-seminar-countering-hate-speech-through-human-rights-education-and-narratives-?inheritRedirect=false 에서 2020년 8월 10일 인출

42) UNESDOC Digital Library. COVID-19 education response webinar, The COVID-19 pandemic of disinformation and hate speech: how can education and digital citizenship help, syntesis report,

이제는 미디어교육이 혐오표현 관련 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43]. 우리나라의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2015년부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일환으로 혐오표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유네스코[44]나 유럽의회[45]에서도 온라인 혐오표현에 주목하고 있다. 국외의 혐오표현 교육 중,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Against Hate Speech[46]

"BRICKS - Building Respect on the Internet by Combatting Hate Speech" 는 미디어 교육과 웹사용자 및 콘텐트 생산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이민자와 소수자에 대한 온라인 혐오표현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유럽의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2014년 이탈리아의 NGO인 COPSE와 Zaffiria Centre의 경험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그 후 독일, 체코, 스페인, 벨기에로 확장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유럽연합의 '기본권리와 시민성(Fundamental Rights and Citizenship)' 프로그램에 의해 지원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사용자뿐만 아니라 디지털 정보에 의한 도전에 직면한 미디어 전문가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혐오표현은 복잡한 현상으로 청소년은 여기에 더 취약하다. 그것은 이들이 소셜

---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73789?posInSet=1&queryId=N-99258bb2-6a74-4879-9570-5f2afc46a934 에서 2020년 8월 10일 인출

43) FORME. 전체 수업지도안, https://www.forme.or.kr/teach/all.cs?school=&subject=&searchKeyword=%ED%98%90%EC%98%A4&searchCondition=&searchEndDt=&grade=&year=&searchStartDt=&pageIndex=1 에서 2020년 8월 17일 인출

44) UNESDOC Digital Library. Countering online hate speech,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233231에서 2020년 8월 10일 인출

45) Titley, G., Keen, E., & Foldi, L. (2014). Starting points for combating hate speech online.*Council of Europe*. https://rm.coe.int/starting-points-for-combating-hate-speech-online/16809c85ea 에서 2020년 8월 10일 인출

46) BRICKS. Media education and hate speech workbook, http://www.silencehate.eu/wp-content/uploads/2019/10/BricksModulePresentation-2018_EN.pdf 에서 2020년 8월 17일 인출.

네트워크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고,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깨달을 기회가 적기 때문이다. 학교는 또래나 더 넓은 세계에서의 관계가 청소년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현상에 대비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 프로젝트는 미디어 교육, 문화 간 교육, 참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혐오표현을 주제로 한 수업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해 준다. 이 수업은 3단계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2시간씩 최소한 5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모든 수업은 3개 일반적인 세션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Ⅲ-3 BRICKS의 수업구성

세션	내용
도입(20분)	집단이 긴장을 풀고 참가자들 사이에 라포를 형성하도록 몇 가지 아이스브레이킹을 계획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학급친구들에 관해 가질 수 있는 편견을 없애도록 한다. 각각의 세션을 시작할 때, 전의 수업내용을 기억할 수 있게 수업내용을 간단하게 다룬다. 지난번에 마무리하지 않았던 질문이나 활동, 학생이 완성하도록 한 과제, 혹은 학생이 전에 이야기한 것을 계속할 수도 있다(다음을 위하여 학생들이 토론한 것을 자료화하는 것은 중요하다).
전개(70분)	이 때는 제시된 자료를 수정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한다. 이 단계에서는 각 참여자의 개인적 반응이 필요하다. 학생들은 토론, 반영, 평가 아이디어를 브레인스토밍하기 위하여 그룹, 짝, 혹은 혼자서 작업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의 목적은 개인과 협동의 임파워먼트 과정을 만드는 것이다.
마무리(30분)	이 세션은 집단이 콘텐츠, 과정, 역동에 초점을 맞추면서 무엇을 어떻게 이루었는지를 조명하는 경험을 개관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한다.

* 출처 : BRICKS. Hate speech in the lives of teenagers, http://www.silencehate.eu/wp-content/uploads/2019/10/BricksModulePresentation-2018_EN.pdf 에서 2020년 8월 17일 인출

BRICKS에서 제시하는 혐오표현에 대한 13개 교육 프로그램의 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표 Ⅲ-4 BRICKS의 13개 교육 프로그램

Thinking about social media: A taster to get us thinking about our own relationship with the media
Understanding the issue of points ofview
Hate speech in the students' experience
Analysing hate speech in media communication
What are we talking about?
My point of view
Hate: A familiar face. Analysis of hate speech
Hate speech in the lives of teenagers
TV advert against hate speech. Who do you hate?
Icebreaker games
Bafa Bafa role-playing game
Italianometer
Abigail's story

* 출처: BRICKS. Hate speech in the lives of teenagers, http://www.silencehate.eu/wp-content/uploads/2019/10/BricksModulePresentation-2018_EN.pdf 에서 2020년 8월 17일 인출

BRICKS의 13개 혐오표현 관련 교육 중 하나인 "Hate speech in the lives of teenagers"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Ⅲ-5 Hate speech in the lives of teenagers

구분	내용
개요	이 학습에서 강조하는 주제는 다음과 같다. - 혐오표현에 관한 청소년의 직접적인 표현 - 이에 대항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활동은 청소년이 처음 혐오표현을 들었거나 경험했던 때의 이야기를 할 기회를 주고(익명으로),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에 대한 생각, 유사한 상

구분	내용
	황에 직면할 때 어떤 잠재적인 해결책이 있는가를 평가할 수 있게 한다. 이 때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민감성을 알려줌으로써 교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린다. 학생들은 웃거나 조롱하지 않도록 한다. 자신이 감시당한다고 느끼지 않도록 하고, 모든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다른 생각, 인식, 의견을 존중하도록 한다.
목적	1. 혐오표현의 결과 생각하기 2. 현실 및 가상 세계의 관계에 대한 지각 향상시키기: 온라인에서 말한 것이 현실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그 반대도 일어난다는 것을 알기
지도방향	- 학생들에게 혐오표현을 포함하는 현실세계의 상황과 이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생각하게 하기. 학생들은 이러한 내용은 카드에 쓰도록 한다. - 관찰 후, 집단 리더의 임무는 혐오표현에 대항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어지는 토론을 촉진하는 것이다. 어떤 방법은 다른 방법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안다.
방법	협동학습이 수업방법이다. 학생들은 공통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함께 수업한다. 참여자들은 그들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것을 집단과 공유한다. 이것은 합리적 및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게 해주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게 하고, 의미있는 관계를 형성하게 한다.
학생참여 전략	이 활동은 참여의지가 있고, 그들의 경험을 그룹에 이야기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매력적이다. 그러나 이것이 불편한 학생에게는 학급친구와 관계가 민감한 상황에 있는 경우, 이 활동은 익명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누구도 개인의 경험을 드러낼 의무는 없다.
자료	3가지 색지, 포스터, 펜/마커
선행활동	이 활동은 보호되고 판단되지 않는 분위기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학생들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아는 친밀한 집단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활동구조(Activity Structure)

이 활동은 질문으로 시작한다: “온라인에서 혐오표현을 접한 적이 있는가?” 그룹 리더는 참여자가 아래의 내용을 3가지 색지 카드에 익명으로 쓰도록 한다.
-그들이 들었거나 관련된 상황
-어떻게 대응했나?
-지금이라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색지들을 접어서 박스에 넣는다. 그룹 리더는 이것을 3개의 칠판에 붙인다. 첫 번째는 학생들이 적은 모든 상황을 보여주고, 두 번째는 그들이 어떻게 대응했는가, 세 번째는 지금은 어떻게

구분	내용
대응할 것인가를 보여준다. 학생들은 첫 번째 포스터에서 가장 눈에 띄는 상황에 “좋아요” 스티커를 붙인다. 3개의 포스터와 학생들의 선호도를 관찰한 후, 학급에서는 결과들을 생각해본다. 그룹 리더는 학생들이 혐오표현과 어떻게 적극적으로 싸웠는지 지각하도록 하기 위하여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반응을 하지 않고 이러한 대화를 지지한다. 이것은 단 하나의 해결책이 아니라 여러 가능한 해결책 중 하나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공식적으로 상담하거나, 법을 알거나, 사이버범죄에 책임이 있는 경찰과 연락할 수 있는 것을 알거나, 친구들과 그들의 경험을 공유하거나, 성인에게 털어놓거나, 그들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블로그를 만드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모든 이야기를 읽는 것은 그룹이 다루기 힘든 경험을 공유하고 현실과 가상 세계의 연결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대부분의 이야기를 보면,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은 개인의 현실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 출처 : BRICKS. Hate speech in the lives of teenagers, http://www.silencehate.eu/wp-content/uploads/2019/10/BricksModulePresentation-2018_EN.pdf 에서 2020년 8월 17일 인출

2) Common Sense[47)]

Common Sense는 2003년부터 급변하는 디지털세계에서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고자 설립된 비영리단체이다. 이곳에서 하는 일 중, 하나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디지털 시민교육이다. 디지털 시민교육 프로그램 중, 일부 회기가 혐오표현 예방프로그램이다. 그 중에서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The Consequences of Online Hate Speech”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GRADE 12

The Consequences of Online Hate Speech

What should the consequences for online hate speech be?[48)]

47) Common sense education. Digital citizenship curriculum, https://www.commonsense.org/education/digital-citizenship/curriculum 에서 2020. 8. 17 인출

48) Common sense education. The consequence of online hate speech, https://www.commonsense.org/education/digital-citizenship/lesson/the-consequences-o

일부 정부에서는 혐오표현을 규제하지 않기도 하지만, 법은 사적 기관과 사립 대학이 그들의 영역 안에서 어떻게 혐오표현을 다루어야 할 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상식교육(Common Sense Education)의 하나인 The Consequences of Online Hate Speech에서는 학생들이 혐오표현이 표현의 자유인지 생각하고, 온라인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찬반 이유를 확인하고, 온라인 혐오표현의 잠재적인 결과를 생각하기 위해 Take a Stand thinking routine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수업은 50분 동안 진행된다.

주요 단어:

표현의 자유(freedom of speech): 제지당하지 않거나 벌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권리

혐오표현(hate speech): 인종, 종교, 국적, 능력, 나이, 성, 혹은 성적 취향에 근거해 개인에 관해 잔인하고 적대적이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

표 Ⅲ-6 수업계획안(Lesson Plan)

고민해보기: 혐오를 표현할 자유(Free to Hate)? 15분
1. 질문하기: 여러분은 혐오표현이라는 말이 익숙할 수 있습니다. 혐오표현은 무슨 뜻일까요? 학생들이 이에 관해 의견을 공유하게 한다. 학생들의 반응 중, 유사점과 차이점을 강조한다. 혐오표현을 인종, 종교, 국적, 능력, 나이, 성, 혹은 성적 취향에 근거해 개인에 관해 잔인하고 적대적이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으로 정의한다.(슬라이드 4)
2. 말하기: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많은 국가에서는 혐오표현을 규제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제지당하지 않거나 벌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권리다. (슬라이드 5) 그러나 최근 온라인 혐오에 관해 널리 알려진 스토리 때문에 혐오표현이 규제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토론이 재개되고 있다.
3. 알려주기: 온라인 혐오표현에 관한 라디오쇼를 들을 것이라고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들으면서

f-online-hate-speech 에서 2020년 8월 17일 인출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에 대한 주장을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한다. 다음의 라디오쇼를 들려준다. NPR's "Free Speech or Hate Speech: When Does Online Hate Speech Become a Real Threat?" (4:27). (슬라이드 6)

4. 질문하기: 라디오쇼에 근거해서 볼 때, 사람들은 왜 온라인 혐오표현 규제에 대해 찬성하는가? 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반대하는가?
   학생들을 그룹으로 나누어서 칠판이나 슬라이드 7에 이유를 적게 한다. 이유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다.

규제 찬성	규제 반대
■ 혐오표현은 다른 사람이 위협을 받거나 화나게 할 수 있다. ■ 혐오표현은 급진적이고 혐오스러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면 그들을 폭력으로 이끌 수 있다. ■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사람들이 혐오스러운 집단에 접근하는 것을 감소시킨다.	■ 혐오표현은 항상 정의하기 쉬운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직접적인 위협"은 무엇인가?) ■ 혐오스러운 의견에 대해 "그림자 안으로" 밀어넣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 규제는 수정헌법의 표현의 자유를 위반하는 것이다. ■ 사람들은 혐오표현의 개념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5. 설명하기: 온라인 혐오표현을 규정하는 하나의 정답은 없기 때문에 소셜 미디어 앱과 사립대학과 같은 사적인 기관은 어떻게 여기에 대응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들만의 규칙을 만들고 잠재적인 결과가 무엇이 될지에 대해서도 파악해야 한다.

탐색하기: 태도 정하기(Take a Stand) 20분

1. 말하기: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한 보편적인 규칙이 없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혐오스러운 콘텐츠를 퍼뜨리는 사람들을 그들의 행위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

2. 학생들에게 Admissions Dilemma Student Handout을 나누어 주고, 온라인 혐오표현의 잠재적 결과를 생각하기 위해 Take a Stand의 단계들을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설명한다. Take a Stand는 지역사회와 시민생활에 관한 딜레마에 관한 시각을 탐색하는 사고의 틀이다.

3. 학생들이 핸드아웃의 파트1에 나오는 딜레마를 읽도록 한다. 그리고 Take a Stand의 단계들을 보여주고(슬라이드 8), 파트2의 단계들에 관해 학급토의를 하도록 촉진시킨다. 학생들이 이해하면 핸드아웃에 노트를 하게 한다.

4. 파트2까지 한 다음, 이 활동의 목적은 정답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오히려 목적은 우리의 반응을 잠시 늦추고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딜레마에 대해 가진 우리의 태도를 다시 생각해보는 것이다.

반영하기: 다른 고려사항	15분

1. 학생들을 4명씩 그룹짓게 하고 핸드아웃의 파트3에 있는 질문 중 하나에 대해 토의하게 한다. 여러분은 각 그룹에 질문을 지정하거나 학생들이 선택하게 할 수 있다.

* 출처 : Common Sense. The consequences of online hate speech, https://www.commonsense.org/education/digital-citizenship/lesson/the-consequences-of-online-hate-speech 에서 2020년 8월 17일 인출

3) Generation Global

Generation Global은 청소년들이 미래를 만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이들은 변화와 다양성의 세계에서 그것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Generation Global은 청소년에게 평화로운 방법으로 차이를 탐색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제공하여 이들을 준비시키고자 한다(https://generation.global/).

Generation Global에서는 2017년 인권에 근거한 5개의 주제로 수업모듈을 제작하였다. 5개의 주제는 인권의 개념(What are human rights?), 인권, 신념, 문화(Human rights, faith & culture), 혐오표현과 인권(Hate speech & Human rights), 혐오표현과 표현의 자유(Hate speech & Freedom of speech), 실제와 행동에 대한 대화(Dialogue in practice & Action)이다. 이 중에서 혐오표현과 인권 수업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49]

이 수업의 목적은 혐오표현이 무엇인지 탐색해보고, 학생들은 지역사회에서 혐오표현의 예가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보고, 혐오표현의 영향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이 수업에는 다음과 같은 4개의 활동과 5개의 워크시트가 있다.

- 활동: 혐오표현의 개념, 탐색 1, 탐색 2, 토론

49) 이 부분은 다음의 내용에서 발췌하였음. (Generation Global. Action Against Hate Speech. https://generation.global/assets/resources/hate-speech-english.pdf 에서 2020년 8월 17일 인출). 워크시트 등의 구체적인 자료내용은 24-34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람.

• 워크시트:

3.1 혐오표현은 무엇인가?

3.2 extremism table mat prompt

3.3 사례연구: 미얀마

3.4 ISIS

3.5 혐오표현 지도만들기

표 Ⅲ-7 교실활동(Classroom Activities)

수업전개	내용
시작활동: 혐오표현의 개념	다음에서 온 개념을 인용하여 사용하기 예) 유엔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1976), 유럽회의의 혐오표현에 대한 제안(1997), 미국 변호사협회 등 자료 워크시트 3.1: 혐오표현은 무엇인가?
	1단계: 어린 학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혐오표현의 정의를 소개할 수 있다. '인종, 종교, 국적, 장애, 연령, 성별 혹은 성적 취향에 근거해서 어떤 사람에게 잔인하거나 적대적이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
	2단계: 학생들은 그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중요 단어의 정의를 제시한다.
	3단계: 혐오표현을 정의하기 위하여: 만일 이것이 혐오표현이라면... 학생들에게 '사랑표현(love speech)'을 정의하게 한다. 이 정의에는 어떤 단어들이 포함되어야 하는가?
주활동 1: 탐색 1	목적: 특별히 이슬람교와 불교를 생각해보자. 학생들은 ISIS와 로힝가 사례를 읽도록 한다(그리고 능력이 있거나 나이가 많은 학생은 종교 & 지정학 센터의 자료를 참고하도록 한다). 자료: 3.2 extremism table mat prompts 3.3 사례연구: 미얀마 3.4 ISIS
	1단계: 플레이스 매트를 사용하여 학생들을 5개 그룹으로 나눈다.
	2단계: 각 테이블에 프린트한 슬라이드 하나를 놓는다(혹은 교과서를 포스터 크기로 복사한다).
	3단계: 학생들은 테이블 위에 놓인 질문에 대해 돌아가면서 쓰거나 토론한다.

수업전개	내용
	4단계: 5-7분 후에 각 그룹은 다른 테이블로 옮겨가서 다른 질문을 보고, 이전 단계와 마찬가지로 질문에 대해 쓰거나 토론한다.
	5단계: 이 활동을 마무리할 때, 포스터들을 벽에 붙이고 함께 토론을 한다.
주활동 2: 탐색 2	목적: 우리는 어디서 혐오표현을 발견하게 되는가? 자료 3.5 혐오표현 지도만들기 활동 1: 'Listen to Me'(The Essentials of Dialogue, Lesson, page 9) Online Resource: Hate Speech and Online Gaming http://www.nbcnews.com/id/36572021/ns/technology_and_sci-ence-games/#.XxfGYigzaUm
	1단계: 학생들은 혐오표현이 일어난 곳을 묻기 위해 혼자, 둘 혹은 소집단으로 활동할 수 있다.
	2단계: 학생들을 워크시트를 완성한다.
	3단계: 시작할 때 예시로 온라인 게임에 관한 기사를 활용할 수 있다.
	4단계: 활동 후, 학생들은 'Listen to Me' 활동을 활용하여 서로 자신이 발견한 것을 공유할 수 있다.
	5단계: 3.5 혐오표현 지도만들기 워크시트를 사용해서 어디에서 혐오표현이 일어나는지 알기 위해 사용한다.
	확장(extension): 특히 게이머인 학생들을 위하여 Online Resource: Hate Speech and Online Gaming을 사용한다.
주활동 3: 토론	목적: 토론은 혐오표현이 개인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춘다.
	소집단 혹은 전체 학급 토론에서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듣는 것과 깊은 대화기술을 연습해야 한다(Essentials of Dialogue의'Listen To Me' 9페이지나 'Sharing Our Iedas' 11페이지의 활동을 사용한다). 이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의 URI에 있다. https://www.uri.org/who-we-are/cooperation-circle/talking-back-hate-standing-peace-resource-cc

* 출처: Generation Global. Hate speech & Human rights, https://generation.global/assets/resources/hate-speech-english.pdf 에서 2020년 8월 17일 인출

4) No place for hate[50)]

No place for hate는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ADL(Anti-Defamation League)의 대표적인 혐오표현 교육이다. ADL은 1913년 미국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차별이나 위협의 대상이 되지 않고 평등하고 기회 공유의 가치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꿈꾸면서 설립되었다. 이 프로그램에는 미국의 1,600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다. No place for hate는 모든 학생이 성장할 수 있게 학교 분위기를 향상시키고 유지하도록 하는 모든 이해당사자들을 돕기 위한 자기 주도적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학교로 지정되기 위해 학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완수해야 한다.

No Place for Hate는 편견, 학교폭력, 혐오와 싸우는 틀을 조직하는 유치원 이전부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분위기 향상 계획이다. 이것은 긍정적이고 평등한 분위기를 만들고 유지하는 장기적인 해결책으로 이끈다. 요구되는 프로그램의 구성요소를 마치면, 학교는 No Place for Hate 배너를 받게 된다.

- 등록하기
- No place for hate 위원회 구성
- 맹세하기
- 3개 반편견이나 학교폭력예방활동 하기
- 서류 제출하기

ADL의 프로그램 중, 하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 수업은 정규수업이 아니라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반편견교육이다. 수업 제목은 혐오의 피라미드(The Pyramid of Hate)이다. 이것은 편견이 있는 태도를 점검하

50) ADL. No place for hate, https://www.adl.org/who-we-are/our-organization/signature-programs/no-place-for-hate (2020년 8월 17일 인출)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음

지 않으면 어떻게 그것이 혐오로 격앙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게 한다. 이 수업은 편견이라는 씨앗이 한번 심어지면, 이것으로부터 차별이나 폭력행동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는지를 보여준다. 이 수업은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며 교육자들이 ADL의 핵심적인 주제나 활동에 대해 배울 수 있게 한다. 수업목표는 혐오의 피라미드를 사용해서 편견과 혐오가 어떻게 발전하는지 탐색하고, 학생들에게 편견과 혐오에 대항하는 법을 알려주고, 피해자나 타겟이 되는 사람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수업시간은 20분이다. 다음은 온라인 수업 중, 일부를 캡쳐하여 제시한 것이다[51].

* 출처 : ADL. No place for hate, https://www.adl.org/sites/default/files/Understanding_the_Pyramid_of_Hate-Web/story_html5.html 에서 2020년 12월 10일 인출

51) ADL. Mini lesson: The pyramid of hate, https://www.adl.org/education/educator-resources/lesson-plans/mini-lesson-the-pyramid-of-hate 에서 2020년 8월 17일 인출

5) Facing online hate[52)53)54)]

MediaSmarts는 캐나다의 비영리단체로서 디지털과 미디어 리터러시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이곳의 미션은 아동과 청소년이 적극적이고 잘 아는 디지털시민으로서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 기술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Facing online hate는 인터넷이 어떻게 혐오를 유발하고 확산시키는지 급진화가 일어나는지, 어떻게 청소년이 전통적인 혐오 사이트와 혐오의 문화를 통해 온라인 혐오를 직면하는지 검토할 것이다. 이 자료는 청소년들이 온라인 혐오의 성격을 이해하고, 그들이 어떻게 타겟이 될 수 있고, 편견, 고정관념, 혐오를 온라인에서 직면했을 때, 어떻게 적절하게 대응하는지 돕기 위하여 청소년들이 비판적 사고를 키울 수 있는 전략을 제공한다. 이것은 52분 43초간 진행되는 ppt 프레젠테이션이다. 여기에는 강의노트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것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피피티 프리젠테이션 중, 몇 개의 피피티를 소개함으로써 Facing online hate를 이해하도록 하고자 한다.

52) MediaSmarts. Our mission & belief, https://mediasmarts.ca/about-us/our-mission-beliefs (2020년 8월 17일 인출)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음
53) MediaSmarts. Facing online hate, https://mediasmarts.ca/tutorial/facing-online-hate-tutorial (2020년 8월 17일 인출)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음
54) MediaSmarts. Diversity and media toolbox, https://mediasmarts.ca/sites/default/files/tutorials/facing-online-hate/html5.html (2020년 8월 17일 인출)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음

* 출처 : MediaSmarts. Facing online hate,
https://mediasmarts.ca/sites/default/files/tutorials/facing-online-hate/html5.html 에서 2020년 8월 17일 인출

6) 소결

세계 각국에서 이루어지는 혐오표현과 관련된 교육 중, 일부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첫째, 혐오표현 관련 교육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아직까지는 혐오표현 관련 교육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인성교육, 시민교육, 인권교육, 미디어교육의 일부로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혐오표현 관련 교육이 역사적으로 이들 교육보다 짧기 때문이기도 하고 아직 우리 사회에서 그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혐오표현 관련 교육이 다른 교육프로그램의 일부로 다루

어지다 보니 혐오표현 예방효과가 적고 관심도 적다.

혐오표현 관련 교육이 인권교육 등에서 부분적으로 다뤄지는 다른 이유는 이에 대한 접근이 다양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혐오표현 관련 교육은 인권의 측면에서 다룰 수도 있고 미디어나 시민성의 측면으로도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혐오표현 관련 교육에 대한 다양한 시각은 이것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 혐오표현 관련 교육의 내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혐오표현 관련 교육이 다른 교육프로그램의 일부로 다루어지기 때문인지 아니면 짧은 역사 등 다른 이유 때문이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현재 세계적으로 실시되는 혐오표현 관련 교육의 내용은 유사하고 내용이 많지 않다. 혐오표현 관련 교육에서는 주로 혐오나 혐오표현이 무엇인지, 그리고 혐오표현의 결과, 혐오표현에 대한 경험, 대처방법을 다루고 있다. 혐오표현 하나만 하더라도 여러 차시를 통하여 활동이 진행될 수 있지만 현재는 1차시 정도에 그치고 있다. 대처방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또한 교육방법도 다양하지 않다. 혐오표현 관련 교육은 그 내용이 청소년들에게 매력적인 주제가 아닐 가능성이 많다. 이러한 경우 교육방법의 다양화를 통하여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셋째, 온라인 혐오표현 관련 교육이 핵심이다. 과거와 달리 현재는 오프라인만큼 아니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을 통한 소통이 많아지고 중요해졌다. 이것은 긍정적인 측면이나 부정적인 측면 모두에게 통용된다. 청소년들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혐오표현을 더 많이 접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 19가 가져온 비대면 세상은 온라인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확실하게 해주었다. 코로나 19 위기 동안 혐오표현에 대한 허위정보가 판을 쳤다. 유네스코에서는 글로벌 시민교육이나 디지털 시민교육이 이에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웨비나를 열기도 하였다. 유럽연합에서도 사이버세계에서의 혐오표현과 청소년이 싸워야 한다고 하였다. 결국, 앞으로 혐오표현은 온라인에서 증가할 것이고 지금 세계 각국의 상황은 비대면의 사회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온라인 혐오표현 관련 교육이 중요하다.

넷째, 혐오표현 관련 교육은 편견부터 시작해야 한다. 혐오의 피라미드 단계별 규제 및 대응방안을 보면, 피라미드의 가장 아래 단계인 편견은 교육이나 의식개선 등으로 해결하도록 되어 있다. 그 이후의 단계에서는 교육보다는 다른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다. 이것은 교육을 통하여 편견을 없앨 수 있다면 그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혐오의 표현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적으로 보면, 법으로 규제하지 않고도 개인이 가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고도 교육이 개인의 편견을 없애준다면 가능한 일이다. 혐오표현 관련 교육의 시작은 편견부터여야 한다.

다섯째, 혐오표현은 학교폭력과 관련이 있다. 학교폭력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 피해자에 대한 혐오나 차별은 주요 원인이 된다.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ADL의 대표적인 혐오표현 교육인 No Place for Hate는 학교폭력, 편견, 혐오에 대항하기 위한 학교분위기 향상 프로그램이다. 이것은 혐오표현 관련 교육이 학교폭력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큰 틀에서 혐오표현 관련 교육을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4장 설문조사 결과분석

1. 조사방법
2. 설문조사 결과분석

4 설문조사 결과분석[55)]

1. 조사방법

1) 조사추진 및 표본설계[56)]

(1) 조사추진과정*

주요 조사 추진 내용	일정
표본설계 협의 및 확정	4월 17일 ~ 5월 14일
조사 대상학교 확정	7월 2일
설문지 내용 및 초안 작성	3월 - 5월 7일
IRB 설문지 심의	7월 9일(IRB승인)**
현장조사내용 관련 설문 용어 수정 협의	5월 8일 ~ 7월 15일 (청소년대상 적합용어 검토)
설문지 확정 후 면접원 설문지 검토	7월 14일 ~ 16일(조사윤리교육1차)
설문지 최종 확정	7월 17일
현장면접원 교육	7월 15 - 17일(조사윤리교육2차)
본조사 실사	7월 21일 ~ 9월 29일
대체표본(총 3차) 조사 실시	7월 28일 ~ 9월 18일
자료 클리닝 및 가중치 작업	10월 2일 - 10월 26일

* 조사추진과정은 연구진과 한국리서치가 공동 실시하였음.

** 본 조사는 2020년 7월 8일 본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승인(IRB 승인번호 : 202005-HR-고유-008) 통보를 받음.

55) 제4장은 김영한 선임연구위원과 임성택 교수가 집필하였음(조사추진 및 표본설계 제외).
56) 조사추진 및 표본설계는 강현철 교수(호서대학교)가 집필한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함.

(2) 표본설계

가. 모집단

본 조사의 모집단은 조사시점 기준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3학년의 재학생이다.

2020년 교육통계를 기준으로 전체 조사대상 학생 수는 4,063,251명이며 각 학교급별 학생 수는 초등학교 1,357,865명(33.4%), 중학교 1,294,359명(31.9%), 고등학교 1,411,027명(34.7%)이다〈표 1, 표2 참조〉.

고등학교의 경우 고교유형과 학제를 기준으로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고등학교의 유형 구분은 다음과 같다.

○ 유형 1(일반고): 일반고 중 일반, 종합고등학교

○ 유형 2(자율고): 자율고 중 일반고등학교

○ 유형 3(특성화고): 가사, 공업, 농림업, 대안, 상업, 수산, 실업, 체육, 해양고등학교, 특성화고 중 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 중 체육, 예술고등학교

○ 유형 4(특수목적고): 특수목적고 중 과학, 국제, 외국어고등학교

표 Ⅳ-1 초등학교, 중학교 지역×학년별 학생 수, 학교 수

구분	학생 수						학교 수					
	초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66,205	70,456	74,410	68,565	66,073	72,775	600	600	600	384	384	385
경기	121,141	126,078	131,649	119,544	112,503	120,985	1,274	1,272	1,275	629	629	629
인천	25,368	26,212	27,898	24,902	23,934	25,622	249	249	250	135	134	135
강원	12,055	12,379	13,437	12,186	12,314	13,201	337	335	349	160	161	162
충북	13,699	14,139	14,958	13,479	13,130	14,230	255	257	257	126	126	126
충남	19,377	19,962	20,914	18,885	17,962	19,148	407	408	406	186	186	185
대전	12,916	13,739	14,714	13,387	13,000	14,345	148	148	148	88	88	88
세종	4,472	4,564	4,366	4,057	3,561	3,584	48	48	48	24	24	24
경북	20,604	21,391	22,487	20,267	19,945	21,123	442	448	458	262	259	260
경남	30,500	31,938	33,486	29,600	28,468	30,566	497	494	500	263	261	260
부산	23,968	25,243	26,431	24,093	23,592	25,653	304	304	304	170	170	172
대구	19,658	20,748	22,310	20,279	20,352	21,908	229	229	229	125	125	123
울산	10,812	11,054	11,692	10,378	9,943	10,614	119	118	119	63	63	63
전북	15,450	16,153	17,278	15,818	15,852	16,978	399	406	411	207	208	209
전남	14,966	15,488	16,461	15,099	14,597	15,895	415	421	425	245	245	246
광주	14,068	14,588	15,878	14,243	13,734	15,091	155	155	155	90	90	90
제주	6,493	6,565	7,047	6,400	6,154	6,345	113	113	112	45	45	45
합계	431,752	450,697	475,416	431,182	415,114	448,063	5,991	6,005	6,046	3,202	3,198	3,202

표 Ⅳ-2 고등학교 지역×학년별 학생 수, 학교 수

구분	학생 수											
	유형 1(일반고)			유형 2(자율고)			유형 3(특성화고)			유형 4(특수목적고)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48,773	46,560	53,623	10,950	11,177	11,999	16,239	15,342	16,409	1,900	1,908	1,809
경기	98,834	92,897	104,579	3,506	3,348	3,624	16,492	16,214	17,422	2,472	2,371	2,409
인천	17,706	16,640	18,948	1,904	1,685	1,749	5,776	5,497	6,215	787	772	722
강원	10,703	10,742	12,063	156	156	146	2,676	2,628	2,780	182	173	165
충북	8,463	8,372	9,771	1,353	1,280	1,459	4,119	4,137	4,401	242	243	213
충남	13,547	12,995	14,647	1,756	1,715	1,807	4,360	4,183	4,796	215	202	210
대전	9,293	8,693	9,880	2,402	2,286	2,545	2,682	2,741	3,136	425	416	396
세종	2,924	2,475	2,345	209	208	209	189	197	135	203	194	187
경북	15,343	14,886	17,244	2,259	2,265	2,491	5,497	5,100	5,578	222	211	176
경남	23,452	22,672	26,036	2,177	2,228	2,436	4,433	4,297	4,658	512	507	441
부산	16,238	15,761	18,305	2,668	2,631	3,096	6,958	6,411	7,302	962	932	868
대구	13,625	13,140	15,612	3,926	3,840	4,372	5,258	4,874	5,377	323	320	278
울산	7,993	7,300	8,953	620	583	699	2,121	2,309	2,637	233	217	201
전북	13,531	13,448	14,967	820	840	953	3,589	3,674	4,317	226	216	188
전남	10,168	10,095	11,607	1,689	1,681	1,846	4,831	4,853	5,391	213	209	172
광주	12,205	11,552	13,455	690	709	781	3,047	2,993	3,329	93	97	97
제주	4,674	4,283	4,912	.	.	.	1,759	1,767	1,922	139	131	120
합계	327,472	312,511	356,947	37,085	36,632	40,212	90,026	87,217	95,805	9,349	9,119	8,652

구분	학교 수											
	유형 1(일반고)			유형 2(자율고)			유형 3(특성화고)			유형 4(특수목적고)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189	189	189	40	40	40	81	81	81	10	10	10
경기	367	366	364	13	13	13	82	82	82	13	13	13
인천	80	79	80	8	8	8	31	31	31	6	6	6
강원	85	85	85	1	1	1	28	28	28	2	2	2
충북	47	47	47	6	6	6	29	29	29	2	2	2
충남	68	68	68	9	9	9	38	38	38	2	2	2
대전	38	38	38	7	7	7	14	14	14	3	3	3
세종	13	12	12	1	1	1	2	2	1	2	2	2
경북	113	113	113	12	12	12	56	56	56	3	3	3
경남	137	137	137	10	10	10	39	39	39	4	4	4
부산	82	82	82	14	14	14	40	40	41	6	6	6
대구	52	52	52	16	16	16	22	22	22	3	3	3
울산	39	39	39	3	3	3	13	13	13	2	2	2
전북	94	94	94	3	3	3	34	34	34	2	2	2
전남	77	77	77	8	8	8	55	55	55	2	2	2
광주	47	47	47	3	3	3	16	16	16	1	1	1
제주	18	18	18	.	.	.	10	10	10	2	2	2
합계	1,546	1,543	1,542	154	154	154	590	590	590	65	65	65

나. 표본설계

① 표본크기

표본크기는 표본추출방법과 모집단의 특성 및 층화방법 등의 영향을 받지만, 단순임의추출의 상황 하에서 통계분석 단위별로 평균 추정치의 목표오차 d를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통제할 것인가에 따라서 아래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n = \frac{N(z\ s)^2}{N d^2 + (z\ s)^2}$$

여기에서 N은 모집단의 크기이고, s는 관심변수의 표준편차이며, z은 신뢰계수이다(신뢰수준 95% 하에서 $z = 1.96$이다).

조사내용이 비율인 경우에 모비율 추정에 대한 표본크기는 아래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n = \frac{N z^2\ p\ q}{N d^2 + z^2\ p\ q}$$

여기에서 p는 비율의 값이며 $q = 1 - p$이다.

본 연구에서는 1차 표본추출 단위가 학교이고 추출된 학교에서 표본학급을 선정하여 해당 학급의 모든 학생을 조사하는 층화집락추출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목표오차를 실제로 d 이하로 통제하기 위해 산출한 값보다 표본크기를 더 크게 정하였다.

전체 목표 표본크기는 6,000명(초등학교: 2,005명, 중학교: 1,911명, 고등학

교: 2,084명)이다. 이때 모비율의 추정에 대하여 예상되는 표본오차는 단순임의추출을 가정하는 경우 95% 신뢰수준 하에서 약 ±1.3%P이다.

② 층화

조사내용의 특성과 모집단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모집단을 2020년 4월 교육통계DB 기준의 전국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현황을 기초로 지역구분과 학교구분을 층화변수로 사용하였다.

- 지역구분 : 광역 시도 (17개)
- 학교구분 : 초등, 중등, 고등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6개)
- 학년 (3개)

단, 고등학교 중 유형 2(자율고)와 유형 3(특성화고)은 광역시도별로 층화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지역을 5개 권역으로 묶어서 층화한다. 또한 유형 4(특수목적고)는 지역별 층화를 수행하지 않았다.

표 Ⅳ-3 학교급×학년별 모집단 크기, 목표 표본크기

학교급		학년	모집단크기			단순비례배분 목표 표본크기		변형비례배분 예상 표본크기	
초등학교	초등학교	4	431,752	1,357,865 (33.4%)		2,005 (33.4%)		1,728 (28.5%)	
		5	450,697						
		6	475,416						
중학교	중학교	1	431,182	1,294,359 (31.9%)		1,911 (31.9%)		1,794 (29.6%)	
		2	415,114						
		3	448,063						
고등학교	유형 1 (일반고)	1	327,472	996,930 (24.5%)	1,538,576 (36.3%)	1,472 (24.5%)	2,084 (34.7%)	1,575 (26.0%)	2,535 (41.9%)
		2	312,511						
		3	356,947						
	유형 2 (자율고)	1	37,085	113,929 (2.8%)		168 (2.8%)		390 (6.4%)	
		2	36,632						
		3	40,212						
	유형 3 (특성화고)	1	90,026	273,048 (6.7%)		403 (6.7%)		432 (7.1%)	
		2	87,217						
		3	95,805						
	유형 4 (특수목적고)	1	9,349	27,120 (0.7%)		41 (0.7%)		138 (2.3%)	
		2	9,119						
		3	8,652						
합계				4,063,251 (100.0%)		6,000 (100.0%)		6,057 (100.0%)	

표 Ⅳ-4 단순비례배분에 의한 표본크기 할당: 학생 수, 학교 수

구분	할당 학생 수						할당 학교 수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서울	312	306	220	30	121		13.6	11.8	8.5	1.1	4.6	
경기	559	521	438	42	56		24.3	20.0	16.8	1.6	2.2	
인천	117	110	79				5.1	4.2	3.0			
강원	56	56	49	27	63		2.4	2.1	1.9	1.0	2.4	
충북	63	60	39				2.7	2.3	1.5			
충남	89	83	61				3.9	3.2	2.3			
대전	61	60	41				2.7	2.3	1.6			
세종	20	17	11				0.9	0.6	0.4			
경북	95	91	70	45	128	41	4.1	3.5	2.7	1.7	4.9	1.6
경남	142	131	107				6.2	5.0	4.1			
부산	112	108	74				4.9	4.2	2.9			
대구	93	92	63				4.0	3.6	2.4			
울산	50	46	36				2.2	1.8	1.4			
전북	72	72	62	26	35		3.1	2.8	2.4	1.0	1.4	
전남	69	67	47				3.0	2.6	1.8			
광주	66	64	55				2.9	2.4	2.1			
제주	30	28	20				1.3	1.1	0.8			
합계	2,005	1,911	1,472	168	403	41	87.2	73.5	56.6	6.5	15.5	1.6

* 학생 수 6,000명, 학교 수 240.8개

표 Ⅳ-5 변형비례배분에 의한 예상 표본크기: 학교 수, 학생 수

구분	학교 수						학생 수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서울	12(4)	9(3)	6(2)	3(1)	3(1)	6(2)	288	234	150	78	72	138
경기	15(5)	15(5)	12(4)	3(1)	3(1)		360	390	300	78	72	
인천	3(1)	3(1)	3(1)				72	78	75			
강원	3(1)	3(1)	3(1)	3(1)	3(1)		72	78	75	78	72	
충북	3(1)	3(1)	3(1)				72	78	75			
충남	3(1)	3(1)	3(1)				72	78	75			
대전	3(1)	3(1)	3(1)				72	78	75			
세종	3(1)	3(1)	3(1)				72	78	75			
경북	3(1)	3(1)	3(1)	3(1)	6(2)		72	78	75	78	144	
경남	3(1)	3(1)	3(1)				72	78	75			
부산	3(1)	3(1)	3(1)				72	78	75			
대구	3(1)	3(1)	3(1)				72	78	75			
울산	3(1)	3(1)	3(1)				72	78	75			
전북	3(1)	3(1)	3(1)	3(1)	3(1)		72	78	75	78	72	
전남	3(1)	3(1)	3(1)				72	78	75			
광주	3(1)	3(1)	3(1)				72	78	75			
제주	3(1)	3(1)	3(1)				72	78	75			
합계	72(24)	69(23)	63(21)	15(5)	18(6)	6(2)	1,728	1,794	1,575	390	432	138

* ( ) 안의 수치는 학년별 학교 수임. 학교 수: 243(81)개, 학생 수: 6,057명

③ 표본추출

각 학교구분과 지역구분별로 할당된 표본학교의 추출은 〈표 5〉에 주어진 표본배분 결과를 이용하여 확률비례추출법으로 선정한다. 즉, 각 학년별로 지역구분×학교급=62개 층 내에서 조사대상 학생 수를 기준으로 확률비례추출법으로 표본학교를 선정하되, 각 학년별 학급수가 2개 이상인 학교가 추출되도록 조정한다. 또한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20명 이상인 학교를 추출하였다. 그리고 선정된 표본학교 내에서 각 학년별 1개의 표본학급을 무작위로 선정하고, 그 학급의 모든

학생들을 조사하였다.

추출된 학교 측의 조사협조 거절로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동일한 층 내의 학교 리스트에서 무작위로 대체하였다. 또한 사전 학교 섭외과정에서 우열반, 특수반 등 특별편성이 되어 있는 학급은 제외하며, 지역별 성별 구성비율도 고려하여 최종 조사될 학교 및 학급을 선정하였다.

④ 성별 사후층화

본 연구에서는 학교 및 학급을 추출하여 조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조사 시에는 성별 비율을 맞추기가 어렵다. 즉, 성별은 매우 중요한 변수이지만 표본설계 및 표본추출 시 성별을 고려하기가 어렵게 된다. 따라서 성별 분포가 모집단 분포와 다르게 조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후층화 가중치를 통해 표본에서의 성별 분포의 편향을 조정하고자 하였다.

다. 표본설계가중치와 모수추정

① 가중치

본 조사의 표본추출은 일종의 층화집락추출법이라 할 수 있으며 학교구분과 지역구분을 층으로 간주할 수 있다. 각 층에서 일차추출단위인 학교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확률비례추출법으로 선정하고 추출된 표본학교에서는 학급을 랜덤하게 선정한 후에 학생을 조사하므로 추출된 표본학교에서 학생을 랜덤하게 선정하여 조사하는 이단집락추출법으로 생각할 수 있으므로 표본추출률을 아래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f_{hij} = n_h \frac{B_{hi}}{\sum_{i=1}^{N_h} B_{hi}} \cdot \frac{n_{hi}}{B_{hi}} = n_h \frac{n_{hi}}{\sum_{i=1}^{N_h} B_{hi}}$$

여기에서 N_h는 h층에 속한 전체 학교의 수이고, n_h는 h층의 표본 학교 수이며, B_{hi}는 h층에서 i번째 학교의 학생 수를 나타내고, n_{hi}는 추출된 표본학교에서 조사에 착수한 학생 수를 나타낸다.

표본추출률에 대한 가중치(설계 가중치)는 추출률의 역수이므로 아래와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W_{hij} = \frac{\sum_{i=1}^{N_h} B_{hi}}{n_h \ n_{hi}}$$

그리고 최초 표본단위가 단위무응답인 경우 이를 보정하기 위하여 최초 목표 표본크기(n_{hi})를 유효 표본크기(r_{hi})로 나누어 조정하였다. 즉, 기본 가중치는 설계 가중치와 무응답 조정 가중치를 곱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W_{hij}^{a} = \frac{\sum_{i=1}^{N_h} B_{hi}}{n_h \ n_{hi}} \times \frac{n_{hi}}{r_{hi}} = \frac{\sum_{i=1}^{N_h} B_{hi}}{n_h \ r_{hi}}$$

여기에서 r_{hi}는 추출된 표본학교에서 조사가 완료된 학생 수를 나타낸다.

또한 각 세부 층의 성별($k=1,2$) 모집단 크기를 반영하여 사후층화 가중치를 산출한다. 즉, 사후층화 가중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W_{h(k)j}^{b} = \frac{N_{h(k)}}{\sum_{l=1}^{n_{h(k)}} W_{h(k)j}^{a}}$$

여기에서 $N_{h(1)}$과 $N_{h(2)}$는 각 세부 층에 속한 남학생과 여학생의 모집단 크기이고, $\sum W_{h(k)j}^{a}$는 각 세부 층의 성별 기본 가중치의 합계이다.

최종 가중치는 기본 가중치와 사후층화 가중치를 곱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W_{h(k)ij}^{f} = W_{hij}^{a} \times W_{h(k)j}^{b}$$

② 모수추정

- 용어 정의

• Y_{hij} : 관측치 (각 조사항목에 대한 응답)

- h : 층의 번호 ($h=1,\ ,2,\ \cdots,\ H$). 학교구분×지역구분에 따른 번호.
- i : 각 층 내에서의 집락(학교)의 번호 ($i=1,\ 2,\ \cdots,\ n_h$).
- j : 각 집락 내의 학생의 번호 ($j=1,\ 2,\ \cdots,\ m_{hi}$).

m_{hi} : h번째 층의 i번째 집락으로부터 추출된 학생 수.

• w_{hij} : 표본 가중치

- h번째 층, i번째 집락, j번째 학생에 대한 표본 가중치

• $n=\sum_{h=1}^{H}\sum_{i=1}^{n_h} m_{hi}$: 전체 표본크기.

- 모평균에 대한 추정

• 관찰값 Y_{hij}가 수치형(numerical) 변수인 경우, 모평균에 대한 추정치는 다음과 같이 표본 가중치를 고려한 가중평균(Ratio estimator)으로 계산됨.

• $\overline{Y}=\left(\sum_{h=1}^{H}\sum_{i=1}^{n_h}\sum_{j=1}^{m_{hi}} w_{hij}\ Y_{hij}\right) / w...$: 모평균에 대한 추정치

- $w...=\sum_{h=1}^{H}\sum_{i=1}^{n_h}\sum_{j=1}^{m_{hi}} w_{hij}$: 표본 가중치의 합계

- 모비율에 대한 추정

• 관찰값 Y_{hij}가 범주형(categorical) 변수인 경우, 각 범주 c_k에 대하여 먼저 다음과 같이 지시변수(indicator variable)를 생성함.

- $Y_{hij}^{(c_k)} = I(Y_{hij} = c_k) = \begin{cases} 1, \text{if } Y_{hij} = c_k \\ 0, \text{otherwise} \end{cases}$

  - c_k : Y_{hij}가 가질 수 있는 범주의 값 ($k = 1, \cdots, l$)

• 이러한 지시변수 $Y_{hij}^{(c_k)}$로부터 모평균의 경우와 동일하게 가중평균을 계산하여 범주 c_k의 모비율에 대한 추정치를 계산함

- 분산의 추정

- $\hat{V}(\overline{Y}) = \sum_{h=1}^{H} \hat{V}_h(\overline{Y})$: 분산의 추정치

  - N_h : 층 h의 총 집락의 수

  - f_h : h번째 층의 표본추출률, n_h/N_h.

  - $n_n > 1$일 때,

$$\widehat{V_h}(\overline{Y}) = \frac{n_h(1-f_h)}{n_h - 1} \sum_{i=1}^{n_h} (e_{hi\cdot} - \overline{e}_{h\cdot\cdot})^2$$

$$e_{hi\cdot} = \left(\sum_{j=1}^{m_{hi}} w_{hij}(Y_{hij} - \overline{Y}) \right) / w...$$

$$\overline{e}_{h\cdot\cdot} = \left(\sum_{i=1}^{n_h} e_{hi\cdot} \right) / n_h$$

  - $n_n = 1$일 때,

$$\widehat{V_h}(\overline{Y}) = \begin{cases} \text{missing}, \text{if } n_{h'} = 1 \text{ for } h' = 1,2,...,H \\ 0, \qquad \text{if } n_{h'} > 0 \text{ for some } 1 \leqq h' \leqq H \end{cases}$$

- 표준오차, 오차한계(표본오차)의 추정

- $\text{StdErr}(\overline{Y}) = \sqrt{\hat{V}(\overline{Y})}$: 표준오차의 추정치

- $z_{\alpha/2} \times \text{StdErr}(\overline{Y})$: 오차한계(표본오차)의 추정치,

  95% 신뢰수준의 경우(α=0.05) $z_{\alpha/2}$=1.96임.

2) 조사내용 구성 및 문항 개발

(1) 조사내용 구성

설문조사지는 문헌고찰을 기초로 초안을 완성한 뒤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청소년의 혐오표현의 중요영역을 정하고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정한 후 청소년 대상 면접조사에서 필요한 세부항목을 일부 조정하였다.

완성된 설문지에 대해서는 IRB심의[57]와 한국리서치 면접원들의 검토를 통하여 최종 설문지를 확정하였다.

실태 조사내용의 기본 영역은 9개 영역으로 혐오표현에 대한 인식도, 혐오표현 문제의 사회적 변화, 소수집단에 대한 혐오표현, 소수집단에 대한 가해수준, 혐오표현의 생산 수단, 혐오표현의 생산자 및 가해자, 혐오표현의 대응 과제, 혐오표현에 의한 피해 행위, 혐오표현의 동기로 구성되었으며, 인구학적 배경 변인은 별도로 구성하였다.

실태조사에 해당하는 설문조사 문항의 핵심 기준은 2019년 발간된 국가인권위원회(2019b)의 혐오표현 리포트, 2016년도에 실시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온라인 설문조사를 기준으로 청소년에 적합한 항목으로 변형하였으며, 나머지 일부 문항은 문헌자료를 통하여 연구진과 전문가들에 의해 개발되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혐오표현 실태조사를 파악하기 위해 개발된 설문문항에 대한 개발 근거는 표-7과 같다.

57) 본 조사는 2020년 7월 8일 본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승인(IRB 승인번호 : 202005-HR-고유-008) 통보를 받음.

표 Ⅳ-6 혐오표현 실태 조사내용의 구성

구분	조사영역	세부내용
주요 내용	혐오표현 인식도	소수집단 혐오 문제에 대한 청소년의 이해 사회적 직위에 따른 혐오문제 인식 귀속형태에 따른 혐오문제 인식
	혐오표현의 사회적 영향	혐오표현의 확대, 다양화, 문제강화 혐오표현의 개인의 권리 침해 분야
	혐오표현의 심각성	소수집단 혐오문제에 대한 사회적 심각성 분야
	혐오표현 가해수준	소수집단 혐오문제의 단계적 행위 (편견-비난-모욕-차별-폭력) 분야
	혐오표현의 생산수단	혐오표현 경험 수단 및 장소
	생산자 및 가해자	혐오표현 유발자
	대응 방안	혐오표현 정책대안에 대한 청소년 동의
	피해 행위	혐오표현으로 인한 당사자의 심리적 피해 행위
	혐오 이유	혐오표현의 사용 동기
배경 특성	사회인구학적 특성	성, 경제력, 학교유형, 장애, 다문화

표 Ⅳ-7 설문문항 개발의 근거

구분	내용	설문 번호	작성 근거
혐오표현 인식도	외국인 차별 대우 인종 차별 대우 타종교 비난 성소수자 문제 장애인 문제 페미니스트 문제 다문화가정 무시 청소년 의견 무시 노인 무시 빈곤층 혐오 부모직업 차별 학벌 차별 타지역 차별	1. 1-1~ 5 1-6~ 13	국가인권위원회(2019b), 혐오표현리포트 국가인권위원회(2019c), 청소년인식조사 한국언론진흥재단(2016), 온라인설문조사 조사내용을 중심으로 연구진 수정 보완

구분	내용	설문 번호	작성 근거
혐오표현의 사회적 영향	혐오의 확대 경향 혐오의 다양화 혐오의 폭력화 갈등 강화 혐오 이용세력 확대 개인의 자유 침해 민주적 의사결정 침해 보편적 인간권리 침해 국제사회 기준 침해	2. 2-1~ 9	국가인권위원회(2019b), 혐오표현리포트를 기준으로 연구진이 신규개발
혐오표현의 심각성	외국인 혐오 타 인종 혐오 타 종교 혐오 성소수자 혐오 장애인 혐오 페미니스트 혐오 다문화가정 혐오 노인 혐오 청소년혐오 빈곤층혐오 출신지역 차별 혐오 해외이주노동자 혐오 국내거주 교포 혐오 근로청소년 혐오 범죄청소년혐오	3. 3-1 ~ 15	국가인권위원회(2019b), 혐오표현리포트 국가인권위원회(2019c), 청소년인식조사 한국언론진흥재단(2016), 온라인설문조사 일부 수정후 추가하여 연구진개발
혐오표현 가해수준	외국인 혐오 타 인종 혐오 타 종교 혐오 성소수자 혐오 장애인 혐오 페미니스트 혐오 다문화가정 혐오 노인 혐오 청소년혐오 빈곤층혐오 출신지역 차별 혐오 해외이주노동자 혐오 국내거주 교포 혐오	4. 4-1 ~15	국가인권위원회(2019b), 혐오표현리포트 한국언론진흥재단(2016), 온라인설문조사 조사내용에 혐오의 강도를 구체화하여 새롭게 작성

구분	내용	설문 번호	작성 근거
	근로청소년 혐오 범죄청소년혐오		
혐오표현의 생산수단	혐오나 차별표현 경험	5.	한국언론진흥재단(2016), 온라인설문조사 항목 이용
생산자 및 가해자	혐오나 차별표현 전달자	6.	한국언론진흥재단(2016), 온라인설문조사 항목 이용
대응 방안 필요성	혐오표현 규제 교육현장에서의 교육 혐오 대응 방안 홍보 혐오 관련 처벌 강화 학교 혐오 방지 제도화 혐오표현 기준 제시 언론의 윤리기준강화	7. 7-1 ~ 7	국가인권위원회(2019b), 혐오표현리포트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과제를 설문문항으로 포함하여 연구진이 개발함
피해 행위	심리적 피해(긴장, 괴롭힘, 무력감, 공포, 패닉, 분노, 흥분, 위축, 불안, 우울, 회피) 대항적 행위	8. 8-1~7 8-8~9	심리적 피해항목은 국가인권위원회(2019c), 박미숙, 추자연(2017),김정은(2017) 연구의 심리적 문제를 수정하여 사용
혐오 이유	친구에의 동조 혐오표현에 대한 무지 원활한 집단 형성 언론인 자주 사용 온라인 대화 방법 정치인의 잦은 발언 청소년만의 언어 세대차이로 인한 현상	9	국가인권위원회(2019b), 혐오표현리포트 한국언론진흥재단(2016), 온라인설문조사 일부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
사회 인구학적 특성	성별 경제수준별 학교유형별 장애여부 다문화가정 여부	10~14	연구진

3)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는 혐오 및 차별 표현과 관련하여 청소년대상으로는 처음 실시되는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보다 이 분야의 청소년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설문항목의 구성에서도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항목을 많이 포함하고 있으며, 자료분석 방법에서도 누구나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기초적인 방법을 적용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분석방법은 주로 기초통계에 해당하는 기술통계(빈도와 백분율) 분석하였으며, 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χ^2-test와 t-test 및 F-test로 검증하였다.

4) 분석대상자의 배경특성

본 연구의 설문조사 대상자 배경특성을 보면 총 응답자는 5,914명이다. 성별로는 남자가 51.9%, 여자가48.1%차지하고 있다. 경제수준별로는 중간층이 50.8%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상위층이 31.2%가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유형별로는 초등학교 33.4%, 중학교 31.9%, 고등학교 34.7%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다문화가정은 3.5%로 209세대에 불과하며, 지역별로는 대도시가 40.9%, 중소도시 49.1%, 읍면지역이 10.1%로 제시되었다.

표 Ⅳ-8 설문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성별	**남자**			**여자**		
사례 수(명)	3067			2847		
비율(%)	51.9%			48.1%		
경제수준	최하위	하위	중간	상위	최상위	무응답
사례 수(명)	22	121	3006	1847	837	81
비율(%)	0.4%	2.0%	50.8%	31.2%	14.2%	1.4%
학교유형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례 수(명)	1976		1884		2054	
비율(%)	33.4%		31.9%		34.7%	
장애여부	장애인		비장애인		무응답	
사례 수(명)	196		5478		240	
비율(%)	3.3%		92.6%		4.1%	
다문화가정	단일문화가정			다문화가정		
사례 수(명)	5651			209		
비율(%)	95.6%			3.5%		
지역규모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사례 수(명)	2416		2902		596	
비율(%)	40.9%		49.1%		10.1%	

2. 설문조사 결과분석

1) 혐오표현에 대한 인식도

혐오표현의 대상집단과 영역별로 혐오표현이 가해지는 것에 대한 청소년들의 기본적인 규범의식과 이를 청소년의 배경변인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에 대한 차별혐오 인식

'우리 사회는 외국인을 우리 국민과 같이 대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 한다'라는 진술문에 대한 동의 수준 응답을 성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 남성 집단의 평균치가 여성 집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t=2.188, p<.05). 결국 남자 청소년 집단이 여자 청소년 집단에 비해 외국인에 대한 차별대우 인식수준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장애여부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 두 집단별 평균치가 동일하였고, 유의미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경제수준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 최하 집단의 평균치가 가장 높았고, 최상 집단의 평균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경제적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외국인을 우리 국민과 같이 대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다문화가정 여부에 따라 비교 분석한 결과, 단일문화가정의 평균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학교유형별로는 고등학교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학년이 될수록 외국인과 국민간의 처우에 차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표 Ⅳ-9 외국인에 대한 차별 혐오 인식

구분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F* or *t*	유의도
성별	남자	3023	2.03	1.184	t=2.188*	.029
	여자	2850	1.97	1.105		
장애 여부	장애	211	2.00	1.051	t=-0.017	.986
	비장애	5474	2.00	1.148		
경제 수준	최하	9	2.44	1.130	F=3.046*	.016
	하	130	2.20	1.171		
	중간	3037	2.02	1.113		
	상	1846	1.99	1.154		
	최상	780	1.90	1.240		
가정 형태	단일문화가정	5636	2.01	1.149	t=1.103	.270
	다문화가정	177	1.91	1.104		
학교 유형	초등	1976	1.81	1.269	F=61.05***	.000
	중등	1884	1.95	1.168		
	고등	2054	2.23	1.267		

주. *p<.05, ***p<.001

(2) 타 인종에 대한 차별 혐오 인식

'우리 사회는 인종(백인, 황인, 흑인)에 따라 다르게 대우하고 말한다'라는 진술문에 대한 동의수준 응답을 성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 여성 집단의 평균치가 남성 집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t =-4.219, p <.001). 즉, 여자 청소년 집단이 남자 청소년집단에 비해 우리사회의 인종적 차별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장애여부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 장애가 있는 집단의 평균치가 장애가 없는

집단보다 더 높았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경제수준별로 분석한 결과, 최하 집단의 평균치가 가장 높았고, 최상 집단의 평균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경제적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우리 사회가 인종에 따라 다르게 대우하고 말한다고 생각하는 수준이 높은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다문화가정 여부에 따라 비교 분석한 결과, 단일문화가정 보다 다문화가정의 평균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학교유형별로는 고학년이 될수록 우리사회가 인종 간에 차별을 두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고등학교에서 우리사회의 인종차별이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표 Ⅳ-10 타 인종에 대한 차별 혐오 인식

구분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F* or *t*	유의도
성별	남자	3020	2.39	1.258	t=-4.219***	.000
	여자	2848	2.52	1.210		
장애 여부	장애	210	2.50	1.242	t=0.458	.647
	비장애	5472	2.46	1.236		
경제 수준	최하	9	2.67	1.581	F=12.252***	.000
	하	130	2.65	1.250		
	중간	3038	2.52	1.211		
	상	1843	2.44	1.225		
	최상	782	2.19	1.313		
가정 형태	단일문화가정	5632	2.45	1.238	t=-0.277	.781
	다문화가정	177	2.48	1.230		
학교 유형	초등	1976	2.04	1.393	F=172.123***	.000
	중등	1884	2.42	1.287		
	고등	2054	2.81	1.278		

주. ***p<.001

(3) 타 종교에 대한 혐오 인식

표 Ⅳ-11 타 종교에 대한 혐오 인식

구분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F* or *t*	유의도
성별	남자	3019	2.23	1.197	*t*=-1.105	.269
	여자	2845	2.26	1.135		
장애 여부	장애	211	2.29	1.179	*t*=0.496	.620
	비장애	5466	2.25	1.167		
경제 수준	최하	9	2.67	1.581	*F*=26.783***	.000
	하	130	2.65	1.250		
	중간	3038	2.52	1.211		
	상	1843	2.44	1.225		
	최상	782	2.19	1.313		
가정 형태	단일문화가정	5627	2.25	1.168	*t*=0.034	.973
	다문화가정	177	2.24	1.154		
학교 유형	초등	1976	1.88	1.304	*F*=152.962***	.000
	중등	1884	2.23	1.284		
	고등	2054	2.58	1.249		

주. ***p<.001

'우리 사회는 자신의 종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나 그 종교에 대해 비난한다'라는 진술문에 대한 응답을 성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 여성 집단의 평균치가 남성 집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장애여부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 장애가 있는 집단의 평균치가 장애가 없는 집단보다 더 높았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경제수준별로 비교분석한 결과, 최하 집단의 평균치가 가장 높았고, 최상 집단의 평균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경제적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우리 사회가 자신의 종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나 그 종교에 대해 비난한다고 생각하는 수준이 높은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다.

다문화가정 여부에 따라 비교 분석한 결과, 단일문화가정의 평균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학교유형별 비교 분석에서는 고학년 일수록 우리사회의 타종교에 대한 혐오가 높다고 보고 있으며, 초등학교의 경우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4)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인식

표 Ⅳ-12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인식

구분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F* or *t*	유의도
성별	남자	3014	2.57	1.296	t=-4.048***	.000
	여자	2844	2.71	1.341		
장애 여부	장애	211	2.68	1.290	t=0.296	.768
	비장애	5462	2.66	1.322		
경제 수준	최하	9	3.44	1.509	F=35.130***	.000
	하	130	3.16	1.322		
	중간	3031	2.72	1.288		
	상	1840	2.68	1.324		
	최상	778	2.16	1.315		
가정 형태	단일문화가정	5621	2.64	1.323	t=0.549	.584
	다문화가정	177	2.59	1.231		
학교 유형	초등	1976	2.05	1.374	F=288.020***	.000
	중등	1884	2.67	1.416		
	고등	2054	3.09	1.343		

주. ***p<.001

‘우리 사회는 성 소수자(남녀 이성관계 외 다른 성별에 애정을 느끼는 관계)인 사람들이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라는 진술문에 대한 동의 수준 응답을 성별로 분석한 결과, 여성 집단의 평균치가 남성 집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즉, 여자 청소년 집단이 남자 청소년집단에 비해 성소수자에 대한 우리사회의 편견과 차별이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장애여부별로 분석한 결과, 장애가 있는 집단의 평균치가 장애가 없는 집단보다 더 높았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제수준별로 분석한 결과, 최하 집단의 평균치가 가장 높았고, 최상 집단의 평균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경제적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우리 사회가 성 소수자인 사람들이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다.

다문화가정 여부에 따라 분석한 결과, 단일문화가정의 평균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학교유형별 분석에서는 고등학교가 우리사회의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에 높게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5) 장애인에 대한 혐오 인식

표 Ⅳ-13 장애인에 대한 혐오 인식

구분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F* or *t*	유의도
성별	남자	3023	2.23	1.211	t=-5.769***	.000
	여자	2845	2.42	1.235		
장애 여부	장애	210	2.36	1.238	t=0.230	.818
	비장애	5470	2.34	1.225		
경제 수준	최하	9	3.11	1.537	F=37.774***	.000
	하	130	2.70	1.316		
	중간	3037	2.44	1.216		
	상	1843	2.30	1.205		
	최상	779	1.87	1.179		
가정 형태	단일문화가정	5632	2.33	1.230	t=0.382	.703
	다문화가정	177	2.29	1.125		
학교 유형	초등	1976	1.75	1.195	F=312.941***	.000
	중등	1884	2.36	1.292		
	고등	2054	2.74	1.295		

주. ***p<.001

‘우리 사회는 몸과 마음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놀리거나 무시한다’라는 진술문에 대한 응답을 성별로 분석한 결과, 여성 집단의 평균치가 남성 집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t=-5.769, p 〈.001). 즉, 남자 청소년에 비해 여자 청소년들이 장애인에 대한 우리사회의 편견과 차별수준이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였다.

장애여부별로 분석한 결과, 장애가 있는 집단의 평균치가 장애가 없는 집단보다 더 높았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경제수준별로 분석한 결과, 최하 집단의 평균치가 가장 높았고, 최상 집단의 평균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경제적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우리 사회가 몸과 마음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놀리거나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수준이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다.

다문화가정 여부에 따라 비교 분석한 결과, 단일문화가정의 평균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학교유형별 분석에서는 고등학교가 가장 높았으며, 고학년 일수록 우리사회의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혐오 문제에 동의하는 바가 증가하였다.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6) 여성 페미니스트에 대한 혐오 인식

‘우리 사회는 페미니스트(남성중심 사회에서 여성이 억압받는 현실에 저항하는 사람) 활동을 사회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비정상적 활동으로 본다’라는 진술문에 대한 응답을 성별로 분석한 결과, 남성 집단의 평균치가 여성 집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장애여부별로 분석한 결과, 장애가 있는 집단의 평균치가 장애가 없는 집단보다 더 높았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경제수준별로 분석한 결과, 최하 집단의 평균치가 가장 높았고, 최상 집단의 평균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경제적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우리 사회가 페미니스트 활동을 사회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비정상적 활동으로 본다고 생각하는 수준이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다.

다문화가정 여부에 따라 비교 분석한 결과, 단일문화가정 집단과 다문화가정 집단의 평균치가 동일하였다.

학교유형별로는 고학년일수록 우리사회의 페미니스트 혐오 문제에 동의하는 바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교의 경우 3.35로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Ⅳ-14 여성 페미니스트에 대한 혐오 인식

구분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F* or *t*	유의도
성별	남자	3008	2.79	1.451	*t*=1.497	.134
	여자	2837	2.73	1.383		
장애 여부	장애	211	2.85	1.344	*t*=0.759	.449
	비장애	5449	2.78	1.421		
경제 수준	최하	9	4.22	1.394	*F*=37.683***	.000
	하	129	3.09	1.447		
	중간	3029	2.87	1.387		
	상	1834	2.79	1.413		
	최상	775	2.22	1.409		
가정 형태	단일문화가정	5610	2.76	1.422	*t*=0.079	.937
	다문화가정	176	2.76	1.315		
학교 유형	초등	1976	2.00	1.464	*F*=441.223***	.000
	중등	1884	2.77	1.487		
	고등	2054	3.35	1.385		

주. ***p<.001

(7) 다문화가정에 대한 혐오 인식

표 Ⅳ-15 다문화가정에 대한 혐오 인식

구분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F* or *t*	유의도
성별	남자	3019	1.95	1.059	t=-5.769***	.000
	여자	2850	2.04	1.078		
장애 여부	장애	211	2.09	1.100	t=1.200	.230
	비장애	5469	2.00	1.071		
경제 수준	최하	9	2.67	1.118	F=28.155***	.000
	하	130	2.42	1.174		
	중간	3034	2.07	1.056		
	상	1847	1.98	1.061		
	최상	778	1.68	1.042		
가정 형태	단일문화가정	5632	2.00	1.071	t=-0.383	.702
	다문화가정	177	2.03	1.019		
학교 유형	초등	1976	1.56	1.042	F=253.958***	.000
	중등	1884	1.98	1.130		
	고등	2054	2.36	1.200		

주. ***p<.001

'우리 사회는 다문화가정이나 그 자녀들을 놀리거나 무시한다'라는 진술문에 대한 응답을 성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 여성 집단의 평균치가 남성 집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t =-5.769, p <.001). 즉, 여자청소년들이 남자청소년에 비해 다문화가정 출신 자녀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심하다고 인식하였다.

장애여부별로 분석한 결과, 장애가 있는 집단의 평균치가 장애가 없는 집단보다 더 높았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경제수준별로 분석한 결과, 최하 집단의 평균치가 가장 높았고, 최상 집단의 평균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경제적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우리

사회가 다문화가정이나 그 자녀들을 놀리거나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수준이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F =28.155, p 〈.001),

다문화가정 여부에 따라 분석한 결과, 단일문화가정보다 다문화가정의 평균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학교 유형별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우리사회의 다문화가정 혐오 문제에 동의하는바가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8) 청소년에 대한 혐오 인식

표 Ⅳ-16 청소년에 대한 혐오 인식

구분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F or t	유의도
성별	남자	3022	2.67	1.345	t=-5.306***	.000
	여자	2847	2.85	1.315		
장애 여부	장애	211	2.75	1.375	t=-0.197	.844
	비장애	5469	2.77	1.331		
경제 수준	최하	9	3.56	1.424	t=63.781***	.000
	하	130	3.38	1.248		
	중간	3035	2.91	1.302		
	상	1846	2.72	1.305		
	최상	778	2.14	1.324		
가정 형태	단일문화가정	5632	2.76	1.335	t=0.129	.898
	다문화가정	177	2.75	1.305		
학교 유형	초등	1976	2.05	1.313	F=381.436***	.000
	중등	1884	2.83	1.401		
	고등	2054	3.19	1.286		

주. ***p〈.001

‘어른들은 청소년의 의견과 행동을 어리다고 무시한다’라는 진술문에 대한 응답을 성별로 분석한 결과, 여성 집단의 평균치가 남성 집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즉,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청소년에 대한 기성세대의 무시수준이 높다고 인식하였다.

장애여부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 장애가 없는 집단의 평균치가 장애가 있는 집단보다 더 높았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경제수준별로 분석한 결과, 최하 집단의 평균치가 가장 높았고, 최상 집단의 평균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경제적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어른들이 청소년의 의견과 행동을 어리다고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수준이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다문화가정 여부에 따라 분석한 결과, 단일문화가정의 평균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학교유형별로는 고등학교가 저학년에 비해 우리사회의 어른들이 청소년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9) 노인에 대한 혐오 인식

‘청소년들은 노인을 고지식하거나 꼰대라고 무시한다’라는 진술문에 대한 응답을 성별로 분석한 결과, 여성 집단의 평균치가 남성 집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장애여부별로 분석한 결과, 장애가 없는 집단의 평균치가 장애가 있는 집단보다 더 높았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경제수준별로 분석한 결과, 최하 집단의 평균치가 가장 높았고, 최상 집단의 평균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경제적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청소년

들은 노인을 고지식하거나 꼰대라고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수준이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다문화가정 여부에 따라 분석한 결과, 다문화가정의 평균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학교 유형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 고등학교가 우리사회가 노인들을 무시한다고 높게 생각하고 있으며, 학년이 높을수록 점점 더 동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표 Ⅳ-17 노인에 대한 혐오 인식

구분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F* or *t*	유의도
성별	남자	3023	2.57	1.309	*t*=-1.259	.208
	여자	2847	2.61	1.256		
장애 여부	장애	211	2.60	1.281	*t*=-0.097	.922
	비장애	5471	2.61	1.284		
경제 수준	최하	9	3.56	1.333	*F*=62.063***	.000
	하	130	3.24	1.187		
	중간	3037	2.74	1.265		
	상	1843	2.56	1.256		
	최상	780	2.01	1.244		
가정 형태	단일문화가정	5633	2.59	1.287	*t*=0.129	.898
	다문화가정	177	2.60	1.221		
학교 유형	초등	1976	1.81	1.228	*F*=527.522***	.000
	중등	1884	2.64	1.347		
	고등	2054	3.10	1.252		

주. ***p<.001

(10) 경제적 약자에 대한 혐오 인식

'우리는 상대 부모집이 가난하면 친구로 사귀지 않거나 무시하는 말을 한다'라는 진술문에 대한 응답을 성별로 분석한 결과, 여성 집단의 평균치가 남성 집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t =-3.068,

p<.01). 즉, 여자 청소년들이 남자 청소년들에 비해 경제적 수준에 따른 우리사회의 차별이 심각하다고 인식하였다.

표 Ⅳ-18 경제적 약자에 대한 혐오 인식

구분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F or t	유의도
성별	남자	3020	1.65	0.892	t=-3.068**	.002
	여자	2850	1.72	0.933		
장애 여부	장애	211	1.77	0.950	t=1.269	.205
	비장애	5469	1.69	0.910		
경제 수준	최하	9	1.89	0.782	F=14.869***	.000
	하	130	1.93	1.021		
	중간	3034	1.74	0.918		
	상	1846	1.67	0.887		
	최상	780	1.48	0.894		
가정 형태	단일문화가정	5633	1.68	0.913	t=-1.301	.193
	다문화가정	177	1.77	0.938		
학교 유형	초등	1976	1.45	.972	F=79.19***	.000
	중등	1884	1.73	1.087		
	고등	2054	1.85	1.038		

주. **p<.01, ***p<.001

장애여부별로 분석한 결과, 장애가 있는 집단의 평균치가 장애가 없는 집단보다 더 높았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경제수준별로 분석한 결과, 하 집단의 평균치가 가장 높았고, 최상 집단의 평균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경제적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우리가 상대 부모집이 가난하면 친구로 사귀지 않거나 무시하는 말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수준이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다문화가정 여부에 따라 분석한 결과, 다문화가정의 평균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학교유형별로는 고등학교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우리사회가 경제적 약자를 무시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11) 부모 직업에 따른 혐오 인식

표 Ⅳ-19 부모 직업에 따른 차별 혐오 인식

구분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F* or *t*	유의도
성별	남자	3020	1.60	0.867	*t*=-1.477	.140
	여자	2846	1.63	0.878		
장애 여부	장애	211	1.65	0.916	*t*=0.594	.552
	비장애	5467	1.61	0.870		
경제 수준	최하	9	1.78	0.667	*t*=13.479***	.000
	하	130	1.78	0.988		
	중간	3033	1.67	0.890		
	상	1844	1.58	0.840		
	최상	779	1.43	0.818		
가정 형태	단일문화가정	5629	1.61	0.873	*t*=-1.268	.205
	다문화가정	177	1.69	0.890		
학교 유형	초등	1976	1.40	.948	*F*=73.069***	.000
	중등	1884	1.65	1.036		
	고등	2054	1.79	1.068		

주. ***p<.001

‘우리는 상대 부모의 직업이 좋지 않으면 친구로 사귀지 않거나 무시하는 말을 한다’라는 진술문에 대한 응답을 성별로 분석한 결과, 여성 집단의 평균치가 남성 집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장애여부별로 분석한 결과, 장애가 있는 집단의 평균치가 장애가 없는 집단보다 더 높았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경제수준별로 분석한 결과, 최하 집단과 하 집단의 평균치가 가장 높았고, 최상 집단의 평균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경제적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우리가 상대 부모의 직업이 좋지 않으면 친구로 사귀지 않거나 무시하는 말을 한다고 생각하는 수준이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다문화가정 여부에 따라 분석한 결과, 다문화가정의 평균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학교유형별 분석에서는 전체집단이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고학년일수록 우리사회의 부모의 직업에 따른 차별을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12) 학벌에 따른 혐오 인식

표 Ⅳ-20 학벌에 따른 차별 혐오 인식

구분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F* or *t*	유의도
성별	남자	3020	1.91	1.111	t=-4.414***	.000
	여자	2850	2.04	1.152		
장애 여부	장애	211	2.03	1.164	t=0.666	.505
	비장애	5469	1.98	1.135		
경제 수준	최하	9	2.67	1.414	F=22.405***	.000
	하	130	2.35	1.269		
	중간	3037	2.05	1.135		
	상	1846	1.94	1.121		
	최상	778	1.68	1.057		
가정 형태	단일문화가정	5633	1.98	1.136	t=0.239	.811
	다문화가정	177	1.95	1.097		
학교 유형	초등	1976	1.54	1.094	F=220.155***	.000
	중등	1884	1.95	1.201		
	고등	2054	2.34	1.297		

주. ***p<.001

'사람들은 (유명대학을 나오지 않아) 학벌이 좋지 않은 친구와는 사귀지 않거나 무시하는 말을 한다'라는 진술문에 대한 응답을 성별로 분석한 결과, 여성 집단의 평균치가 남성 집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t =-4.414, p <.001).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이 비

해 학벌에 대한 사회적 차별의식을 더 높게 인식하였다.

장애여부별로 분석한 결과, 장애가 있는 집단의 평균치가 장애가 없는 집단보다 더 높았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경제수준별로 분석한 결과, 최하 집단의 평균치가 가장 높았고, 최상 집단의 평균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경제적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사람들이 학벌이 좋지 않은 친구와는 사귀지 않거나 무시하는 말을 한다고 인식하는 수준이 더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다문화가정 여부에 따라 분석한 결과, 단일문화가정의 평균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학교유형별 분석 결과는 고등학교 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학년일수록 우리사회의 학벌에 따른 차별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13) 출신지역에 따른 혐오 인식

표 Ⅳ-21 출신지역에 따른 혐오 인식

구분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F* or *t*	유의도
성별	남자	3023	1.90	1.095	t=-2.031*	.042
	여자	2849	1.96	1.114		
장애 여부	장애	211	1.99	1.179	t=0.705	.481
	비장애	5471	1.94	1.106		
경제 수준	최하	9	2.89	1.691	F=27.282***	.000
	하	130	2.26	1.230		
	중간	3036	2.02	1.115		
	상	1846	1.89	1.077		
	최상	780	1.61	1.006		
가정 형태	단일문화가정	5635	1.93	1.105	t=-0.644	.519
	다문화가정	177	1.98	1.141		
학교 유형	초등	1976	1.51	1.027	F=219.107***	.000
	중등	1884	1.90	1.177		
	고등	2054	2.27	1.258		

주. *p<.05, ***p<.001

‘사람들은 본인이 속한 지역 이외의 타지역 사람을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말을 한다’라는 진술문에 대한 응답을 성별로 분석한 결과, 여성 집단의 평균치가 남성 집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t = -2.031$, $p < .05$). 이는 여자 청소년들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지역차별의식을 더 높게 인식하는 것을 반영한다.

장애여부별로 분석한 결과, 장애가 있는 집단의 평균치가 장애가 없는 집단보다 더 높았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경제수준별로 분석한 결과, 최하 집단의 평균치가 가장 높았고, 최상 집단의 평균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경제적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사람들이 본인이 속한 지역 이외의 타지역 사람을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말을 한다고 인식하는 수준이 더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다.

다문화가정 여부에 따라 분석한 결과, 다문화가정의 평균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학교유형별 분석에서는 고등학교 집단의 평균치가 초등학교나 중등학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학년이 높을수록 우리사회가 자신이 속한 지역 이외의 타지역 사람들에게 차별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2) 혐오표현 문제가 우리 사회에 주는 변화

혐오표현이 미래의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변화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을 배경변인별로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사회 전반으로 더욱 확대

표 Ⅳ-22 사회 전반으로 더욱 확대

구분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F* or *t*	유의도
성별	남자	3006	3.01	1.170	t=-2.708**	.007
	여자	2831	3.10	1.113		
장애 여부	장애	211	2.98	1.159	t=-1.101	.271
	비장애	5442	3.07	1.139		
경제 수준	최하	10	3.70	1.418	F=34.000***	.000
	하	130	3.33	1.015		
	중간	3019	3.15	1.095		
	상	1837	3.06	1.130		
	최상	770	2.64	1.267		
가정 형태	단일문화가정	5601	3.06	1.147	t=0.590	.556
	다문화가정	177	3.01	1.033		
학교 유형	초등	1976	2.69	1.515	F=142.205***	.000
	중등	1884	3.13	1.178		
	고등	2054	3.36	1.139		

주. **p<.01, ***p<.001

'우리나라에서 혐오표현 문제는 추후 사회 전반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다'라는 진술문에 대한 응답을 성별로 분석한 결과, 여성 집단의 평균치가 남성 집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t=-2.708, p 〈.01). 즉, 여자청소년들이 남자 청소년들에 비해 향후 우리사회에서의 혐오표현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장애여부별로 분석한 결과, 장애가 없는 집단의 평균치가 장애가 없는 집단보다 더 높았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경제수준별로 분석한 결과, 최하 집단의 평균치가 가장 높았고, 최상 집단의 평균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경제적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우리나라에서 혐오표현 문제가 추후 사회 전반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다.

다문화가정 여부에 따라 분석한 결과, 단일문화가정의 평균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학교유형별 분석에서는 초·중·고등학교 모든 집단이 평균이상으로 나타났으며, 학년이 높을수록 미래 사회에 혐오문제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2) 혐오 문제의 다양화

표 Ⅳ-23 혐오 문제의 다양화

구분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F* or *t*	유의도
성별	남자	3009	3.09	1.204	t=-4.585***	.000
	여자	2835	3.23	1.127		
장애 여부	장애	211	3.05	1.204	t=-1.456	.146
	비장애	5449	3.17	1.164		
경제 수준	최하	10	3.90	1.287	F=38.125***	.000
	하	130	3.61	1.015		
	중간	3026	3.25	1.111		
	상	1836	3.15	1.156		
	최상	771	2.73	1.316		
가정 형태	단일문화가정	5608	3.16	1.172	t=1.013	.312
	다문화가정	177	3.08	1.063		
학교 유형	초등	1976	2.74	1.471	F=167.205***	.000
	중등	1884	3.26	1.198		
	고등	2054	3.45	1.146		

주. ***p<.001

'우리나라에서 혐오표현 문제는 추후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날 것이다'라는 진술문에 대한 응답을 성별로 분석한 결과, 여성 집단의 평균치가 남성 집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t =-4.585, p <.001). 즉, 여자청소년들이 남자청소년이 비해 다양한 분야로 우리사회의 혐오표현이 확산되는 것을 더 우려하고 있었다.

장애여부별로 분석한 결과, 장애가 없는 집단의 평균치가 장애가 있는 집단보다 더 높았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경제수준별로 분석한 결과, 최하 집단의 평균치가 가장 높았고, 최상 집단의 평균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경제적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우리나라에서 혐오표현 문제가 추후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날 것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다.

다문화가정 여부에 따라 분석한 결과, 단일문화가정의 평균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학교유형별에서는 모든 집단이 평균이상으로 나타났으며, 학년이 높아질수록 우리사회의 혐오 문제가 더욱 다양한 형태로 변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3) 더 큰 사회문제로 발전

표 Ⅳ-24 더 큰 사회문제로 발전

구분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F* or *t*	유의도
성별	남자	3009	3.00	1.230	t=-4.955***	.000
	여자	2832	3.16	1.169		
장애 여부	장애	211	2.96	1.261	t=-1.564	.118
	비장애	5445	3.09	1.197		
경제 수준	최하	10	4.00	0.943	F=47.213***	.000
	하	130	3.54	1.028		
	중간	3025	3.19	1.143		
	상	1835	3.07	1.191		
	최상	770	2.58	1.328		
가정 형태	단일문화가정	5606	3.08	1.204	t=1.409	.159
	다문화가정	176	2.95	1.150		
학교 유형	초등	1976	2.61	1.524	F=197.957***	.000
	중등	1884	3.21	1.223		
	고등	2054	3.40	1.182		

주. ***p<.001

‘우리나라에서 혐오표현 문제는 폭력 등 더 큰 사회문제로 나타날 것이다’라는 진술문에 대한 응답을 성별로 분석한 결과, 여성 집단의 평균치가 남성 집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t =-4.955, p 〈.001). 즉, 여자청소년들이 남자청소년들이 비해 혐오표현의 사회문제화에 대해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장애여부별로 분석한 결과, 장애가 없는 집단의 평균치가 장애가 있는 집단보다 더 높았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경제수준별로는 최하 집단의 평균치가 가장 높았고, 최상 집단의 평균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경제적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우리나라에서 혐오표현 문제가 폭력 등 더 큰 사회문제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다문화가정 여부에 따라 분석한 결과, 단일문화가정의 평균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학교유형별 분석결과에서는 고등학생 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학년이 높을수록 우리사회의 혐오문제가 앞으로 더 큰 사회문제화 되어갈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4) 세대 및 지역 갈등이 더욱 강화

‘우리나라에서 혐오표현 문제는 세대 간 지역 간 갈등을 강화할 것이다’라는 진술문에 대한 응답을 성별로 분석한 결과, 여성 집단의 평균치가 남성 집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t =-2.996, p 〈.01). 이는 여자 청소년들이 남자청소년들에 비해 혐오표현의 세대 및 지역간 갈등 문제로의 심화 문제를 더 높게 우려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장애여부별로 분석한 결과, 장애가 없는 집단의 평균치가 장애가 있는 집단보다

더 높았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경제수준별로 분석한 결과, 최하 집단의 평균치가 가장 높았고, 최상 집단의 평균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경제적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우리나라에서 혐오표현 문제가 세대 간 지역 간 갈등을 강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다.

다문화가정 여부에 따라 분석한 결과, 단일문화가정의 평균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학교유형별로는 모든 집단이 평균치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학년이 높을수록 우리사회의 혐오표현 문제가 세대간 지역간 갈등을 강화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표 Ⅳ-25 세대 및 지역 갈등이 더욱 강화

구분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F* or *t*	유의도
성별	남자	3006	3.02	1.211	t=-2.996**	.003
	여자	2832	3.11	1.149		
장애 여부	장애	211	2.97	1.203	t=-1.295	.195
	비장애	5443	3.08	1.177		
경제 수준	최하	10	3.90	1.287	F=37.158***	.000
	하	130	3.49	1.044		
	중간	3023	3.15	1.126		
	상	1837	3.07	1.178		
	최상	767	2.63	1.301		
가정 형태	단일문화가정	5604	3.07	1.184	t=0.696	.486
	다문화가정	175	3.01	1.112		
학교 유형	초등	1976	2.66	1.536	F=156.787***	.000
	중등	1884	3.16	1.231		
	고등	2054	3.38	1.181		

주. **p<.01, ***p<.001

(5) 혐오를 이용하는 집단과 세력의 확대

‘우리나라에서 혐오표현 문제는 이를 이용하는 집단과 세력을 더욱 확대하게

될 것이다'라는 진술문에 대한 응답을 성별로 분석한 결과, 여성 집단의 평균치가 남성 집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장애여부별로 분석한 결과, 장애가 없는 집단의 평균치가 장애가 있는 집단보다 더 높았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경제수준별로 분석한 결과, 최하 집단의 평균치가 가장 높았고, 최상 집단의 평균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경제적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우리나라에서 혐오표현 문제가 이를 이용하는 집단과 세력을 더욱 확대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다.

표 Ⅳ-26 혐오를 이용하는 집단과 세력의 확대

구분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F* or *t*	유의도
성별	남자	3009	3.00	1.227	t=-1.634	.102
	여자	2829	3.05	1.159		
장애 여부	장애	211	3.01	1.236	t=-0.274	.784
	비장애	5443	3.04	1.191		
경제 수준	최하	10	4.00	1.333	F=36.946***	.000
	하	130	3.53	1.080		
	중간	3024	3.11	1.146		
	상	1836	3.03	1.187		
	최상	770	2.60	1.294		
가정 형태	단일문화가정	5603	3.03	1.197	t=0.393	.695
	다문화가정	177	2.99	1.146		
학교 유형	초등	1976	2.58	1.534	F=183.319***	.000
	중등	1884	3.12	1.231		
	고등	2054	3.36	1.184		

주. ***p<.001

다문화가정 여부에 따라 분석한 결과, 단일문화가정의 평균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학교유형별 분석에서는 초·중·고등학교 집단 모두 평균치 이상으로 나타났으

며, 고등학교 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나, 장래 우리사회가 혐오를 이용하는 세력과 집단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6) 개인의 자유 침해 확대

표 Ⅳ-27 개인의 자유 침해 확대

구분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F* or *t*	유의도
성별	남자	3008	2.96	1.243	t=-5.160***	.000
	여자	2833	3.12	1.200		
장애 여부	장애	211	2.94	1.271	t=-1.301	.193
	비장애	5444	3.05	1.221		
경제 수준	최하	10	3.50	1.509	F=30.955***	.000
	하	130	3.47	1.108		
	중간	3022	3.12	1.170		
	상	1838	3.06	1.225		
	최상	770	2.62	1.339		
가정 형태	단일문화가정	5605	3.05	1.226	t=1.155	.248
	다문화가정	177	2.94	1.173		
학교 유형	초등	1976	2.63	1.573	F=149.906***	.000
	중등	1884	3.13	1.284		
	고등	2054	3.36	1.190		

주. ***p<.001

'우리나라에서 혐오표현 문제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게 될 것이다'라는 진술문에 대한 응답을 성별로 분석한 결과, 여성 집단의 평균치가 남성 집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t=-5.160, p <.001). 이는 여자청소년들이 남자 청소년들이 비해 혐오표현으로 인한 개인의 자유 침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장애여부별로 분석한 결과, 장애가 없는 집단의 평균치가 장애가 있는 집단보다 더 높았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경제수준별로는 최하 집단의 평균치가 가장 높았고, 최상 집단의 평균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경제적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우리나라에서 혐오표현 문제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게 될 것이라 인식하는 수준이 더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다.

다문화가정 여부에 따라 분석한 결과, 단일문화가정의 평균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학교유형별 분석에서는 고등학교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초·중· 모두 평균이상으로 청소년들은 혐오표현 문제가 미래에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7) 민주적 의사결정 침해 확대

표 Ⅳ-28 민주적 의사결정 침해 확대

구분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F* or *t*	유의도
성별	남자	3006	2.91	1.240	t=-2.749**	.006
	여자	2829	3.00	1.178		
장애 여부	장애	210	2.87	1.222	t=-1.189	.234
	비장애	5438	2.97	1.209		
경제 수준	최하	10	3.50	1.509	F=26.299***	.000
	하	130	3.22	1.109		
	중간	3020	3.03	1.165		
	상	1834	2.99	1.208		
	최상	772	2.56	1.316		
가정 형태	단일문화가정	5600	2.96	1.212	t=1.336	.182
	다문화가정	177	2.84	1.159		
학교 유형	초등	1976	2.59	1.617	F=128.301***	.000
	중등	1884	3.02	1.262		
	고등	2054	3.28	1.193		

주. **p<.01, ***p<.001

'우리나라에서 혐오표현 문제는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침해하게 될 것이다'라는 진술문에 대한 응답을 성별로 분석한 결과, 여성 집단의 평균치가 남성 집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이는 여자 청소년들이 남자 청소년들에 비해 혐오표현으로 인한 민주적 의사결정 침해 문제의 심각성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장애여부별로 분석한 결과, 장애가 없는 집단의 평균치가 장애가 있는 집단보다 더 높았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경제수준별로 분석한 결과, 최하 집단의 평균치가 가장 높았고, 최상 집단의 평균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경제적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우리나라에서 혐오표현 문제가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침해하게 될 것이라고 인식하는 수준이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다문화가정 여부에 따라 분석한 결과, 단일문화가정의 평균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학교유형별 분석에서는 세 집단 모두 평균치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고학년일수록 혐오문제가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침해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8) 인간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

'우리나라에서 혐오표현 문제는 보편적인 인간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다'라는 진술문에 대한 응답을 성별로 분석한 결과, 여성 집단의 평균치가 남성 집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즉, 여자 청소년들이 남자청소년들이 비해 혐오표현으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생각함을 반영하고 있다.

장애여부별로 분석한 결과, 장애가 없는 집단의 평균치가 장애가 있는 집단보다 더 높았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경제수준별로 분석한 결과, 최하 집단의 평균치가 가장 높았고, 최상 집단의

평균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경제적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우리나라에서 혐오표현 문제가 보편적인 인간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고 인식하는 수준이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다문화가정 여부에 따라 분석한 결과, 단일문화가정의 평균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학교유형별에서는 모든 집단이 평균이상으로 나타났으며, 학년이 높을수록 우리사회의 혐오문제가 인간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표 Ⅳ-29 인간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

구분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F* or *t*	유의도
성별	남자	3008	2.94	1.267	t=-3.672***	.000
	여자	2833	3.06	1.218		
장애 여부	장애	211	2.89	1.292	t=-1.467	.142
	비장애	5444	3.02	1.239		
경제 수준	최하	10	4.00	1.155	F=38.420***	.000
	하	130	3.45	1.121		
	중간	3023	3.10	1.195		
	상	1835	3.02	1.237		
	최상	773	2.54	1.341		
가정 형태	단일문화가정	5605	3.01	1.243	t=0.873	.383
	다문화가정	177	2.93	1.261		
학교 유형	초등	1976	2.55	1.560	F=184.775***	.000
	중등	1884	3.07	1.302		
	고등	2054	3.36	1.215		

주. ***p<.001

(9) 국제사회 공통기준 침해

'우리나라에서 혐오표현 문제는 국제사회의 공통기준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다'라는 진술문에 대한 응답을 성별로 분석한 결과, 여성 집단의 평균치가 남성

집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이는 우리사회의 혐오표현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표준위반을 범할 위험성을 여자 청소년들이 남자 청소년들보다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장애여부별로 분석한 결과, 장애가 없는 집단의 평균치가 장애가 있는 집단보다 더 높았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경제수준별로 분석한 결과, 최하 집단의 평균치가 가장 높았고, 최상 집단의 평균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경제적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우리나라에서 혐오표현 문제가 국제사회의 공통기준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고 인식하는 수준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다.

표 Ⅳ-30 국제사회 공통기준 침해

구분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F* or *t*	유의도
성별	남자	3010	2.83	1.227	t=-2.936**	.003
	여자	2831	2.92	1.171		
장애 여부	장애	211	2.75	1.225	t=-1.568	.117
	비장애	5443	2.89	1.197		
경제 수준	최하	10	3.90	1.197	F=28.829***	.000
	하	130	3.17	1.142		
	중간	3024	2.96	1.161		
	상	1834	2.87	1.188		
	최상	773	2.48	1.295		
가정 형태	단일문화가정	5605	2.88	1.200	t=0.554	.579
	다문화가정	177	2.82	1.214		
학교 유형	초등	1976	2.47	1.559	F=160.047***	.000
	중등	1884	2.93	1.237		
	고등	2054	3.22	1.203		

주. $^{**}p<.01$, $^{***}p<.001$

다문화가정 여부에 따라 분석한 결과, 단일문화가정의 평균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학교유형별에 따른 분석에서는 고등학교 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년이

높을수록 혐오표현 문제가 국제사회의 보편적 공통기준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3) 소수집단에 대한 혐오문제의 심각정도

우리 사회의 혐오표현의 타깃이 될 수 있는 소수집단들에 대한 혐오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 수준을 알아본 결과, 단순빈도에 있어서는 범죄청소년(39.3%), 페미니스트(34.1%), 성소수자(32.8%)의 순으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에 대한 혐오의 심각성

표 Ⅳ-31 외국인에 대한 혐오의 심각성

구분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F* or *t*	유의도
성별	남자	3010	2.45	1.084	t=-3.833***	.000
	여자	2839	2.55	1.039		
장애 여부	장애	210	2.39	1.030	t=-1.638	.102
	비장애	5452	2.51	1.060		
경제 수준	최하	10	3.50	1.179	F=8.221***	.000
	하	130	2.67	1.045		
	중간	3026	2.53	1.016		
	상	1840	2.49	1.048		
	최상	772	2.34	1.241		
가정 형태	단일문화가정	5613	2.50	1.062	t=-0.432	.666
	다문화가정	177	2.53	1.113		
학교 유형	초등	1976	2.35	1.435	F=32.391***	.000
	중등	1884	2.53	1.176		
	고등	2054	2.67	1.083		

주. ***p<.001

'타국적 외국인에 대한 혐오'의 심각성에 대한 응답을 성별로 분석한 결과, 여성

집단의 평균치가 남성 집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t =-3.833, p 〈.001). 이는 여자 청소년들이 남자 청소년들에 비해 타국적 외국인에 대한 혐오의 수준을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장애여부별로 분석한 결과, 장애가 없는 집단의 평균치가 장애가 있는 집단보다 더 높았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경제수준별로 분석한 결과, 최하 집단의 평균치가 가장 높았고, 최상 집단의 평균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경제적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타국적 외국인에 대한 혐오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다문화가정 여부에 따라 분석한 결과, 다문화가정의 평균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학교유형별 차이 고학년 집단일수록 타국적 외국에 혐오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2) 타인종 피부색에 따른 혐오의 심각성

'타인종에 대한 혐오'에 대한 응답을 성별로 분석한 결과, 여성 집단의 평균치가 남성 집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이는 여자 청소년들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타인종에 대한 혐오수준이 더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을 반영한다.

장애여부별로 분석한 결과, 장애가 없는 집단의 평균치가 장애가 있는 집단보다 더 높았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경제수준별로 분석한 결과, 최하 집단의 평균치가 가장 높았고, 최상 집단의 평균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경제적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타인종에 대한 혐오가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도 유의미하였다.

다문화가정 여부에 따라 분석한 결과, 다문화가정의 평균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학교유형별 분석에서는 고등학교가 가장 높았고, 학년이 높을수록 타인종에 대한 혐오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표 Ⅳ-32 타인종 피부색에 따른 혐오의 심각성

구분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F* or *t*	유의도
성별	남자	3010	2.46	1.119	t=-5.190***	.000
	여자	2836	2.61	1.090		
장애 여부	장애	210	2.42	1.118	t=-1.552	.121
	비장애	5450	2.54	1.102		
경제 수준	최하	10	3.60	1.265	F=8.784***	.000
	하	129	2.71	1.114		
	중간	3026	2.57	1.063		
	상	1838	2.52	1.097		
	최상	772	2.36	1.257		
가정 형태	단일문화가정	5610	2.53	1.107	t=-0.220	.826
	다문화가정	177	2.55	1.123		
학교 유형	초등	1976	2.35	1.458	F=39.485***	.000
	중등	1884	2.57	1.218		
	고등	2054	2.70	1.135		

주. ***p<.001

(3) 타 종교에 대한 혐오의 심각성

'다른 종교에 대한 혐오'에 대한 응답을 성별로 분석한 결과, 여성 집단의 평균치가 남성 집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즉, 여자 청소년들이 남자 청소년들에 비해 타 종교에 대한 혐오가 더 심각한 수준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장애여부별로 분석한 결과, 장애가 없는 집단의 평균치가 장애가 있는 집단보다 더 높았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경제수준별로 분석한 결과, 최하 집단의 평균치가 가장 높았고, 최상 집단의 평균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경제적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다른 종교에 대한 혐오가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다문화가정 여부에 따라 분석한 결과, 다문화가정의 평균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학교유형별 분석결과는 초등학교와 중등학교는 평균 이하이지만 고등학교는 평균이상으로 나타났다. 즉, 고학년일수록 타종교에 대한 혐오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표 Ⅳ-33 타 종교에 대한 혐오의 심각성

구분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F* or *t*	유의도
성별	남자	3007	2.41	1.109	t=-2.322*	.020
	여자	2834	2.47	1.049		
장애 여부	장애	210	2.41	1.104	t=-0.486	.627
	비장애	5445	2.45	1.075		
경제 수준	최하	10	3.50	1.179	F=10.068***	.000
	하	130	2.70	1.069		
	중간	3024	2.49	1.049		
	상	1835	2.41	1.054		
	최상	771	2.28	1.216		
가정 형태	단일문화가정	5605	2.44	1.077	t=-0.708	.479
	다문화가정	177	2.50	1.144		
학교 유형	초등	1976	2.39	1.482	F=18.011***	.000
	중등	1884	2.43	1.182		
	고등	2054	2.61	1.157		

주. *p<.05, ***p<.001

(4)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의 심각성

‘성 소수자(남녀 이성관계 외 다른 성별에 애정을 느끼는 관계) 대한 혐오’에 대한 응답을 성별로 분석한 결과, 여성 집단의 평균치가 남성 집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이는 대체로 여자 청소년들이 남자 청소년들에 비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수준이 더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장애여부별로 분석한 결과, 장애가 없는 집단의 평균치가 장애가 있는 집단보다 더 높았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경제수준별로 분석한 결과, 최하 집단의 평균치가 가장 높았고, 최상 집단의 평균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경제적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표 Ⅳ-34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의 심각성

구분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F* or *t*	유의도
성별	남자	3009	2.84	1.256	t=-8.156***	.000
	여자	2834	3.06	1.264		
장애 여부	장애	209	2.84	1.298	t=-1.478	.139
	비장애	5448	2.97	1.259		
경제 수준	최하	10	4.00	1.054	F=26.859***	.000
	하	130	3.35	1.268		
	중간	3023	3.02	1.228		
	상	1839	2.99	1.241		
	최상	772	2.55	1.358		
가정 형태	단일문화가정	5607	2.96	1.263	t=1.728	.084
	다문화가정	177	2.79	1.246		
학교 유형	초등	1976	2.50	1.512	F=186.425***	.000
	중등	1884	3.00	1.341		
	고등	2054	3.33	1.267		

주. ***p<.001

다문화가정 여부에 따라 분석한 결과, 단일문화가정의 평균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학교유형별 차이 분석에서는 고등학교가 저학년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세 집단 모두 평균 이상으로 나타나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5) 장애인에 대한 혐오의 심각성

표 Ⅳ-35 장애인에 대한 혐오의 심각성

구분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F* or *t*	유의도
성별	남자	3008	2.42	1.184	t=-8.156***	.000
	여자	2833	2.68	1.198		
장애 여부	장애	210	2.53	1.265	t=-0.340	.734
	비장애	5444	2.56	1.190		
경제 수준	최하	10	3.50	1.080	F=10.550***	.000
	하	130	2.83	1.265		
	중간	3026	2.60	1.152		
	상	1834	2.53	1.194		
	최상	771	2.34	1.316		
가정 형태	단일문화가정	5605	2.55	1.198	t=0.198	.843
	다문화가정	177	2.53	1.138		
학교 유형	초등	1976	2.38	1.542	F=38.107***	.000
	중등	1884	2.59	1.342		
	고등	2054	2.76	1.254		

주. ***p<.001

'장애인에 대한 혐오'에 대한 응답을 성별로 분석한 결과, 여성 집단의 평균치가 남성 집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t =-8.156, p <.001). 이는 여자 청소년들이 남자 청소년들에 비해 장애인에 대한 혐오의 심각성을 더 높게 인식함을 반영하고 있다.

장애여부별로 분석한 결과, 장애가 없는 집단의 평균치가 장애가 있는 집단보다 더 높았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경제수준별로 분석한 결과, 최하 집단의 평균치가 가장 높았고, 최상 집단의 평균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경제적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장애인에 대한 혐오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다문화가정 여부에 따라 분석한 결과, 단일문화가정의 평균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학교유형별 분석에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평균이상으로 나타났으며, 학년이 높을수록 장애인에 대한 혐오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6) 페미니스트에 대한 혐오의 심각성

'페미니스트(남성중심 사회에서 여성이 억압받는 현실에 저항하는 사람)에 대한 혐오'에 대한 응답을 성별로 분석한 결과, 여성 집단의 평균치가 남성 집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여자 청소년들이 남자 청소년들에 비해 페미니스트에 대한 혐오가 더 심각하다고 인식하였다.

장애여부별로 분석한 결과, 장애가 없는 집단의 평균치가 장애가 있는 집단보다 더 높았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경제수준별로 분석한 결과, 최하 집단의 평균치가 가장 높았고, 최상 집단의 평균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경제적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페미니스트에 대한 혐오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다문화가정 여부에 따라 분석한 결과, 단일문화가정의 평균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학교유형별 분석결과는 초등학교는 평균이하인 반면에 중등학교와 고등학교는 높게 나타났으며, 고학년이 될수록 페미니스트에 대한 혐오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표 Ⅳ-36 페미니스트에 대한 혐오의 심각성

구분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F* or *t*	유의도
성별	남자	2994	2.90	1.364	t=-4.108***	.000
	여자	2832	3.04	1.312		
장애 여부	장애	210	2.85	1.357	t=-1.511	.131
	비장애	5433	2.99	1.337		
경제 수준	최하	10	4.20	1.317	F=29.632***	.000
	하	130	3.37	1.382		
	중간	3019	3.07	1.303		
	상	1831	2.97	1.337		
	최상	768	2.54	1.382		
가정 형태	단일문화가정	5592	2.97	1.340	t=0.676	.499
	다문화가정	176	2.90	1.338		
학교 유형	초등	1976	2.46	1.603	F=239.431***	.000
	중등	1884	3.00	1.416		
	고등	2054	3.47	1.356		

주. ***p<.001

(7) 다문화가정에 대한 혐오의 심각성

'다문화가정에 대한 혐오'에 대한 응답을 성별로 분석한 결과, 여성 집단의 평균치가 남성 집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t =-3.839, p 〈.001). 여자 청소년들이 남자 청소년들에 비해 다문화 가정에 대한 혐오의 심각성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장애여부별로 분석한 결과, 장애가 없는 집단의 평균치가 장애가 있는 집단보다 더 높았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경제수준별로 분석한 결과, 최하 집단의 평균치가 가장 높았고, 최상 집단의 평균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경제적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다문화가정에 대한 혐오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다문화가정 여부에 따라 분석한 결과, 단일문화가정의 평균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학교유형별로는 세 집단 모두 다문화가정의 혐오 문제에 대해 평균 이하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학년이 높을수록 다문화가정의 혐오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이해가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

표 Ⅳ-37 다문화가정에 대한 혐오의 심각성

구분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F* or *t*	유의도
성별	남자	3009	2.19	1.099	t=-3.839***	.000
	여자	2836	2.30	1.071		
장애 여부	장애	210	2.20	1.098	t=-0.631	.528
	비장애	5449	2.25	1.084		
경제 수준	최하	10	3.00	1.054	F=3.527**	.007
	하	130	2.34	1.075		
	중간	3029	2.28	1.050		
	상	1836	2.22	1.071		
	최상	770	2.16	1.232		
가정 형태	단일문화가정	5610	2.25	1.085	t=0.223	.824
	다문화가정	176	2.23	1.129		
학교 유형	초등	1976	2.20	1.475	F=13.973***	.000
	중등	1884	2.25	1.209		
	고등	2054	2.41	1.151		

주. **p<.01, ***p<.001

(8) 노인에 대한 혐오의 심각성

표 Ⅳ-38 노인에 대한 혐오의 심각성

구분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F* or *t*	유의도
성별	남자	3009	2.25	1.148	t=-5.239***	.000
	여자	2840	2.40	1.121		
장애 여부	장애	210	2.27	1.144	t=-0.710	.478
	비장애	5452	2.33	1.132		
경제 수준	최하	10	3.30	1.252	F=8.385***	.000
	하	130	2.61	1.151		
	중간	3026	2.36	1.106		
	상	1840	2.29	1.117		
	최상	772	2.18	1.253		
가정 형태	단일문화가정	5613	2.32	1.138	t=-0.064	.949
	다문화가정	177	2.33	1.079		
학교 유형	초등	1976	2.24	1.506	F=17.978***	.000
	중등	1884	2.32	1.239		
	고등	2054	2.49	1.175		

주. ***p<.001

‘노인에 대한 혐오’에 대한 응답을 성별로 분석한 결과, 여성 집단의 평균치가 남성 집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여자 청소년들이 남자 청소년들에 비해 우리사회의 노인혐오 수준이 더 심각하다고 인식하였다.

장애여부별로 분석한 결과, 장애가 없는 집단의 평균치가 장애가 있는 집단보다 더 높았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경제수준별로 분석한 결과, 최하 집단의 평균치가 가장 높았고, 최상 집단의 평균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경제적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노인에 대한 혐오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다문화가정 여부에 따라 분석한 결과, 다문화가정의 평균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학교유형별 분석에서는 노인에 대한 혐오의 심각성에 대해 세 집단 모두 평균이 하로 나타났으며, 다반 고학년이 될수록 노인혐오의 심각성에 대한 이해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

(9) 청소년에 대한 혐오의 심각성

표 Ⅳ-39 청소년에 대한 혐오의 심각성

구분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F* or *t*	유의도
성별	남자	3012	2.22	1.127	t=-2.375*	.018
	여자	2839	2.29	1.103		
장애 여부	장애	210	2.20	1.107	t=-0.753	.452
	비장애	5454	2.26	1.113		
경제 수준	최하	10	2.90	1.197	F=8.700***	.000
	하	130	2.52	1.129		
	중간	3028	2.32	1.097		
	상	1840	2.18	1.071		
	최상	772	2.15	1.245		
가정 형태	단일문화가정	5615	2.26	1.116	t=0.039	.969
	다문화가정	177	2.25	1.081		
학교 유형	초등	1976	2.18	1.460	F=14.200***	.000
	중등	1884	2.30	1.236		
	고등	2054	2.39	1.162		

주. *p<.05, ***p<.001

‘청소년에 대한 혐오’에 대한 응답을 성별로 분석한 결과, 여성 집단의 평균치가 남성 집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장애여부별로 분석한 결과, 장애가 없는 집단의 평균치가 장애가 있는 집단보다 더 높았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경제수준별로 분석한 결과, 최하 집단의 평균치가 가장 높았고, 최상 집단의

평균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경제적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청소년에 대한 혐오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다문화가정 여부에 따라 분석한 결과, 단일화가정의 평균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학교유형별 차이 분석에서는 고등학교 집단이 가장 높게 나왔으나, 세 집단 모두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사회에 청소년혐오가 덜 심각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10) 빈곤층에 대한 혐오의 심각성

표 Ⅳ-40 빈곤층에 대한 혐오의 심각성

구분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F* or *t*	유의도
성별	남자	3005	2.27	1.137	t=-6.915***	.000
	여자	2834	2.48	1.142		
장애 여부	장애	210	2.36	1.154	t=-0.303	.762
	비장애	5443	2.38	1.140		
경제 수준	최하	10	3.00	1.333	F=7.073***	.000
	하	130	2.69	1.238		
	중간	3023	2.40	1.104		
	상	1834	2.37	1.138		
	최상	771	2.22	1.256		
가정 형태	단일문화가정	5603	2.38	1.145	t=0.159	.873
	다문화가정	177	2.36	1.135		
학교 유형	초등	1976	2.32	1.550	F=8.565***	.000
	중등	1884	2.41	1.274		
	고등	2054	2.49	1.190		

주. ***p<.001

'빈곤층에 대한 혐오'에 대한 응답을 성별로 분석한 결과, 여성 집단의 평균치가 남성 집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

미하였다(t =-6.915, p 〈.001). 즉, 여자청소년들이 남자 청소년들에 비해 빈곤층에 대한 우리사회의 혐오가 더 심각하다고 인식하였다.

장애여부별로 분석한 결과, 장애가 없는 집단의 평균치가 장애가 있는 집단보다 더 높았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경제수준별로 분석한 결과, 최하 집단의 평균치가 가장 높았고, 최상 집단의 평균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경제적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빈곤층에 대한 혐오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다문화가정 여부에 따라 분석한 결과, 단일문화가정의 평균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학교유형별 분석에서는 세 집단 모두 빈곤층에 대한 혐오가 평균 이하라고 생각하고 있다. 다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빈곤층의 혐오 문제가 심각함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11) 출신지역에 따른 혐오의 심각성

'지역에 대한 혐오'에 대한 응답을 성별로 분석한 결과, 여성 집단의 평균치가 남성 집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장애여부별로 분석한 결과, 장애가 없는 집단의 평균치가 장애가 있는 집단보다 더 높았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경제수준별로 분석한 결과, 최하 집단의 평균치가 가장 높았고, 최상 집단의 평균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경제적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지역에 대한 혐오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다문화가정 여부에 따라 분석한 결과, 단일문화가정과 다문화가정의 평균치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유형별 분석에서는 세 집단 모두 평균이하로 나타났으며, 다만 고학년이 될수록 우리나라의 출신지역에 따른 혐오 문제가 심각해가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표 Ⅳ-41 출신지역에 따른 혐오의 심각성

구분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F* or *t*	유의도
성별	남자	3011	2.20	1.147	*t*=-1.812	.070
	여자	2837	2.26	1.118		
장애 여부	장애	210	2.16	1.111	*t*=-0.965	.335
	비장애	5452	2.23	1.129		
경제 수준	최하	10	3.00	1.247	*F*=5.514***	.000
	하	130	2.46	1.129		
	중간	3029	2.27	1.113		
	상	1837	2.19	1.106		
	최상	772	2.13	1.239		
가정 형태	단일문화가정	5613	2.23	1.133	*t*=0.030	.976
	다문화가정	177	2.23	1.110		
학교 유형	초등	1976	2.13	1.500	*F*=24.188***	.000
	중등	1884	2.21	1.225		
	고등	2054	2.41	1.200		

주. ***p<.001

(12) 해외이주노동자에 대한 혐오의 심각성

'해외이주노동자 집단에 대한 혐오'에 대한 응답을 성별로 분석한 결과, 여성 집단의 평균치가 남성 집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t =-4.817, p <.001). 이는 여자청소년들이 남자 청소년들에 비해 해외이주노동자에 대한 혐오수준이 더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을 반영한다.

장애여부별로 분석한 결과, 장애가 없는 집단의 평균치가 장애가 있는 집단보다 더 높았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경제수준별로 분석한 결과, 최하 집단의 평균치가 가장 높았고, 최상 집단의 평균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경제적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해외이주노동자 집단에 대한 혐오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다문화가정 여부에 따라 분석한 결과, 단일문화가정의 평균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학교유형별 분석한 결과는 고등학교 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초등학교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해외이주노동자에 대한 혐오 문제가 우리사회에서 심각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표 Ⅳ-42 해외이주노동자에 대한 혐오의 심각성

구분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F* or *t*	유의도
성별	남자	3003	2.33	1.174	t=-4.817***	.000
	여자	2834	2.48	1.160		
장애 여부	장애	210	2.35	1.161	t=-0.775	.438
	비장애	5441	2.41	1.165		
경제 수준	최하	10	3.40	1.578	F=9.477***	.000
	하	130	2.69	1.225		
	중간	3020	2.44	1.126		
	상	1835	2.40	1.170		
	최상	771	2.22	1.276		
가정 형태	단일문화가정	5601	2.41	1.169	t=0.561	.575
	다문화가정	177	2.36	1.179		
학교 유형	초등	1976	2.26	1.540	F=37.207***	.000
	중등	1884	2.42	1.275		
	고등	2054	2.63	1.264		

주. ***p<.001

(13) 국내거주 교포집단에 대한 혐오의 심각성

표 Ⅳ-43 국내거주 교포집단에 대한 혐오의 심각성

구분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F* or *t*	유의도
성별	남자	3007	2.40	1.179	t=-5.149***	.000
	여자	2836	2.56	1.160		
장애 여부	장애	210	2.36	1.214	t=-1.643	.100
	비장애	5447	2.49	1.165		
경제 수준	최하	10	3.30	1.567	F=6.297***	.000
	하	130	2.70	1.179		
	중간	3024	2.51	1.138		
	상	1838	2.48	1.156		
	최상	771	2.32	1.293		
가정 형태	단일문화가정	5607	2.48	1.172	t=0.269	.788
	다문화가정	177	2.46	1.192		
학교 유형	초등	1976	2.35	1.540	F=25.272***	.000
	중등	1884	2.51	1.260		
	고등	2054	2.65	1.219		

주. ***p<.001

‘탈북민 / 고려인 / 국내거주 교포 집단에 대한 혐오’에 대한 응답을 성별로 분석한 결과, 여성 집단의 평균치가 남성 집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이는 여자 청소년들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탈북 및 해외 동포에 대한 혐오수준이 더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장애여부별로 분석한 결과, 장애가 없는 집단의 평균치가 장애가 있는 집단보다 더 높았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경제수준별로 분석한 결과, 최하 집단의 평균치가 가장 높았고, 최상 집단의 평균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경제적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탈북민 / 고려인 / 국내거주 교포 집단에 대한 혐오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다문화가정 여부에 따라 분석한 결과, 단일문화가정의 평균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학교유형별 분석에 따르면 국내거주 교포집단에 대한 혐오 문제에 대해 고등학교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초등학교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14) 근로청소년에 대한 혐오의 심각성

표 Ⅳ-44 근로청소년에 대한 혐오의 심각성

구분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F* or *t*	유의도
성별	남자	3008	2.21	1.112	t=-5.165***	.000
	여자	2829	2.36	1.098		
장애 여부	장애	210	2.20	1.100	t=-1.216	.224
	비장애	5442	2.29	1.106		
경제 수준	최하	10	2.70	1.160	F=3.146*	.014
	하	130	2.42	1.091		
	중간	3025	2.32	1.082		
	상	1834	2.25	1.081		
	최상	768	2.20	1.235		
가정 형태	단일문화가정	5602	2.28	1.106	t=-0.014	.989
	다문화가정	176	2.28	1.105		
학교 유형	초등	1976	2.27	1.545	F=3.160*	.043
	중등	1884	2.35	1.243		
	고등	2054	2.37	1.172		

주. *p<.05, ***p<.001

'근로청소년 집단에 대한 혐오'에 대한 응답을 성별로 분석한 결과, 여성 집단의 평균치가 남성 집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이는 여자 청소년들이 남자 청소년들에 비해 근로청소년에 대한 혐오수준이 더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장애여부별로 분석한 결과, 장애가 없는 집단의 평균치가 장애가 있는 집단보다 더 높았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경제수준별로 분석한 결과, 최하 집단의 평균치가 가장 높았고, 최상 집단의 평균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경제적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근로청소년 집단에 대한 혐오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다문화가정 여부에 따라 분석한 결과, 단일문화가정과 다문화가정의 평균치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유형별 분석 결과는 세 집단 모두 평균이하로 나타났으며, 고학년일수록 근로청소년 집단에 대한 혐오 문제를 더욱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15) 범죄청소년에 대한 혐오의 심각성

'범죄청소년 집단에 대한 혐오'에 대한 응답을 성별로 분석한 결과, 여성 집단의 평균치가 남성 집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이는 여자 청소년들이 남자청소년들에 비해 범죄청소년에 대한 혐오수준이 더 심각하다고 인식함을 반영한다.

장애여부별로 분석한 결과, 장애가 없는 집단의 평균치가 장애가 있는 집단보다 더 높았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경제수준별로 분석한 결과, 최하 집단의 평균치가 가장 높았고, 최상 집단의 평균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경제적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범죄청소년 집단에 대한 혐오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다.

다문화가정 여부에 따라 분석한 결과, 단일문화가정의 평균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학교유형별 분석결과는 초등, 중등, 고등 모든 집단에서 우리사회의 범죄집단에

대한 혐오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더 높은 동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표 Ⅳ-45 범죄청소년에 대한 혐오의 심각성

구분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F* or *t*	유의도
성별	남자	3008	3.06	1.310	t=-4.806***	.000
	여자	2834	3.21	1.198		
장애 여부	장애	208	3.04	1.307	t=-1.231	.218
	비장애	5448	3.15	1.252		
경제 수준	최하	10	3.90	1.101	F=23.385***	.000
	하	130	3.59	1.179		
	중간	3027	3.20	1.216		
	상	1836	3.13	1.238		
	최상	770	2.78	1.395		
가정 형태	단일문화가정	5606	3.14	1.256	t=1.991*	.047
	다문화가정	177	2.95	1.320		
학교 유형	초등	1976	2.88	1.582	F=61.985***	.000
	중등	1884	3.26	1.338		
	고등	2054	3.35	1.257		

주. *p<.05, ***p<.001

4) 소수집단에 대한 혐오 가해수준

우리사회에서 혐오표현의 노출에 취약한 다양한 집단들에 대한 혐오표현 가해의 심각성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수준을 분석하고, 이를 청소년의 배경변인(성별, 장애여부, 경제적 수준, 다문화 가정출신 여부)별 집단 비교를 한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에 대한 혐오 가해수준

'타국적 외국인에 대한 혐오'가 편견, 비난, 모욕, 차별, 폭력 중 어떠한 정도의 수준에서 가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분석한 결과, 편견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차별이었다. 가장 낮은 응답율을 나타낸 것은 폭력이었다.

표 Ⅳ-46 성별 외국인 가해 정도

		남자	여자	전체	x^2	유의도
1.편견	빈도	1756	1545	3301	25.580***	.000
	%	59.6%	55.4%	57.5%		
2.비난	빈도	220	240	460		
	%	7.5%	8.6%	8.0%		
3.모욕	빈도	217	165	382		
	%	7.4%	5.9%	6.7%		
4.차별	빈도	720	818	1538		
	%	24.4%	29.3%	26.8%		
5.폭력	빈도	34	23	57		
	%	1.2%	0.8%	1.0%		
전체	빈도	2947	2791	5738		
	%	100.0%	100.0%	100.0%		

주. ***p<.001

'타국적 외국인에 대한 혐오'가 편견, 비난, 모욕, 차별, 폭력 중 어떠한 정도의 수준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지 성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자 집단에서는 편견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폭력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낮았다. 여자 집단에서도 편견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폭력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낮았다. 하지만, 각 혐오유형별 성별 집단의 응답빈도 차이가 있었는데, 이러한 선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x^2=25.580, p<.001).

'타국적 외국인에 대한 혐오'가 편견, 비난, 모욕, 차별, 폭력 중 어떠한 정도의 수준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지 장애여부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장애가 있는 집단에서는 편견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폭력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낮았다. 장애가 없는 집단에서도 편견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폭력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낮았다. 그러나 이러한 혐오유형별 집단 선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타국적 외국인에 대한 혐오'가 편견, 비난, 모욕, 차별, 폭력 중 어떠한 정도의 수준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지 경제수준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모든 집단에서 편견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폭력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낮았다. 그리고 혐오유형별 집단 선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Ⅳ-47 장애여부별 외국인 가해 정도

		장애	비장애	전체	x^2	유의도
1.편견	빈도	121	3088	3209	1.383	.847
	%	57.9%	57.6%	57.7%		
2.비난	빈도	15	430	445		
	%	7.2%	8.0%	8.0%		
3.모욕	빈도	11	354	365		
	%	5.3%	6.6%	6.6%		
4.차별	빈도	59	1434	1493		
	%	28.2%	26.8%	26.8%		
5.폭력	빈도	3	51	54		
	%	1.4%	1.0%	1.0%		
전체	빈도	209	5357	5566		
	%	100.0%	100.0%	100.0%		

표 Ⅳ-48 경제수준별 외국인 가해 정도

		최하	하	중간	상	최상	전체	x^2	유의도
1.편견	빈도	5	76	1697	1073	419	3270	12.357	.719
	%	50.0%	58.9%	57.1%	59.1%	55.9%	57.6%		
2.비난	빈도	1	7	243	144	57	452		
	%	10.0%	5.4%	8.2%	7.9%	7.6%	8.0%		
3.모욕	빈도	1	7	197	126	46	377		
	%	10.0%	5.4%	6.6%	6.9%	6.1%	6.6%		
4.차별	빈도	3	38	811	457	214	1523		
	%	30.0%	29.5%	27.3%	25.2%	28.6%	26.8%		
5.폭력	빈도	0	1	26	15	13	55		
	%	0.0%	0.8%	0.9%	0.8%	1.7%	1.0%		
전체	빈도	10	129	2974	1815	749	5677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Ⅳ-49 다문화가정 여부별 외국인 가해 정도

		단일문화가정	다문화가정	전체	x^2	유의도
1.편견	빈도	3184	89	3273	4.921	.295
	%	57.8%	51.1%	57.6%		
2.비난	빈도	435	17	452		
	%	7.9%	9.8%	8.0%		
3.모욕	빈도	361	16	377		
	%	6.6%	9.2%	6.6%		
4.차별	빈도	1478	49	1527		
	%	26.8%	28.2%	26.9%		
5.폭력	빈도	53	3	56		
	%	1.0%	1.7%	1.0%		
전체	빈도	5511	174	5685		
	%	100.0%	100.0%	100.0%		

'타국적 외국인에 대한 혐오'가 편견, 비난, 모욕, 차별, 폭력 중 어떠한 정도의 수준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지 다문화가정 여부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단일문화가정 집단에서는 편견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폭력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낮았다. 다문화가정 집단에서도 편견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폭력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낮았다. 그리고 이러한 혐오유형별 집단 선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2) 타인종에 대한 혐오 가해수준

'타인종에 대한 혐오'가 편견, 비난, 모욕, 차별, 폭력 중 어떠한 정도의 수준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지 분석한 결과, 편견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차별이었다. 가장 낮은 응답율을 나타낸 것은 폭력이었다.

'타인종에 대한 혐오'가 편견, 비난, 모욕, 차별, 폭력 중 어떠한 정도의 수준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지 성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자 집단에서는 편견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폭력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낮았다. 여자 집단에서도 편견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폭력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낮았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의 성별 빈도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x^2=36.695, p<.001).

표 Ⅳ-50 성별 타인종 가해 정도

		남자	여자	전체	x^2	유의도
1.편견	빈도	1664	1416	3080	36.695***	.000
	%	56.6%	50.8%	53.7%		
2.비난	빈도	255	259	514		
	%	8.7%	9.3%	9.0%		
3.모욕	빈도	244	187	431		
	%	8.3%	6.7%	7.5%		
4.차별	빈도	745	892	1637		
	%	25.3%	32.0%	28.6%		
5.폭력	빈도	34	35	69		
	%	1.2%	1.3%	1.2%		
전체	빈도	2942	2789	5731		
	%	100.0%	100.0%	100.0%		

주. ***p<.001

표 Ⅳ-51 장애여부별 타인종 가해 정도

		장애	비장애	전체	x^2	유의도
1.편견	빈도	106	2884	2990	3.525	.474
	%	51.0%	53.9%	53.8%		
2.비난	빈도	21	478	499		
	%	10.1%	8.9%	9.0%		
3.모욕	빈도	14	395	409		
	%	6.7%	7.4%	7.4%		
4.차별	빈도	62	1533	1595		
	%	29.8%	28.6%	28.7%		
5.폭력	빈도	5	61	66		
	%	2.4%	1.1%	1.2%		
전체	빈도	208	5351	5559		
	%	100.0%	100.0%	100.0%		

'타인종에 대한 혐오'가 편견, 비난, 모욕, 차별, 폭력 중 어떠한 정도의 수준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지 장애여부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장애가 있는 집단에서는 편견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폭력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낮았다. 장애가 없는 집단에서도 편견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폭력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낮았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의 장애여부별 빈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타인종에 대한 혐오'가 편견, 비난, 모욕, 차별, 폭력 중 어떠한 정도의 수준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지 경제수준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최하 집단에서는 차별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비난에 대한 응답이 가장 낮았다. 하 집단, 중간 집단, 상 집단, 최상 집단에서 모두 편견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폭력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낮았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의 경제수준별 빈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Ⅳ-52 경제수준별 타인종 가해 정도

		최하	하	중간	상	최상	전체	x^2	유의도
1.편견	빈도	3	68	1573	997	408	3049	16.446	.422
	%	30.0%	52.7%	53.0%	54.9%	54.5%	53.8%		
2.비난	빈도	0	11	275	153	67	506		
	%	0.0%	8.5%	9.3%	8.4%	9.0%	8.9%		
3.모욕	빈도	1	14	216	141	55	427		
	%	10.0%	10.9%	7.3%	7.8%	7.4%	7.5%		
4.차별	빈도	5	35	870	504	207	1621		
	%	50.0%	27.1%	29.3%	27.8%	27.7%	28.6%		
5.폭력	빈도	1	1	34	20	11	67		
	%	10.0%	0.8%	1.1%	1.1%	1.5%	1.2%		
전체	빈도	10	129	2968	1815	748	567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Ⅳ-53 다문화가정여부별 타인종 가해 정도

		단일문화가정	다문화가정	전체	x^2	유의도
1.편견	빈도	2970	84	3054	6.049	.195
	%	54.0%	48.3%	53.8%		
2.비난	빈도	481	24	505		
	%	8.7%	13.8%	8.9%		
3.모욕	빈도	414	12	426		
	%	7.5%	6.9%	7.5%		
4.차별	빈도	1573	52	1625		
	%	28.6%	29.9%	28.6%		
5.폭력	빈도	66	2	68		
	%	1.2%	1.1%	1.2%		
전체	빈도	5504	174	5678		
	%	100.0%	100.0%	100.0%		

'타인종에 대한 혐오'가 편견, 비난, 모욕, 차별, 폭력 중 어떠한 정도의 수준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지 다문화가정 여부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단일문화가정 집단에서는 편견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폭력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낮았다. 다문화가정 집단에서도 편견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폭력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낮았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의 다문화 가정 여부별 빈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3) 다른 종교에 대한 혐오 가해수준

'다른 종교에 대한 혐오'가 편견, 비난, 모욕, 차별, 폭력 중 어떠한 정도의 수준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지 분석한 결과, 편견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비난이었다. 가장 낮은 응답율을 나타낸 것은 폭력이었다.

표 Ⅳ-54 성별 타종교 가해 정도

		남자	여자	전체	x^2	유의도
1.편견	빈도	1409	1170	2579	44.687***	.000
		48.0%	42.0%	45.1%		
2.비난	빈도	706	886	1592		
		24.1%	31.8%	27.8%		
3.모욕	빈도	330	288	618		
		11.2%	10.3%	10.8%		
4.차별	빈도	460	418	878		
		15.7%	15.0%	15.4%		
5.폭력	빈도	29	21	50		
		1.0%	0.8%	0.9%		
전체	빈도	2934	2783	5717		
		100.0%	100.0%	100.0%		

주. ***p<.001

'다른 종교에 대한 혐오'가 편견, 비난, 모욕, 차별, 폭력 중 어떠한 정도의 수준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지 성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자 집단에서는 편견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폭력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낮았다. 여자 집단에서도 편견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폭력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낮았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의 성별 빈도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x^2=44.687, p<.001).

'다른 종교에 대한 혐오'가 편견, 비난, 모욕, 차별, 폭력 중 어떠한 정도의 수준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지 장애여부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장애가 있는 집단에서는 편견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폭력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낮았다. 장애가 없는 집단에서도 편견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폭력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낮았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의 장애여부별 집단의 빈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표 Ⅳ-55 장애여부별 타종교 가해 정도

		장애	비장애	전체	x^2	유의도
1.편견	빈도	85	2404	2489	2.015	.733
	%	40.7%	45.1%	44.9%		
2.비난	빈도	60	1500	1560		
	%	28.7%	28.1%	28.1%		
3.모욕	빈도	25	578	603		
	%	12.0%	10.8%	10.9%		
4.차별	빈도	37	807	844		
	%	17.7%	15.1%	15.2%		
5.폭력	빈도	2	47	49		
	%	1.0%	0.9%	0.9%		
전체	빈도	209	5336	5545		
	%	100.0%	100.0%	100.0%		

표 Ⅳ-56 경제수준별 타종교 가해 정도

		최하	하	중간	상	최상	전체	x^2	유의도
1.편견	빈도	2	48	1299	823	380	2552	40.218**	.001
	%	20.0%	37.2%	43.9%	45.5%	50.9%	45.1%		
2.비난	빈도	5	43	864	503	161	1576		
	%	50.0%	33.3%	29.2%	27.8%	21.6%	27.9%		
3.모욕	빈도	1	21	315	211	64	612		
	%	10.0%	16.3%	10.6%	11.7%	8.6%	10.8%		
4.차별	빈도	2	16	459	258	133	868		
	%	20.0%	12.4%	15.5%	14.3%	17.8%	15.3%		
5.폭력	빈도	0	1	24	15	9	49		
	%	0.0%	0.8%	0.8%	0.8%	1.2%	0.9%		
전체	빈도	10	129	2961	1810	747	5657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p<.01$

'다른 종교에 대한 혐오'가 편견, 비난, 모욕, 차별, 폭력 중 어떠한 정도의 수준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지 경제수준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최하 집단에서는 비난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폭력에 대한 응답이 가장 낮았다. 하 집단, 중간 집단, 상 집단, 최상 집단에서 모두 편견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폭력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낮았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의 경제수준별 빈도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x^2=40.218, p<.01).

표 Ⅳ-57 다문화가정여부별 타종교 가해 정도

		단일문화가정	다문화가정	전체	x^2	유의도
1.편견	빈도	2487	67	2554	7.409	.116
	%	45.3%	38.5%	45.1%		
2.비난	빈도	1523	53	1576		
	%	27.7%	30.5%	27.8%		
3.모욕	빈도	589	23	612		
	%	10.7%	13.2%	10.8%		
4.차별	빈도	846	27	873		
	%	15.4%	15.5%	15.4%		
5.폭력	빈도	45	4	49		
	%	0.8%	2.3%	0.9%		
전체	빈도	5490	174	5664		
	%	100.0%	100.0%	100.0%		

'다른 종교에 대한 혐오'가 편견, 비난, 모욕, 차별, 폭력 중 어떠한 정도의 수준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지 다문화가정 여부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단일문화가정 집단에서는 편견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폭력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낮았다. 다문화가정 집단에서도 편견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폭력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낮았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의 빈도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4)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 가해수준

'성 소수자(남녀 이성관계 외 다른 성별에 애정을 느끼는 관계) 대한 혐오'가 편견, 비난, 모욕, 차별, 폭력 중 어떠한 정도의 수준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지 분석한 결과, 편견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비난이었다. 가장 낮은 응답율을 나타낸 것은 폭력이었다.

표 Ⅳ-58 성별 성소수자에 대한 가해 정도

		남자	여자	전체	x^2	유의도
1.편견	빈도	1217	944	2161	50.055***	.000
	%	41.4%	34.0%	37.8%		
2.비난	빈도	683	788	1471		
	%	23.2%	28.4%	25.7%		
3.모욕	빈도	416	458	874		
	%	14.2%	16.5%	15.3%		
4.차별	빈도	555	487	1042		
	%	18.9%	17.5%	18.2%		
5.폭력	빈도	67	99	166		
	%	2.3%	3.6%	2.9%		
전체	빈도	2938	2776	5714		
	%	100.0%	100.0%	100.0%		

주. ***p<.001

'성 소수자(남녀 이성관계 외 다른 성별에 애정을 느끼는 관계) 대한 혐오'가 편견, 비난, 모욕, 차별, 폭력 중 어떠한 정도의 수준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지 성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자 집단에서는 편견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폭력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낮았다. 여자 집단에서도 편견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폭력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낮았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의 성별 빈도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x^2=50.055, p<.001).

표 Ⅳ-59 장애여부별 성소수자에 대한 가해 정도

		장애	비장애	전체	x^2	유의도
1.편견	빈도	66	2015	2081	4.453	.348
	%	31.9%	37.8%	37.5%		
2.비난	빈도	55	1389	1444		
	%	26.6%	26.0%	26.1%		
3.모욕	빈도	37	814	851		
	%	17.9%	15.3%	15.4%		
4.차별	빈도	40	966	1006		
	%	19.3%	18.1%	18.1%		
5.폭력	빈도	9	152	161		
	%	4.3%	2.8%	2.9%		
전체	빈도	207	5336	5543		
	%	100.0%	100.0%	100.0%		

‘성 소수자(남녀 이성관계 외 다른 성별에 애정을 느끼는 관계) 대한 혐오’가 편견, 비난, 모욕, 차별, 폭력 중 어떠한 정도의 수준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지 장애여부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장애가 있는 집단에서는 편견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폭력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낮았다. 장애가 없는 집단에서도 편견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폭력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낮았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의 집단별 진도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성 소수자(남녀 이성관계 외 다른 성별에 애정을 느끼는 관계) 대한 혐오’가 편견, 비난, 모욕, 차별, 폭력 중 어떠한 정도의 수준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지 경제수준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최하 집단의 경우 편견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모욕, 차별, 폭력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낮았다. 하 집단에서는 비난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폭력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낮았다. 중간 집단, 상 집단, 최상 집단에서는 편견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폭력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낮았다. 이러한 선택의 집단별 빈도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x^2=38.400, p<.01).

‘성 소수자(남녀 이성관계 외 다른 성별에 애정을 느끼는 관계) 대한 혐오’가

편견, 비난, 모욕, 차별, 폭력 중 어떠한 정도의 수준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지 다문화가정 여부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단일문화가정 집단에서는 편견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폭력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낮았다. 다문화가정 집단에서도 편견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폭력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낮았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의 집단별 빈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표 Ⅳ-60 경제수준별 성소수자에 대한 가해 정도

		최하	하	중간	상	최상	전체	x^2	유의도
1.편견	빈도	4	32	1115	662	327	2140	38.400**	.001
	%	40.0%	25.0%	37.7%	36.5%	44.0%	37.8%		
2.비난	빈도	3	40	757	481	178	1459		
	%	30.0%	31.3%	25.6%	26.5%	23.9%	25.8%		
3.모욕	빈도	1	22	453	306	82	864		
	%	10.0%	17.2%	15.3%	16.9%	11.0%	15.3%		
4.차별	빈도	1	30	559	308	131	1029		
	%	10.0%	23.4%	18.9%	17.0%	17.6%	18.2%		
5.폭력	빈도	1	4	75	58	26	164		
	%	10.0%	3.1%	2.5%	3.2%	3.5%	2.9%		
전체	빈도	10	128	2959	1815	744	5656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p<.01$

표 Ⅳ-61 다문화가정여부별 성소수자에 대한 가해 정도

		단일문화가정	다문화가정	전체	x^2	유의도
1.편견	빈도	2077	64	2141	4.011	.404
	%	37.8%	37.0%	37.8%		
2.비난	빈도	1411	49	1460		
	%	25.7%	28.3%	25.8%		
3.모욕	빈도	835	32	867		
	%	15.2%	18.5%	15.3%		
4.차별	빈도	1007	23	1030		
	%	18.3%	13.3%	18.2%		
5.폭력	빈도	159	5	164		
	%	2.9%	2.9%	2.9%		
전체	빈도	5489	173	5662		
	%	100.0%	100.0%	100.0%		

(5) 장애인에 대한 혐오 가해수준

'장애인에 대한 혐오'가 편견, 비난, 모욕, 차별, 폭력 중 어떠한 정도의 수준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지 분석한 결과, 편견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차별이었다. 가장 낮은 응답율을 나타낸 것은 폭력이었다.

표 Ⅳ-62 성별 장애인에 대한 가해 정도

		남자	여자	전체	x^2	유의도
1.편견	빈도	1525	1194	2719	61.032***	.000
	%	52.0%	42.8%	47.5%		
2.비난	빈도	263	261	524		
	%	9.0%	9.4%	9.2%		
3.모욕	빈도	303	281	584		
	%	10.3%	10.1%	10.2%		
4.차별	빈도	782	980	1762		
	%	26.6%	35.1%	30.8%		
5.폭력	빈도	62	75	137		
	%	2.1%	2.7%	2.4%		
전체	빈도	2935	2791	5726		
	%	100.0%	100.0%	100.0%		

주. ***p<.001

'장애인에 대한 혐오'가 편견, 비난, 모욕, 차별, 폭력 중 어떠한 정도의 수준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지 성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자 집단에서는 편견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폭력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낮았다. 여자 집단에서도 편견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폭력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낮았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의 성별 집단 빈도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x^2=61.032, p<.001).

표 Ⅳ-63 장애여부별 장애인에 대한 가해 정도

		장애	비장애	전체	x^2	유의도
1.편견	빈도	94	2545	2639	5.560	.235
	%	45.4%	47.6%	47.5%		
2.비난	빈도	18	488	506		
	%	8.7%	9.1%	9.1%		
3.모욕	빈도	19	550	569		
	%	9.2%	10.3%	10.2%		
4.차별	빈도	66	1640	1706		
	%	31.9%	30.7%	30.7%		
5.폭력	빈도	10	126	136		
	%	4.8%	2.4%	2.4%		
전체	빈도	207	5349	5556		
	%	100.0%	100.0%	100.0%		

'장애인에 대한 혐오'가 편견, 비난, 모욕, 차별, 폭력 중 어떠한 정도의 수준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지 장애여부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장애가 있는 집단에서는 편견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폭력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낮았다. 장애가 없는 집단에서도 편견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폭력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낮았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의 장애여부별 집단 빈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장애인에 대한 혐오'가 편견, 비난, 모욕, 차별, 폭력 중 어떠한 정도의 수준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지 경제수준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최하 집단에서는 편견, 모욕, 차별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비난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낮았다. 하 집단, 중간 집단, 상 집단, 최상 집단에서는 편견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폭력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낮았다. 이러한 선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x^2=39.017, p<.01).

표 Ⅳ-64 경제수준별 장애인에 대한 가해 정도

		최하	하	중간	상	최상	전체	x^2	유의도
1.편견	빈도	3	47	1369	897	372	2688	39.017**	.001
	%	30.0%	36.4%	46.2%	49.4%	49.7%	47.4%		
2.비난	빈도	0	22	265	159	73	519		
	%	0.0%	17.1%	8.9%	8.8%	9.8%	9.2%		
3.모욕	빈도	3	10	318	184	63	578		
	%	30.0%	7.8%	10.7%	10.1%	8.4%	10.2%		
4.차별	빈도	3	45	925	550	222	1745		
	%	30.0%	34.9%	31.2%	30.3%	29.7%	30.8%		
5.폭력	빈도	1	5	84	27	18	135		
	%	10.0%	3.9%	2.8%	1.5%	2.4%	2.4%		
전체	빈도	10	129	2961	1817	748	5665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p<.01$

표 Ⅳ-65 다문화가정여부별 장애인에 대한 가해 정도

		단일문화가정	다문화가정	전체	x^2	유의도
1.편견	빈도	2619	74	2693	8.366	.079
	%	47.6%	42.3%	47.5%		
2.비난	빈도	492	26	518		
	%	8.9%	14.9%	9.1%		
3.모욕	빈도	559	21	580		
	%	10.2%	12.0%	10.2%		
4.차별	빈도	1698	50	1748		
	%	30.9%	28.6%	30.8%		
5.폭력	빈도	131	4	135		
	%	2.4%	2.3%	2.4%		
전체	빈도	5499	175	5674		
	%	100.0%	100.0%	100.0%		

'장애인에 대한 혐오'가 편견, 비난, 모욕, 차별, 폭력 중 어떠한 정도의 수준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지 다문화가정 여부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단일문화가정 집단에서는 편견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폭력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낮았다. 다문화가정 집단에서도 편견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폭력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낮았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의 다문화 가정 여부별 빈도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6) 페미니스트에 대한 혐오 가해수준

'페미니스트에 대한 혐오'가 편견, 비난, 모욕, 차별, 폭력 중 어떠한 정도의 수준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지 분석한 결과, 비난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편견이었다. 가장 낮은 응답율을 나타낸 것은 폭력이었다.

표 Ⅳ-66 성별 페미니스트에 대한 가해 정도

		남자	여자	전체	x^2	유의도
1.편견	빈도	1005	820	1825	24.745***	.000
	%	34.3%	29.5%	32.0%		
2.비난	빈도	927	958	1885		
	%	31.7%	34.4%	33.0%		
3.모욕	빈도	429	440	869		
	%	14.7%	15.8%	15.2%		
4.차별	빈도	457	414	871		
	%	15.6%	14.9%	15.3%		
5.폭력	빈도	108	150	258		
	%	3.7%	5.4%	4.5%		
전체	빈도	2926	2782	5708		
	%	100.0%	100.0%	100.0%		

주. ***$p<.001$

'페미니스트에 대한 혐오'가 편견, 비난, 모욕, 차별, 폭력 중 어떠한 정도의 수준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지 성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자 집단에서는 편견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폭력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낮았다. 여자 집단에서는 비난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폭력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낮았다. 이러한 선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x^2=24.745, $p<.001$).

표 Ⅳ-67 장애여부별 페미니스트에 대한 가해 정도

		장애	비장애	전체	x^2	유의도
1.편견	빈도	67	1686	1753	5.922	.205
	%	32.7%	31.6%	31.7%		
2.비난	빈도	62	1788	1850		
	%	30.2%	33.5%	33.4%		
3.모욕	빈도	28	818	846		
	%	13.7%	15.3%	15.3%		
4.차별	빈도	32	802	834		
	%	15.6%	15.0%	15.1%		
5.폭력	빈도	16	238	254		
	%	7.8%	4.5%	4.6%		
전체	빈도	205	5332	5537		
	%	100.0%	100.0%	100.0%		

‘페미니스트에 대한 혐오’가 편견, 비난, 모욕, 차별, 폭력 중 어떠한 정도의 수준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지 장애여부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장애가 있는 집단에서는 편견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폭력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낮았다. 장애가 없는 집단에서는 비난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폭력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낮았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의 집단별 빈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페미니스트에 대한 혐오’가 편견, 비난, 모욕, 차별, 폭력 중 어떠한 정도의 수준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지 경제수준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최하 집단에서는 모욕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편견, 폭력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낮았다. 하 집단, 중간 집단, 상 집단에서는 비난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폭력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낮았다. 최상 집단에서는 편견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폭력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낮았다. 이러한 선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x^2=67.524, p<.001).

표 Ⅳ-68 경제수준별 페미니스트에 대한 가해 정도

		최하	하	중간	상	최상	전체	x^2	유의도
1.편견	빈도	1	24	888	572	316	1801	67.524***	.000
	%	10.0%	18.6%	30.0%	31.7%	42.4%	31.9%		
2.비난	빈도	2	57	1008	606	199	1872		
	%	20.0%	44.2%	34.0%	33.6%	26.7%	33.1%		
3.모욕	빈도	4	15	463	281	94	857		
	%	40.0%	11.6%	15.6%	15.6%	12.6%	15.2%		
4.차별	빈도	2	24	466	264	107	863		
	%	20.0%	18.6%	15.7%	14.7%	14.3%	15.3%		
5.폭력	빈도	1	9	137	79	30	256		
	%	10.0%	7.0%	4.6%	4.4%	4.0%	4.5%		
전체	빈도	10	129	2962	1802	746	5649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p<.001

표 Ⅳ-69 다문화가정여부별 페미니스트에 대한 가해 정도

		단일문화가정	다문화가정	전체	x^2	유의도
1.편견	빈도	1752	50	1802	2.723	.605
	%	32.0%	28.7%	31.9%		
2.비난	빈도	1815	60	1875		
	%	33.1%	34.5%	33.1%		
3.모욕	빈도	831	33	864		
	%	15.2%	19.0%	15.3%		
4.차별	빈도	838	23	861		
	%	15.3%	13.2%	15.2%		
5.폭력	빈도	247	8	255		
	%	4.5%	4.6%	4.5%		
전체	빈도	5483	174	5657		
	%	100.0%	100.0%	100.0%		

‘페미니스트에 대한 혐오’가 편견, 비난, 모욕, 차별, 폭력 중 어떠한 정도의 수준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지 다문화가정 여부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단일문화가정 집단에서는 비난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폭력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낮았다. 다문화가정 집단에서도 비난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폭력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낮았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의 집단별 빈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7) 다문화가정에 대한 혐오 가해수준

'다문화가정에 대한 혐오'가 편견, 비난, 모욕, 차별, 폭력 중 어떠한 정도의 수준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지 분석한 결과, 편견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차별이었다. 가장 낮은 응답율을 나타낸 것은 폭력이었다.

표 Ⅳ-70 성별 다문화가정에 대한 가해 정도

		남자	여자	전체	x^2	유의도
1.편견	빈도	1788	1542	3330	45.500***	.000
	%	60.9%	55.3%	58.2%		
2.비난	빈도	228	216	444		
	%	7.8%	7.8%	7.8%		
3.모욕	빈도	260	200	460		
	%	8.9%	7.2%	8.0%		
4.차별	빈도	631	807	1438		
	%	21.5%	29.0%	25.1%		
5.폭력	빈도	30	21	51		
	%	1.0%	0.8%	0.9%		
전체	빈도	2937	2786	5723		
	%	100.0%	100.0%	100.0%		

주. ***p<.001

'다문화가정에 대한 혐오'가 편견, 비난, 모욕, 차별, 폭력 중 어떠한 정도의 수준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지 성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자 집단에서는 편견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폭력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낮았다. 여자 집단에서도 편견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폭력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낮았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의 집단별 빈도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x^2=45.500, p<.001).

표 Ⅳ-71 장애여부별 다문화가정에 대한 가해 정도

		장애	비장애	전체	x^2	유의도
1.편견	빈도	114	3121	3235	6.493	.165
	%	55.1%	58.4%	58.3%		
2.비난	빈도	21	407	428		
	%	10.1%	7.6%	7.7%		
3.모욕	빈도	10	436	446		
	%	4.8%	8.2%	8.0%		
4.차별	빈도	59	1334	1393		
	%	28.5%	25.0%	25.1%		
5.폭력	빈도	3	47	50		
	%	1.4%	0.9%	0.9%		
전체	빈도	207	5345	5552		
	%	100.0%	100.0%	100.0%		

'다문화가정에 대한 혐오'가 편견, 비난, 모욕, 차별, 폭력 중 어떠한 정도의 수준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지 장애여부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장애가 있는 집단에서는 편견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폭력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낮았다. 장애가 없는 집단에서도 편견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폭력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낮았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의 집단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혐오'가 편견, 비난, 모욕, 차별, 폭력 중 어떠한 정도의 수준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지 경제수준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최하 집단에서는 차별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비난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낮았다. 하 집단, 중간 집단, 상 집단, 최상 집단에서는 편견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폭력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낮았다. 이러한 선택의 집단별 빈도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x^2=38.964, p<.001).

표 Ⅳ-72 경제수준별 다문화가정에 대한 가해 정도

		최하	하	중간	상	최상	전체	x^2	유의도
1.편견	빈도	3	73	1714	1102	405	3297	38.964**	.001
	%	30.0%	56.6%	57.9%	60.7%	54.1%	58.2%		
2.비난	빈도	0	16	228	121	70	435		
	%	0.0%	12.4%	7.7%	6.7%	9.3%	7.7%		
3.모욕	빈도	2	11	229	158	54	454		
	%	20.0%	8.5%	7.7%	8.7%	7.2%	8.0%		
4.차별	빈도	4	29	765	419	210	1427		
	%	40.0%	22.5%	25.8%	23.1%	28.0%	25.2%		
5.폭력	빈도	1	0	24	15	10	50		
	%	10.0%	0.0%	0.8%	0.8%	1.3%	0.9%		
전체	빈도	10	129	2960	1815	749	5663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p<.01$

표 Ⅳ-73 다문화가정여부별 다문화가정에 대한 가해 정도

		단일문화가정	다문화가정	전체	x^2	유의도
1.편견	빈도	3204	99	3303	1.208	.877
	%	58.3%	56.9%	58.2%		
2.비난	빈도	423	15	438		
	%	7.7%	8.6%	7.7%		
3.모욕	빈도	437	17	454		
	%	7.9%	9.8%	8.0%		
4.차별	빈도	1385	42	1427		
	%	25.2%	24.1%	25.2%		
5.폭력	빈도	49	1	50		
	%	0.9%	0.6%	0.9%		
전체	빈도	5498	174	5672		
	%	100.0%	100.0%	100.0%		

'다문화가정에 대한 혐오'가 편견, 비난, 모욕, 차별, 폭력 중 어떠한 정도의 수준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지 다문화가정 여부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단일문화가정 집단에서는 편견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폭력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낮았다. 다문화가정 집단에서도 편견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폭력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낮았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의 집단별 빈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8) 노인에 대한 혐오 가해수준

'노인에 대한 혐오'가 편견, 비난, 모욕, 차별, 폭력 중 어떠한 정도의 수준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지 분석한 결과, 편견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비난이었다. 가장 낮은 응답율을 나타낸 것은 폭력이었다.

표 Ⅳ-74 성별 노인에 대한 가해 정도

		남자	여자	전체	x^2	유의도
1.편견	빈도	1691	1362	3053	51.390***	.000
	%	57.4%	48.8%	53.2%		
2.비난	빈도	438	495	933		
	%	14.9%	17.7%	16.3%		
3.모욕	빈도	384	396	780		
	%	13.0%	14.2%	13.6%		
4.차별	빈도	378	447	825		
	%	12.8%	16.0%	14.4%		
5.폭력	빈도	53	92	145		
	%	1.8%	3.3%	2.5%		
전체	빈도	2944	2792	5736		
	%	100.0%	100.0%	100.0%		

주. ***p<.001

'노인에 대한 혐오'가 편견, 비난, 모욕, 차별, 폭력 중 어떠한 정도의 수준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지 성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자 집단에서는 편견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폭력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낮았다. 여자 집단에서도 편견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폭력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낮았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의 성별 집단의 빈도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x^2=51.390,

p<.001).

표 Ⅳ-75 장애여부별 노인에 대한 가해 정도

		장애	비장애	전체	x^2	유의도
1.편견	빈도	105	2850	2955	1.284	.864
	%	50.5%	53.2%	53.1%		
2.비난	빈도	37	876	913		
	%	17.8%	16.3%	16.4%		
3.모욕	빈도	27	737	764		
	%	13.0%	13.8%	13.7%		
4.차별	빈도	34	760	794		
	%	16.3%	14.2%	14.3%		
5.폭력	빈도	5	135	140		
	%	2.4%	2.5%	2.5%		
전체	빈도	208	5358	5566		
	%	100.0%	100.0%	100.0%		

‘노인에 대한 혐오’가 편견, 비난, 모욕, 차별, 폭력 중 어떠한 정도의 수준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지 장애여부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장애가 있는 집단에서는 편견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폭력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낮았다. 장애가 없는 집단에서도 편견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폭력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낮았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의 집단별 빈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노인에 대한 혐오’가 편견, 비난, 모욕, 차별, 폭력 중 어떠한 정도의 수준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지 경제수준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최하 집단에서는 모욕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폭력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낮았다. 하 집단, 중간 집단, 상 집단, 최상 집단에서는 편견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폭력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낮았다. 이러한 선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x^2=43.800, p<.001).

표 Ⅳ-76 경제수준별 노인에 대한 가해 정도

		최하	하	중간	상	최상	전체	x^2	유의도
1.편견	빈도	2	58	1535	1027	395	3017	43.800***	.000
	%	20.0%	45.0%	51.7%	56.6%	52.5%	53.2%		
2.비난	빈도	3	31	512	259	119	924		
	%	30.0%	24.0%	17.2%	14.3%	15.8%	16.3%		
3.모욕	빈도	4	25	407	245	91	772		
	%	40.0%	19.4%	13.7%	13.5%	12.1%	13.6%		
4.차별	빈도	1	9	443	244	124	821		
	%	10.0%	7.0%	14.9%	13.4%	16.5%	14.5%		
5.폭력	빈도	0	6	72	41	23	142		
	%	0.0%	4.7%	2.4%	2.3%	3.1%	2.5%		
전체	빈도	10	129	2969	1816	752	5676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p<.001

표 Ⅳ-77 다문화가정여부별 노인에 대한 가해 정도

		단일문화가정	다문화가정	전체	x^2	유의도
1.편견	빈도	2933	91	3024	4.297	.367
	%	53.2%	52.6%	53.2%		
2.비난	빈도	893	31	924		
	%	16.2%	17.9%	16.3%		
3.모욕	빈도	746	29	775		
	%	13.5%	16.8%	13.6%		
4.차별	빈도	802	17	819		
	%	14.6%	9.8%	14.4%		
5.폭력	빈도	138	5	143		
	%	2.5%	2.9%	2.5%		
전체	빈도	5512	173	5685		
	%	100.0%	100.0%	100.0%		

‘노인에 대한 혐오’가 편견, 비난, 모욕, 차별, 폭력 중 어떠한 정도의 수준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지 다문화가정 여부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단일문화가정 집단에서는 편견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폭력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낮았다. 다문화가정 집단에서도 편견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폭력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낮았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의 집단별 빈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9) 청소년에 대한 혐오 가해수준

'청소년에 대한 혐오'가 편견, 비난, 모욕, 차별, 폭력 중 어떠한 정도의 수준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지 분석한 결과, 편견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비난이었다. 가장 낮은 응답율을 나타낸 것은 폭력이었다.

표 Ⅳ-78 성별 청소년에 대한 가해 정도

		남자	여자	전체	x^2	유의도
1.편견	빈도	1719	1486	3205	21.301***	.000
	%	58.4%	53.3%	55.9%		
2.비난	빈도	443	493	936		
	%	15.0%	17.7%	16.3%		
3.모욕	빈도	307	278	585		
	%	10.4%	10.0%	10.2%		
4.차별	빈도	381	441	822		
	%	12.9%	15.8%	14.3%		
5.폭력	빈도	95	92	187		
	%	3.2%	3.3%	3.3%		
전체	빈도	2945	2790	5735		
	%	100.0%	100.0%	100.0%		

주. ***p<.001

'청소년에 대한 혐오'가 편견, 비난, 모욕, 차별, 폭력 중 어떠한 정도의 수준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지 성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자 집단에서는 편견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폭력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낮았다. 여자 집단에서도 편견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폭력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낮았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의 집단별 빈도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x^2=21.301, p<.001).

표 Ⅳ-79 장애여부별 청소년에 대한 가해 정도

		장애	비장애	전체	x^2	유의도
1.편견	빈도	111	3002	3113	4.051	.399
	%	53.4%	56.0%	55.9%		
2.비난	빈도	36	878	914		
	%	17.3%	16.4%	16.4%		
3.모욕	빈도	16	555	571		
	%	7.7%	10.4%	10.3%		
4.차별	빈도	37	749	786		
	%	17.8%	14.0%	14.1%		
5.폭력	빈도	8	172	180		
	%	3.8%	3.2%	3.2%		
전체	빈도	208	5356	5564		
	%	100.0%	100.0%	100.0%		

‘청소년에 대한 혐오’가 편견, 비난, 모욕, 차별, 폭력 중 어떠한 정도의 수준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지 장애여부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장애가 있는 집단에서는 편견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폭력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낮았다. 장애가 없는 집단에서도 편견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폭력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낮았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의 집단별 빈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청소년에 대한 혐오’가 편견, 비난, 모욕, 차별, 폭력 중 어떠한 정도의 수준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지 경제수준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최하 집단에서는 모욕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폭력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낮았다. 하 집단, 중간 집단, 상 집단, 최상 집단에서는 편견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폭력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낮았다. 이러한 선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x^2=35.577. p<.01).

표 Ⅳ-80 경제수준별 청소년에 대한 가해 정도

		최하	하	중간	상	최상	전체	x^2	유의도
1.편견	빈도	2	64	1632	1072	399	3169	35.577**	.003
	%	20.0%	49.6%	55.0%	59.0%	53.1%	55.9%		
2.비난	빈도	2	27	503	270	123	925		
	%	20.0%	20.9%	17.0%	14.9%	16.4%	16.3%		
3.모욕	빈도	4	20	296	182	78	580		
	%	40.0%	15.5%	10.0%	10.0%	10.4%	10.2%		
4.차별	빈도	2	12	442	241	118	815		
	%	20.0%	9.3%	14.9%	13.3%	15.7%	14.4%		
5.폭력	빈도	0	6	93	53	33	185		
	%	0.0%	4.7%	3.1%	2.9%	4.4%	3.3%		
전체	빈도	10	129	2966	1818	751	5674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p<.01

표 Ⅳ-81 다문화가정여부별 청소년에 대한 가해 정도

		단일문화가정	다문화가정	전체	x^2	유의도
1.편견	빈도	3081	93	3174	1.915	.751
	%	55.9%	53.8%	55.9%		
2.비난	빈도	902	28	930		
	%	16.4%	16.2%	16.4%		
3.모욕	빈도	557	23	580		
	%	10.1%	13.3%	10.2%		
4.차별	빈도	789	24	813		
	%	14.3%	13.9%	14.3%		
5.폭력	빈도	181	5	186		
	%	3.3%	2.9%	3.3%		
전체	빈도	5510	173	5683		
	%	100.0%	100.0%	100.0%		

'청소년에 대한 혐오'가 편견, 비난, 모욕, 차별, 폭력 중 어떠한 정도의 수준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지 다문화가정 여부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단일문화가정 집단에서는 편견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폭력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낮았다. 다문화가정 집단에서도 편견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폭력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낮았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의 집단별 빈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10) 빈곤층에 대한 혐오 가해수준

'빈곤층에 대한 혐오'가 편견, 비난, 모욕, 차별, 폭력 중 어떠한 정도의 수준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지 분석한 결과, 편견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차별이었다. 가장 낮은 응답율을 나타낸 것은 폭력이었다.

표 Ⅳ-82 성별 빈곤층에 대한 가해 정도

		남자	여자	전체	x^2	유의도
1.편견	빈도	1623	1267	2890	56.218***	.000
	%	55.2%	45.6%	50.5%		
2.비난	빈도	324	372	696		
	%	11.0%	13.4%	12.2%		
3.모욕	빈도	382	420	802		
	%	13.0%	15.1%	14.0%		
4.차별	빈도	562	679	1241		
	%	19.1%	24.4%	21.7%		
5.폭력	빈도	49	41	90		
	%	1.7%	1.5%	1.6%		
전체	빈도	2940	2779	5719		
	%	100.0%	100.0%	100.0%		

주. ***$p<.001$

'빈곤층에 대한 혐오'가 편견, 비난, 모욕, 차별, 폭력 중 어떠한 정도의 수준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지 성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자 집단에서는 편견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폭력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낮았다. 여자 집단에서도 편견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폭력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낮았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의 집단별 빈도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x^2=56.218, $p<.001$).

표 Ⅳ-83 장애여부별 빈곤층에 대한 가해 정도

		장애	비장애	전체	x^2	유의도
1.편견	빈도	103	2706	2809	5.432	.246
	%	50.0%	50.6%	50.6%		
2.비난	빈도	25	648	673		
	%	12.1%	12.1%	12.1%		
3.모욕	빈도	32	743	775		
	%	15.5%	13.9%	14.0%		
4.차별	빈도	39	1164	1203		
	%	18.9%	21.8%	21.7%		
5.폭력	빈도	7	82	89		
	%	3.4%	1.5%	1.6%		
전체	빈도	206	5343	5549		
	%	100.0%	100.0%	100.0%		

'빈곤층에 대한 혐오'가 편견, 비난, 모욕, 차별, 폭력 중 어떠한 정도의 수준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지 장애여부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장애가 있는 집단에서는 편견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폭력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낮았다. 장애가 없는 집단에서도 편견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폭력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낮았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의 집단별 빈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빈곤층에 대한 혐오'가 편견, 비난, 모욕, 차별, 폭력 중 어떠한 정도의 수준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지 경제수준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최하 집단에서는 모욕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비난과 폭력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낮았다. 하 집단, 중간 집단, 상 집단, 최상 집단에서는 편견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폭력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낮았다. 이러한 선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x^2=27.575, p<.05).

표 Ⅳ-84 경제수준별 빈곤층에 대한 가해 정도

		최하	하	중간	상	최상	전체	x^2	유의도
1.편견	빈도	2	61	1459	967	369	2858	27.575*	.036
	%	20.0%	47.3%	49.3%	53.3%	49.4%	50.5%		
2.비난	빈도	0	19	373	200	96	688		
	%	0.0%	14.7%	12.6%	11.0%	12.9%	12.2%		
3.모욕	빈도	4	23	419	255	90	791		
	%	40.0%	17.8%	14.2%	14.1%	12.0%	14.0%		
4.차별	빈도	4	24	660	369	175	1232		
	%	40.0%	18.6%	22.3%	20.3%	23.4%	21.8%		
5.폭력	빈도	0	2	47	23	17	89		
	%	0.0%	1.6%	1.6%	1.3%	2.3%	1.6%		
전체	빈도	10	129	2958	1814	747	5658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p<.05

표 Ⅳ-85 다문화가정여부별 빈곤층에 대한 가해 정도

		단일문화가정	다문화가정	전체	x^2	유의도
1.편견	빈도	2782	84	2866	1.673	.796
	%	50.6%	48.6%	50.6%		
2.비난	빈도	661	25	686		
	%	12.0%	14.5%	12.1%		
3.모욕	빈도	766	27	793		
	%	13.9%	15.6%	14.0%		
4.차별	빈도	1198	35	1233		
	%	21.8%	20.2%	21.8%		
5.폭력	빈도	87	2	89		
	%	1.6%	1.2%	1.6%		
전체	빈도	5494	173	5667		
	%	100.0%	100.0%	100.0%		

'빈곤층에 대한 혐오'가 편견, 비난, 모욕, 차별, 폭력 중 어떠한 정도의 수준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지 다문화가정 여부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단일문화가정 집단에서는 편견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폭력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낮았다. 다문화가정 집단에서도 편견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폭력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낮았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의 집단별 빈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11) 출신지역에 대한 혐오 가해수준

'지역에 대한 혐오'가 편견, 비난, 모욕, 차별, 폭력 중 어떠한 정도의 수준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지 분석한 결과, 편견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차별이었다. 가장 낮은 응답율을 나타낸 것은 폭력이었다.

표 Ⅳ-86 성별 출신지역에 따른 가해 정도

		남자	여자	전체	x^2	유의도
1.편견	빈도	1618	1471	3089	7.437	.115
	%	55.0%	52.7%	53.9%		
2.비난	빈도	404	407	811		
	%	13.7%	14.6%	14.2%		
3.모욕	빈도	332	303	635		
	%	11.3%	10.9%	11.1%		
4.차별	빈도	552	585	1137		
	%	18.8%	21.0%	19.8%		
5.폭력	빈도	34	23	57		
	%	1.2%	0.8%	1.0%		
전체	빈도	2940	2789	5729		
	%	100.0%	100.0%	100.0%		

'지역에 대한 혐오'가 편견, 비난, 모욕, 차별, 폭력 중 어떠한 정도의 수준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지 성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자 집단에서는 편견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폭력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낮았다. 여자 집단에서도 편견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폭력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낮았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표 Ⅳ-87 장애여부별 출신지역에 따른 가해 정도

		장애	비장애	전체	x^2	유의도
1.편견	빈도	112	2890	3002	2.783	.595
	%	53.6%	54.0%	54.0%		
2.비난	빈도	33	754	787		
	%	15.8%	14.1%	14.2%		
3.모욕	빈도	20	596	616		
	%	9.6%	11.1%	11.1%		
4.차별	빈도	40	1059	1099		
	%	19.1%	19.8%	19.8%		
5.폭력	빈도	4	51	55		
	%	1.9%	1.0%	1.0%		
전체	빈도	209	5350	5559		
	%	100.0%	100.0%	100.0%		

‘지역에 대한 혐오’가 편견, 비난, 모욕, 차별, 폭력 중 어떠한 정도의 수준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지 장애여부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장애가 있는 집단에서는 편견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폭력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낮았다. 장애가 없는 집단에서도 편견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폭력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낮았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의 집단별 빈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지역에 대한 혐오’가 편견, 비난, 모욕, 차별, 폭력 중 어떠한 정도의 수준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지 경제수준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최하 집단에서는 차별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비난, 폭력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낮았다. 하 집단, 중간 집단, 상 집단, 최상 집단에서는 편견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폭력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낮았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Ⅳ-88 경제수준별 출신지역에 따른 가해 정도

		최하	하	중간	상	최상	전체	x^2	유의도
1.편견	빈도	3	75	1566	1012	402	3058	25.310	.065
	%	30.0%	58.1%	52.8%	55.8%	53.7%	54.0%		
2.비난	빈도	0	19	415	250	118	802		
	%	0.0%	14.7%	14.0%	13.8%	15.8%	14.1%		
3.모욕	빈도	2	19	333	200	73	627		
	%	20.0%	14.7%	11.2%	11.0%	9.8%	11.1%		
4.차별	빈도	5	15	624	338	144	1126		
	%	50.0%	11.6%	21.0%	18.6%	19.3%	19.9%		
5.폭력	빈도	0	1	29	14	11	55		
	%	0.0%	0.8%	1.0%	0.8%	1.5%	1.0%		
전체	빈도	10	129	2967	1814	748	5668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Ⅳ-89 다문화가정여부별 출신지역에 따른 가해 정도

		단일문화가정	다문화가정	전체	x^2	유의도
1.편견	빈도	2971	91	3062	3.834	.429
	%	54.0%	52.3%	53.9%		
2.비난	빈도	774	29	803		
	%	14.1%	16.7%	14.1%		
3.모욕	빈도	609	23	632		
	%	11.1%	13.2%	11.1%		
4.차별	빈도	1096	28	1124		
	%	19.9%	16.1%	19.8%		
5.폭력	빈도	53	3	56		
	%	1.0%	1.7%	1.0%		
전체	빈도	5503	174	5677		
	%	100.0%	100.0%	100.0%		

‘지역에 대한 혐오’가 편견, 비난, 모욕, 차별, 폭력 중 어떠한 정도의 수준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지 다문화가정 여부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단일문화가정 집단에서는 편견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폭력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낮았다. 다문화가정 집단에서도 편견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폭력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낮았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의 집단별 빈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12) 해외이주노동자 집단에 대한 혐오 가해수준

'해외이주노동자 집단에 대한 혐오'가 편견, 비난, 모욕, 차별, 폭력 중 어떠한 정도의 수준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지 분석한 결과, 편견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차별이었다. 가장 낮은 응답율을 나타낸 것은 폭력이었다.

표 Ⅳ-90 성별 해외이주노동자 집단에 대한 가해 정도

		남자	여자	전체	x^2	유의도
1.편견	빈도	1619	1369	2988	30.428***	.000
	%	55.1%	49.1%	52.2%		
2.비난	빈도	364	447	811		
	%	12.4%	16.0%	14.2%		
3.모욕	빈도	282	255	537		
	%	9.6%	9.1%	9.4%		
4.차별	빈도	617	672	1289		
	%	21.0%	24.1%	22.5%		
5.폭력	빈도	55	44	99		
	%	1.9%	1.6%	1.7%		
전체	빈도	2937	2787	5724		
	%	100.0%	100.0%	100.0%		

주. ***p<.001

'해외이주노동자 집단에 대한 혐오'가 편견, 비난, 모욕, 차별, 폭력 중 어떠한 정도의 수준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지 성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자 집단에서는 편견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폭력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낮았다. 여자 집단에서도 편견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폭력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낮았다. 이러한 선택의 차이는 집단별 빈도 차이에서도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x^2=30.428, p<.001).

표 Ⅳ-91 장애여부별 해외이주노동자 집단에 대한 가해 정도

		장애	비장애	전체	x^2	유의도
1.편견	빈도	107	2798	2905	3.973	.410
	%	51.4%	52.3%	52.3%		
2.비난	빈도	33	759	792		
	%	15.9%	14.2%	14.3%		
3.모욕	빈도	17	495	512		
	%	8.2%	9.3%	9.2%		
4.차별	빈도	44	1202	1246		
	%	21.2%	22.5%	22.4%		
5.폭력	빈도	7	91	98		
	%	3.4%	1.7%	1.8%		
전체	빈도	208	5345	5553		
	%	100.0%	100.0%	100.0%		

‘해외이주노동자 집단에 대한 혐오’가 편견, 비난, 모욕, 차별, 폭력 중 어떠한 정도의 수준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지 장애여부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장애가 있는 집단에서는 편견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폭력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낮았다. 장애가 없는 집단에서도 편견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폭력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낮았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의 집단별 빈도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해외이주노동자 집단에 대한 혐오’가 편견, 비난, 모욕, 차별, 폭력 중 어떠한 정도의 수준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지 경제수준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모든 집단에서 편견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폭력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낮았다. 이러한 선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해외이주노동자 집단에 대한 혐오’가 편견, 비난, 모욕, 차별, 폭력 중 어떠한 정도의 수준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지 다문화가정 여부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단일문화가정 집단에서는 편견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폭력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낮았다. 다문화가정 집단에서도 편견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폭력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낮았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의 집단별 빈도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x^2=14.224, p<.01).

표 Ⅳ-92 경제수준별 해외이주노동자 집단에 대한 가해 정도

		최하	하	중간	상	최상	전체	x^2	유의도
1.편견	빈도	3	63	1516	979	400	2961	24.549	.078
	%	30.0%	49.2%	51.1%	54.0%	53.5%	52.3%		
2.비난	빈도	2	21	436	233	110	802		
	%	20.0%	16.4%	14.7%	12.9%	14.7%	14.2%		
3.모욕	빈도	2	7	281	173	68	531		
	%	20.0%	5.5%	9.5%	9.5%	9.1%	9.4%		
4.차별	빈도	2	32	693	392	154	1273		
	%	20.0%	25.0%	23.4%	21.6%	20.6%	22.5%		
5.폭력	빈도	1	5	40	36	15	97		
	%	10.0%	3.9%	1.3%	2.0%	2.0%	1.7%		
전체	빈도	10	128	2966	1813	747	5664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Ⅳ-93 다문화가정여부별 해외이주노동자 집단에 대한 가해 정도

		단일문화가정	다문화가정	전체	x^2	유의도
1.편견	빈도	2885	77	2962	14.224**	.007
	%	52.5%	44.5%	52.2%		
2.비난	빈도	769	35	804		
	%	14.0%	20.2%	14.2%		
3.모욕	빈도	502	26	528		
	%	9.1%	15.0%	9.3%		
4.차별	빈도	1247	33	1280		
	%	22.7%	19.1%	22.6%		
5.폭력	빈도	96	2	98		
	%	1.7%	1.2%	1.7%		
전체	빈도	5499	173	5672		
	%	100.0%	100.0%	100.0%		

주. **p<.01

(13) 국내거주 교포집단에 대한 혐오 가해수준

'탈북민 / 고려인 / 국내거주 교포 집단에 대한 혐오'가 편견, 비난, 모욕, 차별, 폭력 중 어떠한 정도의 수준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지 분석한 결과, 편견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차별이었다. 가장 낮은 응답율을 나타낸 것은 폭력이었다.

표 Ⅳ-94 성별 국내거주 교포집단에 대한 가해 정도

		남자	여자	전체	x^2	유의도
1.편견	빈도	1561	1376	2937	18.872**	.001
	%	53.1%	49.4%	51.3%		
2.비난	빈도	330	374	704		
	%	11.2%	13.4%	12.3%		
3.모욕	빈도	298	253	551		
	%	10.1%	9.1%	9.6%		
4.차별	빈도	691	741	1432		
	%	23.5%	26.6%	25.0%		
5.폭력	빈도	60	42	102		
	%	2.0%	1.5%	1.8%		
전체	빈도	2940	2786	5726		
	%	100.0%	100.0%	100.0%		

주. **p<.01

'탈북민 / 고려인 / 국내거주 교포 집단에 대한 혐오'가 편견, 비난, 모욕, 차별, 폭력 중 어떠한 정도의 수준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지 성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자 집단에서는 편견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폭력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낮았다. 여자 집단에서도 편견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폭력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낮았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의 집단별 빈도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x^2=18.872, p<.01).

표 Ⅳ-95 장애여부별 국내거주 교포 집단에 대한 가해 정도

		장애	비장애	전체	x^2	유의도
1.편견	빈도	113	2737	2850	1.922	.750
	%	54.6%	51.2%	51.3%		
2.비난	빈도	20	666	686		
	%	9.7%	12.5%	12.3%		
3.모욕	빈도	21	513	534		
	%	10.1%	9.6%	9.6%		
4.차별	빈도	49	1335	1384		
	%	23.7%	25.0%	24.9%		
5.폭력	빈도	4	97	101		
	%	1.9%	1.8%	1.8%		
전체	빈도	207	5348	5555		
	%	100.0%	100.0%	100.0%		

'탈북민 / 고려인 / 국내거주 교포 집단에 대한 혐오'가 편견, 비난, 모욕, 차별, 폭력 중 어떠한 정도의 수준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지 장애여부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장애가 있는 집단에서는 편견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폭력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낮았다. 장애가 없는 집단에서도 편견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폭력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낮았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의 집단별 빈도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탈북민 / 고려인 / 국내거주 교포 집단에 대한 혐오'가 편견, 비난, 모욕, 차별, 폭력 중 어떠한 정도의 수준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지 경제수준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최하 집단에서는 차별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비난, 폭력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낮았다. 하 집단, 중간 집단, 상 집단, 최상 집단에서는 편견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폭력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낮았다. 이러한 선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x^2=35.494, p<.01).

표 Ⅳ-96 경제수준별 국내거주 교포 집단에 대한 가해 정도

		최하	하	중간	상	최상	전체	x^2	유의도
1.편견	빈도	3	64	1509	934	398	2908	35.494**	.003
	%	30.0%	49.6%	51.0%	51.5%	53.1%	51.3%		
2.비난	빈도	0	19	349	250	75	693		
	%	0.0%	14.7%	11.8%	13.8%	10.0%	12.2%		
3.모욕	빈도	3	11	271	190	67	542		
	%	30.0%	8.5%	9.2%	10.5%	8.9%	9.6%		
4.차별	빈도	4	30	789	409	189	1421		
	%	40.0%	23.3%	26.6%	22.5%	25.2%	25.1%		
5.폭력	빈도	0	5	43	32	21	101		
	%	0.0%	3.9%	1.5%	1.8%	2.8%	1.8%		
전체	빈도	10	129	2961	1815	750	5665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p<.01

표 Ⅳ-97 다문화가정여부별 국내거주 교포 집단에 대한 가해 정도

		단일문화가정	다문화가정	전체	x^2	유의도
1.편견	빈도	2828	80	2908	6.598	.159
	%	51.4%	46.0%	51.3%		
2.비난	빈도	666	31	697		
	%	12.1%	17.8%	12.3%		
3.모욕	빈도	533	14	547		
	%	9.7%	8.0%	9.6%		
4.차별	빈도	1374	47	1421		
	%	25.0%	27.0%	25.0%		
5.폭력	빈도	99	2	101		
	%	1.8%	1.1%	1.8%		
전체	빈도	5500	174	5674		
	%	100.0%	100.0%	100.0%		

'탈북민 / 고려인 / 국내거주 교포 집단에 대한 혐오'가 편견, 비난, 모욕, 차별, 폭력 중 어떠한 정도의 수준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지 다문화가정 여부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단일문화가정 집단에서는 편견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폭력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낮았다. 다문화가정 집단에서도 편견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폭력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낮았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의 집단별

빈도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14) 근로청소년 집단에 대한 혐오 가해수준

'근로청소년 집단에 대한 혐오'가 편견, 비난, 모욕, 차별, 폭력 중 어떠한 정도의 수준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지 분석한 결과, 편견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비난이었다. 가장 낮은 응답율을 나타낸 것은 폭력이었다.

표 Ⅳ-98 성별 근로청소년에 대한 가해 정도

		남자	여자	전체	x^2	유의도
1.편견	빈도	1769	1515	3284	36.286***	.000
	%	60.1%	54.4%	57.3%		
2.비난	빈도	419	523	942		
	%	14.2%	18.8%	16.4%		
3.모욕	빈도	304	265	569		
	%	10.3%	9.5%	9.9%		
4.차별	빈도	382	434	816		
	%	13.0%	15.6%	14.2%		
5.폭력	빈도	68	48	116		
	%	2.3%	1.7%	2.0%		
전체	빈도	2942	2785	5727		
	%	100.0%	100.0%	100.0%		

주. ***p<.001

'근로청소년 집단에 대한 혐오'가 편견, 비난, 모욕, 차별, 폭력 중 어떠한 정도의 수준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지 성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자 집단에서는 편견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폭력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낮았다. 여자 집단에서도 편견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폭력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낮았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의 집단별 빈도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x^2=36.286, p<.001).

표 Ⅳ-99 장애여부별 근로청소년에 대한 가해 정도

		장애	비장애	전체	x^2	유의도
1.편견	빈도	116	3071	3187	1.242	.871
	%	55.8%	57.4%	57.4%		
2.비난	빈도	39	882	921		
	%	18.8%	16.5%	16.6%		
3.모욕	빈도	18	535	553		
	%	8.7%	10.0%	10.0%		
4.차별	빈도	30	752	782		
	%	14.4%	14.1%	14.1%		
5.폭력	빈도	5	108	113		
	%	2.4%	2.0%	2.0%		
전체	빈도	208	5348	5556		
	%	100.0%	100.0%	100.0%		

'근로청소년 집단에 대한 혐오'가 편견, 비난, 모욕, 차별, 폭력 중 어떠한 정도의 수준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지 장애여부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장애가 있는 집단에서는 편견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폭력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낮았다. 장애가 없는 집단에서도 편견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폭력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낮았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의 집단별 빈도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근로청소년 집단에 대한 혐오'가 편견, 비난, 모욕, 차별, 폭력 중 어떠한 정도의 수준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지 경제수준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모든 집단에서 편견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폭력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낮았다. 이러한 선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근로청소년 집단에 대한 혐오'가 편견, 비난, 모욕, 차별, 폭력 중 어떠한 정도의 수준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지 다문화가정 여부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단일문화가정 집단에서는 편견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폭력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낮았다. 다문화가정 집단에서도 편견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폭력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낮았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의 집단별 빈도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표 Ⅳ-100 경제수준별 근로청소년에 대한 가해 정도

		최하	하	중간	상	최상	전체	x^2	유의도
1.편견	빈도	4	82	1670	1080	416	3252	16.831	.397
	%	40.0%	63.6%	56.2%	59.6%	55.8%	57.4%		
2.비난	빈도	2	18	514	287	115	936		
	%	20.0%	14.0%	17.3%	15.8%	15.4%	16.5%		
3.모욕	빈도	2	12	289	180	74	557		
	%	20.0%	9.3%	9.7%	9.9%	9.9%	9.8%		
4.차별	빈도	2	14	442	229	121	808		
	%	20.0%	10.9%	14.9%	12.6%	16.2%	14.3%		
5.폭력	빈도	0	3	57	35	19	114		
	%	0.0%	2.3%	1.9%	1.9%	2.6%	2.0%		
전체	빈도	10	129	2972	1811	745	5667		
	%	100%	100%	100%	100%	100%	100%		

표 Ⅳ-101 다문화가정여부별 근로청소년에 대한 가해 정도

		단일문화가정	다문화가정	전체	x^2	유의도
1.편견	빈도	3164	93	3257	6.770	.149
	%	57.5%	53.4%	57.4%		
2.비난	빈도	893	40	933		
	%	16.2%	23.0%	16.4%		
3.모욕	빈도	546	19	565		
	%	9.9%	10.9%	10.0%		
4.차별	빈도	787	19	806		
	%	14.3%	10.9%	14.2%		
5.폭력	빈도	111	3	114		
	%	2.0%	1.7%	2.0%		
전체	빈도	5501	174	5675		
	%	100.0%	100.0%	100.0%		

(15) 범죄청소년 집단에 대한 혐오 가해수준

'범죄청소년 집단에 대한 혐오'가 편견, 비난, 모욕, 차별, 폭력 중 어떠한 정도의 수준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지 분석한 결과, 비난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편견이었다. 가장 낮은 응답율을 나타낸 것은 폭력이었다.

표 Ⅳ-102 성별 범죄청소년 집단에 대한 가해 정도

		남자	여자	전체	x^2	유의도
1.편견	빈도	1036	792	1828	56.223***	.000
	%	35.2%	28.5%	31.9%		
2.비난	빈도	856	1051	1907		
	%	29.0%	37.8%	33.3%		
3.모욕	빈도	411	377	788		
	%	13.9%	13.6%	13.8%		
4.차별	빈도	396	364	760		
	%	13.4%	13.1%	13.3%		
5.폭력	빈도	248	198	446		
	%	8.4%	7.1%	7.8%		
전체	빈도	2947	2782	5729		
	%	100.0%	100.0%	100.0%		

주. ***$p<.001$

'범죄청소년 집단에 대한 혐오'가 편견, 비난, 모욕, 차별, 폭력 중 어떠한 정도의 수준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지 성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자 집단에서는 편견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폭력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낮았다. 여자 집단에서는 비난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폭력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낮았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의 집단별 빈도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x^2=56.223, $p<.001$).

표 Ⅳ-103 장애여부별 범죄청소년 집단에 대한 가해 정도

		장애	비장애	전체	x^2	유의도
1.편견	빈도	77	1685	1762	4.909	.297
	%	36.8%	31.5%	31.7%		
2.비난	빈도	65	1801	1866		
	%	31.1%	33.7%	33.6%		
3.모욕	빈도	26	742	768		
	%	12.4%	13.9%	13.8%		
4.차별	빈도	21	707	728		
	%	10.0%	13.2%	13.1%		
5.폭력	빈도	20	414	434		
	%	9.6%	7.7%	7.8%		
전체	빈도	209	5349	5558		
	%	100.0%	100.0%	100.0%		

'범죄청소년 집단에 대한 혐오'가 편견, 비난, 모욕, 차별, 폭력 중 어떠한 정도의 수준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지 장애여부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장애가 있는 집단에서는 편견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폭력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낮았다. 장애가 없는 집단에서는 비난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폭력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낮았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범죄청소년 집단에 대한 혐오'가 편견, 비난, 모욕, 차별, 폭력 중 어떠한 정도의 수준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지 경제수준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최하 집단, 하 집단, 중간 집단, 상 집단에서는 비난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폭력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낮았다. 최상 집단의 경우에는 편견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폭력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낮았다. 이러한 선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x^2=28.947, p<.05).

'범죄청소년 집단에 대한 혐오'가 편견, 비난, 모욕, 차별, 폭력 중 어떠한 정도의 수준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지 다문화가정 여부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단일문화가정 집단에서는 비난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폭력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낮았다. 다문화가정 집단에서도 비난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폭력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낮았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의 집단별 빈도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표 Ⅳ-104 경제수준별 범죄청소년 집단에 대한 가해 정도

		최하	하	중간	상	최상	전체	x^2	유의도
1.편견	빈도	2	40	905	577	283	1807	28.947*	.024
	%	20.0%	30.8%	30.5%	31.9%	37.7%	31.9%		
2.비난	빈도	5	46	1020	611	211	1893		
	%	50.0%	35.4%	34.3%	33.8%	28.1%	33.4%		
3.모욕	빈도	2	23	417	251	86	779		
	%	20.0%	17.7%	14.0%	13.9%	11.5%	13.7%		
4.차별	빈도	1	10	400	234	104	749		
	%	10.0%	7.7%	13.5%	12.9%	13.9%	13.2%		
5.폭력	빈도	0	11	230	135	66	442		
	%	0.0%	8.5%	7.7%	7.5%	8.8%	7.8%		
전체	빈도	10	130	2972	1808	750	5670		
	%	100%	100%	100%	100%	100%	100%		

주. *p<.05

표 Ⅳ-105 다문화가정여부별 범죄청소년 집단에 대한 가해 정도

		단일문화가정	다문화가정	전체	x^2	유의도
1.편견	빈도	1754	54	1808	2.230	.694
	%	31.9%	31.0%	31.8%		
2.비난	빈도	1834	59	1893		
	%	33.3%	33.9%	33.3%		
3.모욕	빈도	758	24	782		
	%	13.8%	13.8%	13.8%		
4.차별	빈도	731	19	750		
	%	13.3%	10.9%	13.2%		
5.폭력	빈도	426	18	444		
	%	7.7%	10.3%	7.8%		
전체	빈도	5503	174	5677		
	%	100.0%	100.0%	100.0%		

5) 혐오표현을 주로 경험하는 장소나 매체

'혐오나 차별 표현을 주로 경험하는 장소나 매체'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인터넷 커뮤니티, SNS를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집 및 지역사회를 선택한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06 성별 혐오 및 차별 표현 생산 및 가해 공간

		남자	여자	전체	x^2	유의도
1.인터넷 커뮤니티, SNS	빈도	2265	2281	4546	29.788***	.000
	%	76.5%	82.0%	79.1%		
2.신문, 방송 등 대중매체	빈도	276	216	492		
	%	9.3%	7.8%	8.6%		
3.집 및 지역사회	빈도	61	52	113		
	%	2.1%	1.9%	2.0%		
4.학교 및 학원	빈도	169	101	270		
	%	5.7%	3.6%	4.7%		
5.기타	빈도	190	133	323		
	%	6.4%	4.8%	5.6%		
전체	빈도	2961	2783	5744		
	%	100.0%	100.0%	100.0%		

주. ***p<.001

'혐오나 차별 표현을 주로 경험하는 장소나 매체'가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 신문, 방송 등 대중매체, 집 및 지역사회, 학교 및 학원 중 어느 곳이라고 생각하는지 성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자 집단에서는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집 및 지역사회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낮았다. 여자 집단에서도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집 및 지역사회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낮았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의 집단별 빈도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x^2=29.788, p<.001).

표 Ⅳ-107 장애여부별 혐오 및 차별 표현 생산 및 가해 공간

		장애	비장애	전체	x^2	유의도
1.인터넷 커뮤니티, SNS	빈도	155	4296	4451	13.549**	.009
	%	74.9%	80.0%	79.9%		
2.신문, 방송 등 대중매체	빈도	13	459	472		
	%	6.3%	8.6%	8.5%		
3.집 및 지역사회	빈도	9	99	108		
	%	4.3%	1.8%	1.9%		
4.학교 및 학원	빈도	15	237	252		
	%	7.2%	4.4%	4.5%		
5.기타	빈도	15	276	291		
	%	7.2%	5.1%	5.2%		
전체	빈도	207	5367	5574		
	%	100.0%	100.0%	100.0%		

주. $^{**}p<.01$

'혐오나 차별 표현을 주로 경험하는 장소나 매체'가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 신문, 방송 등 대중매체, 집 및 지역사회, 학교 및 학원 중 어느 곳이라고 생각하는지 장애여부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장애가 있는 집단에서는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집 및 지역사회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낮았다. 장애가 없는 집단에서도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집 및 지역사회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낮았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의 집단별 빈도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x^2=13.549, p<.01).

표 Ⅳ-108 경제수준별 혐오 및 차별 표현 생산 및 가해 공간

		최하	하	중간	상	최상	전체	x^2	유의도
1.인터넷 커뮤니티, SNS	빈도	8	112	2448	1443	491	4502	153.731***	.000
	%	80.0%	87.5%	82.2%	79.8%	64.9%	79.3%		
2.신문, 방송 등 대중매체	빈도	0	6	214	176	91	487		
	%	0.0%	4.7%	7.2%	9.7%	12.0%	8.6%		
3.집 및 지역사회	빈도	0	1	59	23	29	112		
	%	0.0%	0.8%	2.0%	1.3%	3.8%	2.0%		
4.학교 및 학원	빈도	2	6	122	83	53	266		
	%	20.0%	4.7%	4.1%	4.6%	7.0%	4.7%		
5.기타	빈도	0	3	135	83	92	313		
	%	0.0%	2.3%	4.5%	4.6%	12.2%	5.5%		
전체	빈도	10	128	2978	1808	756	5680		
	%	100%	100%	100%	100%	100%	100%		

주. ***p<.001

‘혐오나 차별 표현을 주로 경험하는 장소나 매체’가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 신문, 방송 등 대중매체, 집 및 지역사회, 학교 및 학원 중 어느 곳이라고 생각하는지 경제수준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최하 집단에서는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기타를 제외하고 신문, 방송 등 대중매체와 집 및 지역사회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낮았다. 하 집단, 중간 집단, 상 집단, 최상 집단에서는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집 및 지역사회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낮았다. 이러한 선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x^2=153.731, p<.001).

‘혐오나 차별 표현을 주로 경험하는 장소나 매체’가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 신문, 방송 등 대중매체, 집 및 지역사회, 학교 및 학원 중 어느 곳이라고 생각하는지 다문화가정 여부에 따라 분석한 결과, 단일문화가정 집단에서는 인터넷 커뮤니

티나 SNS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집 및 지역사회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낮았다. 다문화가정 집단에서도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집 및 지역사회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낮았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의 집단별 빈도 차이도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표 Ⅳ-109 다문화가정여부별 혐오 및 차별 표현 생산 및 가해 공간

		단일문화가정	다문화가정	전체	x^2	유의도
1.인터넷 커뮤니티, SNS	빈도	4381	128	4509	5.153	.272
	%	79.4%	75.3%	79.3%		
2.신문, 방송 등 대중매체	빈도	475	12	487		
	%	8.6%	7.1%	8.6%		
3.집 및 지역사회	빈도	108	5	113		
	%	2.0%	2.9%	2.0%		
4.학교 및 학원	빈도	254	11	265		
	%	4.6%	6.5%	4.7%		
5.기타	빈도	301	14	315		
	%	5.5%	8.2%	5.5%		
전체	빈도	5519	170	5689		
	%	100.0%	100.0%	100.0%		

학교유형별 '혐오나 차별 표현을 주로 경험하는 장소나 매체'에 대한 응답결과는 유의도 0.000 수준으로 의미가 있으며, 응답 결과는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 항목이 74.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다만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82.9%, 88.7%인데 반하여 초등학교는 51.6%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초등학생은 '신문, 방송 등 대중매체'를 통한 경험이 17.8%로 중고등학생의 6.5%, 4.0%보다 높으며, '학교 및 학원'에서의 경험도 중고등학생에 비하여 배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Ⅳ-110 학교유형별 혐오 및 차별 표현 생산 및 가해 공간

구분		학교유형			전체	x^2	유의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인터넷 커뮤니티, SNS	빈도	1020	1561	1821	4402	876.584***	.000
	%	51.6%	82.9%	88.7%	74.4%		
2.신문, 방송 등 대중매체	빈도	352	123	83	558		
	%	17.8%	6.5%	4.0%	9.4%		
3.집 및 지역사회	빈도	79	30	16	125		
	%	4.0%	1.6%	0.8%	2.1%		
4.학교 및 학원	빈도	147	81	57	285		
	%	7.4%	4.3%	2.8%	4.8%		
5.기타	빈도	283	60	39	382		
	%	14.3%	3.2%	1.9%	6.5%		
6.무응답	빈도	97	28	37	162		
	%	4.9%	1.5%	1.8%	2.7%		
전체	빈도	1978	1883	2053	5914		
	%	100.0%	100.0%	100.0%	100.0%		

주. ***p<.001

6) 혐오표현을 주로 듣게 되는 대상

혐오나 차별 표현을 주로 생산하고 가해하는 자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친구, 언론인, 정치인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교사를 선택한 비율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혐오나 차별 표현을 주로 생산하고 가해하는 자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성별 차이에서는 남자의 경우 친구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교사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낮았다. 여자의 경우는 언론인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교사를 선택한 비율이 가장 낮았다. 이러한 선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x^2=116.793, p<.001).

표 Ⅳ-111 성별 혐오나 차별 표현 생산 및 가해자

		남자	여자	전체	x^2	유의도
1.가족	빈도	76	120	196	116.793***	.000
	%	2.6%	4.4%	3.5%		
2.교사	빈도	47	50	97		
	%	1.6%	1.8%	1.7%		
3.친구	빈도	741	522	1263		
	%	25.3%	19.0%	22.3%		
4.지역 주민	빈도	131	135	266		
	%	4.5%	4.9%	4.7%		
5.언론인	빈도	443	592	1035		
	%	15.1%	21.5%	18.2%		
6.정치인	빈도	562	374	936		
	%	19.2%	13.6%	16.5%		
7.종교인	빈도	215	156	371		
	%	7.4%	5.7%	6.5%		
8.기타	빈도	710	801	1511		
	%	24.3%	29.1%	26.6%		
전체	빈도	2925	2750	5675		
	%	100.0%	100.0%	100.0%		

주. ***p<.001

혐오나 차별 표현을 주로 생산하고 가해하는 자에 대한 장애여부에 따라 분석한 결과, 장애가 있는 집단에서는 기타를 제외하고 친구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교사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낮았다. 장애가 없는 집단에서도 친구를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교사를 선택한 비율이 가장 낮았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의 집단별 빈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혐오나 차별 표현을 주로 생산하고 가해하는 자에 대한 경제수준에 따라 분석한 결과, 최하 집단에서는 언론인을 선택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지역주민, 정치인을 선택한 응답률이 가장 낮았다. 하 집단에서는 언론인을 선택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교사를 선택한 비율이 가장 낮았다. 중간 집단, 상 집단, 최상 집단에서는 기타를 제외하고 친구를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교사를 선택한 비율이 가장 낮았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Ⅳ-112 장애여부별 혐오나 차별 표현 생산 및 가해자

		장애	비장애	전체	x^2	유의도
1.가족	빈도	13	173	186	11.134	.133
	%	6.5%	3.3%	3.4%		
2.교사	빈도	1	94	95		
	%	0.5%	1.8%	1.7%		
3.친구	빈도	46	1184	1230		
	%	22.9%	22.3%	22.3%		
4.지역 주민	빈도	10	246	256		
	%	5.0%	4.6%	4.6%		
5.언론인	빈도	37	976	1013		
	%	18.4%	18.4%	18.4%		
6.정치인	빈도	28	884	912		
	%	13.9%	16.7%	16.6%		
7.종교인	빈도	18	340	358		
	%	9.0%	6.4%	6.5%		
8.기타	빈도	48	1410	1458		
	%	23.9%	26.6%	26.5%		
전체	빈도	201	5307	5508		
	%	100.0%	100.0%	100.0%		

표 Ⅳ-113 경제수준별 혐오나 차별 표현 생산 및 가해자

		최하	하	중간	상	최상	전체	x^2	유의도
1.가족	빈도	2	5	98	51	38	194	11.134	.133
	%	20.0%	3.9%	3.3%	2.9%	5.1%	3.5%		
2.교사	빈도	1	1	54	24	16	96		
	%	10.0%	0.8%	1.8%	1.3%	2.2%	1.7%		
3.친구	빈도	1	29	691	386	143	1250		
	%	10.0%	22.7%	23.4%	21.7%	19.2%	22.3%		
4.지역 주민	빈도	0	5	145	73	41	264		
	%	0.0%	3.9%	4.9%	4.1%	5.5%	4.7%		
5.언론인	빈도	3	31	565	326	102	1027		
	%	30.0%	24.2%	19.2%	18.3%	13.7%	18.3%		
6.정치인	빈도	0	22	442	330	134	928		
	%	0.0%	17.2%	15.0%	18.5%	18.0%	16.5%		
7.종교인	빈도	1	8	189	111	58	367		
	%	10.0%	6.3%	6.4%	6.2%	7.8%	6.5%		
8.기타	빈도	2	27	765	481	212	1487		
	%	20.0%	21.1%	25.9%	27.0%	28.5%	26.5%		
전체	빈도	10	128	2949	1782	744	5613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Ⅳ-114 다문화가정별 혐오나 차별 표현 생산 및 가해자

		단일문화가정	다문화가정	전체	x^2	유의도
1.가족	빈도	183	13	196	18.314*	.011
	%	3.4%	7.7%	3.5%		
2.교사	빈도	96	0	96		
	%	1.8%	0.0%	1.7%		
3.친구	빈도	1217	36	1253		
	%	22.3%	21.3%	22.3%		
4.지역 주민	빈도	250	13	263		
	%	4.6%	7.7%	4.7%		
5.언론인	빈도	996	29	1025		
	%	18.3%	17.2%	18.2%		
6.정치인	빈도	906	23	929		
	%	16.6%	13.6%	16.5%		
7.종교인	빈도	351	15	366		
	%	6.4%	8.9%	6.5%		
8.기타	빈도	1452	40	1492		
	%	26.6%	23.7%	26.5%		
전체	빈도	5451	169	5620		
	%	100.0%	100.0%	100.0%		

주. *$p<.05$

혐오나 차별 표현을 주로 생산하고 가해하는 자에 대한 다문화가정여부에 따라 분석한 결과, 단일문화가정 집단에서는 기타를 제외하고 친구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교사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낮았다. 다문화가정 집단에서도 친구를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교사를 선택한 비율이 가장 낮았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의 집단별 빈도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x^2=18.314, $p<.05$).

표 Ⅳ-115 학교유형별 혐오나 차별 표현 생산 및 가해자

구분		학교유형			전체	x^2	유의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가족	빈도	102	43	58	203	340.027***	.000
	%	5.2%	2.3%	2.8%	3.4%		
2.교사	빈도	17	32	38	87		
	%	0.9%	1.7%	1.8%	1.5%		
3.친구	빈도	275	454	498	1227		
	%	13.9%	24.1%	24.2%	20.7%		
4.지역 주민	빈도	111	100	64	275		
	%	5.6%	5.3%	3.1%	4.6%		
5.언론인	빈도	203	345	424	972		
	%	10.3%	18.3%	20.6%	16.4%		
6.정치인	빈도	302	325	338	965		
	%	15.3%	17.3%	16.4%	16.3%		
7.종교인	빈도	201	93	97	391		
	%	10.2%	4.9%	4.7%	6.6%		
8.기타	빈도	635	448	478	1561		
	%	32.1%	23.8%	23.3%	26.4%		
9.무응답	빈도	131	43	60	234		
	%	6.6%	2.3%	2.9%	4.0%		
전체	빈도	1977	1883	2055	5915		
	%	100.0%	100.0%	100.0%	100.0%		

주. ***p<.001

혐오나 차별 표현을 주로 생산하고 가해하는 자에 대한 학교유형별 분석한 결과, 기타를 제외하고 친구 〉 언론인 〉 정치인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초등학교의 경우는 정치인 〉 친구 〉 언론인 순으로 나타났으며, 종교인에 대해서도 10.2%로 중·고등학교에 비하여 매우 높게 나타났다.

중·고등학교는 친구에 의해 이루어지는 혐오나 차별이 각각 24.1%, 24.2% 수준으로 여전히 학교내에서 이루어지는 혐오표현이 높다. 분석결과는 유의도 0.000수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7)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방안의 필요성

혐오 및 차별적 표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으로 여겨질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수준을 살펴본 결과, 단순빈도에 있어 "필요하다"와 "반드시 필요하다"를 합한 필요성 동의비율은 규제강화(61.3%), 교육현장에서의 혐오표현 교육(67.5%), 혐오표현 개선방법 홍보(63.1%), 혐오가해자 사법처리(59.4%), 학교내 혐오 및 차별 방지 제도화(62.4%), 온라인 혐오표현 기준 제시(64.9%), 언론매체의 혐오 및 차별 표현 윤리기준 강화(64.3%) 등 대부분 60%이상의 동의율을 보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교육현장에서의 혐오표현 교육 필요성에 대한 동의율이 가장 높았다. 청소년의 성별, 장애여부별, 경제적 수준 및 다문화가정 출신 여부별로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규제강화의 필요성

표 Ⅳ-116 규제강화의 필요성

구분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F* or *t*	유의도
성별	남자	2997	3.53	1.080	t=-13.228***	.000
	여자	2819	3.87	0.911		
학교 유형	초등	1976	3.68	1.425	F=6.756**	.001
	중등	1884	3.82	1.042		
	고등	2054	3.74	1.092		

주. **p<.01, ***p<.001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강화'필요성에 대한 응답을 성별로 분석한 결과, 여성 집단의 평균치가 남성 집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t =-13.228, p 〈.001).

학교유형별로는 중학교의 응답이 3.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중간이상으로 나타났다.

(2) 교육현장에서의 혐오표현 교육 필요성

표 Ⅳ-117 교육현장에서의 혐오표현 교육 필요성

구분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F* or *t*	유의도
성별	남자	2997	3.67	1.074	t=-12.994***	.000
	여자	2821	4.01	0.910		
학교 유형	초등	1976	3.92	1.395	F=4.341*	.013
	중등	1884	3.94	1.022		
	고등	2054	3.83	1.108		

주. *p<.05, ***p<.001

'교육현장에서 혐오표현 및 차별 관련 교육' 필요성에 대한 응답을 성별로 분석한 결과, 여성 집단의 평균치가 남성 집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t=-12.994, p <.001).

학교 유형별로는 중학교에서 혐오표현 관련 교육의 필요성이 우선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3) 혐오표현 개선방법 홍보 필요성

표 Ⅳ-118 혐오표현 개선방법 홍보 필요성

구분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F* or *t*	유의도
성별	남자	2997	3.59	1.081	t=-12.625***	.000
	여자	2820	3.93	0.923		
학교 유형	초등	1976	3.81	1.422	F=.540	.583
	중등	1884	3.83	1.037		
	고등	2054	3.79	1.106		

주. ***p<.001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혐오표현이나 차별에 대한 개선방법 홍보'필요성에 대한 응답을 성별로 분석한 결과, 여성 집단의 평균치가 남성 집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t =-12.625, p <.001).

(4) 혐오 가해자 사법처리 필요성

표 Ⅳ-119 혐오 가해자 사법처리 필요성

구분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F* or *t*	유의도
성별	남자	2993	3.54	1.120	t=-12.861***	.000
	여자	2817	3.89	0.966		
학교 유형	초등	1976	3.74	1.456	F=.857	.424
	중등	1884	3.78	1.104		
	고등	2054	3.79	1.176		

주. ***p<.001

'혐오표현을 사용한 사람들의 사법처리'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을 성별로 분석한 결과, 여성 집단의 평균치가 남성 집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t =-12.861, p <.001).

학교유형별로는 초·중·고등학교 모두 3.74이상으로 나타나 높은 필요성을 보이고 있다. 다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5) 학교 내 혐오 및 차별 방지 제도화 필요성

표 Ⅳ-120 학교내 혐오 및 차별 방지 제도화 필요성

구분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F* or *t*	유의도
성별	남자	2993	3.56	1.084	t=-14.490***	.000
	여자	2819	3.94	0.906		
학교 유형	초등	1976	3.84	1.427	F=1.980	.137
	중등	1884	3.84	1.043		
	고등	2054	3.77	1.127		

주. ***p<.001

'학교 내 혐오 및 차별 방지 내용 제도화' 필요성에 대한 응답을 성별로 분석한 결과, 여성 집단의 평균치가 남성 집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t=-14.490, p<.001).

학교 유형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6) 온라인 혐오표현 기준 제시 필요성

'온라인에서 허용되지 않는 혐오 및 차별 표현의 기준 제시'필요성에 대한 응답을 성별로 분석한 결과, 여성 집단의 평균치가 남성 집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t=-14.855, p <.001).

학교유형별로는 3.87이상으로 높은 필요성을 보이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표 Ⅳ-121 온라인 혐오표현 기준 제시 필요성

구분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F* or *t*	유의도
성별	남자	2996	3.62	1.098	t=-14.855***	.000
	여자	2818	4.02	0.926		
학교 유형	초등	1976	3.87	1.426	F=.065	.937
	중등	1884	3.87	1.078		
	고등	2054	3.86	1.126		

주. ***p<.001

(7) 언론매체의 혐오 및 차별 표현 윤리기준 강화 필요성

표 Ⅳ-122 언론매체의 혐오 및 차별 표현 윤리기준 강화 필요성

구분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F* or *t*	유의도
성별	남자	2996	3.64	1.095	t=-14.705***	.000
	여자	2818	4.03	0.906		
학교 유형	초등	1976	3.83	1.455	F=3.111*	.045
	중등	1884	3.89	1.033		
	고등	2054	3.92	1.114		

주. *p<.05, ***p<.001

‘신문 방송 등 언론의 혐오 및 차별 표현 윤리 기준 강화’ 필요성에 대한 응답을 성별로 분석한 결과, 여성 집단의 평균치가 남성 집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t =-14.705, p 〈.001).

학교유형별에서도 고학년일수록 언론매체의 혐오 및 차별표현과 관련하여 윤리기준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8) 혐오표현 피해의 영향

혐오표현 및 차별적 행위의 피해경험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정서적, 행동적 결과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단순빈도에 있어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한 동의비율은 “흥분감과 분노(35.6%)”가 가장 많았으나, “개인적으로 저항(25.1%)”한 경우와 “위축감을 느끼고 침묵(22.8%)”한 경우가 비슷하게 나타났고, “주변에 알리고 공동 대응(19.1%)”한 경우는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분석 결과를 성별, 학교유형별로 비교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성별 혐오표현 및 차별적 행위에 따른 심리적 피해

표 Ⅳ-123 성별 혐오 및 차별적 행위에 따른 심리적 피해

구분		긴장감과 괴로움	자괴감과 무력감	공포감과 패닉	흥분감과 분노	불안감과 우울
남자	평균	2.36	2.31	2.19	2.65	2.30
	사례 수	3067	3067	3067	3067	3067
	표준편차	1.590	1.590	1.567	1.680	1.599
여자	평균	2.83	2.73	2.57	3.10	2.78
	사례 수	2847	2847	2847	2847	2847
	표준편차	1.486	1.485	1.480	1.528	1.513
F		139.224***	109.541***	94.584***	117.851***	138.721***
유의도		.000	.000	.000	.000	.000

구분		위축감과 침묵	가해자 및 가해 장소 회피	개인 저항	주변공유 및 공동 대응	외출 및 대인 관계 회피
남자	평균	2.35	2.39	2.63	2.49	2.01
	사례 수	3067	3067	3067	3067	3067
	표준편차	1.617	1.647	1.640	1.589	1.526
여자	평균	2.76	2.80	2.81	2.71	2.20
	사례 수	2847	2847	2847	2847	2847
	표준편차	1.532	1.521	1.477	1.492	1.443
F		97.307***	98.530***	19.420***	29.568***	22.908***
유의도		.000	.000	.000	.000	.000

주. ***p<.001

성별로 '혐오표현이나 차별적 행위를 보거나 피해를 당했을 때' 심리적 피해와 이에 따른 행동은 남녀 중간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남성보다 피해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유의도 0.000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남성의 경우 대부분 평균 2.5 이하로 나타났으며, 흥분감과 분노가 2.65, 개인 저항이 2.63으로 평균 이상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대부분 평균 2.5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외출 및 대인 관계 회피 응답에서 2.20으로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

특히 중점적인 심리적 피해로는 남성의 경우 흥분감과 분노, 개인 저항이 높은 편이며, 여성의 경우는 흥분감과 분노가 3.10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긴장감과 괴로움이 2.83, 개인 저항이 2.81, 가해자 및 가해 장소 회피가 2.80 순으로 제시되었다.

남녀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난 심리적 피해 응답은 흥분감과 분노와 개인 저항 순으로 나타났으며, 낮게 나타난 응답은 외출 및 대인관계 회피이다.

(2) 학교유형별 혐오표현 및 차별적 행위에 따른 심리적 피해

학교유형별로 '혐오표현이나 차별적 행위를 보거나 피해를 당했을 때' 심리적 피해와 이에 따른 행동은 초등학교는 전반적으로 중간 이하로 제시되고 있으며,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중간이상으로 비슷한 피해를 보고 있다.

초등학교는 흥분감과 분노가 2.63으로 가장 높고, 다른 응답항목은 평균 이하로 제시되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심리적 피해 행동에서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중간이상으로 나타나 고학년에 해당할수록 혐오 및 차별적 행위에 대한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결과는 유의도 0.000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긴장감과 괴로움 응답은 중학교가 가장 높고, 초등학교가 가장 낮으며, 자괴감과 무력감은 고등학교가 가장 높으며, 중학교 초등학교 순으로 나타났다.

공포감과 패닉은 초·중·고등학교 모두 중간 이하로 나타났으며, 흥분감과 분노는 초·중·고등학교 모두 평균 이상으로 혐오와 차별에 따른 피해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감과 우울, 위축감과 침묵 응답에서 초등학교는 중간 이하로 나타났으나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평균 이상으로 학년이 높을수록 피해가 증가한다.

가해자 및 가해 장소 회피 항목에서는 초·중·고등학교 모두 중간 정도의 피해 행동을 보인다.

표 Ⅳ-124 학교유형별 혐오 및 차별적 행위에 따른 심리적 피해

구분		긴장감과 괴로움	자괴감과 무력감	공포감과 패닉	흥분감과 분노	불안감과 우울
초	평균	2.36	2.32	2.27	2.63	2.39
	사례 수	1976	1976	1976	1976	1976
	표준편차	1.766	1.765	1.791	1.834	1.805
중	평균	2.65	2.58	2.41	2.98	2.59
	사례 수	1884	1884	1884	1884	1884
	표준편차	1.472	1.481	1.450	1.551	1.497
고	평균	2.75	2.65	2.44	2.99	2.61
	사례 수	2054	2054	2054	2054	2054
	표준편차	1.389	1.374	1.333	1.441	1.392
F		33.216***	26.113***	7.171***	30.722***	11.792***
유의도		.000	.000	.000	.000	.000

구분		위축감과 침묵	가해자 및 가해 장소 회피	개인 저항	주변공유 및 공동 대응	외출 및 대인관계 회피
초	평균	2.41	2.46	2.57	2.52	2.01
	사례 수	1976	1976	1976	1976	1976
	표준편차	1.835	1.835	1.845	1.841	1.730
중	평균	2.61	2.62	2.77	2.61	2.15
	사례 수	1884	1884	1884	1884	1884
	표준편차	1.527	1.525	1.438	1.428	1.409
고	평균	2.62	2.68	2.82	2.65	2.15
	사례 수	2054	2054	2054	2054	2054
	표준편차	1.368	1.409	1.364	1.323	1.296
F		10.639***	9.517***	14.676***	4.134***	5.790***
유의도		.000	.000	.000	.016	.003

주. ***p<.001

9) 편견이나 차별적 행위를 하게 된 이유

편견이나 차별적 행위를 하게 되는 다양한 이유들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단순빈도에 있어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한 동의비율은 “친구들이 모두 사용하니까(17.9%)”가 제일 많았고, “친구집단과 잘 어울리려면 같이

사용해야 하니까(12.8%)"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인식의 평균을 성별, 경제적 수준별, 학교유형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또래집단에의 동조화

'친구들이 모두 사용하니까'라는 진술문에 대한 응답을 성별로 분석한 결과, 남성 집단의 평균치가 여성 집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경제수준별로는 하 집단의 평균치가 가장 높았고, 최하 집단의 평균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학교유형별로는 중고등학교에서 평균치가 높으며, 초등학교는 아직까지 평균 아래이다.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Ⅳ-125 또래집단에의 동조화

구분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F* or *t*	유의도
성별	남자	2957	2.39	1.167	*t*=.641	.522
	여자	2815	2.37	1.157		
경제 수준	최하	10	2.00	0.943	*F*=10.813***	.000
	하	129	2.64	1.255		
	중간	2999	2.43	1.146		
	상	1810	2.38	1.154		
	최상	764	2.15	1.206		
학교 유형	초등	1976	2.31	1.695	*F*=21.400***	.000
	중등	1884	2.58	1.405		
	고등	2054	2.57	1.349		

주. ***p<.001

(2) 편견과 차별 표현 인식 부족

표 Ⅳ-126 편견과 차별 표현 인식 부족

구분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F* or *t*	유의도
성별	남자	2956	2.20	1.086	t=-2.771**	.006
	여자	2812	2.28	1.145		
경제 수준	최하	10	2.10	1.101	F=10.508***	.000
	하	129	2.40	1.142		
	중간	2995	2.29	1.114		
	상	1811	2.22	1.104		
	최상	763	2.01	1.125		
학교 유형	초등	1976	2.23	1.682	F=10.720***	.000
	중등	1884	2.35	1.372		
	고등	2054	2.44	1.338		

주. **p<.01, ***p<.001

'어떤 표현이 편견과 차별 표현인지 잘 모르니까'라는 진술문에 대한 응답을 성별로 분석한 결과, 여성 집단의 평균치가 남성 집단의 평균치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수준별로 분석한 결과, 하 집단의 평균치가 가장 높았고, 최상 집단의 평균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학교유형별로는 초·중·고등학교 모두 평균 이하로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혐오표현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3) 친구집단과의 관계유지 필요성

'친구집단과 잘 어울리려면 같이 사용해야 하니까'라는 진술문에 대한 응답을 성별로 분석한 결과, 남성 집단과 여성 집단의 평균치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수준별로는 하 집단의 평균치가 가장 높았고, 최하 집단의 평균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다.

학교유형별로는 초등학교가 가장 낮은 반면에 중학교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표 Ⅳ-127 친구집단과의 관계유지 필요성

구분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F* or *t*	유의도
성별	남자	2954	2.18	1.094	*t*=.197	.844
	여자	2814	2.18	1.131		
경제 수준	최하	10	2.00	1.054	*F*=5.965***	.000
	하	129	2.36	1.138		
	중간	2998	2.22	1.098		
	상	1810	2.17	1.119		
	최상	761	2.02	1.140		
학교 유형	초등	1976	2.22	1.709	*F*=5.897**	.003
	중등	1884	2.39	1.416		
	고등	2054	2.30	1.312		

주. **p<.01, ***p<.001

(4) 언론 행태 모방

표 Ⅳ-128 언론 행태 모방

구분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F* or *t*	유의도
성별	남자	2956	2.16	1.068	*t*=-0.897	.370
	여자	2816	2.18	1.094		
경제 수준	최하	10	2.40	1.174	*F*=5.644***	.000
	하	129	2.29	1.128		
	중간	2997	2.20	1.058		
	상	1812	2.17	1.084		
	최상	764	2.00	1.141		
학교 유형	초등	1976	2.21	1.676	*F*=4.802**	.008
	중등	1884	2.29	1.340		
	고등	2054	2.35	1.312		

주. **p<.01, ***p<.001

‘신문 방송 등 언론인들이 자주 사용하니까’라는 진술문에 대한 응답을 성별로 분석한 결과, 여성 집단의 평균치가 남성 집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지 않다.

경제수준별로는 최하 집단의 평균치가 가장 높았고, 최상 집단의 평균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경제적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신문 방송 등 언론인들이 자주 사용하니까 편견이나 차별적 행위를 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학교유형별로는 초·중·고등학교 모두가 평균 이하로 나타났으나, 고학력이 될수록 신문, 방송, 언론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5) 온라인 대화에서 필요

표 Ⅳ-129 온라인 대화에서 필요

구분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F* or *t*	유의도
성별	남자	2953	2.21	1.117	*t*=1.083	.279
	여자	2811	2.17	1.125		
경제 수준	최하	10	2.60	1.350	*F*=6.489***	.000
	하	129	2.35	1.184		
	중간	2996	2.23	1.108		
	상	1805	2.17	1.118		
	최상	764	2.02	1.154		
학교 유형	초등	1976	2.24	1.736	*F*=5.243**	.005
	중등	1884	2.39	1.427		
	고등	2054	2.33	1.323		

주. **p<.01, ***p<.001

‘온라인에서 대화하려면 사용해야 하니까’라는 진술문에 대한 응답을 성별로 분석한 결과, 남성 집단의 평균치가 여성 집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경제수준별로 분석한 결과, 최하 집단의 평균치가 가장 높았고, 최상 집단의 평균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경제적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온라인에서 대화하려면 사용해야 하니까 편견이나 차별적 행위를 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다.

학교유형별로는 모든 학교유형에서 낮게 나타났으나, 그 중 중학교에서 온라인 대화에 혐오표현 관련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다.

(6) 정치인 언어 모방

표 Ⅳ-130 정치인 언어 모방

구분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F* or *t*	유의도
성별	남자	2953	2.11	1.051	t=2.775**	.006
	여자	2813	2.03	1.031		
경제 수준	최하	10	2.10	1.101	F=3.185*	.013
	하	129	2.17	1.054		
	중간	2997	2.10	1.024		
	상	1808	2.04	1.040		
	최상	762	1.97	1.109		
학교 유형	초등	1976	2.20	1.698	F=.147	.863
	중등	1884	2.19	1.336		
	고등	2054	2.22	1.286		

주. *p<.05, **p<.01

'정치인들이 자주 사용하니까'라는 진술문에 대한 응답을 성별로 분석한 결과, 남성 집단의 평균치가 여성 집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경제수준별 응답을 분석한 결과, 하 집단의 평균치가 가장 높았고, 최상 집단의 평균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다.

학교유형별로는 모두 평균치 이하이지만 초등학교에서 정치인 언어를 모방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높으며,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7) 청소년 언어 하위문화

‘어른들이 모르게 우리들 만의 언어를 사용해야 하니까’라는 진술문에 대한 응답을 성별로 분석한 결과, 남성 집단의 평균치가 여성 집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경제수준별로 분석한 결과, 하 집단의 평균치가 가장 높았고, 최하 집단의 평균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학교유형별로는 초등학교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표 Ⅳ-131 청소년 언어 하위문화

구분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F* or *t*	유의도
성별	남자	2956	2.01	1.022	t=2.978**	.003
	여자	2815	1.93	1.007		
경제 수준	최하	10	1.80	0.919	F=2.817*	.024
	하	129	2.02	1.061		
	중간	2999	2.00	1.009		
	상	1810	1.94	0.998		
	최상	763	1.88	1.066		
학교 유형	초등	1976	2.13	1.672	F=.731	.482
	중등	1884	2.10	1.338		
	고등	2054	2.08	1.257		

주. *p<.05, **p<.01

(8) 어른과의 세대차이

표 Ⅳ-132 어른과의 세대차이

구분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F* or *t*	유의도
성별	남자	2957	2.03	1.043	*t*=1.416	.157
	여자	2815	1.99	1.043		
경제 수준	최하	10	1.80	0.919	*F*=2.434*	.045
	하	129	2.02	1.061		
	중간	2999	2.04	1.031		
	상	1810	1.99	1.037		
	최상	764	1.92	1.096		
학교 유형	초등	1976	2.12	1.666	*F*=.922	.398
	중등	1884	2.18	1.366		
	고등	2054	2.12	1.270		

주. *$p<.05$

'어른들과 세대 차이를 느껴 사용할 수밖에 없으니까'라는 진술문에 대한 응답을 성별로 분석한 결과, 남성 집단의 평균치가 여성 집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경제수준별로 분석한 결과, 중간 집단의 평균치가 가장 높았고, 최하 집단의 평균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다. 학교유형별로는 중학교가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제5장 면접조사 결과분석

1. 조사방법
2. 전문가 면접조사 결과분석
3. 청소년 면접조사 결과분석

5 면접조사 결과분석[58)]

1. 조사방법

1) 대상과 방법

면접조사의 대상자는 전문가 및 청소년이다. 전문가는 혐오표현에 관해 연구하고 있는 학자 2명, 혐오표현 정책담당 공무원 1명, 혐오표현 예방교육이나 피해자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교사 3명과 민간단체 활동가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대상 전문가는 국가인권위원회 혐오차별대응기획단의 연구나 교육자료 제작에 참여했던 분들 중에서 일부 추천을 받아 눈덩이 표집을 하였다.

면접조사는 설문조사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청소년의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알아보고, 혐오표현에 대한 향후 전망과 대응방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이러한 조사 목적 달성을 위해 청소년은 혐오표현 피해 경험이 있는 이주배경 청소년 1명, 장애 청소년 1명, 성소수자 청소년 2명, 학생 청소년 3명, 소년원 출원생 2명 등 총 9명을 표집하였다. 조사대상 청소년은 조사대상 전문가 중 교사 및 민간단체 활동가로부터 추천받아 선정했다. 표집 계획은 이주배경 청소년, 장애 청소년, 성소수자 청소년, (혐오표현 피해 경험) 학생 청소년, 소년원 출원생 5개 영역별로 혐오표현 피해 경험이 있는 남녀 청소년 각 1명씩

58) 제5장은 이유진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총 10명이었다. 하지만 남성인 청소년을 추천받기가 어려웠다. 교사도 민간단체 활동가도 혐오표현 피해 경험이 있는 남성인 청소년을 찾아내지 못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조사대상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물은 결과, 남자 청소년의 경우 여자 청소년에 비해 인권의식이 낮을 뿐 아니라(이혜정 외, 2018: 71) 남성이라는 정체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주배경을 갖고 있거나 장애를 갖고 있더라도 자신을 혐오와 차별의 피해자로 인식하기 어려워서일 수도 있고, 실제로 남성이기 때문에 여성 청소년에 비해 혐오표현의 피해를 적게 받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결과적으로 표집된 남성인 청소년은 법적으로 남성이긴 하지만 본인의 성정체성은 트랜스 여성인 청소년 1명과 소년원 경력으로 인해 사회적 낙인과 차별을 겪고 있는 소년원 출원 남성 청소년 1명뿐이다.

이러한 성별 편향도 우리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성인 청소년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았으므로 목표인원인 10명을 채우지 못했다. 학생 청소년의 경우는 혐오표현 피해 경험을 갖고 있는 청소년을 표집하였는데, 피해유형을 제한하지 않고 표집한 결과, 각각 여성혐오, 이주배경 혐오, 성소수자 혐오의 경험을 갖고 있었다.[59]

조사대상 청소년의 피해특성은 다음과 같다. 사례11번은 어머니가 일본인이고 본인도 한국과 일본의 이중국적자이다. 사례12번은 뇌병변 장애인으로 주로 손의 불편을 겪고 있다. 사례13번은 법적 성별은 남성이지만 트랜스 여성으로서의 성정체성을 갖고 있고 성적지향은 양성애자이다. 사례14번은 성별 구분을 하지 않는 성정체성을 갖고 있고 성적지향은 범성애자이다. 사례15번은 평범한 학생 청소년으로 학교 내에서 여성혐오 피해를 받은 청소년이다. 사례16번은 어머니가 중국인으로 학교 내에서 이주배경 혐오 피해를 받은 청소년이다. 사례17번은 레즈비언으로 학교 내에서 성소수자 피해를 받은 청소년이다. 사례18번과 사례19번은 범죄

59) 다른 대상자와 달리 피해유형을 특정하지 않고 학생청소년으로 표기한 이유는 표집할 때, 학교 내에서의 피해를 알아보기 위해 유형을 특정하지 않고 중고등학교 교사를 통해 학생 중에서 혐오표현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을 추천받았기 때문이다.

자 차별을 경험한 소년원 출원생이다. 이상 면접조사 대상자의 특성은 표 V-1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다.

표 V-1 면접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전문가사례	특성	성별	연령	근무기간	담당업무
1	교수	남	45세	11년	법학과 교수
2	연구원	여	44세	7년	교육 연구
3	공무원	여	43세	15년	혐오차별 개선
4	교사	여	39세	17년	초등학교 담임
5	교사	여	30세	4년	중학교 혁신총괄
6	교사	남	41세	11년	고등학교 수학과
7	인권단체	여	26세	3년 3개월	반차별 운동
8	청소년시설	여	30세	7년 6개월	동아리 지원
9	청소년인권단체	남	45세	17년	인권 교육
10	청소년인권단체	여	32세	3년 4개월	상담 지원
청소년사례	**특성**	**성별**	**연령**	**표집**	**특기사항**
11	이주배경 청소년	여	만16세	청소년시설	이중국적
12	장애 청소년	여	만18세	청소년인권단체	뇌병변
13	성소수자 청소년	남	만18세	청소년인권단체	트랜스젠더
14	성소수자 청소년	여	만19세	청소년인권단체	범성애자
15	학생 청소년	여	만15세	중학교	여성혐오 피해
16	학생 청소년	여	만15세	중학교	이주배경 피해
17	학생 청소년	여	만17세	고등학교	성소수자 피해
18	소년원 출원생	여	만18세	소년보호단체	출원생 차별
19	소년원 출원생	남	만18세	소년보호단체	출원생 차별

전문가 조사는 조사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이메일로 서면 답변을 먼저 받은 후에 보충질문만 화상면접을 실시하거나 화상면접 만을 실시하는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였고, 청소년 조사는 화상면접만 실시했다. 전문가 서면조사는 8월 20일부터 9월 10일까지 진행되었고, 화상면접은 화상 인터뷰만 실시하는 대상자부터 시작

해 서면 답변을 회신한 차례대로 실시했다. 전문가와 청소년의 화상면접은 2020년 8월 28일부터 9월 14일 사이에 Zoom을 사용해 실시되었고, 연구자가 직접 인터뷰를 진행했다. 수집된 자료는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해 분석했다.

면접조사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직접 인터뷰를 진행한 연구자는 사전에 연구윤리 교육을 이수하였고, 면접조사지와 조사과정에 대해 IRB 심의[60]를 받았으며, 면접조사 대상자의 동의서 및 18세 미만자의 보호자 동의서를 받았다.

2) 내용과 도구

면접조사의 조사도구는 반구조화된 개방형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조사내용은 2차 자료 분석 및 설문조사로 파악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혐오표현 노출상황 파악과 대응정책 개발을 위한 사항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전문가 대상의 조사내용은 첫째, 청소년의 혐오표현 노출실태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노출경험, 노출장소, 내용과 방법, 원인, 변화 추이와 혐오범죄 전망 등에 관해 질문했다. 둘째, 청소년의 혐오표현 가피해 경험의 영향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2차 피해 경험에 대한 의견, 피해이후 대처경험에 대한 의견, 가해경험 이후에 대한 의견 등에 관한 질문했다.

셋째, 혐오표현 제한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현재 혐오표현 대처방법, 규제에 대한 의견, 예방에 대한 의견, 피해자 지원에 대한 의견, 대항표현에 대한 의견 등을 질문했다. 그 밖에 들어본 혐오표현을 모두 열거하도록 하고, 전문가의 특성으로 소속, 성별, 연령, 근무기간, 담당업무 등을 조사했다.

다음으로 청소년 대상의 조사내용은 첫째, 혐오표현 노출경험으로 단순목격

60) 본 조사는 2020년 7월 8일 본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승인(IRB 승인번호 : 202005-HR-고유-008) 통보를 받음.

및 가피해 경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주체, 시기와 빈도, 장소와 공간, 내용, 방법 및 유형, 원인과 인식, 혐오범죄 등에 관해 질문했다. 둘째, 혐오표현 가피해 경험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2차 피해 경험, 피해이후 대처경험 등에 관해 질문했다.

셋째, 혐오표현에 대한 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실태에 대한 의식, 원인에 대한 의식, 변화추이에 대한 의식 등을 질문했다. 넷째, 혐오표현 제한에 대한 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규제에 대한 의식, 예방에 대한 의식, 피해자 지원에 대한 의식, 대항표현에 대한 의식 등을 질문했다. 청소년의 특성으로 소속, 성별, 연령, 피해유형 등을 조사했다.

2. 전문가 면접조사 결과분석

1) 청소년의 혐오표현 노출실태에 대한 의견

(1) 노출경험

현재 우리 사회의 청소년 혐오표현 노출실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지 전문가의 의견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조사대상 전문가 모두가 청소년의 혐오표현 노출이 심각하다는데 한목소리로 의견을 모았다. 그렇다면 청소년에 대한 혐오표현과 청소년에 의한 혐오표현 중에서는 어느 쪽이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지 알아보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어졌다.

청소년에 의한 혐오표현이 더 심각하다는 의견이 4명, 둘 다 똑같이 심각하다는 의견이 4명, 청소년에 대한 혐오표현이 더 심각하다는 의견이 1명, 빈도에 있어서는 청소년에 의한 혐오표현이 더 많지만 강도에 있어서는 청소년에 대한 혐오표현이 더 심각하다는 의견이 1명이었다.

청소년에 의한 혐오표현의 심각성은 청소년들이 그 표현의 유래나 의미를 모른

채 사용함으로써 그러한 언어가 일상화되고, 혐오가 담긴 비속어나 욕설이 또래문화나 놀이문화로 자리 잡았으며, 문제의식 없이 혐오를 말해도 되거나 웃음거리로 이용하는 분위기, 인터넷 게임이나 SNS에서 확대 재생산되는 혐오표현 등이 언급되었다.

청소년에 대한 혐오표현의 심각성은 노골적인 혐오보다는 연령이 낮다는 이유로 은근히 무시하거나 편견을 담은 표현을 사용하고, 온라인에서 청소년에 대한 혐오표현이 자주 사용되며, 미성숙한 존재라는 이유로 인한 차별과 편견, 어리다는 이유로 교사나 학부모의 일상화된 혐오표현, 급식충이나 룸나무(여성청소년에게 장래에 유흥업소에서 일할 인상이라는 뜻으로 쓰는 비하의 용어) 같은 연령 정체성에 의한 혐오표현 등이 언급되었다.

하지만 청소년에 의한 혐오표현이든 청소년에 대한 혐오표현이든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이 혐오적 언어를 사용하다 보면 청소년에게 학습이 이루어지고, 소수자에 대한 감수성 수준에 따라 소수자 혐오표현이 증가하면 청소년에 '의한'이나 '대한' 혐오표현이 모두 증가하기 때문에 어느 쪽이 더 심각한지는 구분할 의미가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청소년 집단의 혐오 현상을 보면, 한때는 혐오를 주도하던 청소년이 나중에 혐오의 대상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청소년이 혐오의 주체가 되거나 객체가 되거나 문제는 다 심각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혐오표현의 내용에 있어서는 청소년에 대한 혐오표현이 대체로 나이가 어리다는 '연령 정체성'에 관한 것이라면, 청소년에 의한 혐오표현은 주로 여성이나 성소수자, 장애인과 같은 '소수자 정체성'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청소년에 대한 혐오표현은 연령이 낮다는 이유로 은근히 무시하거나 청소년의 인권을 부정하는 편견이 담긴 말들이 주로 문제고, 청소년에 의한 혐오표현은 어떤 특정한 단어나 말들이 뭐가 문제인지, 어디서 유래를 했고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른 채 사용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례1)

> '빈도'로 볼 때는 청소년에 의한 혐오표현이 좀 더 자주 발생하고 도드라지게 보이지만, '강도'

의 관점에서 볼 때는 '청소년에 대한' 혐오표현이 훨씬 심각하다고 봅니다. (사례4)

문제의식 없이 혐오를 말해도 되는 분위기, 혐오와 차별의 언어를 지적하면 '예민충'으로 낙인찍는 분위기가 문제 아닐까 합니다. 해학의 소재로서 '같이 웃으면 그뿐' 이라는 일상의 문제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례 5)

청소년에 대한 혐오가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에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교사와 학부모가 가진 청소년에 대한 차별의식이 매우 강하다보니 청소년에 대한 혐오표현은 일상적입니다. 어리다는 이유로 배제되는 상황에서의 표현들... 여자가, 학생이 말이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어디 선생님한테 감히 이런 식의 표현들이요. (사례 6)

청소년에 의한, 청소년 간 혐오표현이 보다 더 심각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혐오 표현은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들이 떠오릅니다. 청소년이 무슨 알바냐, 공부나 해야지 이런 느낌으로요. (사례8)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혐오 표현에 피해자가 되거나 노출되면 자연스럽게 혐오표현의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사례9)

(2) 노출장소

청소년의 혐오표현 노출이 일어나는 곳은 생활공간, SNS, 인터넷, 방송, 언론 등 주로 어디인지 전문가의 의견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청소년의 가정이나 학교, 학원 등 오프라인 생활공간에서도 혐오표현 노출이 일어나지만, 빈도나 강도 면에서 모두 온라인 공간에서의 혐오표현 노출이 더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러한 현상은 청소년이 주로 머무는 공간이 어디인가에 달린 것인데,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수업까지 진행되면서 온라인에서의 혐오표현 노출실태는 더욱 심화되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오프라인에서의 혐오표현은 부모나 교사와 같이 신뢰하는 어른들에 의한 혐오표현을 지적하기도 했는데, 예를 들어 대견하다는 표현은 칭찬 같지만 위계적인 혐오를 담고 있다고 했다. 온라인에서의 혐오표현은 청소년에게 인기 있는 유투버나 BJ들이 사용하는 혐오표현이 메신저나 단톡방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한 가지 주목해볼 부분은 성소수자 청소년이 쉼터와 같은 청소년시설 종사자와 다른 이용 청소년에 의한 혐오와 차별을 받는 사례이다.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인 '띵동'에는 이러한 피해사례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 과정의 토론방송에서 야기되는 공개적인 성소수자 혐오발언이나 성소수자 관련 뉴스에 달리는 혐오댓글 등은 단발성이라고 해도 성소수자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한다.

생활공간에서는 청소년 간 소통과정에서 혐오표현이 많이 사용될 것이고, 가장 많은 혐오표현은 청소년들이 주로 활용하고 있는 유튜버 등의 인터넷 방송, 페이스북 등의 SNS, 인터넷 게임 등을 통해서 노출될 것입니다. (사례2)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 혐오표현 청소년 인식조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SNS, 인터넷 등 온라인 공간에서 많은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두 번째가 학교입니다. 이러한 통계는 실제 청소년들이 어느 공간에 더 머무르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례3)

나이에 의한 혐오표현은 학교든 가정이든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과 젠더에 대한 혐오표현도 생활공간에서 자주 일어나고요. 사용하는 빈도나 접하는 빈도를 본다면 SNS, 게임채팅, 온라인방송에서 빈번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례6)

요즘 10대들에게 인기 있는 유튜버, BJ들의 각종 혐오표현이 심각한데 그러한 언행들을 10대들이 서로 공유하면서 채팅창에서도 사용하고 단톡방 등에서도 사용하게 되죠. 특히 올해는 많은 시간 온라인수업을 진행하고 학교 친구들과의 카톡방 등의 메신져 소통이 늘면서 그러한 양상이 더욱 심각해지고요. (사례7)

온라인 게임 내 채팅, 친구들끼리 농담을 주고 받을 때, SNS채팅방, 인터넷 커뮤니티(남초,여초 등), 인터넷 방송(유튜브, 트위치 등등) 같은 데서요. (사례8)

탈가정, 탈학교 청소년의 경우 혐오표현을 가장 접하기 쉬운 장소 중 하나로 쉼터 등의 청소년 기관이 있습니다. 청소년 기관 이용자인 청소년에 의한 혐오표현, 기관 종사자에 의한 혐오표현과 차별사례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의 5년간의 상담통계에 따르면, 선거철 대통령, 국회의원 후보의 토론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혐오발언이 있었을 때, 인터넷 뉴스기사의 댓글 창에 성소수자 혐오댓글이 쏟아질 때, 심리적 어려움 호소가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사례10)

(3) 내용과 방법

청소년의 혐오표현 노출내용은 성별, 인종, 정치, 지역, 종교, 성적지향[61] 등 주로 어떤 것이고, 구체적인 혐오표현의 방법은 욕설, 비난, 편견, 차별 등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문가의 의견을 알아보았다.

대부분의 전문가가 청소년의 혐오표현 노출의 내용으로 가장 보편적인 것은 성별에 기반한 여성혐오라고 지적했다. 그 다음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이주배경을 포함한 인종에 대한 편견과 혐오가 주로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 외 정치나 지역, 종교에 대해서는 청소년과 별로 관련성이 없고, 질문에 언급되지 않은 내용으로 외모차별이 심하다는 의견도 있다. 혐오표현의 방법은 다양성이 무시되고, 비교하고, 차별하는 표현으로 이루어지는데, 주로 욕설의 형태로 발화되고 있다고 한다.

여성혐오는 주로 여성의 외모, 어머니에 대한 멸시, 여성에 대한 멸시를 표현하고 있고, 일부 청소년은 적극적으로 여성혐오 컨텐츠를 sns나 유튜버 등을 통해 찾아보고 재생산 한다. 남자 청소년의 경우 자신들도 남성혐오 피해자라는 말을 하지만 실제로 피해의식이 있다기 보다는 여성혐오라는 말에 대한 반발심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고등학교에서 젠더 갈등이 심화되기 시작한 시점은 2015년 페미니즘 리부트로 남학생들은 여성이 왜 사회적 약자인지에 대한 반발심이 생겼고, 페미니즘에 관심 있는 여학생들을 비난하기 시작하면서라는 분석도 있다. 2018년 스쿨미투로 인해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 활발해지면서 갈등이 심화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교육으로 인해 여학생들의 성인지 감수성은 높아진 반면, 남학생들은 반발심과 피해의식이 더욱 깊어진 측면이 있다고 한다.

혐오표현 방법으로 가장 흔한 욕설은 일종의 또래문화이기 때문에 강해보이기

61) 면접조사지에서는 성적기호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나, 전문가 면접조사 과정에서 혐오표현과 관련하여 성적 정체성을 지칭하는 용어는 성적기호가 아니고 '성적지향'이라는 지적을 받았으므로 보고서에서는 성적지향으로 정정하여 표기함.

위해 강한 표현을 쓰게 된다고 한다. '페미하냐?'와 같은 페미니즘 혐오가 있고, 얼굴이나 몸매 등 외모를 평가하는 찐따 같은 외모차별 표현이 있으며, 쪽바리, 짱개, 흑형 같은 인종차별, '게이냐?' 같은 성소수자 혐오가 있다. 이러한 혐오표현의 대상들은 결국 집단에서 약하거나 배제시키고 싶은 약자가 선택되는 것이라고 한다.

여성혐오의 경우는 너무나 보편적으로 청소년들의 생활세계에 만연되어 있어서 여성혐오 이슈가 직접적인 학교폭력이나 범죄로 비화되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은 혐오표현의 수위도 심각할 뿐 아니라 아우팅 협박이나 폭력 피해, 성폭력 피해까지 입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게다가 학교 수업이나 학생지도 과정에서 교사에 의한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로 인한 피해도 종종 발생하고 있고, 트랜스젠더와 정신병자의 혐오를 함께 담고 있는 '젠신병자'라는 복합적인 혐오로 표출되기도 한다.

> 청소년 같은 경우는 그런 태도나 관점이 주로 문제가 되지, 그것이 직접적으로 어떤 표현으로 노출되는 부분은 다른 대상자에 비해서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더 문제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덜 문제일 수도 있는 거겠죠. (사례1)

> 청소년들 간 가장 빈번한 혐오표현은 젠더에 기반 한 차별적 언어입니다. 남성 청소년 간 남성성을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행해지며, 안티 페미니스트 정서 속에서 일상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여성혐오(여성의 외모, 어머니 멸시, 여성에 대한 멸칭 등)가 가장 빈번하고 가장 심각한 혐오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례2)

> 성별 특히 엄마, 장애, 성적지향과 관련한 표현이 많고, 무례한 사람(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선생님 등에 대한 혐오표현도 존재. 대체로 욕설이나 부정적인 선입견이나 편견을 그대로 드러내는 표현이 많죠. (사례3)

> 성별 관련한 혐오표현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여성혐오 관련한 부분이 두드러지며, (응답자가 관찰한 바로는) 일부 학생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그런 종류의 컨텐츠를 SNS와 유튜버 등에서 찾아보고 재생산해요. (사례4)

> 혐오표현의 대상으로 자주 접하는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비하, 어린이 또는 자신보다 어린 사람에 대한 표현들이 있고 그 외에도 개독이나 틀딱처럼 종교나 노인에 대한 비하도 사회이

슈에 따라 빈도가 많아지기도 합니다. (사례6)

성별과 성적지향에 관련한 혐오표현이 압도적으로 많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페미니즘 리부트 때 고등학생이었던 여학생들 있잖아요. 2015년 쯤 대학사회와 다르게 중고등학교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반감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남자로서 아무런 혜택을 받은 게 없는데 내가 무슨 혜택을 받았다는 건지라는 생각이 강해지면서, 페미니즘에 관심 있는 것 같은 여학생에 대해 '너도 페미냐?'하는 반감이 생겼던 거에요. (사례7)

내용으로는 젠더혐오(여혐, 남혐 성소수자 혐오), 외모차별, 인종차별발언이 있을 것 같고요. 방법으로는 다양성 존중이 무시되는, 비교하고 차별하는 표현이 대부분이지요. 예를 들면 욕설, 비난의 경우 '페미하냐?'고 하는 페미혐오나, 얼굴이나 몸매 등 외모 순위 매기기 또는 평가 발언이요. 그리고 쪽바리, 짱깨, 흑형, 게이냐?, 찐따 같은 말이 있을 수 있어요. (사례8)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또래 청소년들로부터 '게이/레즈', '트젠(트렌스젠더)'등의 정체성 용어를 부정적, 모욕, 혐오의 의미를 담아 사용하는 방식으로 혐오표현을 경험하고, '똥꼬충' 등의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잘못된 편견을 바탕으로 한 혐오표현 피해사례도 있습니다. 정체성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알리는 행위인 '아우팅' 협박을 받거나, 실제로 아우팅이 일어나 따돌림과 폭력의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사례10)

(4) 원인

청소년들이 혐오표현을 하거나 청소년에게 혐오표현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인터넷이나 SNS의 익명성이 혐오표현을 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지 전문가의 의견을 알아보았다. 전문가들은 청소년의 혐오표현 노출 원인이 중층적이라고 보고 여러 가지 요인들을 제시해주었는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청소년의 삶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이다. 혐오표현은 일반적으로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부정적인 편견을 조장하거나 책임을 전가하거나 위기상황을 투사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자신의 삶이 행복한 사람이라면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불행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공법을 선택하지 않고 혐오와 차별로 왜곡해서 표현하는 현상인 것이다.

둘째, 학업성적 중심의 학교문화와 질서 때문이다. 취업이 어려운 사회 분위기 속에서 경쟁이 조장되고 있고, 그로 인해 학교문화는 학업성적 중심으로 통제와

감시 속에서 공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에 대한 저항을 여학생들에 대한 반감으로 표출하는 남학생들이 있는데, 여학생들의 특성이 학교문화에 좀더 적응력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해 남학생들이 피해의식을 갖는 경우가 많고, 미디어를 통해 여성 혐오를 학습하고 있다고 한다.

셋째, 집단 내에서 강해보이고 싶거나 일탈적인 하위문화를 공유하는 청소년기 발달특성 때문이다. 친구관계에서 강해 보이려고 비하적 표현과 비난, 욕설을 섞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초등학교 3, 4학년부터 남학생들 사이에서 조금씩 시작되고 6학년쯤에는 자주 발견된다고 한다. 또한 또래집단 내에서 잘못된 언어 사용을 지적하기 보다는 서로 공유하는 문화도 있다. 또래관계에서 소외되지 않고 소속감을 느끼기 위해 자연스럽게 서열관계에 편입되면서 편을 가르고 혐오의 대상과 경계를 만든다고 한다. 어른들이 모르는 새로운 혐오 발언을 공유하게 되면 소속감과 연대감을 느끼고, 청소년들은 혐오표현을 일종의 어휘력으로 생각하는 경향까지도 있다.

넷째, 혐오표현을 통해 재미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청소년들은 유투버 방송 등에서 구독자 수와 좋아요 수를 늘리기 위해 자극적이고 차별적인 표현을 하면서 마치 유쾌하고 호탕한 것처럼 재미있게 포장하는 것을 무수히 보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청소년들은 그들 사이에서도 어떤 혐오의 의미를 담고 있는지도 모른 채 여성혐오나 장애인 혐오 등이 담긴 욕설을 유행처럼 재미로 너무나 쉽게 내뱉고 있다.

다섯째, 보수적인 성교육으로 인해 성의식이 왜곡되기 때문이다. 보수적인 성교육에서 성은 숨겨야하고 부끄러운 것으로 인지하도록 교육하기 때문에 남자 청소년의 경우 불법영상물을 통해 왜곡된 성지식과 성인식을 갖게 되고 쉽게 여성혐오를 표출하게 된다고 한다. 보수적인 성교육이 여전히 실시되고 있는 이유는 학교의 선택이라는 문제도 있지만, 성정체성과 성평등을 포함한 포괄적 성교육이 학부모의 민원으로 중단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여섯째, 나이와 서열을 중시하는 문화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문화에서는 권력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무시당하거나 미성숙한 존재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청소년에 대한 혐오표현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청소년이라는 신분에 맞는 역할과 예의가 중시되는 문화가 있고, 일탈 행위를 한 청소년이 있을 때 보호적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더 나아가서는 그 개인에 대한 비난이 아닌 '청소년'이라는 집단에 대해 비난하는 것 역시 서열주의에 의한 차별과 혐오를 담고 있는 것이다.

일곱째, 혐오표현이 정당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실제로 특정 집단은 열등하고 사회에 불필요하며 자신에게 해가 된다고 믿고 있는 청소년들이 있다. 친구들 사이에서나 온라인, 방송 등에서 이러한 믿음이 공유될 때, 정당성이 확립된 효과를 갖게 되어 점점 더 당연하게 사용하게 된다. 혐오표현의 빈번한 사용을 목격하는 것이 익명성 보다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지적도 있다. 언론매체에서 다루는 반일정서나 반중정서, 북한에 대한 보도, 지역감정, 가짜뉴스 등으로 인해 일상적으로 퍼져있는 혐오와 차별이 이러한 믿음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또한 비슷한 맥락에서 혐오발언을 한 사람이 교사와 같이 권위 있는 사람일 때도 청소년들의 혐오표현이 활발해지고 피해자의 대응은 어려워진다.

인터넷이나 SNS 익명성의 영향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전문가가 강한 영향이 있다고 답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익명성이 혐오표현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했다. 당사자가 면전에 있고 지속적인 반박이 가능한 상황에서는 혐오표현이 계속되기 어렵기 때문에 익명성이 보장되는 환경은 혐오표현이 조장되기 쉬운 조건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혐오표현의 원인은 앞에서 제시된 요인들로 인한 것이지 익명성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익명성은 혐오표현의 발화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혐오표현의 '강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도 있다. 익명성으로 인해 심한 표현도 주저하지 않고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익명성을 마치 혐오표현에 대한 일종의 허용처럼 여기기도 하고 심한

말을 해도 자신은 피해 받을 일이 없는 안전장치로 잘못 인식하기도 한다.

익명성이 혐오표현의 발생 빈도나 강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인터넷 실명제를 찬성하는 전문가는 없었다. 익명성은 보장하되 그 표현과 행위에 문제가 있을 때만 실명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그러한 사실을 널리 홍보함으로써 익명성 보장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청소년만의 특성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주된 배경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불안하거나 아니면 안 좋은 상황에 놓인다거나 할 때 혐오표현이 발화되는 경우가 가장 많거든요.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이 행복하고 살기 좋고, 또 미래가 있고 희망에 찬 삶을 살고 있다면 혐오표현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사례1)

학교의 지배적인 질서에서는 여학생이 공부도 잘하고 태도도 좋기 때문에 훨씬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남학생들은 그것 때문에 불리하다는 느낌을 받기가 좋은 위치에 있죠, 유투브나 아프리카 티비 같은 데 나와서 비제이들이 하는 언어들, 논리구조, 또 일베 사이트에서 하는 것들을 배우기도 합니다. (사례2)

응답자가 만난 학생들의 상당수가 '재미있는 농담'으로 여기고 사용하거나, '친구들이 쓰니까' 사용해요. 사춘기에 접어든 학생들의 발달 시기적 특성에 따라, 친구 관계에서 '쎄 보이고' 싶을때 비하적 표현이나 비난, 욕설과 버무려서 쓰곤 하고요. (사례4)

유튜브 방송 등에서 구독자 수, 좋아요 수를 늘리기 위해 자극적이고 차별적인 표현을 유쾌하고 호탕한 태도로 포장하는 것, 또래집단에서 잘못된 언어사용을 지적하기보다는 서로의 언어 습관을 공유하는 것, 실제로 특정 집단은 열등하며 사회에 불필요하며 나에게 해가 된다고 믿고 있는 경우, 욕설을 하는 것과 비슷한 심리적 쾌감, 차별과 혐오의 분출을 통해 상대적으로 자신의 도덕적, 권력적 우위를 확인하는 심리인 거겠죠.(사례5)

즐겨보는 유튜브 등에서 자주 나오기도 하고 그러한 혐오표현은 게임 등의 온라인 채팅에서 또래들이 많이 사용하면서 무의식중에 언어습관 중 하나로 자리 잡는 것이 큰 이유인 것 같고요. 익명성이 영향을 미치죠. 직접 얼굴을 보지 않고 '나'를 숨길 수 있는 공간에서 욕설, 혐오표현 사용빈도는 높아지고요. (사례7)

또래 관계에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소속되기 위해서 누구와 친해야 되는지 자연스럽게 서열 관계에 편입되게 되고요. 서로 혐오표현을 통해 편을 가르고, 잘난 친구, 못난 친구(찐따)의 경계를 만들어요. 더불어 소통하는 과정에서 유행으로 혐오 표현이나 발언들을 재미로 사용하게 됨. 기모찌, 흑형 외 여혐, 남혐 발언들이요. (사례8)

청소년들은 혐오표현을 하나의 어휘력으로 받아들이고 각자의 감정을 배설하거나 현상을 풍자하는 욕이나 육두문자와는 다르게 사용해요. 어른들이 모르는 새로운 혐오 발언을 만들면, 청소년들은 소속감을 느끼거나 연대감을 느낀다는 뜻이죠. (사례9)

혐오발언을 한 사람이 교사 등 권위 있는 사람일 때 해당 공간에 있는 청소년들의 혐오발언이 더욱 강하고 자주 일어났으며, 피해자는 더 대응하기 어려웠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렇듯 소수자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권감수성이 낮은 환경은 청소년들에게 혐오표현을 경함하게 하며, 스스로 혐오표현의 가해자가 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사례10)

(5) 혐오표현 발생의 변화추이

우리 사회는 예전에 비해 청소년에 대한/의한 편견과 차별, 혐오표현이 증가 또는 감소했다고 생각하는지, 향후 혐오표현이 증가 또는 감소할 것인지에 대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고, 그렇게 전망하는 이유도 알아보았다. 대부분의 전문가가 우리 사회는 예전에 비해 청소년에 대한/의한 혐오표현이 증가했고,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렇게 전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이 처해있는 사회경제적 위기상황이 단기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는 혐오와 차별도 쉽게 감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극우 포퓰리즘과 혐오의 시대라는 흐름 속에서 혐오표현도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셋째, 유튜브나 인터넷의 다양한 매체 환경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나 혐오표현이 확산되고 저연령화될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다.

넷째, 사회적으로 자기표현의 기회는 확대된 반면에 다양성에 대한 수용적 태도는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청소년의 또래집단에서 혐오표현이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고착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혐오표현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지고 사회경제적 위기도 해소된

다면 혐오표현은 자연스럽게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학교에서도 혐오나 차별적 표현이 점차 줄어들고 있고 줄어들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도 있다. 특히 서울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차별의식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혐오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경제적 위기와 관련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현실이 해소가 되어야지 근본적인 원인이 풀리는 거거든요. 단기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것이라고 본다면 혐오표현 문제가 쉽게 감소할 거라고 전망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례1)

극우 포퓰리즘과 혐오의 시대 전사회적인 흐름 속에서 청소년 혐오표현을 본다면, 아마도 증가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례2)

청소년에 대한 혐오표현은 쉽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너무 당연히 되는 차별사유 중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청소년에 의한 혐오표현은 청소년 문화의 변화와 함께 변화될 것이라 생각하고요. (사례3)

향후 유튜브 같은 경로를 통해 혐오표현이 더 저연령화되거나 확산될 위험성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에서 봐온 게 혐오표현이라는 걸 모르고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나쁜 말이라는 건 아는데 혐오나 차별이 될 수 있다는 말이라는 걸 알게 되고 나서 놀라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사례4)

예전에 비해 청소년의 편견과 차별 혐오 표현이 증가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자기 표현이 좀 더 솔직한 방향으로 변하고 있고, 다양한 존재들과 접하는 기회가 많아지면서도 아직 다양성에 대해서는 수용적 태도는 키워지지 않았습니다. (사례5)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혐오, 차별표현은 줄어들었고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학교에서 만나는 학생들도 점점 친구들 사이에서 혐오표현을 쓰면 지적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엔 학생인권조례가 생기 후로 조금씩 학생에 대한 차별의식이 줄어들었습니다. (사례6)

여러 형태로, 다방면으로 증가했다고 생각하고, 사회적 이슈(미투, N번방, 청소년 범죄, 사회정치문제)로 인한 사회 갈등(혐오표현 발생)이 여러매체에서 쉽게 전파되고, 가시화됨에 따라 혐오표현에 노출되는 빈도나 범위가 증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례8)

IMF 사태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0년 이후 초단핵화 가족이 늘면서 청소년들이 의사소통 방식이 고립된 또래문화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혐오 표현은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례9)

(6) 혐오표현과 혐오범죄

청소년 혐오표현이 왕따나 괴롭힘, 폭행 등의 혐오범죄로 심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전문가의 의견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모든 전문가가 혐오범죄로 심화될 위험성을 우려했다. 편견이나 혐오를 당하는 집단은 대부분 폭력에 노출되고 있고, 혐오표현의 기저에 깔린 의식은 언제든지 차별 대상자에게 폭력성으로 표출될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 더욱 우려되는 부분은 혐오범죄를 저지르는 집단이 형성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국에는 흑인을 상대로 혐오범죄를 저지르는 집단이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폭력을 저지르는 범죄 집단은 보고되지 않았다. 하지만 혐오표현과 혐오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그런 범죄집단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다. N번방 사건을 보면 혐오문화가 어떻게 조직적인 혐오범죄로 심화되는지 단초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 어떤 폭력이 가해지는 것은 대부분 그 집단을 폄하하고 무시하고 열등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일어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 편견이나 혐오를 당하는 집단은 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혐오문제가 심화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는데 외국 사례를 보면 혐오를 하는 집단이 형성되거든요. (사례1)

> 혐오표현은 다른 종류의 폭력이나 범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혐오표현은 그 대상 집단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고 이를 더 악화시키는 효과를 갖기 때문입니다. (사례2)

> 당장 청소년의 혐오표현 자체가 괴롭힘이나 폭행 등의 혐오범죄로 이어지지는 않겠으나, 그러한 혐오표현으로 인해 차별인식이 강화되면 누군가에 대한 혐오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례3)

> 이미 혐오범죄와 혐오표현의 기저에 깔린 의식이 같은 것이기에 차별의 대상에 대한 폭력성은 언제든 폭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에 혐오범죄를 막기 위해서라도 혐오표현에 깔린 차별의식을 없애려고 애쓰는 것이고요. (사례6)

> 혐오표현의 대표적인 폐단이 혐오표현의 대상이 되는 소수자 집단에 대한 증오심 고취에요.

또한 가장 심각한 폐단이 증오범죄로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이 중 괴롭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영역은 성적지향과 인종으로 생각하고요. 성소수자 청소년의 경우 자신의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이 알려지게 되는 경우 학내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것은 흔한 경우입니다. (사례7)

이 표현 자체를 폭력과 차별로 보고 적극적으로 억제하지 않으면 혐오범죄나 집단적 증오범죄로 조직화할 위험이 있어요. N번방 사태야말로 혐오 표현으로 만들어진 혐오 문화가 어떻게 조직적인 혐오 범죄로 가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례9)

2) 청소년의 혐오표현 가피해 경험의 영향

(1) 혐오표현으로 인한 2차 피해

청소년의 혐오표현 피해는 청소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혐오표현 경험으로 인한 2차 피해의 영향은 어느 정도 지속되며, 그들의 일상이나 인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전문가의 의견을 알아보았다. 혐오표현으로 인한 피해는 일반적으로 성인보다 청소년에게 미치는 강도가 강하고 지속적인 영향력도 강하다. 이러한 청소년의 혐오표현은 청소년이 피해를 당했을 때 불쾌하다는 감정적 피해가 1차 피해라고 한다면, 2차 피해는 세 가지 측면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감정적 피해가 지속되는 측면이다. 혐오표현의 피해는 평생 잊을 수 없는 트라우마가 되고, 편견과 낙인을 스스로 내면화하면서 자존감이 낮아지고, 열등감과 자기부정, 스트레스와 우울감, 분노 등 복합적인 감정에 시달리게 된다. 특히나 피해를 받는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생활한다면 영향력은 더 커질 것이고, 심하면 자신보다 더 약한 대상을 찾아 혐오를 표출하기도 한다.

둘째는 사회생활이 어려워지는 측면이다. 공동체 생활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고 위축될 것이며, 혐오표현 피해를 당한 곳이 학교라면 심한 경우 학업중단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청소년 시기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경우 그것은 일생동안 또 다른 차별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연쇄적인 소외와 배제의 경험은

한 개인의 인생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셋째는 직접적인 피해자는 아니더라도 혐오표현의 피해를 목격한 주변 청소년이 입게되는 피해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들 역시 직접적인 피해자 못지않게 우울감이나 분노를 경험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의 다양성을 해치는 면도 간접적인 2차 피해라고 할 수 있다.

감정적인 측면에서 피해를 입은 것을 1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피해는 그로 인해서 사회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을 또 중요한 피해로 보거든요. 한국사회에서 의무교육기간에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다는 것은 일생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으로 미칠 수 있겠죠. (사례1)

직접 혐오표현의 대상이 된 청소년의 경우 자존감이 낮아지고, 스스로에 대한 부정으로 많은 스트레스와 우울감, 분노 등의 복합적인 감정이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고요. 혐오표현을 목격한 청소년에 대한 피해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례3)

경험의 양과 폭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혐오표현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을수록 민주주의자로서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과정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이 혐오표현의 대상 집단에 속해있을 경우, 학교 등 공동체에서 생활하는 속에서 진짜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고 위축되는 정도가 큽니다. 혐오표현에 노출 되었다 라는 것이 '절대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영향을 줄 거라고는 생각지 않아요. 다만, 혐오표현이 용인되는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생활한다는 것이 영향을 미치겠죠. (사례4)

스스로도 그렇게 믿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악영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초딩이라는 말을 계속 듣다보면 실제로 자신은 미숙하다고 믿게 되고, 급식충이라는 말을 자주 듣다보면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서로 급식충이라고 부르며 일상처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 같습니다. (사례6)

청소년들의 다양성을 해칩니다. 조금 튀거나 다르다고 인식되는 집단에 대한 혐오표현을 접하면 튀어서는 안 된다, 혹은 조금 다른 나의 정체성을 숨겨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겠죠. 혐오표현의 대상이 되는 성소수자나 이주민 학생의 위축, 정신적 피해, 괴롭힘을 받을 수 있고요. (사례7)

불건전한 대인관계 또는 건강하지 못한 인간관계, 사회적 관계에 대한 자신감 축소, 자아효능감 하락, 부정적 자아정체감, 정신적 피해, 공감능력 상실, 왜곡된 성관념, 성역할 등이 있을 것 같아요. 학교생활이 어렵게 되거나, 학업중단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자해/자살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사례8)

혐오표현의 피해는 전염성이 높아요. 자신만 혐오 대상의 피해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가해자의 심리적 공범이 되기 위해 자신보다 더 약한 대상을 찾아 또 다른 혐오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 있고요. 혐오는 감염병 바이러스와 그 생존 방식과 전파방식이 매우 비슷해요. 숙주를 단박에 죽이거나 힘들게 하지는 않지만, 서서히 약하게 만들고 면역이 약한 존재는 죽을 수도 있다는 거에요. (사례9)

혐오표현은 그 속성이 개인을 이루는 정체성과 결부되는 것이기 때문에, 혐오표현의 대상이 된 청소년은 자신을 이루는 중요한 부분에서 모욕감을 느끼거나 부정당하는 경험을 합니다. 존재 자체에 대한 모욕과 부정이기 때문에, 자아인식, 자아존중감이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례10)

(2) 피해 청소년에 대한 조치

가. 피해 청소년의 대처방법

청소년은 혐오표현 피해를 당한 후에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전문가의 의견을 알아보았다. 전문가 대부분은 직접적으로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호자나 교사 등 신뢰할 수 있는 성인에게 알려서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주었다. 또한 청소년 시설이나 상담실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경찰에 신고하여 공식적으로 대처할 수도 있다.

피해 청소년 주변에 지지집단이 있거나 미리 연습된 대항표현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혐오발언의 중단과 사과를 요청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그 정도의 준비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고 지지적인 사람에게 피해사실을 알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

개인이 직접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례1)

교사, 부모, 상담사 등의 믿을만한 성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상담과 인권 구제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례2)

혐오표현 피해를 당했을 경우 즉각 보호자, 학교, 경찰 등에 알려야 합니다.혐오표현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상담하고 이후 절차에 대해 도움을 줄 전문가, 전문기관이 필요합니다. (사례5)

가해학생에게 직접 대항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믿을만한 성인 조력자가 있다면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으나 한국사회, 특히 학교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사례7)

모든 범죄의 기본을 따르면 되는 거에요. 즉 피해자는 피해를 복구하고 보상하고 치료하며 가해자에게는 응분의 책임과 처벌을 하면 되고요. 그런데 혐오 범죄와 죄질이 나쁜 이유는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가해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혐오의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지 않음을 인식시키고 표현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례9)

청소년 혼자 감당하지 않고 신뢰하고 지지적인 사람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이야기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혐오표현이 발생한 직후 그 자리에서 피해 당사자가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지지집단이나 미리 연습된 대항표현 등의 개인적 자원이 있다면 즉시 혐오발언의 중단과 사과를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사례10)

나. 피해 청소년 주변인의 대처방법

피해 청소년에 대해 부모, 교사, 친구 등은 어떤 도움을 주어야할지 전문가의 의견을 알아보았다.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었지만,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피해 청소년의 피해 사실을 비판 없이 들어주는 것이다. 피해 청소년은 자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 혹시라도 그런 표현을 들을만한 소지를 제공했다는 뉘앙스를 풍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평가하지 않고 지지적으로 들어주는 태도가 중요하다.

둘째, 피해 청소년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성폭력 사건의 경우는 스쿨미투 이후로 처리규정이 마련되었지만, 혐오표현의 경우는 차별할 의도가 없었다면서 빠져나갈 우려가 높기 때문에 다른 방식의 처리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혐오표현의 피해 청소년이 미러링의 형태로 대항표현을 사용했을

때, '둘 다 잘못했다'는 식으로 처리한다면 피해자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이다. 학교나 사회가 피해자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경험에 따라 피해 청소년의 대처 방법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일선 교사들의 혐오표현 피해 감수성이 높아져야 한다.

셋째, 피해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연계하는 것이다. 학교 상담실이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서 상담을 받도록 연계하거나, 가해자의 행위가 처벌될 수 있도록 학교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혐오범죄로까지 심화된 사건이라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혐오표현 피해가 발생했을 때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유출을 막고, 맥락을 살펴 공정하게,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혐오표현의 피해자는 자신을 자책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분명하게 '너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사례3)

'도움'을 준다기보다는 피해경험을 털어놓을 수 있는 안전한 울타리이자, 지지자로서 역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를 당했음을 숨기게 하거나, '별 것 아닌' 것으로 치부하거나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유무형의 가해자를 대상으로 '대항표현'을 사용하여 지지자로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례4)

피해 청소년의 어떤 속성이나 결함에 의한 피해가 아님을, 명백히 혐오표현은 가해자들의 잘못임을 주변인들이 주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네가 그럴만한(그런 표현을 들을 만한) 소지를 제공했기 때문'이라는 뉘앙스라도 풍기지 않기 위해 혐오표현 피해에 대한 감수성을 높여야 합니다. (사례5)

피해 청소년들이 대항언어로 대응한 경우를 같게 다루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예컨대 여성혐오적인 언어로 괴롭힘을 당한 여학생이 남성비하적인 언어로 받아쳤다면 '둘 다 잘못했다'는 식으로 같게 훈계하거나 징계하여서는 안 되는 거에요. 대항표현은 늘 올바른 언어로만 표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사례7)

평가하지 않고 지지적인 태도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피해 청소년의 감정과 욕구를 파악하여 필요한 조력을 해야 합니다. 가해가 이루어진 장소, 상대방, 상황 등에 따른 대처방법에 대한 충분한 설명 후 당사자와 대응방법을 함께 의논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합니다. (사례10)

다. 피해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지원방안

우리 사회는 피해청소년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전문가의 의견을 알아본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되었다.

첫째, 청소년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다양한 기제를 마련해야 한다. 청소년 입장에서 안심할 수 있는 방법은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선택권을 주어야한다는 것이다. 학교내 신고센터, 상담센터, 교육청 학생인권센터,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공동체 내에서 공개적인 지지 발언이 필요하다. 공동체의 책임자, 예를 들면 학교의 교장이 '혐오표현을 용인하지 않고 평등과 다양성이 우리 공동체의 핵심 가치'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선언할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학교가 피해 청소년에게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다.

셋째, 상담과 구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상담을 통해 피해자에게 잘못이 없고 가해자의 잘못이라는 사회적 메시지를 피해 청소년에게 전해주어야 한다. 또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조례 등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혐오표현을 규제하고 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비공식적으로 청소년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해 놔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제들을 많이 마련해놓고요.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안심할 수 있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사례1)

> 피해가 발생한 공동체 내에서 공개적인 지지 발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발생한 사안이라면, 교장 등, 공동체의 책임자 등이 '공동체 내에서 혐오표현을 용인하지 않으며, 평등과 관용, 다양성이 공동체의 핵심 가치'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필요해요. (사례4)

> 학교나 가정이 혐오와 차별에 대해 안전한 공간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에 적어도 누군가는 자신의 피해를 인정해주고 당연하게 인정해줄 수 있다는 믿음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 역할을 해줄 학교 안의 기구 혹은 교사가 있다면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학교 밖 기관이

그 역할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소수자 학생들은 학교 밖의 커뮤니티에서 그 위안을 얻기도 합니다. (사례6)

혐오표현 가해자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 해주는 거요. 혐오표현이 발생하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고, 회복적 정의로서 가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을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요. (사례8)

차별금지나 혐오표현과 관련한 법이나 조례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효과성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이후 장애 혐오에 대응하는 교육계나 미디어 등 대중들의 변화에서 충분히 알 수 있고요. (사례9)

(3) 가해 청소년에 대한 조치

가. 혐오표현 사용 전후 청소년의 변화

혐오표현을 사용한 청소년은 사용전과 비교해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전문가의 의견을 알아보았다. 혐오표현을 한번 사용했는데 별 문제가 없으면 계속 사용하게 되고 결국 혐오표현에 대한 감수성은 낮아지게 되고, 소수자 집단에 대한 차별은 더 심화되게 될 것이다. 혐오표현을 사용하는 청소년 중에는 그러한 표현이 잘못된 것을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고, 반대로 잘못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자신도 혐오의 대상이 될까봐 불안해지기도 한다. 또한 혐오표현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욱 강력한 표현을 찾게 되고, 결국 혐오범죄까지 가담할 위험성이 높아진다.

혐오표현의 문제점 중 하나가 특히 청소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동료 집단에 의한 영향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 경우에 혐오 표현에 한 번 발화되고 그것이 그대로 별 문제없이 계속 발화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거나 문제가 된다는 것을 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례1)

소수자 집단에 대한 차별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고, 혐오표현에 대한 민감성도 낮아질 것입니다. (사례2)

뭐든지 한 번 하면 두 번 하기 쉬워진다고, 혐오표현을 처음 발화하는 것이 어렵지, 한 번씩

쓰기 시작하면 일상이 되기도 쉬울 것 같고요. (사례4)

제가 교사로써 목격한 사례는 혐오표현의 해악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은 청소년이 혐오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였습니다. 정말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가 어떤 측면에서 나쁜 일인지 '몰라서'였을 경우, 알게 된 이후에는 혐오표현 사용을 교정하려고 했습니다. (사례5)

언어는 사용하면 할수록 증폭합니다. 사용하면 할수록 더 강렬한 혐오 표현을 찾게 됩니다. 그것이 자신을 위한 소속감과 자아 존중감을 올려 줍니다. 가해 경험이 가중되면 더욱 강한 혐오표현을 찾게되고 결국 혐오범죄에까지 가담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사례9)

나. 가해 청소년에 대한 조치

혐오표현 가해 청소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전문가의 의견을 알아보았다. 가해 청소년에게는 혐오표현이 왜 문제인지 알려주어야 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스스로 반성하고 성찰할 기회도 주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징계보다는 교육과 상담이 필요하다. 쓰리아웃제와 같은 징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가피해를 구분 짓는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 가해 청소년이 나쁜 짓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기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학교폭력의 가피해 경험이 중첩되어 있듯이, 혐오표현의 가해 청소년도 피해 경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혐오표현은 가피해의 문제라기 보다는 공동체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화를 개선하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

혐오표현을 한 가해 청소년에 대한 조치도, 굉장히 나쁜 짓을 한 범죄를 저지른 느낌이지만, 어쨌든 혐오표현을 발화한 청소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기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사례1)

혐오표현이 왜 문제적인지 알려줘야 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할 수 있는 기회, 스스로 반성하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할 것입니다. (사례2)

혐오표현 문제는 단순하게 가해와 피해로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조치와 함께 혐오표현은 차별의 문제이고 공동체의 문화와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변, 환경을 잘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례3)

징계보다는 관련 교육 이수 및 (피해 대상자에 대한) 사과의 기회를 제공하는 거에요. (사례4)

그러한 언어 사용의 문제점을 우선 주지시켜야 해요. 성인들도 매우 문제적인 욕설들을 습관적으로 사용하다가 그 욕설의 어원을 안 이후 고치는 경우가 있듯 많은 청소년들이 정확한 뜻이나 그 표현의 문제점을 모르고 사용하기도 하니까요. (사례7)

단계별 억제 정책이 필요합니다. 형사 처벌보다 발화 자체를 억제하는 교육 정책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혐오 표현할 때와 두 번째 표현할 때와 세 번째 표현할 때를 나누어 교육하고 징벌해야 합니다. 쓰리 아웃과 같은 징벌 정책과 그들을 둘러싼 가족이나 관계인까지 그 책임을 물어 교육해야 합니다. (사례9)

다. 가해 청소년에 대한 규제

가해청소년에 대해 규제를 어느 수준까지 정책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알아보았다. 기본적으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고, 학교폭력 중에 언어폭력에 대처하는 방식이나 학교 내 성희롱에 대처하는 방식과 비슷한 수준의 정책화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혐오표현은 언어폭력이나 성희롱과 달리 개인적인 징계나 조치로 해결되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의견도 있다. 공동체의 문화를 개선해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혐오표현 사건이 발생하면 가해 청소년에 대한 조치보다는 집단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해 청소년에 대한 규제를 정책화할 경우 학교에서는 교육보다는 규제 중심으로 처리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교사와 학생 전체의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공개적 선언이 가장 중요하다.

아주 강하게는 학교에 신고를 받아서 공식적으로 징계를 내리는 경우도 있어야 하지만, 그

전에 교사에 의한 교육적인 지도나 아니면 학생들한테 동료 집단에 의한 견제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동료 집단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거나, 그런 것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들은 서로 공유해 나간다거나 하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용이할 것 같아요. (사례1)

혐오표현은 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전사회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혐오표현을 비롯한 차별 행위가 공적인 공간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아동기 때부터 가르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례2)

차별금지법과 같은 법적 근거가 없기에 성인들에게도 혐오범죄 자체로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와 같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례5)

혐오표현의 사용이 집단괴롭힘의 주요한 원인으로 이어지는 경우 그것을 중단할 수 있는 정도의 규제가 필요합니다. (사례7)

단순한 계도/처벌이 아닌 전문적 상담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사례8)

인권 교육과 미디어 교육 그리고 언어 교육을 통한 규제를 정책화해야 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의무화 되어야 하고, 정규 교육 과정에 들어가야 합니다. (사례9)

교사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 매뉴얼 등의 마련, 학생들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것이 학교의 중요 역할이라는 선언이 필요하고요. 학교 외 청소년 기관이라면 종사자를 위한 것이겠고요. (사례10)

3) 혐오표현 제한에 대한 의견

(1) 현재 혐오표현 대처방법

조사대상 전문가 중에서 청소년을 직접 지도하고 계신 분들에게 그분들이 속한 기관에서 청소년에 의한/대한 혐오표현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떤 절차에 의해 대처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조사대상 전문가 중에서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청소년에 의한 혐오표현은 경미한 사안이라면 교사에 의한 '도덕적 훈계' 정도의 조치가 이루어지는데, 그렇다

보니 교사 개인의 혐오표현 감수성에 따라 대응수준은 천차만별일 수 밖에 없다. 심각한 사안이거나 심각하지 않더라도 대상자가 명백한 사안은 '학교폭력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청소년에 대한 혐오표현은 대부분 혐오표현으로 인지되지 않기 때문에 대처방법도 없다. 동료교사의 혐오표현을 지적할 경우 예민하다는 피드백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조사대상 전문가 중에서 중학교 교사의 경우, 혐오표현을 인지한 교사가 담임교사에게 통지하고, 담임교사는 상담과 보호자 통지를 실시한다. 심각한 사안은 선도교사나 학교폭력 담당교사에게 인계해 선도위원회나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회부하게 된다.

조사대상 전문가 중에서 고등학교 교사의 경우, 혐오표현 사안이 발생했을 때 수업시간와 자율학습시간을 통해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은 마련했지만 아직 이를 참고하여 혐오표현 대응절차를 마련한 학교는 없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조사대상 전문가 중에서 장애인 인권단체 활동가의 경우, 학교나 기관에서 장애인 혐오표현 사안이 발생했을 때 요청에 의해 사안처리를 담당하고 있다. 3단계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는데, 1단계는 원인 제거를 위한 교육계획 수립, 2단계는 인권교육과 갈등중재교육, 자기존중효능감교육, 언어교육, 미디어리터러시교육 실시, 3단계는 가해자의 언어표현과 행동양식 변화에 대한 주기적 점검이다.

조사대상 전문가 중에서 성소수자 인권단체 활동가의 경우, 단체 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혐오와 차별 금지선언, 참여자 합의, 혐오표현 사안 발생 시 중단 요청, 가해 청소년 상담 및 교육 등으로 처리한다.

한편 개별적인 사건의 처리보다는 차별 행위에 둔감한 문화를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대책이지만, 개별 사안에 대한 절차도 반드시 있어야한다는 제안이 있었다. 왜냐하면 절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인권감수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교 내에 학생 자치로 조직된 인권위원회에서

사안을 처리한다면 학생 스스로 해결하는 과정이 교육의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 일부 학교에서는 인권 동아리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 그런 경험을 확장하여 학생자치 인권위원회를 구성해보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정도가 심각하지 않더라도 대상자가 명백할 경우에는 '학교폭력'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다만, 청소년에 대한 혐오표현은 '혐오표현'으로 인지되지 않을 때가 많아서 대처 역시 없다고 여겨지며, 오히려 청소년에 대한 혐오표현을 지적할 경우, 예민하고 불필요한 지적이라는 인식이 있어요. 학교 선생님들에게 혐오표현을 지적했을 때도 그게 무슨 혐오표현이냐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말을 하는 제가 불편한 사람인 거죠. (사례4)

먼저 상황을 파악한 교사가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상담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담임이 아닐 경우, 담임교사에게 알리며, 담임교사도 상황 파악을 위한 상담, 보호자에게 통지를 해요. 너무 심각한 몇몇의 성 사안이라던가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는 이건 절차대로 진행한다고 고지하고, 사안(선도)담당 교사나 학교폭력담당교사에게 인계합니다. 선도위원회나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사안이 다뤄지게 됩니다. (사례5)

아직 학교현장에서 혐오표현을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규정은 없기에 아직 학교에 절차가 만들어진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말부터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가이드북을 만드는 과정을 하긴 했지만 아직 가이드를 참고하여 절차를 만든 학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례6)

혐오 표현 발화의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교육 계획을 세웁니다. 인권교육과 갈등중재 교육, 자기 존중 효능감 교육을 실시합니다. 언어 교육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진행합니다. 가해자의 언어 표현과 행동 양식에 변화가 생겼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합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러한 사건이 터졌을 때 학교나 기관에 갔을 때 대처하는 단계적 매뉴얼이고요. 저희들의 역할은 혐오발언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거고, 이게 형사사건 넘어가지 않고 그 사람이 개선되어서 다시 혐오발언을 안 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사례9)

띵동 내에서, 혹은 띵동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내에서 '혐오와 차별은 출입할 수 없다'는 선언을 명시적으로 하고, 이를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약속으로써 합의합니다. 그럼에도 혐오와 차별 표현이 발생하였을 때, 활동가가 즉시 표현을 중단해줄 것을 행위자에게 요청합니다. 해당 표현을 사용한 청소년에게 그 표현을 어떤 맥락에서 사용하였는지 의도를 묻고, 청소년의 대답에 따라 이야기를 더 이어나가며 필요한 경우 왜 혐오, 차별 표현인지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사례10)

(2)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의식

가. 청소년 혐오표현에 대한 차별금지법 필요성

청소년 혐오표현에 대해 '차별금지법' 같은 포괄적인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전문가의 의견을 알아보았다. 전문가 대부분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 입장이고, 청소년을 위해서도 반드시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누구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선언하고 공동체의 가치로 확인하는 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청소년 역시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같은 가치를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발의되어 있는 차별금지법[62]은 나이에 따른 차별금지와 교육 관련 차별금지 부분이 청소년과 관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인 간의 혐오표현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법률은 아니다. 차별금지법은 고용,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료서비스·문화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기회 및 교육내용, 참정권 등 행정서비스 및 수사 재판상의 차별예방을 위한 조치,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가 있을 때 구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기관이 청소년을 차별했다면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지만, 청소년 사이에서 발생한 혐오표현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차별금지법이 없더라도 현행법으로 혐오표현 제제가 가능하다. 학교폭력예방법을 적용해 언어폭력으로 제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혐오표현 대응을 위해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차별과 혐오표현이 옳지 않다는 사회적 윤리 기준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소수자에 대해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을 천명하는 것이고, 혐오표현과 표현의 자유의 경계를 명확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이

62)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차별금지법안, 2020.6.29.)

제정된다면 청소년에 의한/대한 혐오표현 역시 윤리적 기준을 갖게 될 것이다.

둘째, 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혐오표현에 대한 윤리기준이 생긴다면 당연한 수순으로 혐오표현 예방을 위한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차별금지법이 사인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교육과정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장애인식 개선교육이 실시되면서 우리 사회에 나타난 변화가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차별금지법은 차별과 혐오표현이 금지되는 기본법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하위 법령과 조례 제정이 활성화될 수 있다. 차별금지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차별시정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시도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따라서 지금은 일부 교육청에서만 제정되어 있는 학생인권조례가 전국적으로 제정될 것이고,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청소년기본법도 개정될 것이다.

> 차별금지법 내용에는 청소년, 초·중·고등학생과 관련된 내용은 들어가 있죠. 나이라고 포괄되어 있는데요. 나이가 많은 사람, 나이가 적은 사람에 대한 차별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외에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 헌법에 차별금지가 있고, 그 다음에 초중등교육법에 모두 다 평등한 교육받는 조항이 있으니까 그 두 개만 가지고도 학교 내에서 차별금지는 당연한 거라고 주장하시면서 학생인권조례가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요. 근데 법의 추상성을 어떻게 구체화할 지에 대한 것은 조례를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조례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사례3)

> 청소년 혐오표현에 대해서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기보다는, 사회 전반의 문화와 분위기 변화를 목적으로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혐오표현금지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같은 것도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례4)

> 차별금지법 제정과 같은 차별 행위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여, 근본적으로는 차별과 혐오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례5)

> 처벌 중심보다 예방 중심의 그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절차에 초점을 맞춘 규제가 필요합니다. 차별금지법에서 청소년과 관련된 게 나이도 물론 있지만 저는 출신학교나 학력 관련한 내용도 클 것 같거든요. 저희가 청소년단체 간담회 했을 때도 20대 국회 때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이 발의도 됐는데 통과되지는 못했고요. 청소년 관련된 내용은 일단은 학생인권조례에

들어가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것 같고요. 다만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일종의 평등기본법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학생인권조례도 학교 안의 학생에게만 적용되다 보니까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는 적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요. 그렇다면 청소년기본법 같은데서 이 차별금지법을 근거로 해서 개정되는 게 바람직한 것 같고요. (사례7)

청소년 교육적 관점에서, 청소년에 대한 혐오표현/차별을 일삼는 성인들의 규제측면에서 필요해요. (사례8)

차별금지법이 있음으로써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대원칙이 다시 천명되고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한테 교육될 것이기 때문에 교육적인 효과는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하고요. 직접적인 처벌은 어려울 것 같아요. (사례10)

나. 청소년 대상 종사자에 대한 규제 필요성

교사나 청소년지도사와 같은 청소년 대상 종사자에 대해 좀 더 강화된 규제가 필요할지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알아보았다.

현재 발의되어 있는 차별금지법안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평생교육법,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등에 따른 교육기간이 규제대상으로 열거되어 있다. 이것만을 기준으로 보면 교사에 대한 규제는 가능하나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 등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규제는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이 법안에서는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라는 규정을 두어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 법률이 통과되면, 시행령에 청소년 관련 기관을 포함할 수 있다.

조사대상 전문가 대부분이 교사와 청소년 대상 지도자들에 대해 아동학대와 마찬가지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교사나 지도자의 혐오표현은 직접적으로 피해 청소년을 발생시킬 뿐 아니라 다른 청소년들의 혐오표현을 부추기는 효과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부모에 대해서도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혐오의 시작은 인터넷보다 가정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 청소년 자녀의 혐오표현을

부모가 필터링하지 않아서 심화되는 면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장애 청소년 부모의 경우 장애를 가진 자녀에게 "같이 죽자"와 같은 극단적인 혐오표현을 거침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한편 차별금지법에 청소년 관련 기관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다양한 기관들이 이를 근거로 내부규정을 만들고 혐오표현의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학생과 교사, 청소년과 지도자는 인권과 차별 영역에서 함께 실천하고 토론해야할 동료이기 때문에 교사나 지도자라고 해서 더 강한 규제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지금까지 교사나 지도자에 의한 혐오표현에 대해 너무나 문제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규제의 정도를 누구나 평등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개선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 차별금지법에 보면 교육기관 정의가 나오거든요. 아마 말씀하신 청소년 지도기관은 포괄되기가 어려울 거예요. 실제로 문제를 풀어갈 때 보면 그런 법령이 있다는 것이 내부에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신 분들이 뭔가 만들어낼 때 굉장히 큰 힘이 되거든요. (사례1)

> 아동학대 등에 있어서 교사, 청소년지도사에게 엄격한 기준과 규제를 적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분명히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청소년을 만나는 직종 종사자에 대해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례4)

> 혐오, 차별, 전반적 인권감수성과 관련된 필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종의 자격증 같은 것을 발급하고,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를 나타내는 청소년 대상 종사자에 관해서는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합니다. (사례5)

> 청소년 지도사 혹은 교사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혐오표현을 하는 경우 적정수준의 처벌도 필요하고요. 지도자의 혐오표현은 직접적인 피해 청소년을 발생시키기도 하지만 청소년 집단의 지도자의 혐오표현 사용은 청소년들의 혐오표현 사용을 부추기는 효과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례7)

> 교육 이수, 개선 창구 등도 만들 필요가 있고요. 특히 교사/청소년지도사의 경우 청소년들이 가정만큼이나 영향력을 많이 받는 존재니까요. 그들의 관점이나 발언, 행동들이 청소년들에게

는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특히 문제나 사건 발생 시 대처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대처했는가에 따라 청소년에게는 그 이후 문제도 같은 방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교육자의 인식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례8)

교사나 청소년기관 종사자는 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가 금지되고, 차별행위 시 제재가 필요합니다. (사례10)

(3) 혐오표현 예방에 대한 의견

가. 혐오표현 예방교육의 필요성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같이 혐오표현에 대해서도 '혐오표현 예방교육'이 필요한지 전문가의 의견을 알아보았다. 조사대상 전문가 대부분이 혐오표현 예방교육의 필요성에 동의했으나, 교육의 형식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이 있었다.

교육의 형식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할 수도 있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모든 교과 과정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혐오표현 예방교육'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교육이 주제의 선명성 면에서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대체로 인권교육의 일환으로 혐오표현을 포함하여 실시함으로써 인권 감수성을 높여주는 교육이 되어야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교육 방법은 일방적인 전달식 교육보다는 민주적인 토론 방식의 교육을 실시했을 때 자율적인 규범으로 자리 잡는 효과가 있었고, 환류시스템을 갖추어 학생들이 직접 사건처리를 경험해보는 과정이 근본적인 예방교육이라는 제안도 있었다.

아무래도 학교 현장은 훨씬 더 시간도 많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의 12년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잖아요. 유치원까지 포함하면 13년, 14년 되는 건데요. 그런 긴 기간을 통해서 혐오표현의 문제는 심화시킬 수 있는 여지들이 충분히 있고, 이런 기관들을 활용한다면 훨씬 더 교육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례1)

구체적인 혐오표현을 쓰지 말자는 교육이 아니라, 혐오라는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그것이

왜 문제적인지를 구조적인 접근을 통해 이해할 수 있게 하고, 학교를 포함한 공동체의 변화와 의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예방교육이어야 할 것입니다. (사례2)

혐오표현이 발생한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방교육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예방교육을 하더라도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니까 그 사건을 어떻게 다루고 그 사건을 예방교육과 어떻게 연결지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례3)

혐오표현 예방교육은 필요합니다. 다만, 독립된 형태로 시수 등이 배정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보이고요. 인권교육,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서 혐오표현의 해악과 대응에 관해 교육이 필요하다고 봐요. (사례4)

별도의 교육 시간이 만들어지면, 형식적으로 교육이 진행될뿐더러, "아 교육 해봤자 뭐해, 어차피 선생님들도 다 혐오표현 하면서" 라는 생각이 들면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닌가 합니다. 그러니 정말 중요한 것은 혐오차별로부터 안전한 학교문화와 사회분위기 조성일 것인데, 그것을 위한 별도의 학생대상 교육보다는 교사 교육이나 관리자 교육이 필수적일 것 같습니다. (사례5)

예방은 규제보다 중요한 영역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어려운 점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알려지고 그에 대한 예방교육, 성희롱의 문제점으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이 의무화되었으나 교육의 내용에 따라 실효성이 없는 경우들이 있어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예방을 위하여 프로그램 개발에 공을 들여야 하고요. 학교폭력 예방교육 과정 안에 넣어도 흐름상 맞을 것이라 생각해요.(사례7)

별도의 시간을 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런 혐오 표현 문제는 모든 교과 과정과 교육 과정에 혐오 관련 교육을 평가 항목에 넣어야 합니다. (사례9)

일방적인 전달식 교육으로는 효과적이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혐오 발언이 등장했을 때 그걸 같이 해결하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려면 교사 영향이 굉장히 중요해서 교사가 그렇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례10)

나. 혐오표현 예방교육의 대상

혐오표현 예방교육의 대상은 초·중·고등학생이나 교사, 그 외에 누구가 되어야 하겠는지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알아보았다. 교육 대상은 학교 내의 모든 구성원과 학교 밖의 청소년과 관련 기관 종사자, 그리고 부모까지도

포함해야 한다는데 전문가 대부분이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교육의 순서나 중요성 면에서는 교사나 학교 내 관리자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학생보다 그들에 대한 교육에 더욱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특히 교사에 대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조하기도 했다.

교육대상의 측면에서도 당연히 학생들에 대한 교육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어떤 정규교과나 비정규 비교과에서도 계속 이뤄져야 되는 부분이고, 특히 교육과정 내 있어야 되긴 하는데 이 교육과정에서 어떤 특정한 교과에서 이뤄진다기보다는 여러 교과와 관련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회과일 수도 있고, 국어과일 수도 있고 여러 교과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방위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사례1)

학교의 구성원 모두.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 기관 종사자 모두요. (사례2)

교육 현장에서의 교육이라고 하는 건 회복적 의미로 학생들과 함께 하는 것도 있지만, 교사들 스스로가 어떻게 혐오표현 예방교육에 대해 어떻게 학습하고 준비할 것인지, 그리고 사건이나 학교 문화와는 상관없이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들, 미디어나 외부 다른 어른들이든 그런 자극들을 어떻게 우리가 선택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교육에 대한 것까지 다 얘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례3)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필요함. 특히 교사가 먼저 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든, 교사라는 직업인은 일정 기간, 일정 시간동안 청소년에게 꽤나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교사가 혐오표현의 개념과 해악, 위험성 등을 인지하고 또 대항표현을 할 수 있는 감수성과 의식을 형성할 수 있을 때, '잠재적 교육과정'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례4)

혐오차별표현의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 입장에서 '높으신 분들'이 보호자, 교사, 관리자, 장학사, 장학관, 교육감 등 교육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사례5)

양측 모두. 청소년과 교사의 교육 내용은 다를 것이므로. 교사에 대한 교육의 경우 혐오표현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 해악, 그리고 그러한 사건의 발생시 대처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겠죠. (사례7)

모두에게 필요하죠. 어렸을 때부터, 학부모에게까지 필요하고요. (사례8)

가장 중요한 관리 감독자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혐오는 권력을 가진 자가 권력이 약한 자에게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반드시 관리자 교육에 개입해야 합니다. 관리자와 교사 교육을 제외하

고는 혐오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례9)

학생 및 교사, 교직원, 특히 교장 및 교감 등 관리자 위치에 있는 사람은 모두 교육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사례10)

(4) 혐오표현 피해자 지원

가. 피해청소년 지원방안

혐오표현의 피해 청소년에게는 어떤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전문가의 의견을 알아보았다. 현재는 특별히 혐오표현 피해청소년을 특정한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인권침해 전반에 대한 지원기관은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혐오표현 피해청소년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혐오표현 피해청소년 지원기관보다는 피해자 스스로 혐오표현 피해가 인권침해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고, 학교 등 공동체가 혐오표현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인식을 전제로 다음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익명 신고 절차, 피해 청소년에 대한 상담과 보호 절차, 가피해 청소년과 공동체를 위한 회복적 정의 시스템 등이다. 피해 청소년 상담은 본인의 잘못이 아니고 가해자의 잘못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자존감 회복 프로그램과 대항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피해자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가해 청소년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이루어져야 하고, 공동체의 문화까지도 개선되어야하기 때문에 회복적 정의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한편 혐오표현 사건이 학교폭력 처리절차의 일환으로 다루어지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이 많았다. 혐오표현 사건을 학교폭력 담당교사에게 맡길 경우 현행 학교폭력 처리절차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 가피해 청소년을 분리하고

가해청소년의 인성문제로 축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혐오표현은 차별의 문제이고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 현재는 특별히 혐오표현에 대해서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건 아닌데요. 혐오표현의 피해라는 건 언어폭력이 될 수도 있고 차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언어폭력이나 차별 또는 인권침해 이런 것과 관련된 지원기관은 여러 곳에 있죠. (사례1)

> 상담, 보호 등이 필요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필요한 건 혐오표현의 대상이 됐다, 내가 혐오를 당했다는 걸 공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창구 혹은 절차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문제제기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학교에서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이고 하면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해 공론화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제일 필요할 것 같단 생각이 듭니다. (사례2)

> 이걸 폭력의 문제로만 본다면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의 인성 문제로 축소된다는 거에요. 그런데 혐오표현은 차별의 문제이고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폭력으로만 다루면 안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한 논의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학교에 혐오표현 처리를 학교폭력 절차로만 해결하지 않도록 설명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어요. (사례3)

> 익명 신고, 상담 구제절차가 필요하고요. 가해, 피해자를 위한 회복적 정의 시스템이 또 필요하겠죠. (사례8)

> 인권교육은 가해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혐오와 차별에 버티고 저항하고 방역하는 교육도 필요합니다. 혐오는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것이 주요 목적이므로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심리적 상담과 동료 상담과 같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사례9)

> 혐오표현으로부터 상처 받은 마음을 돌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혐오표현 발화자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하게끔 하고요. (사례10)

나. 피해청소년 지원을 위한 기반 마련

피해청소년 지원을 위해 우선적으로 변화하거나 마련해야 할 것은 무엇일지 전문가의 의견을 알아보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 구성원 전체의 인식 개선이라는 점에 전문가 대부분이 의견을 같이 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인권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혐오표현 사건에서 주목해야할 대상자는 방관자 집단이다. 학교폭력 사건에서의 방관자는 물리적 폭력에 대한 두려움으로 힘에 의해 침묵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혐오표현의 방관자는 상당 부분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침묵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혐오표현의 방관자는 동조자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학교폭력처럼 가해자를 징계하고 피해자를 보호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학교 공동체 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주기적인 토론식 인권교육이 필요하다.

피해자 지원을 위해 혐오표현을 전담하는 새로운 지원기관을 만들기 보다는 인권침해 구제기관에서 혐오표현 피해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화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또한 청소년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 내 학교 밖 상담기구에서 혐오표현에 대한 감수성을 가지고 혐오표현 사건을 제대로 인지하여 혐오표현 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인 피해청소년 지원방안으로는 자기방어 워크북 개발 보급과 자기방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면, 피해청소년의 대처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 또한 집에 돌아갈 수 없는 피해청소년을 위한 시설도 필요하다. 대부분의 경우는 기존의 청소년 쉼터를 이용할 수 있겠지만, 성소수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적인 성별과 본인의 성적지향이 다른 경우에 여성 청소년을 위한 쉼터나 남성 청소년을 위한 쉼터 어느 쪽도 선택하기 어렵고, 실제 개별 쉼터에서는 입소를 거부하거나 그 과정에서 혐오표현 피해를 당하기도 한다. 따라서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 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청소년쉼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지금은 혐오표현을 전문으로 하는 지원기관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기보다는 일단 청소년 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기관이 대부분 있기 때문에 그런 기관에서 혐오표현을 다룰 수 있는 전문적인 역량을 키우고, 또 청소년들 입장에서 또 그런 기관이 혐오표현에 대한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걸 인지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고요. (사례1)

> 구성원 전체의 인식 개선입니다. 늘 말하는 게 만약에 혐오표현이 구체적인 피해 사건으로 드러났을 때도 당연히 가해와 피해의 상황에 있으니까 처리는 기존의 학교폭력 해결 절차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개인에 대한 불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그렇지만 우리 공동체에서

이런 혐오표현이 일어났고 이런 혐오표현은 이러한 차별의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에서 그런 차별을 없어져야 한다는 것을 구성원들 전체와 토론을 하거나 대안 찾기를 해보거나 교장 선생님이 차별금지에 대한 의지를 다시 밝히거나 하는 다양한 방면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례3)

어떤 상황에서든 피해자 보호, 피해자의 안정을 우선으로 하는 장치들이 필요하겠죠. 상담센터와 연계하는 방식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지원을 해야 하는지도 사안마다 다 다른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례5)

피해 청소년이 분리를 원한다면 분리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사안으로 보는 것은 반대하기에 학교폭력의 가해 피해자처럼 규정하고 분리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리적 폭력의 동반여부, 빈도와 강도에 따라 다르게 판단해야하고 쉽게 가해와 피해로 나누기보다 함께 집단의 의식이 변하도록 애써야 하는 각각의 주체들이 되는 방향으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례6)

혐오표현과 그 폐단에 대한 교사, 학교 현장의 책임자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해요. (사례7)

피해라는 관점과 인식이 필요해요. 이런 발언이 혐오발언이다 라고 인식할 수 있는 사례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다양성을 존중하고 수평적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회적 분위기도 필요하고요. 부모-자녀, 교사-학생, 청소년지도사-청소년 모두요. (사례8)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안전한 분리할 수 있는 정책, 혐오 표현을 당장 멈추고 반복적으로 당하지 않을 정책, 이 혐오를 막기 위해 다시 혐오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인을 혐오하는 게 진짜 혐오야. 몸은 불편해도 정신은 멀쩡하잖아" 이런 말은 순환혐오거든요. (사례9)

집안에서 더 힘들어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어서 상담에 주력하고 있고요.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혐오표현 피해를 입은 청소년 연락이 왔을 때 저희가 PDF 파일로 프로그램 워크북과 일정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내주고 상담하고 일대일 방식으로 대응을 하기도 하고요. 집에 돌아갈 수 없는 청소년인 경우 일반 청소년 쉼터로 연결하고 있어요. 지금 청소년성 소수자만을 위한 특별한 쉼터가 있지는 않고요. 당사자가 성적 지향과 관련된 걸 밝히지 않는다면 쉼터에 들어가는데 큰 문제는 없는데요. 트랜스젠더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자기와 반대되는 성별에 힘겨워 하면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별도의 쉼터 마련이 필요하다고 봐요. 특히 트랜스젠더 청소년 같은 경우는 쉼터를 아예 이용하지 못하고요. 더 열악한 상황에 놓이기도 하는 거죠. (사례10)

(5) 대항표현에 대한 의견

청소년 혐오표현에 대항하여 어떤 대항표현이 필요할지 전문가의 의견을 알아보았다. 혐오표현에 대항하기 위해 대항표현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전문가 대부분이 같은 의견이었지만, 청소년이 대항표현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대항표현을 하려면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 그러한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평소에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실제 상황을 예시로 주고 시뮬레이션하는 방식으로 트레이닝해서 대항표현이 익숙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또한 대항표현은 성인들의 언어가 아닌 청소년들의 언어로 준비될 수 있도록 있어야하고, 이 또한 교육의 기회와 병행될 수 있을 것이다.

혐오표현은 화장실에서 배설하는 언어라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하고, 혐오의 언어가 발달하지 않도록 대항표현으로 긍정적 프레임을 짜주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은 왜 안돼?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라. 청소년도 시민이다”와 같은 대항표현을 제시해준 전문가도 있다.

한편 대항표현의 메시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누가’ 말하는 대항표현인가 라는 의견도 있다. 피해청소년 당사자보다도 주변인의 집단적 대항이 더 큰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권력차이가 있을 때 개인의 대항은 가능성이 낮을 것이기 때문에 또한 집단적 대항이 필요하다.

> 또래 집단에서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혐오표현을 했을 때 스스로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된다 또는 옆에서 얘기를 듣고 있는 제3자가 이런 식으로 도움을 줘야 된다거나 피해자에게 용기를 주는 발언이 될 수도 있고, 제지시킬 수도 있고 사실 이런 기제들이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일들을 청소년이 알아서 하라고 맡기는 게 아니라 훈련이 돼야 되는 거죠. 외국 사례를 보면 그런 시뮬레이션 같은 걸 하는 트레이닝을 많이 시켜요. 실제 상황을 줘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같이 고민도 해보고 얘기도 해보게 해서 익숙하게 만드는 거죠. 대항을 익숙하게 만드는 거죠. (사례1)

대항표현이 본질적으로 '연대'의 선을 긋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볼때, '어떤' 대항표현이라는 메시지도 중요하겠으나, '누가' 말하는 대항표현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에 의한 혐오표현의 경우, 발화자 외, 주변 청소년들이 피해 집단을 옹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고요. 청소년 스스로, "우리는 모두가 존엄하고 평등하다고 생각하며, 우리는 혐오표현에 맞서는 사람들"이라는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례4)

어떤 대항표현이 필요한가는 문제를 느끼는 청소년들이 직접 마련하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항 표현으로 성인 나름대로 아무리 멋진 표현을 준다 한들, 그것은 청소년들이 언어를 사용하고 만들어내는 문화에 걸맞지 않은 것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들이 스스로 혐오표현에 대항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례5)

'청소년은 왜 안 돼?'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라!' '청소년도 시민이다.' '일하는 청소년, 섹스하는 청소년, 정치하는 청소년!' '청소년도 노동자다!' '청소년에게 자립의 기회를!' (사례8)

저는 목발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몇몇 친구들이 "다리 아픈 선생님이야"라고 하는 친구도 있지만 "선생님은 목발 몇 년 짚었어요?" "40년" 그러면 "목발의 달인이시네" 아이들이 패러다임을 바꾸기도 하거든요. (사례9)

4) 청소년 혐오표현의 예시

요즘 청소년이 자주 사용하거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혐오표현으로써 조사대상 전문가들이 열거한 혐오표현은 다음과 같다. 먼저 요즘 청소년이 자주 사용하는 혐오표현을 유형별로 빈도가 높은 순으로 소개한다.

첫째, 여성 혐오를 담고 있는 혐오표현이 가장 많았다. "너 메갈이냐, 저 꼴페미, 페미, 김치냐, 걸레년, 기모찌, 피싸개, 따 먹고 싶게 생겼다, 아다, 후다, 맘충, 00녀, 얼굴 빻았다, 가슴크기 순위, 외모 순위"와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 여성을 혐오하는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다.

둘째, 인종 차별과 이주배경 청소년에 대한 혐오를 담고 있는 '짱깨, 똥남아, 파퀴, 난민, 외노자, 외노, 흑형, 쪽바리' 등의 혐오표현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셋째, 예전부터 있어왔던 욕설을 포함하여 장애인 혐오를 담고 있는 '애자, 찐따, 너 장애 같아, 병신, 고자, 결정장애, 뇌 빻았다' 등의 혐오표현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넷째, 비슷한 빈도로 성소수자 혐오를 담고 있는 '레즈같아, 너 게이냐, 똥꼬충, 젠신병자, 트랜스00' 등의 혐오표현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다섯째, 그 밖에 노인 혐오를 담고 있는 '틀딱'이나 지역 혐오를 담고 있는 '홍어', 정치적 혐오를 담고 있는 '운지'같은 혐오표현도 사용되고 있다.

여섯째, 한편으로 '진지충'이나 '설명충'은 소수자 집단에 대한 혐오를 담고 있지는 않지만, 학교 내에서 이러한 낙인찍기는 대체로 장애가 있거나 이주배경 학생 등 소수자에게 붙여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일곱째, '한남, 한남충' 같이 남성에 대한 혐오를 담고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여성 청소년도 있는데, 남성혐오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남성은 사회적 차별의 대상이나 소수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는 혐오표현이 아니라 여성혐오에 대항하기 위한 미러링으로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혐오표현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하는 유형과 귀엽다는 의미를 담고 있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미숙하다는 편견과 차별이 담긴 유형이 있다.

첫째,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하는 혐오표현의 예로는 "어린 놈이~, 여자가 조신해야지, 커서 배달하려고 하냐, 어리니까 맛있을 것 같다, 어디서 말대꾸를 해, 급식체, 급식충, 룸나무, 중2병" 같은 것이 언급되었다.

둘째, 귀엽지만 미숙하다는 편견과 차별이 담긴 혐오표현의 예로는 "요린이와 같이 어린이와 합성된 0린이, 잼민이, 초딩, 중딩, 고딩" 같은 것이 언급되었다.

> 요린이 같은 말이요. 요리에 미숙한 사람을 부르는 말이고, 요리+어린이를 합성한 표현이에요. 어린이=미숙한 존재로 규정짓고 있는 거죠. 이 외에도 다양한 행위에 어린이를 합성해 O린이 라고 부르는 현상이 많아지고 있어요. 귀여운 느낌의 표현이다보니, 이것이 차별적이고 혐오적인 표현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인지가 없다는 점에서 우려가 되는 지점이 있고요. (사례4)

00충, 꼴페미, 맘충, 짱깨, 한남, 한남충, 틀딱, 급식충, 급식체, 룸나무, 동남아, 파퀴(파키스탄과 바퀴벌레를 합친 말이에요. 실제 사용할 때는 정말 파키스탄 사람을 지칭한다기보다는 외국인, 피부색이 약간 검은 사람을 그렇게 부르는 거죠. (사례5)

김치냐, 레즈같아, 난민, 개독, 너 장애같아. 잼민이, 병신, 결정장애, 급식충, 초딩, 중딩, 꼴페미, 걸레년, 어린 놈이..., 여자가~ 같은 말이요. 초딩 같은 말은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데, 저는 그 보편적으로 쓰는 게 혐오라고 생각해요. 여자가 들어오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밝아졌다고 하는 표현이랑 다를 게 없죠. (사례6)

피싸개, 흑형, 똥꼬충, 젠신병자, 꼴페미, 룸나무, 단순한 차별적 언어, 모욕적 표현, 욕설과 혐오표현의 구분은 연구자의 혐오표현 정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사례7)

청소년이 쓰는 말로는, 찐따, 너 게이냐?, 너 페미지?, 꼴페, 흑형, 기모찌, 쪽바리, 짱깨, 홍어, 운지, ○○ 따먹을 사람, 따먹고 싶게 생겼음, 고자, 외노자처럼 생겼다, 장애인이냐?, 장애인처럼 생겼다, 걸레, 아다, 후다, 얼굴 빻았다, 뇌 빻았다, 외모순위 매기기, 가슴크기 순위 매기기, 한남, ○○녀 같은 말이요. 이 중에서는 찐따라는 표현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문제의식 없이 자주 쓰는 것 같고요. (사례8)

게이냐/레즈냐, 급식체, 급식충, 중2병, 룸나무, 뜰딱충, 결정장애, 쿵쾅이, 짱깨, 똥남아, 김치녀, 메갈녀, 그리고 SNS 닉네임 사용 시 모든 단어 앞에 '트랜스'라는 말을 붙여서 트랜스젠더를 조롱하는 의미로 사용해요. (사례10)

3. 청소년 면접조사 결과분석

1) 혐오표현 노출경험

청소년 면접조사에서는 먼저 혐오표현 노출경험을 알아보았다. 단순 목격을 포함하여 가피해 경험 모두를 포괄하여 질문하였다.

(1) 주체

조사대상 청소년에게 혐오표현을 사용한 사람은 아는 사람도 있었고, 모르는 사람도 있었다. 아는 사람은 학교의 친구와 교사, 교회 교인, 가족, 친척 등 청소년

주위의 모든 사람이다. 모르는 사람은 SNS나 학교 내의 모르는 학생,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이었다. 이와 같이 혐오표현의 가해자는 어떤 특성을 가진 특별히 나쁜 사람들이라기보다는 그냥 우리 주위의 사람들인 것이다.

> 학교 친구들도 저한테 혐오표현 했었고 담임 선생님도 저한테 하신 적 있었어요. SNS 상에서는 없었어요. (사례11)

> 학교 선생님이요.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같이 계시는 성도님들이 얘기를 하신 적도 있었어요. (사례12)

>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요. 길거리에서도 그런 말을 들어야 했었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부모님도 내다 버린 자식 같이 대하셨는데요. 학원을 다닐 때도, 수능시험장에서도, 어딜 가든 그런 것에 많이 노출이 됐었죠. (사례13)

> 제가 학교 다닐 시절에 아웃팅을 한 번 크게 겪었어요. 아웃팅 자체도 어떻게 보면 혐오이긴 하지만 그 이후에 있었던 일들이 전부 다 혐오표현이었거든요.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 애들이 와서 저한테 막 "너 동성애자야?"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사례14)

> 학교 애들인데 친하지는 않고요. 제 앞에서 직접적으로 말한 것은 없는데 뒤에서 저 몰래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을 또 다른 애들한테 들은 그런 건 있어요. 뒷담화처럼요. (사례15)

> 제가 그랬던 것 같고, 제가 아는 사람한테 들어본 적 있어요. 그냥 친구들이랑 싸우다가 말한 적도 있고, 아는 사람이거나 SNS에서 들어본 적도 있어요. (사례18)

> 친척들이나 그냥 모르는 사람들이 TV 보면서 말하는 것을 들은 적도 있어요. (사례19)

(2) 시기 / 빈도

조사대상 청소년들이 혐오표현을 처음 접한 시기와 경험의 빈도를 알아보았다. 제일 일찍 경험한 청소년은 초등학교 2학년 때였고, 제일 늦게 경험한 청소년은 고등학교 2학년 때였다. 나머지는 모두 중학교 때였다고 답했다. 성소수자 청소년들은 중학생 때나 고등학생 때나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했고,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경우는 주로 중학생 때 피해를 당한 것으로 답했다.

장애 청소년 역시 피해를 받고 있긴 하지만 다른 소수자들에 비해 느끼는 빈도나 강도가 약간 덜해 보였는데, 이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한 장애인식 개선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효과를 보는 것으로 분석된다. 소년원 출원 청소년의 경우는 본인들의 소년원 경력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평소에 혐오표현으로 연결 지어 생각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으나, 면접이 심화되면서 본인들의 차별 경험을 기억하기 시작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 들었어요.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없고 마지막은 중학교 때 들었어요. (사례11)

중학교 1학년 때요. 지금도 가끔씩 그러고 있긴 해요. (사례12)

제가 처음 머리를 기르기 시작했던 게 15살 때부터인데, 그 때부터 좀 더 본격적인 표현을 접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 빈도가 잦았어요. 대학에 오고 나서부터는 그런 게 덜해졌다는 인상을 많이 받아요. 확실히 학교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익명성이 강할수록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이 많이 심한 것 같은데 실제로 수업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덜한 것 같아요. (사례13)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조금 많이 들었어요. (사례14)

중학교 1학년 때요. (사례15)

중학교 2학년 때요. 저희 학교가 외국인이 좀 많은 학교거든요. 다문화 학교인데 거의 다문화 애들이 다 중국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인 친구들이 막 다 중국인 애들 욕하고 그렇게 당하는 애들이 많아요. (사례16)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당해 봤던 것 같아요. 애들끼리 장난으로 너네 레즈비언이야? 둘이 사귀어? 이렇게 물어보는 건 정말 자주 들었어요. (사례17)

처음 들은 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자주는 아닌데 가끔씩 듣는 것 같아요. (사례18)

(3) 장소 / 공간

조사대상 청소년들이 혐오표현을 주로 접한 곳은 생활공간, SNS로 대별될 수

있다. 빈도의 측면에서는 SNS가 많을 수도 있겠지만, 청소년들이 더 강하게 체감하는 장소나 공간은 교실, 학교, 학원, 집, 직장 길거리 같은 일상 생활공간이다. 특히 대부분의 청소년이 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다녔기 때문에 학교에서 혐오표현을 들은 경험이 가장 많았다. SNS 채팅방이나 학교 익명 게시판, 익명앱 등이 언급되었고, 소년원 출원 청소년의 경우 친척들이 뉴스를 보다가 비행청소년에 대한 혐오 발언 하는 것을 들은 적도 있다고 했다.

> 학교나 제 또래 친구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요. 제가 합기도를 했었는데 그때 거기서도 들었었어요. (사례11)

> 저는 일상생활에서 좀 더 많이 듣죠. 그리고 제가 직접 SNS 채팅방에 들어가진 않았는데 저 빼고 초대를 해서 제 뒷담을 깐 적이 있었어요. (사례12)

>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와 그냥 길거리를 지나갈 때와, 아니면 가족 안에서,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례13)

> 교실에서도 그랬고 학교 익명 페이지에 저를 겨냥한 글이 하나 올라간 거예요. 서울퀴어문화축제 뱅글을 차고 있었는데, "서울퀴퍼(서울퀴어문화축제의 줄임말) 뱅글 하고 오신 분 동성애자인가요?" 이렇게 글이 올라오고 난 후부터 모르는 애들도 다 저를 언급하고 그랬었어요. (사례14)

> 자기 친한 친구들끼리 페이스북 메시지에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애스크(ask)라고 익명으로 질문하는 앱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서요. (사례15)

> 학교랑 SNS에서요. (사례17)

> 아르바이트 하러 가서도 그렇고 다른 데 밥 먹을 때도 들은 적 있고 삼촌이랑 친척들이 뉴스 보다가 그런 말하는 걸 들었어요. 저 들으라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페이스북에서도 본 적 있고요. (사례19)

(4) 내용

조사대상 청소년들의 들은 혐오표현의 내용은 이주배경 차별, 여성혐오, 장애인 차별, 성소수자 혐오, 소년범죄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 등이다. 어머니가 일본인인

청소년의 경우는 친구들로부터 일본냄새가 난다거나 엄마가 걸레x이라는 욕을 듣기도 했고, 심지어는 역사 수업시간에 교사가 일본 이중국적 학생이 있는 줄 알면서도 쪽발이x이라는 욕설을 입에 담기도 했다고 한다. 걸레x이나 쪽발이x은 이주배경 혐오 뿐 아니라 여성혐오까지 이중혐오의 성격을 갖고 있다.

장애 청소년의 경우는 교회나 학교에서 몸이 불편한 것을 보호해준다는 명목으로 사실상 차별을 당한 경험을 말했다. 성소수자 청소년들의 경우는 일상적으로 남자인지? 여자인지? 레즈비언인지? 끊임없이 질문을 받는다고 한다. 소년원 출원 청소년의 경우는 범죄자라는 편견과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 제가 이중국적인데 어머니가 일본분이세요. 저한테서 일본 냄새가 난다는 얘기를 했었고, 일본이 성인 영상 그런 게 많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근데 저희 엄마가 거기 출연한 사람이라면서 얘기했어요. 제 엄마가 걸레년이냐는 얘기였어요. (사례11)

> 전 중학교를 자퇴하고 나서 머리를 딱 이만큼 기르고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었는데 고등학교에서 늘 저한테 오는 반응이 남자냐? 여자냐? 이런 말이 있었고요. 남자냐 여자냐 이런 말 자체도 불쾌하긴 하지만 그걸 떠나서 그 표현이 세게 이뤄질 때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고추 달렸냐, 뭐 달렸냐, 이렇게 직접적으로 제 앞에서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계속 뚫어져라 보는 거요. (사례13)

> 이동 수업 갔다 오면 책상에, 막 '동성애자' 이런 식으로 낙서가 되어 있었고요. (사례14)

> 너 레즈비언이야? 라는 이야기를 자주 물어보더라고요. (사례17)

> 앞에서 막 직접적으로 말하는 건 아닌데 들려오는 얘기요. 쟤 소년원 갔다 왔다더라 이런 식으로요. (사례18)

> 요즘 애들 까졌다고 욕하는 걸 들었어요. 어른처럼 교도소 가야 한다, 요즘 애들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얘기요. (사례19)

(5) 방법 / 유형

조사대상 청소년이 경험한 혐오표현의 방법과 유형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

지 알아보았다. 혐오표현의 방법은 대부분 언어적인 것이었지만, 일본 이중국적 청소년의 경우는 일본제품 불매운동 문구인 “노재팬”을 인쇄해서 교실 책상에 붙여놓는 일을 경험하기도 했다. 혐오표현의 유형으로는 다음과 같이 욕설, 비난, 편견, 차별, 따돌림 등이 있었다.

첫째, 욕설의 유형으로는 엄마가 일본인인 청소년에게 “너희 엄마가 걸레니까 너도 걸레겠네”라고 익명 게시판에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엄마의 몸에 관한 욕설(이 청소년은 차마 그 말을 입에 담지 못함)을 하기도 했다.

둘째, 비난의 유형으로는 일본 이중국적 청소년에게 “너 같은 애들은 다 뒤져야 된다”는 말을 하기도 하고, 중국인이라고 나쁘게 말하기도 했으며, 혐오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너 레즈비언이야?” 라고 묻기도 했다.

셋째, 편견의 유형으로는 성소수자 청소년에게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친구들도 동성애자냐고 묻거나 “여자랑 하는 게 좋아 남자랑 하는 게 좋아?” 또는 “퀴어문화축제에서는 다 벗고 있어?” 같은 편견이 가득한 무례한 질문을 직접적으로 하기도 한다. 소년원 출원 청소년의 경우는 청소년비행에 관한 기사의 댓글에서 “어리다고 봐주면 안된다”거나 “소년법 폐지”와 같은 편견이 담긴 글들을 많이 보았다고 한다.

넷째, 차별의 유형으로는 뇌병변 장애가 있는 청소년에게 줄넘기 수행평가를 다른 학생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한 경우나 트랜스젠더 청소년은 화장실을 다른 학생들과 같이 사용할 수가 없어 부득이하게 장애인 화장실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으며, 소년원 출원 청소년의 경우는 그러한 경력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지 못했다고 한다.

다섯째, 따돌림의 유형으로는 이중국적이라는 소문을 내면서 “쟤랑 어울리지 마라”고 하기도 하고, 동성애자라면서 “쟤랑 붙어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기도 했다.

불매운동 터졌을 때 노재팬 그런 게 SNS에서 한창 떠돌아다녔잖아요. 제 자리, 교실 책상에 그걸 인쇄해서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너 같은 애들은 다 뒤져야 된다는 말도 있었어요. (사례11)

진단서를 떼서 시험 보는 당일 아침에 갔는데요. 선생님이 갑자기 저한테 말을 바꾸시면서 평가 기준을 바꾸진 못하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소수이고 나머지들은 다수인데 다수의 평가 기준을 따라야 하지 않겠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례12)

남자들은 아주 직접적인 방식으로 엄청 폭력적인 방식으로 했던 반면 여자애들은 뒤에서 막 수근덕거렸어요. (사례13)

"너 동성애자야?" 부터 시작해서 "너는 그러면 여자랑 하는 게 좋아 남자랑 하는 게 좋아?" 이런 말 들어봤고요. "퀴퍼(퀴어문화축제의 줄임말) 같은 데 가면 진짜 다 벗고 있어?" 이런 거나 갑자기 제 친구들에 대한 욕을 하는 거예요. 저랑 다니니까 그 친구들도 동성애자냐고 물어보기도 하고요. 애들 사이에서 그냥 욕을 엄청 먹었어요. (사례14)

저희 부모님, 가족 욕도 있었고 아니면 저의 행동에 대해서 욕하는 것도 있었고 그런 게 대부분이었어요. 저에 대한 건 아닌데 저희 엄마에 대해서 몸 관련된 욕들이 있었어요. (사례15)

중국인이라고 나쁘게 말하는 거였어요. (사례16)

특별히 지칭해서 그게 싫고, 너무 혐오스럽다고 하지 않아도 어떠한 대상을 희화한다고 해야 하나요? 가볍게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을 스스로가 좀 불편하게 여긴다는 걸 알면서 장난으로 하는 것이 있잖아요. 너 레즈비언이야? 라고 물어보면서 싫어하는 그런 제스처를 취할 때가 있었어요. (사례17)

청소년 비행에 관한 기사에서 봐도 댓글 많은 것 같고, 내용 보면 어리다고 봐주면 안 된다, 소년법 폐지해야 한다는 말이요. (사례18)

친구가 고기 집에서 아르바이트 해서 친구 소개로 일하러 갔는데 사장님이 제가 보호시설 다녀왔다는 걸 듣고 저를 채용하지 않았죠. (사례19)

(6) 원인 / 인식

조사대상 청소년들에게 가해자들이 혐오표현을 한 이유는 무엇이었다고 생각하

는지, 그로 인해 자신은 혐오표현에 대해 어떤 생각이나 느낌을 갖게 되었는지 알아보았다.

가해자들이 혐오표현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혐오문화와 같은 거시적인 이유는 스스로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인지 대부분의 청소년이 가해자인 청소년의 문제나 자신의 유발요인 등 좀 더 직접적인 이유들을 언급했다. 가해자에 대한 관점으로는 아직 부족한 애들이라거나 동성애는 신기한 주제라서, 소년원에 가게 된 사정을 몰라서 그랬을 것이라는 답변도 있었다. 자신의 유발요인으로는 몸이 불편하니까, 머리를 길게 기른 남학생이라서, 친구들과 싸워서, 자신이 중국 사람이라서, 한 친구와 붙어 있는 시간이 길어서, 보호시설에 다녀와서 같은 이유를 답했다. 결국 자신이 가진 약점 때문에 혐오표현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혐오표현 피해를 입은 후에 어떤 생각이나 느낌을 갖게 되었는지에 관해서는 기분이 나빴지만 아직 부족한 애들이니까 이해해야겠다고 자신을 합리화시키려고 한 경우도 있었고, 자퇴를 고민하고, 스트레스로 인해 잔병치레를 한 경우도 있었으며, 일을 시켜보지도 않고 차별하는 것에 화가 나기도 했다고 한다.

>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기분이 나빠요. 내가 이런 얘기를 왜 들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생각 정리가 될수록 아직 부족한 애들이니까 내가 이해하려고 해야겠다면서 저를 합리화시키려고 했던 것 같고요. (사례11)

> 머리를 길게 기르는 순간부터는 제가 굳이 트랜스젠더라고 말하지 않아도 당연하게 '남자도 여자도 아닌 그냥 이상한 것' 느낌으로,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 느껴지는 분위기로든 대해지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사례13)

> 학교 자퇴 고민을 계속하면서 제가 학교를 진짜 좋아했거든요. 선생님들이랑 다 친하고, 애들이랑 다 친하고 하니까요. 그런데 학교 다니기가 어느 순간부터 무서워지는 거예요. 잔병치레도 엄청 많았어요, 그 일 이후로요. 스트레스 받아서 계속 배 아프고 머리 아프고 그러더라고요. (사례14)

> 제가 중국 사람인데 왜 한국에 오냐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사례16)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다른 친구들이랑 저랑 친하게 지내다보니까 한 친구랑 친하게 지냈었는데 그 친구랑 붙어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다들 쟤네 둘이 사귀는 것 같다는 이야기가 온 학교에 퍼졌어요. (사례17)

걔는 저의 사정에 대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게 남들이 보기에는 무조건 나빠 보일 수 있는데 다른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기분이 나빴죠. (사례18)

제가 보호시설 다녀왔다는 걸 사장님이 알았거든요. 써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화가 났어요. (사례19)

(7) 혐오범죄

조사대상 청소년들에게 혐오표현이 왕따나 괴롭힘, 폭행 등의 혐오범죄로 심화된 적이 있었는지 알아보았다. 조사대상 청소년 중에는 혐오표현 그 자체가 언어폭력이고 학교폭력이라는 의견이 있었고, 대부분 친구들과 멀어지거나 노골적으로 왕따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취업과정에서 차별을 당했다. 또한 성소수자 청소년의 경우는 아웃팅 피해를 입은 경우도 있었다. 혐오범죄가 없었다고 자신 있게 답한 청소년은 2명뿐이었지만, 그렇다고 폭행 같은 심각한 수준의 혐오범죄를 경험한 청소년은 없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저희 어머님이 일본 사람이란 걸 애들 다 있는 데서 밝히신 거예요. 그때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담임 선생님이 일본은 나쁜 나라라고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일단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시긴 하셨어요. 그래서 한동안 애들이 저를 왕따 시켰어요. 쟤랑 놀지 마, 하면서요. (사례11)

사실상 왕따였던 거죠.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하루에 다섯 마디로 못 했었던 것 같아요. 일단 목소리를 꺼내면 이상하게 보고요. 왜냐하면 목소리가 낮으니까요. (사례13)

학교 폭력으로 느꼈었어요. 아웃팅 이후로 약간 사람을 믿는 것도 좀 어려워졌고요. (사례14)

그 일 때문에 되게 친구들 사이끼리, 친했던 애들끼리 다 멀어졌어요. (사례15)
왕따까지는 아닌데 저를 꺼려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선생님들은 딱히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사례18)

저를 채용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사장님이 그래서, 소년원 다녀왔지만 성실하다고 했는데 듣지 않았어요. (사례19)

2) 혐오표현 가피해 경험의 영향

(1) 2차 피해 경험

가. 혐오표현의 충격

조사대상 청소년의 혐오표현 2차 피해에 대해 알아보았다. 혐오표현의 피해를 당하고 어느 정도 충격을 받고, 그 충격은 어느 정도 지속되었으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질문했다. 대부분의 청소년이 큰 충격을 받았고, 트라우마가 되었으며, 학교에 가기가 두려웠고, 취업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다고 한다. 그 기간은 한두 달부터 2년이나 그 이상까지 지속되기도 했다고 한다. 한편 혐오표현 사건이 발생해서 차별금지 교육을 실시하게 되니까 그에 대한 비난을 받는 2차 피해도 있었다.

초등학교 때 저한테 있어서는 그게 일생일대 큰 충격이었어요. 제가 원래 힘든 일이 있어도 누구한테 티를 잘 안 내고 일부러 더 웃으려고 하는 성격이여서 그때 더 이상하게 더 밝아지고, 다 잠들었을 때 혼자서 이불 속으면서 울고 내가 뭘 잘못했기에 그런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을 초등학교 4학년까지 반복했던 것 같아요. (사례11)

처음에는 아주 공포스럽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대학에 가고 나서 정신과에 가 보니까 의사선생님께서 괜찮다, 정신 건강이 멀쩡하다. 내성이 강하다고 말씀해주셔서 놀랐어요. 사실 그래서 약간 건강한 축에 속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가끔 새벽이나 밤에 잘 때 꼼꼼히 옛날 생각이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사례13)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일 이후로 사람 많은 곳에도 그렇게 잘 가지 못했고요. 차별금지 교육 끝나고 나선 애들이 말을 하고 나서도 “어, 이것도 그럼 이런 말인가?”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오히려 "야, 이거 쟤 때문에 하는 거 아니냐?"라고 2차 피해도 있었고요. (사례14)

거의 한두 달쯤은 갔었던 것 같아요. 맨날 학교를 가서 같은 반 애들이다 보니까 맨날 마주칠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오래 갔었던 거 같아요. (사례15)

충격이라면 충격이죠. 그 정도로 비하 당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당분간 취직은 어렵겠다고 생각했어요. (사례19)

나. 혐오표현의 부정적 영향

조사대상 청소년들은 혐오표현이 사실이라고 생각된 적이 있었는지, 그로 인해 자신감을 잃거나 실제로 어떤 일을 중단한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았다. 일본 이중국적 청소년의 경우는 자신의 엄마가 평범했으면 자신도 친구들과 그냥 놀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고, 성소수자 청소년의 경우는 엄청나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무신경해졌으며,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존심이 상했지만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했고, 죽고 싶거나 정신과 약을 먹은 경우도 있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있었던 일은 중학교 와서 엄마한테 처음 얘기했었거든요, 용기내서. 근데 엄마가 저한테 해줄 말이 너 잘못한 거 없다고 잘못한 거는 그냥 그렇게 일본이 한국한테 이상한 짓 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너한테 이상한 말을 했던 사람들이니까 네가 너무 신경 쓸 필요 없다고 했어요. (사례11)

그런 표현은 늘 다가오는 것이고 내가 하나하나 조금 불편하게 신경을 써야 할까? 이런 생각으로 살다 보니까 아예 신경을 안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제 주변에도 그렇고 많은 트랜스젠더 친구들도 그러는 것 같은데, 남들이 경험한다면 엄청난 위기이고 사실 엄청나게 부당한 대우라고 여겨지는 것들에 대해서 별 생각을 하지 않게 되고요. 딱히 신경 써야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고,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사례13)

그 일 때문에 친구들 사이끼리, 친했던 애들끼리 다 멀어져가지고 조금 솔직히 말하면 죽고 싶기까지도 했었어요. (사례15)

사실 이전에는 그런 말들을 들으면 제가 너무 자존감이 깎이고 스스로도 자신감이 떨어져서 저 사람들이 옳은 말을 하고 있는 것 마냥 받아들일 때가 있었어요. (사례17)

자존심 상하죠. 생각이 많았는데, 사장님은 돈 줄 사람이고 저는 면접자라 항의도 못 했죠. (사례19)

다. 피해 당시 필요한 도움

조사대상 청소년들에게 혐오표현 피해를 당했을 때 누군가 어떻게 해주었더라면 도움이 되었을지 알아보았다.

피해 당시에 도움을 받은 청소년들은 그때의 경험을 언급했다. 혐오표현을 하고 있는 친구들 앞에서 "유치하다"라는 말로 대항표현을 해주어서 위로를 받은 경우도 있었고, 차별하는 교사에 대해 반 친구들이 담임교사에게 신고해서 도움이 된 경우도 있었으며, 바로 옆에서 지지해주는 친구가 있어서 무사히 졸업을 한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당시에 도움을 받지 못한 청소년이 더 많았고, 그들은 누군가 선생님에게 신고해주면 좋았겠고, 딱 한 명이라도 이야기를 나눌 친구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고, 누군가 나의 잘못이 아니고 그 사람의 잘못이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며, 차별로 인해 취업을 못한 소년원 출원생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소년원이나 한국소년보호협회에서 도움을 주면 좋겠다고 했다.

혐오표현 피해 당시에 도움을 받았거나 받지 못했거나 응답한 내용은 거의 비슷했다. 지지해줄 친구나 교사에게 신고해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 애들이 담임 선생님한테 그 선생님에 대해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담임 선생님이 왜 그걸 얘기를 안 하고 이제야 얘기를 하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이걸 말한다고 해서 그 선생님 귀에 들어가면 저한테 차별할 게 뻔하고, 솔직히 말해도 바뀔 게 없을 것 같아서 얘기 안 하고 참고 있었다, 애들이 선생님한테 말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례12)

어떤 정체성으로 어떻게 보이는가도 사실 많이 중요한 문제인 것 같지만, 트랜스젠더들이 어릴 때부터 소외되고 사회적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사라지고요. 예를 들어서 학교를 자퇴한다거나 혹은 두 성의 집단에 끼지 못해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 때문에

내가 살고 싶은 성으로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가에 대한 경험이 많이 없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사례13)

직접적인 도움은 모르겠는데요, 옆에서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힘이 나더라고요. 제 친구가 저를 지지해줘서 계속 학교 다닐 때 저를 챙겨서 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거든요. (사례14)

누가 다른 친구들과 선생님한테 얘기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사례16)

누군가 그 사람이 잘못된 거고 나는 잘못한 게 없고 그리고 내가 정상이고 그 사람이 비정상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례17)

소년원이나 협회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으면 했어요. (사례19)

(2) 피해이후 대처경험

조사대상 청소년들에게 혐오표현 피해를 당한 후에 어떻게 대처하였는지, 가해자의 혐오표현을 중단시키거나 사과를 요구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한 적이 있는지, 대처 결과 도움을 받지 못했다면, 또는 대처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피해를 당한 후에 대처를 한 경우는 아버지가 학교에 전화해서 항의를 하거나 온라인 피해에 대한 고소, 학교폭력으로 학교에 신고, 학년이 바뀔 때 학급 분리, 차별 금지교육 실시 등이었다. 하지만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했거나 대처했음에도 도움을 받지 못한 청소년이 더 많았는데, 대처하지 못한 이유는 대부분 무서워서 용기를 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도움을 받지 못한 이유는 아웃팅의 경우 학교 측에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부모님의 형편이 어려워서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경우도 있었다.

용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많이 들어서 자신감이라든지 자존감이 다 낮아졌는데, 남한테 제 의견을 얘기한다는 게 제 입장에서는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례11)

제가 집에 가서 엄청 울었거든요. 그 다음 날 아빠가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서 그 선생님 아니면 교장선생님과 통화하게 해달라고 하셨어요. 아니면 두 분 중 한 분이라도 안 바꿔주면 바로 교육청으로 신고하겠다고요. (사례12)

제가 요즘 같은 사회에서 그런 말을 듣는다면 어떻게든 대처를 할 텐데, 그래서 사실 옛날에는 온라인에서 그런 일을 겪었을 때는 고소를 한 적도 있었어요. 16살 때였어요. (사례13)

아웃팅을 주제로 학교폭력위원회를 열려고 했는데, 학교폭력 리스트에서 처벌 수위가 있잖아요, 거기에 아웃팅이라는 조항은 없대요. 그래서 아웃팅이란 조항이 없어서 그것으로 학교폭력 처분하기가 힘들다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사례14)

해보긴 했는데, 걔네들이 좀 더 제가 심하게 했다는 걸로 소문이 더 퍼져서요. 도움을 요청해서 그 애들하고 2학년 때 같은 반 되지 않게 도움을 주셨어요. 학교폭력사건으로 처리하지는 않았어요. (사례15)

너무 다수 대 소수이다 보니까 특별히 무슨 대처를 못하겠더라고요. (사례17)

그 당시 부모님 형편도 어렵고 사고를 많이 쳐서 도움 받기가 어려웠어요. (사례19)

3) 혐오표현에 대한 의식

(1) 혐오표현 실태에 대한 의식

조사대상 청소년들에게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에 대해 편견을 갖고 차별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들에 대해 혐오표현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사회는 이러한 편견과 차별, 혐오표현이 얼마나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알아보았다.

조사대상 청소년들은 모두 우리 사회에서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혐오표현이 무수히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문제의식도 없는 것 같다고 답했다. 지역 혐오나 여성 혐오, 장애인 혐오 등 일상적인 적대와 공격이 헤아릴 수 없이 많고, 상대가 불편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면서도 장난으로 그런

말을 하고 있으며, 혐오표현인지 인식하지 못한 채 사용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도 혐오발언을 한 적이 있다고 고백한 청소년도 있었다.

> 어떤 의견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물론 그 비율이 좀 적고 한쪽이 엄청 많다고 해도 반대하는 사람이 무조건 한 명씩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건 개선되어야 될 점은 맞는데 어느 정도는 어쩔 수 없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사례11)

> 자주 듣는 편이죠. 너무 대놓고 팔 때문에 안 돼, 다리 때문에 안 돼, 이게 아니라 순화해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례12)

> 제가 다 헤아리지 못할 만큼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혐오표현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일상적인 적대와 공격 같은 것이 다 헤아리지 못할 만큼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사례13)

> 본인이 약자가 아니니까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 그러한 혐오표현을 듣는 것은 다 약자가 듣는 거잖아요. 이게 듣는 약자 입장에서는 그 한 마디가 너무 괴롭거든요. (사례14)

> 지역 혐오나 여성 혐오나, 그런 차별은 자주 일어나는 것 같아요. 친구들끼리 장난으로 얘기해도 그런 말이 꼭 들어가거든요. (사례15)

> 장애인 차별하는 것, 장애인이라서 친구 사귈 수 없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사례16)

> 저는 그 편견을 안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런데 저도 많이 했던 것 같긴 한데 그게 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저도 안 그러려고 노력하거든요. 하지만 거의 대다수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사례18)

> 듣기 안 좋죠. 다르다고 무시할 필요도 없고 자기랑 안 맞는다고 배척하는 게 남한테 상처줄 수 있잖아요. 우리 사회는 그런 것에 대해 문제의식 갖고 보는 것 같진 않아요. (사례19)

(2) 혐오표현 원인에 대한 의식

조사대상 청소년들에게 사람들이 혐오표현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인터넷이나 SNS의 익명성이 혐오표현을 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지,

우리 사회는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혐오표현에 대해 관대한 편이라고 생각하는지 알아보았다.

사람들이 혐오표현을 하는 이유는 소수자이기 때문에 만만하게 보고 무시하는 생각과 그로 인해 느끼는 우월감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많았다. 혐오표현인지 몰라서라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당하는 사람의 고통을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익숙하게 내뱉는 말일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인터넷이나 SNS의 익명성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대부분 익명성 때문에 혐오표현을 쉽게 하는 측면도 있지만, BJ나 유튜버는 주목을 받기 위해 일부러 혐오표현을 하기도 하고, 인터넷의 가짜뉴스가 편견을 조장하기도 한다는 생각을 말하기도 했다. 한편 우리 사회는 이러한 편견과 차별, 혐오표현에 대해 관대하다는 점에 대해 모든 조사대상 청소년이 한목소리를 냈다.

> 그런 혐오표현을 하는 이유는 자기보다 조금 못난 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는 사람들을 헐뜯어서 자신의 기분을 좋게 만들려고, 쾌락을 얻으려고 하는 것 같고요. (사례11)

>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일이니까 얼마나 힘든지 고통스러운지 모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서슴없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솔직하게 그런 사람들한테 일일체험이라도 몸을 바꿔서 해 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례12)

> 진짜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아요. 정말 늘 느끼는 것이지만 학교에서든, 학원에서든, 어디서든 그런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느꼈냐면 "정말 저 사람이 나를 만만하게 보고 있구나" "정말 내가 단지 머리가 길다는 이유만으로 만만한 사람으로 대우 받을 수 있구나."하는 거였어요. 확실히 학교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익명성이 강할수록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이 많이 심한 것 같은데 실제로 수업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덜한 것 같아요. (사례13)

>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는 게 왜 혐오표현이 되는지를 모르니까요. 저도 그렇게 익명성 때문에 당했으니까요. 익명성이 제 생각에는 한 70%는 미치지 않을까 싶어요. 익명이라는 것은 안 보이니까요. (사례14)

> 어차피 말해도 당사자한테는 말이 안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서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익숙해

져서 쉽게 말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냥 쉽게 인터넷에서도 조금 과격한 말을 쓰는 BJ들을 많이 보니까요. (사례15)

그런 말을 하는 이유는 만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그러는 것 같아요. (사례16)

내가 이 사람을 만만하게 보고 있다 혹은 내가 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우월감 때문에, 혐오표현 같은 것들이 자꾸 툭툭 튀어나오고 사회 밖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사례17)

남들 쉽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들 같아요. 남 일이라고 재미있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누가 그 얘기를 하는지 모르게 하니까 더 그러지 않을까요? (사례18)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상대가 상처받는 건 배려하지 않고 소수자와 친해지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과 노는 게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청소년은 SNS에 영향을 더 받죠. (사례19)

(3) 혐오표현 변화추이에 대한 의식

조사대상 청소년들에게 우리 사회는 예전에 비해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혐오표현이 증가 또는 감소했다고 생각하는지, 향후 혐오표현이 증가 또는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렇게 전망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우리 사회의 편견과 차별, 혐오표현에 대해 과거에 비해 현재 증가했거나 감소했다는 의견이 비슷했고, 미래에 증가하거나 감소할 것이라는 의견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낙관하는 의견은 우리 사회가 혐오표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감소해왔고 감소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반면에 비관하는 의견 역시 우리 사회가 문제의식이 별로 없기 때문이라고 했고, SNS로 인해 새로운 혐오표현이 계속 생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제가 중학교 올라와서 그런 얘기 들은 것 빼고는 없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 살던 동네에서는 저와 같은 이중국적 애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고등학교 쪽에서는 이중국적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국제결혼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들어서 아무래도 그런 분들이 또 자녀 낳고 하다 보면 다문화에 대한 교육 같은 게 예전보다 현재도 늘어났다고 들었거든요. 동생들한테도 들어서 그런 건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고등학생

이 돼서 함부로 말하는 애들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사례11)

우선 사회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렇게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솔직하게는 늘어난다고 생각해요. 그냥 사회에서 배려 받는 사람들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사례12)

저는 그래도 정말 면전이든 온라인에서든 표현을 멍청하고 무례하게 하는 사람들은 앞으로는 줄어들 거라고 낙관하고 있고요. 요즘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아주 많이 민감하게 대응하잖아요. (사례13)

솔직히 지금도 계속 혐오표현은 새로 생겨요. 그런데 전에 있던 혐오표현이 그렇다고 사라지지는 않잖아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해요. 혐오가 또 혐오를 만들어내더라고요. (사례14)

부모님 세대에 쓰던 담탱이 같은 말도 그렇게 세지 않은 말이었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선생님이라는 말은 들어 있잖아요. 근데 요새는 그런 은어들이 과거보다는 좀 더 많아져서 혐오표현도 많아진 것 같아요. 미래에는 더 많아질 것 같은데요.(사례15)

한 10년 전에 봤던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을 다시 보게 되면 거기에 일상적으로 쓰이는 자막들이나 그런 프로그램 내에서 패널들이 하는 이야기가 지금 들으면 이런 말을 했었나? 싶고, 이런 말을 하고도 문제가 안 되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사례17)

편견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SNS 때문에 좀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사례18)

지금도 많이 늘어난 것 같고요. 더 늘어날 것 같아요. 별 문제의식이 없으니까요. (사례19)

4) 혐오표현 제한에 대한 의식

(1)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의식

가. 청소년 혐오표현에 대한 차별금지법 필요성

조사대상 청소년들에게 혐오표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차별금지법' 같은 법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알아보았다. 조사대상 청소년 중에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청소년 모두가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법률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의견을 말하지는 못했지만, 필요하다고 간단하게 답했다. 하지만 성소수자 청소년들의 경우는 구체적으로 희망적인 기대를 담아 답을 했고, 그 법률이 형식적인 차원에 그치더라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저는 그래도 많은 도움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 법안의 내용이 형식적인 차원이든, 아니면 정말 실제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차원이든 둘 다 정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성소수자들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근거를 사회적으로 꺼낼 수 있게 되니까요. (사례13)

>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법으로 있으면 조금이라도 의식을 갖기 시작할 것 같아서요. (사례14)

> 저는 당연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표현의 자유는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표현의 자유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까지 표현의 자유로써 인정해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반드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례17)

나. 청소년 대상 종사자에 대한 규제 필요성

조사대상 청소년들에게 공무원, 교사, 언론인, 공공기관 종사자 등 공직자의 혐오표현에 대해 좀 더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의견을 알아보았다. 조사대상 청소년 전원이 공직자에 대한 특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데 강력한 동의를 표했다. 특히 교사의 경우는 학교 내에서 강한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수자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강력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공직자 외에 유튜버도 어린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제재를 더 강력하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교사들은 학교에서 강한 권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저희한테 무언가를 가르쳐주는 게 선생님들이잖아요. 그래서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무조건 선생님 말이 맞다는 생각이 기본으로 깔려 있는 느낌이라서요. 선생님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고 특히나 언론인은 정말 규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사례11)

그런 게 있어야 그런 혐오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줄 거고, 그래야 상처 받는 사람들 또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줄어들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사례12)

학교 선생님들 중 한 분이 유독 저를 엄청 싫어하셨어요. 아웃팅 이후에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눈치를 주는 거죠. 너 왜 자꾸 여기 오냐? 이러시고 교무실에 볼 일이 있어서 가도 그랬고요. 그래서, 다 일단 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례14)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인터넷이 많이 발달해 있는데 어린 유치원생들도 유튜브 같은 걸 많이 접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뿐만 아니라 인터넷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세게는 아니지만 약간의 제재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례15)

그럴 수도 있죠. 센 처벌은 아니더라도 미세한 처벌이라도 하면 좋겠죠? 일반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려고 만든 직업인데 그렇게 일반인이랑 똑같이 굴면 그런 직업을 가질 필요가 없죠. (사례18)

약자를 차별하면 여자, 노인 왜 일을 시켜요? 다 같이 일하는 사회가 되려면 처벌해야 하겠죠. 교사는 청소년이 제일 많이 접하니까 영향이 제일 클 것 같아요. (사례19)

(2) 혐오표현 예방에 대한 의식

조사대상 청소년들에게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같이 혐오표현에 대해서도 '혐오표현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교육의 대상은 누구가 되어야 하겠는지 의견을 알아보았다. 조사대상 청소년 전원이 예방교육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육을 해도 집중하지는 않겠지만, 한두명이라도 들으면 의미가 있고, 어려서부터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으면 가치관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무래도 어느 순간부터 학교폭력 예방교육만 너무 많아지는 느낌이고 그 다음으로 장애인 인권교육에 그치는 느낌이라서 그런 점이 좀 아쉽기는 했어요. 그런 교육들도 사회적 이슈라

든지 그런 트렌드에 맞게 변화 변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선생님까지 같이 받으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사례11)

표현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학교 안에서 교육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내 주변에 성소수자 친구가 있더라도 어떻게 정말 이 친구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학교 같은 데서 교육을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례13)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교육을 하면 학생들은 아무도 안 듣긴 하는데, 수업 안 한다고 놀고 있지, 그래도 한 두 명은 들을 것이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례14)

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그런 것들이 옳지 않다고 배우고 내가 이 사람을 인간 대 인간으로서 인격체로서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조금 더 일찍 배운다면, 다른 곳에서 받은 피해를 누군가에게 가해함으로써 풀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이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애초에 생기는 무고한 피해자들도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사례17)

문제의식 자체가 현재 없으니까 예방교육은 필요한 것 같아요. (사례19)

(3) 혐오표현 피해자 지원에 대한 의식

조사대상 청소년들에게 혐오표현의 피해자에게는 어떤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겠는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우선적으로 변화하거나 마련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의견을 알아보았다.

조사대상 청소년 대부분은 혐오표현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으로 공통적으로는 상담과 심리치료, 예방교육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익명성 보장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고, 전문가에 의한 상담과 심리치료 및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하며, 혐오표현 예방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특별히 성소수자 청소년을 위해서는 그들만을 위한 별도의 학교나 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는데, 현재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2곳이 모두 서울에 있기 때문에 지역별 확충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한편 소년원 출원 청소년을 위해서는 취업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심리치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 당한 입장으로는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걸 숨기고 싶어 하는 게 제일 먼저였던 것 같아요. 일단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런 심리치료 쪽으로 가면 자연스럽게 본인의 마음을 열고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청소년상담센터도 중학교 와서 처음 알았거든요. 또래상담 톡해가면서 알게 된 건데 그런 기관에 대한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익명성 보장한다는 걸 조금 강조하면 더 활성화될 것 같아요. (사례11)

장애인식 개선이나 장애이해교육 같은 게 지금처럼 미래에도 지속이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짜 조금이라도 줄어들지 않을까요? 1%라도 줄었으면 좋겠어요. (사례12)

저는 정말 학업 관련된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많은 트랜스젠더 분들이 청소년 때부터 학교를 관두거나 혹은 학교 안에서 너무나 소외되는 경험을 하다 보니까 학업에서 밀려나고, 그런 경험들이 성인으로 이어진다면 직장을 찾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고요. (사례13)

띵동(*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말고도 띵동을 가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편하게 갈 수 있는 상담이요. 딱 성소수자를 걸고 하는 것은 띵동이나, 드림캐쳐(*청소년 성소수자 지원팀)라고, 청소년 상담해주는 센터가 있어요. 지역별로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둘 다 서울에 있으니까요. (사례14)

제일 좋은 건 심리 상담인 것 같기는 해요. 심리 상담이나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사실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례17)

소년원 갔다 온 거 모르게 하고 취직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례18)

청소년 상담이 필요한 것 같고요.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야 하니까요. 또 취업지원이랑 자존감 회복 프로그램 같은 거요. (사례19)

(4) 대항표현에 대한 의식

조사대상 청소년들에게 혐오표현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대항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본인에게 직접적으로 대항표현을 해준 사람들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조사대상 청소년들 중에서 1명을 제외한 8명은 대항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고, 본인에게 직접 대항표현을 해준 경우도 7명이 있었다. 대항표현을 해준 사람들은 친구와 가족, 지인들이라고 답했다.

일상생활에서는 저를 지지하거나 이해해주고 같이 있으면 편한 친구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혐오표현을 듣더라도 이야기 나누고 같이 고민해 줄 수 있는 친구들이 있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른들이나 친구들이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사례13)

친구들이랑 가족들한테 들었어요. 가족들한테는 이미 커밍아웃을 했거든요. 많이 울면서 이야기하는데 부모님이 괜찮다고, 네가 건강하고 예쁘게만 자라면 된다고 해주시더라고요. 많이 힘들었겠다고 하면서 응원해주시더라고요. (사례14)

있어요. 근데 다 중국인들이 말했고 중국은 한국보다 크다고 말했어요. (사례16)

그 당시에는 정말 도움이 안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위했었는지가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괜찮아지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정말 신경 써서 그런 이야기를 해줬다는 걸 느꼈어요. (사례17)

소년원에서 자격증도 많이 땄고 검정고시도 따고 했으니까 더 잘 될 거라고 얘기 해주는 사람들 많았어요. (사례18)

부모님이 소년원 갔다 온 것도 다 경험이고 기죽을 필요 없고 어차피 네가 정신 차리고 하면 시간 많으니까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사례19)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주요결과
2. 정책제언

6 결론 및 정책제언[63]

1. 주요결과

1) 연구개요

이 연구의 목적은 편견과 차별, 혐오표현에 관한 청소년 대상 최초의 대규모 조사로서 다양한 유형의 혐오집단과 혐오표현 형태에 대한 청소년의 노출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이에 필요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를 통하여 혐오표현 문제의 개념적 논의와 주요 연구내용을 구상하였고, 외국사례 분석을 통해 교육프로그램과 제도적 장치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조사연구로써 전국단위의 설문조사를 통해 초·중·고등학교 청소년 6,000명에 대한 혐오 실태를 분석하였고, 청소년 면접조사와 전문가 면접조사를 실시했다.

연구내용은 선행연구검토를 통하여 혐오표현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과 법률적 현황을 파악하고, 실태조사항목으로 혐오표현의 인식문제, 혐오표현의 사회적 영향, 혐오표현의 심각성, 현재 우리나라 혐오 표현의 강도(수준), 혐오표현의 생산자 및 생산수단, 그리고 혐오표현에 대한 청소년의 심리적 피해 행위와 정책적 대응 방안 9개 영역을 청소년 혐오표현 문제의 주요 영역으로 선정하고, 설문조사

63) 제6장은 김영한 선임연구위원과 이유진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와 면접조사를 통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외국사례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미국, 일본 및 유럽 지역의 법제도적 내용과 교육프로그램을 검토하였다.

2) 외국사례 분석결과

외국사례를 분석한 결과 혐오표현과 관련된 교육적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① 혐오표현 관련 교육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아직까지는 혐오표현 관련 교육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인성교육, 시민교육, 인권교육, 미디어교육의 일부로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혐오표현 관련 교육은 인권의 측면에서 다룰 수도 있고 미디어나 시민성의 측면으로도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혐오표현 관련 교육에 대한 다양한 시각은 이것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② 혐오표현 관련 교육의 내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현재 세계적으로 실시되는 혐오표현 관련 교육의 내용은 유사하고 내용이 많지 않다. 혐오표현 관련 교육에서는 주로 혐오나 혐오표현이 무엇인지, 그리고 혐오표현의 결과, 혐오표현에 대한 경험, 대처방법을 다루고 있다. 교육방법의 다양화를 통하여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③ 온라인 혐오표현 관련 교육이 핵심이다. 과거와 달리 현재는 오프라인만큼 아니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을 통한 소통이 많아지고 중요해졌다. 이것은 긍정적인 측면이나 부정적인 측면 모두에게 통용된다.

④ 혐오표현 관련 교육은 편견부터 시작해야 한다. 혐오의 피라미드 단계별 규제 및 대응방안을 보면, 피라미드의 가장 아래 단계인 편견은 교육이나 의식개선 등으로 해결하도록 되어 있다. 그 이후의 단계에서는 교육보다는 다른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다.

⑤ 혐오표현은 학교폭력과 관련이 있다. 학교폭력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 피해자에 대한 혐오나 차별은 주요 원인이 된다.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ADL의 대표적인 혐오표현 교육인 No Place for Hate는 학교폭력, 편견, 혐오에 대항하기 위한 학교분위기 향상 프로그램이다. 이것은 혐오표현 관련 교육이 학교폭력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설문조사 분석결과

혐오표현 문제의 9개 영역에 대한 초·중·고등학교 청소년 6,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의 결과는 다음 같다. 주로 성별, 경제수준별, 학교유형별 개인특성변수와 관련하여 하위항목과의 유의미한 결과가 많이 도출되었다.

① 혐오표현 문제의 인식도 : 외국인 차별 혐오는 평균이하로 낮은 편으로 성별에서는 남자가 평균 2.03, 경제수준에서는 최하위계층 2.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피부색에 따른 인종차별은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여성, 그리고 학급이 올라 갈수록 높다. 타종교 혐오에서는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심한 편이며, 소수자에 대한 혐오 문제는 여성과 학급이 올라 갈수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학교유형에서 고등학교가 2.8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에서는 여자가 2.52로 남자보다 조금 높은 편이다.

장애인 혐오는 낮은 경제수준과 고등학교에서 높게 느끼고 있으며, 성소수자에 대해서는 성별로는 여성이 2.71로 높으며, 경제수준에서는 최하위가 3.44이고, 학교유형에서는 고등학교가 3.09로 매우 높은 편이다.

페미니스트에 대해서는 성별로는 남자가 2.79로 높고, 모든 개인특성에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학교유형별로는 고학년일수록 우리사회의 페미니스트 혐

오 문제에 동의하는 바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교의 경우 3.35로 높게 나타났다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응답자 대부분 평균이하로 낮은 편이며, 청소년에 대한 혐오는 고등학교가 3.19로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여성이 2.85로 남성 2.67보다 높아 청소년 혐오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노인에 대한 혐오는 평균 값에 가까운 편이며, 다만 경제수준이 하인 집단이 3.24, 최하위가 3.56으로 높게 나타났다.

빈곤층과 부모직업, 학벌, 출신지역에 대한 혐오 문제는 경제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평균이하 수준으로 나타났다.

② 혐오표현의 사회적 영향 : 혐오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해 더욱 확대되고, 더 큰 사회문제가 되고, 인권침해를 할 것이라고 5점 만점에 3점 이상으로 동의하는 청소년이 많았다. 통계적으로 성별, 경제수준, 학교유형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혐오표현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확대 항목에서는 여성 3.10, 최하위계층이 3.70, 고등학교가 3.36으로 혐오 표현 문제가 사회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혐오 표현 문제의 다양화 항목에서는 성별, 경제수준별, 학교유형별 응답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평균분석에서 여성이 3.23, 최하위계층이 3.09, 고등학교 3.45 높게 나타나 앞으로 혐오문제가 여러 분야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혐오 표현 문제의 폭력 등 사회문제로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학교유형에서는 고등학교가 3.40로 높게 나타났다. 즉, 혐오가 심각해질 경우 폭력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세대 및 지역 갈등의 강화 문항에서는 대부분 3점대로 나타나 응답자들은 장래

에 혐오문제가 사회적 갈등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

혐오를 이용하는 세력과 집단이 확대에 대한 응답결과는 경제수준과 학교유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경제수준에서는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고, 학교유형에서는 고등학교가 3.3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혐오문제가 앞으로 개인의 자유 침해를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응답에서는 성별로는 남성보다 여성이 3.12로 높으며, 학교별로는 고등학교가 3.36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수준별로는 하위계층으로 갈수록 혐오문제가 추후 자유를 침해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혐오문제가 민주적 의사결정 대한 침해를 확대 할 것이라는 응답에서는 여성집단의 평균치가 남성 집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수준별로 분석한 결과, 최하 집단의 평균치가 3.50으로 가장 높았고, 최상 집단의 평균치가 가장 2.56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간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 할 것이라는 응답에서 여자 청소년들이 3.02, 남자청소년 2.94에 비해 혐오표현으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생각함을 반영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공통기준을 위배하게 될 것이라는데 청소년은 높은 동의를 보이고 있으며, 학교유형별에 따른 분석에서는 고등학교 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년이 높을수록 혐오표현 문제가 국제사회의 보편적 공통기준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③ 혐오표현의 심각성 : 외국인 혐오 문제는 성별로는 여성이 2.55, 경제수준별로는 최하위가 3.50, 학교유형별 고등학생이 2.67로 심각성을 높게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색에 따른 타인종 혐오는 성별로는 여성이 2.61, 경제수준별로는 최하위가 3.60, 학교유형별 고등학생이 2.70로 심각성을 높게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종교에 대한 혐오의 심각성은 응답자의 대부분이 평균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유형별로 고등학교가 2.61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성소수자 혐오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여성이 3.06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최상위 경제수준이 2.5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즉, 여성들은 이 문제에 민감한 반면에 부자들은 성소수자 혐오문제를 심각하게 보지 않는다고 보아진다.

장애인에 대한 혐오에서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학급이 올라 갈수록 높게 나타나 장애인 혐오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여성 페미니스트 혐오 심각성에서는 고등학생이 3.47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경제적으로 부유한 계층은 2.54로 평균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한 페미니스트에 대한 감성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다.

다문화가정, 노인, 청소년, 빈곤층, 출신지역에 대한 혐오 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평균이하로 나타나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해외이주노동자에 대한 혐오의 심각성에 대해 학교유형별로는 고등학교가 2.63으로 높으며, 경제수준별로는 하2.69, 최하 3.40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학급이 높을수록 심각하다고 인지하고 있다.

탈북민 / 고려인 / 국내거주 교포 집단에 대한 혐오 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응답이 평균이라고 나타났으나 고등학교 2.65, 경제수준 하위와 최하위 각각 2.7, 3.3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근로청소년집단에 대한 혐오문제는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범죄청소년에 대한 혐오는 모든 응답자들이 평균이상으로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이 3.21이고, 학교유형별로는 고등학생이 3.35 나타났다.

④ 혐오표현의 가해 정도 : 편견-비난-모욕-차별-폭력으로 이어지는 혐오 가해

수준에서 전체적인 응답결과는 편견-차별-비난 또는 모욕-폭력 수준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사회의 대부분은 4단계로 볼 수 있는 차별이하의 가해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폭력으로의 확대는 거의 없는 편이다.

외국인 혐오에 대한 가해 수준은 편견이 57.5%, 차별 26.8%, 비난 8.0%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편견은 남성이 59.6% 여성 55.4%보다 높은 반면에 차별에서는 여성이 29.3%이고 남성은 24.4%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타인종에 대한 혐오에서는 남성은 여성보다 편견이 높고, 차별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편견이 53.7%, 차별 28.6%, 비난 9%의 순으로 나타났다.

타종교에 대한 혐오 가해 수준은 앞의 외국인 및 인종 혐오 결과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전체적으로 편견이 45.1%, 비난 27.8%, 차별 15.4%, 모욕 10.8% 순으로 나타나 종교인에 대해서는 차별보다는 비난이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은 여성보다 편견이 높고, 여성은 남성보다 비난이 높게 나타났다. 즉, 남성은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여성은 실제적인 혐오 행위를 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경제수준별로는 중간이하는 비난이 높은 반면에 상위이상은 편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가해 정도는 편견 37.8%이고 비난 25.7% 순으로 나타나 성소수자 문제는 비난, 모욕, 차별 등 직접적인 가해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다.

성별로는 남성은 여성보다 편견이 높은 편이나, 여성은 비난과 모욕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경제수준에서 구분되는 현상은 성소수자에 대한 가해 정도가 폭력을 2.9% 정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장애인에 대한 가해 수준은 편견 47.5%, 차별이 30.8%, 모욕 10.2%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의 경우 차별이 남성보다 높은 반면에, 남성은 편견이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에 대한 폭력도 2.4%로 장애인을 대상으

로 한 혐오 문제 대안이 필요하다. 경제수준별로는 상위계층으로 갈수록 가해 수준이 편견이 가장 높으나 하위계층으로 갈수록 비난과 차별 그리고 폭력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페미니스트에 대한 가해정도는 비난이 33%, 편견 32% 순으로 나타났으며, 폭력 행위도 4.5%이다. 이 결과는 타 집단과는 다르게 페미니스트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혐오 가해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혐오 가해 정도는 편견이 58.2%, 차별이 25.1%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은 편견이 여성에 비해 높고, 여성은 차별에서 남성보다 높다.

범죄청소년에 대한 가해수준은 비난 33.3%, 편견 31.9% 순으로 나타났으며, 폭력 행위도 7.8%로 나타나 다른 소수집단 혐오 가해수준과 비교해 볼 때, 가해의 정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범죄청소년에 대해서는 우리사회가 생각보다는 행동으로 더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⑤ 혐오표현의 생산 수단 : 청소년이 혐오나 차별 표현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곳은 “인터넷, 커뮤니티, SNS(79.1%)”이고, 다음으로 “신문, 방송 등 대중매체(8.6%)”로 이들 미디어가 노출경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결과는 성별, 경제수준별, 학교유형별로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특히 학교유형별로는 중고등학교는 각 82.9%, 88.7% 초등학교는 51.6%로 학급이 높을수록 온라인을 통한 혐오문제가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10%전후로 방송 및 매체에서 발생하였으며, 학교나 학원에서는 5%미만이다.

⑥ 혐오표현의 생산 및 전달자 : 혐오 차별 표현을 만들거나 전달하는 집단으로 가장 높은 집단은 성별기준 친구집단 22.3%이고, 다음으로 언론인 18.2%, 정치인이 16.5%, 종교인 6.5%로 나타났다.

⑦ 혐오표현의 정책적 대응방안 : 혐오표현 문제관련 정책과제에서 규제강화, 차별교육 강화, 개선방법 홍보, 사법처리 강화, 학교내 대응 방안 제도화, 온라인 차별 기준 제시, 신문 방송 매체의 윤리기준 강화에 대해 청소년 응답자는 높은 수준의 동의를 보였다. 필요성 동의비율은 규제강화(61.3%), 교육현장에서의 혐오표현 교육(67.5%), 혐오표현 개선방법 홍보(63.1%), 혐오가해자 사법처리(59.4%), 학교내 혐오 및 차별 방지 제도화(62.4%), 온라인 혐오표현 기준 제시(64.9%), 언론매체의 혐오 및 차별 표현 윤리기준 강화(64.3%) 등 대부분 60%이상의 동의율을 보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교육현장에서의 혐오표현 교육 필요성에 대한 동의율이 가장 높았고, 응답자 중에서 여성 응답자의 동조가 매우 높았다.

⑧ 혐오표현의 심리적 피해 행위 : 혐오표현이나 차별적 행위를 보았을 때나 직접 당했을 때 느낀 감정으로 “흥분감과 분노(35.6%)”가 가장 많았으나, “개인적으로 저항(25.1%)”한 경우와 “위축감을 느끼고 침묵(22.8%)”한 경우가 비슷하게 나타났고, “주변에 알리고 공동 대응(19.1%)”한 경우는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유형별로 나타난 심리적 피해는 초등학교에서는 대부분 평균이하로 나타났으나 고등학교의 경우 모든 항목에서 피해가 매우 높게 나타나 심리적 피해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대항적 행위에서는 개인저항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학교유형별로는 초등학교에서는 개인저항과 공동대응이 비슷하지만 학급이 높을수록 개인저항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⑨ 혐오표현의 동기 : 청소년들이 혐오표현을 사용하게 된 동기에 대한 분석에서는 친구와 동조는 평균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혐오 표현을 잘 모르거나, 친구들간 사용 무지는 낮은 편이며, 신문 방송매체 사용, 온라인 대화 사용, 정치인 모방, 청소년만의 언어 사용, 세대차이로 인한 사용 항목 모두 평균이하로 나타났다.

4) 면접조사 분석결과

(1) 전문가 면접조사 분석결과

① 청소년의 혐오표현 노출실태 : 우리 사회의 청소년 혐오표현 노출실태는 청소년에 의한/대한 혐오표현 모두 심각하지만 혐오표현의 주체였던 청소년이 나중에 객체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어느 쪽이 심각한지는 중요하지 않다. 빈도나 강도 모두 온라인 공간에서 혐오표현 노출이 더 심각하다. 성소수자 청소년의 경우 쉼터와 같은 청소년시설에서 차별을 받기도 하고, 토론방송이나 뉴스 댓글 때문에 혐오피해를 받기도 한다. 청소년에 의한 혐오표현 내용은 주로 여성이나 성소수자, 장애인 같은 '소수자 정체성'에 관한 것인 반면, 청소년에 대한 혐오표현은 주로 나이가 어리다는 '연령 정체성'에 관한 것이다. 혐오표현의 방법은 주로 욕설의 형태로 발화된다. 혐오표현의 원인은 현재 청소년의 삶이 행복하지 않은 점, 학업성적 중심의 학교문화와 질서, 집단 내에서 강해보이고 싶거나 일탈적인 하위문화를 공유하는 청소년기 발달특성, 혐오표현을 통한 재미추구, 보수적인 성교육으로 인한 성의식 왜곡, 나이와 서열을 중시하는 문화, 혐오표현이 정당하다는 잘못된 믿음 등이 중층적으로 작용한다. 익명성은 혐오표현이 발화 원인이라기 보다는 '강도'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 사회의 혐오표현은 증가해왔고 앞으로도 증가할 전망인데, 그 이유는 청소년이 처해있는 사회경제적 위기상황이 단기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점, 극우 포퓰리즘과 혐오의 시대라는 흐름,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환경, 다양성 수용능력 부족, 청소년기 또래집단의 혐오문화 등이다. 한편 혐오표현은 언제든지 차별 대상자에게 혐오범죄로 표출될 위험성이 있다.

② 청소년의 혐오표현 가피해 경험의 영향 : 혐오표현 피해의 영향력은 성인에 비해 청소년에게 미치는 강도와 지속성이 강하다. 이로 인한 2차 피해는 감정적

피해의 지속, 사회생활의 어려움, 피해를 목격한 주변 청소년의 정서적 피해 등이다. 피해를 당하면 바로 보호자나 교사 등 신뢰할 수 있는 성인에게 알려 도움을 받아야 한다. 피해사실을 알게 된 부모, 교사, 친구 등 주변인은 피해사실을 비판 없이 들어주고, 피해청소년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해주며, 필요한 자원을 연계해주어야 한다. 사회적으로는 청소년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신고센터나 상담센터와 같은 다양한 기제를 마련하고, 공동체 내에서 공개적인 지지 발언을 하며, 상담과 구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혐오표현 가해경험은 지속될 경우 인권감수성이 낮아지고 소수자 차별은 심화되며 혐오범죄까지 가담할 위험성이 높아지므로 가해청소년에 대한 교육과 상담 조치가 필요하다. 학교폭력 중 언어폭력이나 성희롱 처리방식에 준하는 정책화가 가능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집단교육과 공동체 선언을 통해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것이다.

③ 청소년 혐오표현 제한 : 초·중·고등학교에서의 현행 대처방법은 경미한 사안의 경우 교사의 개별 지도와 집단 인권교육, 상담, 보호자 통지 등이 이루어지고, 심각한 사안의 경우 선도위원회나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회부한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현행법으로도 혐오표현을 제재할 수는 있지만, 사회적 윤리 기준 및 혐오표현 예방교육, 하위 법령과 조례 제정의 근거로써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교육기관의 교사와 청소년기관의 청소년지도자에 대해서는 강화된 기준이 필요하다. 인권교육의 일환으로 혐오표현 예방교육이 필요하고, 전달식 보다는 민주적 토론식 교육 및 학생자치 사건처리를 통한 환류시스템이 필요하다. 교육대상은 학교 내 모든 구성원과 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 부모까지 포함하고, 학생보다는 교사나 관리자의 우선순위가 높다.

④ 피해청소년 지원과 인식개선 : 피해청소년 지원을 위해서는 피해자와 공동체가 혐오표현을 인권침해로 인식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고, 익명 신고 절차, 피해

청소년 상담과 보호 절차, 회복적 정의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인권교육과 홍보가 중요하고, 특히 방관자 집단의 개선을 위해 주기적인 토론식 인권교육이 필요하다. 당사자 뿐 아니라 주변인까지 대항표현이 가능하도록 시뮬레이션 방식의 트레이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청소년 면접조사 분석결과

① 청소년의 혐오표현 노출경험 : 청소년에게 혐오표현을 하는 주체는 학교의 친구, 교사, 교회 교인, 가족, 친척 등 청소년 주위의 모든 사람이고, 경험한 시기는 주로 중학교 때였다. 빈도는 SNS가 높지만, 청소년이 더 강하게 체감하는 곳은 일상 생활공간이다. 혐오표현의 내용은 이주배경 차별, 여성혐오, 장애인 차별, 성소수자 혐오, 소년범죄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 등이고, 혐오표현의 유형은 욕설, 비난, 편견, 차별, 따돌림 등으로 나타났다. 피해를 입은 이유로는 자신이 가진 약점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있고, 피해 이후에 자퇴를 고민하거나 스트레스로 잔병치레를 한 경험을 갖고 있다. 혐오표현을 그 자체로 언어폭력이고 학교폭력일 뿐 아니라 대부분 왕따를 경험했고, 성소수자의 경우 아웃팅 피해를 보기도 했다.

② 청소년의 혐오표현 피해경험의 영향 : 충격으로 인해 트라우마가 되었고, 학교 가기가 두려웠으며, 취업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다. 그 기간은 한두 달부터 2년이나 그 이상까지 지속되었다. 피해 당시 도움을 받은 청소년은 소수였고,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은 자신을 지지해줄 친구 또는 교사에게 신고해줄 누군가이다. 피해 이후 대부분이 대처를 못했거나 대처해도 도움을 받지 못했는데, 대처하지 못한 이유는 무서웠기 때문이다.

③ 청소년의 혐오표현에 대한 의식 : 우리 사회는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혐오표현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문제의식도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혐오표현의 빈발하는 원인은 소수자이기 때문에 무시하면서 우월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인터넷에서의 혐오표현은 익명성 때문도 있지만 주목받기 위한 측면과 가짜뉴스로 인한 조장도 있고, 우리 사회는 혐오표현에 관대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향후 혐오표현은 문제의식을 얼마나 갖느냐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④ 청소년의 혐오표현 제한 : 대부분의 청소년의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했고, 공직자에 대한 특별한 규제에 동의했으며, 특히 교사와 유튜버의 강력한 영향력을 지적했다. 혐오표현 예방교육이 어려서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가치관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⑤ 피해청소년 지원 :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으로는 상담과 심리치료, 예방교육을 제안했고, 성소수자를 위한 별도의 학교나 지원센터, 쉼터 등도 제안되었다. 친구나 가족, 지인들로부터 대부분 대항표현에 의한 지지를 받은 경험이 있었으나, 정작 영향력이 강한 교사나 청소년지도자로부터 대항표현을 들은 경험은 전무했다.

2. 정책제언

청소년의 혐오표현 노출실태 분석을 통해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 이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문헌연구, 전문가 자문, 청소년 대상의 설문조사, 청소년과 전문가 대상의 면접조사, 정부부처 공무원과의 정책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문제점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청소년 혐오표현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서는 더 많은 변화의 노력이 필요한 '청소년에 대한 혐오표현'을 바꾸는 일과 청소년 스스로 혐오표현에 대하여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청소년에 의한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방안이 모두 필요하다. 그러한 대응방안으로써 다음 [그림 Ⅵ-1]과 같이 4개의 정책과제와 14개의 세부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청소년 혐오표현 정책의 비전은 '청소년에 대한/의한 혐오표현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것이고, 정책목표는 청소년에 대한/의한 편견과 차별, 혐오 없는 사회 환경 조성,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인권 감수성 함양 및 대항문화 조성, 편견과 차별, 혐오표현으로 인한 피해 청소년의 치유와 회복이다.

첫 번째 정책과제는 법 제도적 대응방안으로써 정책 추진 기반 조성을 위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정부부처의 협업체계 구축, 청소년 시설 종사자에 대한 관리 강화, 학생인권조례 제정 활성화 등의 세부과제를 추진해야 한다.

두 번째 정책과제는 미디어 대응방안으로써 자율규제 및 인식개선을 위해 청소년 보호를 위한 온라인 자율규제의 내실화, 청소년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강화,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미디어 홍보 강화 등의 세부과제를 추진해야 한다.

세 번째 정책과제는 교육적 대응방안으로써 인권감수성 함양을 위해 혐오표현 예방교육 실시, 여성혐오 예방을 위한 포괄적 성교육 실시, 청소년 혐오표현 예방대응 가이드라인 보급 활성화, 혐오표현 대항문화 활성화 등의 세부과제를 추진해야 한다.

네 번째 정책과제는 피해자 지원방안으로써 소수집단 청소년 보호를 위해 피해자 신고 및 상담 · 심리치료 지원, 회복적 정의 실천 프로그램 운영, 특별 보호가 필요한 소수집단 청소년 지원 강화 등의 세부과제를 추진해야 한다.

비전	청소년에 대한 / 의한 혐오표현 없는 세상을 위하여
⇧	
정책목표	• 청소년에 대한 / 의한 편견과 차별, 혐오 없는 사회 환경 조성 •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인권 감수성 함양 및 대항문화 조성 • 편견과 차별, 혐오표현으로 인한 피해 청소년의 치유와 회복
⇧	

정책과제	**세부추진과제**
❶ 법 제도적 대응방안 〈정책추진 기반 조성〉	1-1.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1-2. 정부부처의 협업체계 구축 1-3. 청소년 시설 종사자에 대한 관리 강화 1-4. 학생인권조례 제정 활성화
❷ 미디어 대응방안 〈자율규제 및 인식개선〉	2-1. 청소년 보호를 위한 온라인 자율규제의 내실화 2-2. 청소년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강화 2-3.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미디어 홍보 강화
❸ 교육적 대응방안 〈인권감수성 함양〉	3-1. 혐오표현 예방교육 실시 3-2. 여성혐오 예방을 위한 포괄적 성교육 실시 3-3. 청소년 혐오표현 예방 대응 가이드라인 보급 활성화 3-4. 혐오표현 대항문화 활성화
❹ 피해자 지원방안 〈소수집단 청소년 보호〉	4-1. 피해자 신고 및 상담 · 심리치료 지원 4-2. 회복적 정의 실천 프로그램 운영 4-3. 특별 보호가 필요한 소수집단 청소년 지원 강화

그림 Ⅵ-1 청소년 혐오표현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

1) 법·제도적 대응방안

정책과제 1	법 제도적 대응방안 : 정책추진 기반 조성

(1)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세부과제 1-1.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차별과 혐오표현이 옳지 않다는 사회적 윤리 기준을 마련하고, 혐오표현 예방을 위한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며, 이를 근거로 하위 법령과 조례 제정이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 실시한 청소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접적으로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질문한 것은 아니지만, 혐오/차별 표현에 대한 대응방안의 필요성에 대해 “혐오표현에 대한 구제 강화(61.3%)”나 “혐오표현을 사용한 사람들에 대해 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59.4%)”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많았다. 또한 혐오표현 문제가 앞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도 더욱 확대되고, 더 큰 사회문제가 되고, 인권침해를 할 것이라고 5점 만점에 3점 이상으로 동의하는 청소년이 많았다. 한편 전문가 면접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전문가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 입장이고, 청소년을 위해서도 반드시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누구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선언하고 공동체의 가치로 확인하는 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청소년 역시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같은 가치를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발의되어 있는 차별금지법[64]은 나이에 따른 차별금지와 교육 관련 차별금지 부분이 청소년과 관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인 간의 혐오표현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법률은 아니다. 차별금지법은 “고용,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료서비스·문화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기회 및 교육내용, 참정권 등 행정서비스 및 수사 재판상의 차별예방을 위한 조치,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가 있을 때 구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기관이 청소년을 차별했다면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지만, 청소년 사이에서 발생한 혐오표현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이 없더라도 현행법으로 혐오표현 제제가 가능하다. 학교폭력예방법을 적용해 언어폭력으로 제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혐오표현 대응을 위해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는 차별과 혐오표현이 옳지 않다는 사회적 윤리기준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혐오표현에 대한 윤리기준이 생긴다면 당연한 수순으로 혐오표현 예방을 위한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차별금지법은 차별과 혐오표현이 금지되는 기본법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하위 법령과 조례 제정이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차별금지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차별시정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시도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따라서 지금은 일부 교육청에서만 제정되어 있는 학생인권조례가 전국적으로 제정될 것이고,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청소년기본법도 개정될 수 있을 것이다.

64) 장혜영의원 대표발의 차별금지법안(2020. 6. 29)에 대해서는 일부 반대 여론이 있었고, 위헌소송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 각하되었다(헌법재판소, 차별금지법 입법 권고 등 위헌확인[2020헌마936], 2020.07.21., http://search.ccourt.go.kr/ths/pt/selectThsPt0101List.do 에서 2020년 12월 30일 인출)

(2) 정부부처의 협업체계 구축

세부과제 1-2. 정부부처의 협업체계 구축
정부부처의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혐오표현은 초 · 중 · 고등학교와 대학교, 공공기관, 언론, 온라인 등 우리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예방과 대응이 이루어져야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련 정부부처의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국가인권위원회 혐오차별대응기획단은 혐오차별 업무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부서이다. 이 부서는 혐오차별에 대해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9년 1월에 만들어진 TF팀으로 올해 말까지만 활동하는 것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한다. 현재 혐오차별대응기획단에서 담당하던 업무는 다른 부서로 이관되어 추진되겠지만, 혐오표현의 사회적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고 앞으로도 심화될 전망인 상황에서 종합적인 대응팀이 해체된다고 하니 무척 아쉬움이 남는다.

혐오표현의 문제는 초 · 중 · 고등학교와 대학교, 공공기관, 언론, 온라인 등 우리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예방과 대응이 이루어져야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련 정부부처의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혐오표현에 관한 안내서를 만들어 일선 초 · 중 · 고등학교에 배포한 사례가 좋은 본보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를 초 · 중 · 고등학교에서 그치지 않고, 대학교나 공공기관. 언론기관, 그리고 청소년 시설이나 단체 등 관련 기관에 대해서도 확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나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들과 협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3) 청소년 시설 종사자에 대한 관리 강화

세부과제 1-3. 청소년 시설 종사자에 대한 관리 강화
청소년 시설 종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청소년 쉼터와 같이 혐오표현의 피해 위험성이 높은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에 대해서는 혐오와 차별에 대한 감수성을 강화하기 위해 혐오표현 관련 인권교육 과정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청소년 쉼터와 같이 혐오표현의 피해 위험성이 높은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에 대해서는 혐오와 차별에 대한 감수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혐오발언을 한 사람이 교사와 같이 권위 있는 사람일 때도 청소년들의 혐오표현이 활발해지고 피해자의 대응은 어려워진다.

현재 발의되어 있는 차별금지법안에 따르면, 차별금지가 적용되는 기관으로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평생교육법,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등에 따른 교육기관이 열거되어 있다. 이 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도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교사에 대한 규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청소년 시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청소년 시설에서 차별을 당하더라도 이 법에 근거한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향후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 제정된다면,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 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등의 청소년시설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전문가 면접조사 결과, 대부분의 전문가가 교사와 청소년 대상 지도자들에 대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교사나 지도자의 혐오표현은 직접적으로 피해 청소년을 발생시킬 뿐 아니라 다른 청소년들의 혐오표현을 부추기는 효과도 있기 때문이다. 교사나 청소년지도자에게는 혐오표현 관련 인권교육 과정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4) 학생인권조례 제정 활성화

세부과제 1-4. 학생인권조례 제정 활성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활성화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가 있으면 학생이 혐오표현에 의해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구제받을 수 있고, 소수자 학생은 특별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혐오표현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청소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혐오/차별 표현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써 "학교 내 혐오 및 차별 방지 내용 제도화(62.4%)"이 필요성에 동의하는 청소년이 많았다. 또한 전문가 면접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혐오표현은 과거에 비해 증가했고, 향후로 더욱 증가할 전망이지만, 그 와중에도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학생들의 차별의식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전국 교육청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65]에서는 혐오표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학생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소수자 학생을 위한 학교복지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제5조 제1항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로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65) 국가법령센터.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7436조,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447647에서 2020년 12월 30일 인출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28조 제1항에서는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을 위해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한부모가정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운동선수, 성소수자, 근로 학생 등 소수자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도 학생인권교육(제29조)과 교직원 및 보호자에 대한 인권교육(제31조), 학생인권위원회(제33조), 학생인권옹호관(제38조),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제47조), 학생인권침해사건의 조사(제48조), 학생인권침해사건의 처리(제49조)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해 학생이 혐오표현에 의해 인권침해를 당하게 되면 침해를 구제받을 수 있고, 소수자 학생은 특별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혐오표현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2010년 서울특별시 교육청보다 먼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바 있고, 광주광역시 교육청과 전라북도 교육청에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현재 전국 교육청 중에서 4개청에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부진한 이유는 학부모들의 극심한 반대 여론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66]

충청남도 교육청은 금년에 조례 제정을 추진하였으나 공청회에서 많은 반대에 부딪혔다. "책임 없는 자유, 학습능력 저하, 정치데모꾼 양성" 등의 원색적인 피켓을 들고 온 학부모들은 그 밖에 "동성애 조장" 등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다[67]. 경상남도 교육청에서도 2019년에 조례 제정을 추진하였으나 도

66) 네이버 시사상식백과. 학생인권조례,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006723&cid=43667&categoryId=43667에서 2020년 12월 30일 인출

67) 대전시티저널 (2020.6.8). 충남도의회 학생인권 조례 공청회 찬반 '팽팽'. https://www.gocj.net/news/articleView.html?idxno=108781 에서 2020년 12월 30일 인출

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되어 본회의에 상정하지도 못했다[68]. 이러한 현상은 우리 사회에 여전히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만연해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더욱 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여 소수자 학생들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편견과 혐오에 대한 감수성을 높여야 한다.

2) 미디어 대응방안

정책과제 2	미디어 대응방안 : 자율규제 및 인식개선

(1) 청소년 보호를 위한 온라인 자율규제의 내실화

세부과제 2-1. 청소년 보호를 위한 온라인 자율규제의 내실화
청소년 보호를 위한 온라인 자율규제의 내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맥락을 고려할 수 있는 수준의 AI 필터링 프로그램 개발과 이용자 자율규제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청소년보호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혐오와 차별에 관한 심의 기준 항목을 추가할 필요도 있다.

청소년의 혐오표현 노출 경험은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공간에서 잦은 빈도로 나타난다. 청소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이 혐오나 차별 표현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곳은 “인터넷, 커뮤니티, SNS(79.1%)”이고, 다음으로 “신문, 방송 등 대중매체(8.6%)”로 이들 미디어가 노출경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68) 프레시안 (2019.6.25). 박종훈 경남교육감, 학생인권조례 무산에 '유감'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46330?no=246330&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에서 2020년 12월 30일 인출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수업이 주로 진행되면서 청소년에게 미치는 온라인의 영향력은 더욱 강해지고 있다. 인터넷 뿐만 아니라 방송매체나 인쇄매체 등 모든 매체의 혐오표현은 청소년에게 유해하지만 지금의 시대에는 청소년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매체가 인터넷이고, 방송매체나 인쇄매체의 콘텐츠도 주로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온라인 상의 쌍방향 소통에서의 익명성으로 인해 빈발하고 있는 혐오표현이기 때문에 청소년 혐오표현 미디어 대응방안으로써 온라인 자율규제는 그 중요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청소년 설문조사에서도 대응방안으로써 "온라인에서 허용되지 않는 혐오 및 차별 표현의 기준 제시(64.9%)"와 "신문 방송 등 언론의 혐오 및 차별 표현 윤리 기준 강화(64.3%)" 필요성에 동의하는 청소년이 많았다.

전문가 면접조사 결과에 따르면, 익명성이 혐오표현의 발생 빈도나 강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인터넷 실명제를 찬성하는 전문가는 없었다. 인터넷 상의 익명성은 보장하되 그 표현과 행위에 문제가 있을 때만 실명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그러한 사실을 널리 홍보함으로써 익명성 보장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민간기구인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서는 내부규정을 통해 "지역·장애·인종·출신국가·성별·나이·직업 등으로 구별되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모욕적이거나 혐오적인 표현방식을 사용하여 해당 집단이나 그 구성원들에게 굴욕감이나 불이익을 현저하게 초래하는 게시물이 유통되고 있음을 신고 등을 통해 알게 된 경우 이를 해당 집단이나 그 구성원들에 대한 차별적 표현으로 보아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정해놓고 있다(박미숙, 추지현, 2017: 235-236).

또한 KISO에서는 자율규제 DB를 구축해 금칙어 지정을 하고 있다. 자율규제 DB는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욕설, 청소년 유해어, 음란 이미지 DB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 30만건 이상의 욕설 표현을 보유하고 있고, 청소년 유해어

DB 중에는 혐오성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69]

최근 들어 아동 청소년에 대한 영향력이 막강해지고 있는 유튜브의 경우, 2019년 12월에 "인종, 성별, 성적 지향성 등을 바탕으로 누군가를 모욕하는 영상은 삭제"하기로 발표했다(서울신문, 2019.12.12.).[70] 또한 유튜브는 삭제현황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2020년 6월에 유튜브를 비롯한 "인터넷 개인방송에 출연하는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침"을 발표했는데, 콘텐츠 제작 시 피해야할 유형 중 하나로써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성별, 지역, 연령, 장애여부, 종교, 국적, 인종 등의 특성에 따라 차별 또는 혐오를 조장하는 콘텐츠"를 포함했다(한국경제TV, 2020.6.30).[71]

유튜브가 혐오표현에 대한 자율규제를 강화한 것에 비해, 양대 포털 서비스 업체인 네이버와 카카오에서는 현행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제시하는 데 그치고 있고, 삭제 현황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카카오의 경우 2020년 2월부터 "포털 다음과 카카오톡 탭의 뉴스 댓글 신고 기준에 '차별·혐오' 항목을 신설"하였고, 네이버도 2020년 3월부터 뉴스 댓글에 대한 규제를 시작했다(뉴스1, 2020.7.9.).[72]

이상과 같이 인터넷 사업자의 청소년 보호 및 혐오표현 자율규제가 점차 구체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혐오표현에 대한 AI 필터링에는 한계가 있다. 혐오표현은 특정 문구를 살짝 변형하는 식으로 끝없이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69)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자율규제 DB 안내, https://www.kiso.or.kr/%ec%9e%90%ec%9c%a8%ea%b7%9c%ec%a0%9c-db-%ec%95%88%eb%82%b4/ 에서 2020년 12월 1일 인출

70) 서울신문 (2019.12.12). 새 규제 내놓는 유튜브 '표현의 자유 VS 적절한 통제',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212500181에서 2020년 12월 1일 인출

71) 한국경제TV (2020.6.30). "유튜브에 나오는 아동·청소년 보호지침 나왔다",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006300275&t=NN 에서 2020년 12월 1일 인출

72) 뉴스1 (2020.7.9). "네이버·카카오는 어떤 혐오표현 규제하나...정보 공개해야", https://www.news1.kr/articles/?3991366 에서 2020년 12월 1일 인출

일률적인 기준으로 금칙어 삭제를 할 경우에 미러링[73] 형식의 대항표현까지도 금칙어로 필터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항문화 활성화에 저해요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온라인 자율규제를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맥락을 고려할 수 있는 수준의 AI 필터링 프로그램 개발이 더욱 발전되어야 할 것이고, 유튜브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이용자 신고나 크리에이터 댓글 삭제 같은 방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용자 자율규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한편 청소년보호법 제9조 제1항 각호에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 기준이 열거되어 있는데, 혐오표현에 관한 기준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이수연, 윤지소, 장혜경, 김수아, 2018: 99). 청소년 보호를 위한 온라인 자율규제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여성혐오나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혐오를 조장하는 것"이라는 심의 기준 항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2) 청소년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강화

세부과제 2-2. 청소년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강화
청소년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수업이 확대되면서 청소년이 온라인에서 경험하는 혐오표현도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특히 소셜미디어 리터러시 역량강화를 위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할 필요가 있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에 접근하고 이러한 정보를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생산하는 능

73) 김선희의 저서 '혐오 미러링'에 대한 정대현의 서평에 따르면, "혐오 미러링이란 남성들의 여성혐오에 대해 미러링, 또는 반사하는 구조의 여성들의 남성 혐오를 지칭한다"고 하면서, 미러링은 일종의 '놀이'이면서 동시에 혐오와 차별을 폐기하는 여성주의라고 한다(정대현, 2019: 2-6).

력을 의미한다(최숙기, 2019: 393). 미디어 리터러시는 청소년의 핵심역량 중 하나이고, 특히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의 소셜 미디어 리터러시는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강력한 능력이 되었다(정다교, 김현진, 2018: 1058).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이용율은 꾸준히 증가해왔지만 금년에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수업이 확대되면서 청소년이 온라인에서 경험하는 혐오표현도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혐오표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강화에도 비중을 둘 필요가 있다. 사회적으로 자기표현의 기회는 확대된 반면에 다양성에 대한 수용적 태도는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다양한 소셜 미디어 환경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나 혐오표현이 확산되고 저연령화될 위험성이 높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청소년의 미디어 리터러시는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소셜미디어 리터러시 역량강화를 위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할 필요가 있다.

정다교와 김현진의 연구에서는 청소년 소셜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모델을 사회인지, 사회문화, 사회기술 3영역으로 나누어 제시했다. “사회인지적 영역에는 창조적 구성, 참여적 자아표현, 자기관리, 미디어 분별력 역량”이 포함되어 있다. “사회문화 영역에는 네티켓 준수, 생산적 네트워크 역량”이 포함되어 있다. “사회기술 영역에는 소셜 미디어 이해 및 활용, 디바이스 구축, 정보보안 역량”이 포함되어 있다(정다교, 김현진, 2018: 1071).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인지적 영역과 사회문화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역량들이 강화되고 발전될 수 있다면, 청소년이 혐오표현의 가해자가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 피해자가 되는 경우에도 비판적 수용을 통해 트라우마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러한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갖춘 청소년이라면 혐오표현의 목격자가 되었을 때 동조자가 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항발화를 함으로써 미디어 환경의 자율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

라는 점이다.

(3)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미디어 홍보 강화

세부과제 2-3.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미디어 홍보 강화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미디어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혐오표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혐오표현은 인권침해이고 더 나아가서는 범죄가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사회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공익광고나 방송 프로그램, 소셜미디어 등에서도 홍보활동을 펼쳐야 있다.

청소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응방안으로써 "청소년을 대상으로 혐오표현이나 차별에 대한 개선방법을 홍보(63.1%)"해야 한다는 청소년이 많았다. 그 뿐 아니라 청소년 면접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들에게 혐오표현을 한 가해자들은 어떤 특성을 가진 특별히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 주위에 있는 친구, 교사, 지인, 가족, 친척 등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또한 피해를 당한 장소도 온라인 뿐 아니라 교실이나 학교, 학원, 길거리, 집, 직장 등 일상 생활공간이었다. 또한 청소년들은 우리 사회에 혐오표현이 만연한 이유로 혐오표현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기 때문이고, 향후 증감 여부도 문제의식을 얼마나 갖느냐에 달린 것으로 보고 있다.

"염려스럽게도 혐오는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 되었다.(손희정, 2015b: 13)" 따라서 혐오표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혐오표현은 인권침해이고 더 나아가서는 범죄가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사회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인식개선이 이루어지려면 우리 사회의 모든 공동체가 자율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지만, 홍보의 영향력이 가장 큰 영역은 역시나 미디어라고 할 수 있다.

미디어는 청소년 혐오표현의 발화지인 동시에 혐오표현을 개선할 수 있는 선두

주자가 될 수도 있다. 그동안 공익광고가 성범죄나 아동학대 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높이는데 일조했던 것처럼 편견과 차별, 혐오표현에 대해서도 공익광고나 방송프로그램, 소셜미디어 등에서 홍보활동을 펼칠 필요가 있다. 카카오에서는 "악플 추방, 선플 운동, 유해정보 유포 금지 선언, 저작권 보호 등 다양한 클린 캠페인을 통해 깨끗한 인터넷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한국일보, 2020.10.8.).[74]

이러한 홍보활동이 활성화 된다면, 나이와 서열을 중시하는 사회문화나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여성 혐오 등 혐오표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가짜뉴스의 경우, 혐오에 대한 정당성을 확신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에 대한 팩트 체크 보도를 활성화하는 것도 혐오표현 인식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3) 교육적 대응방안

정책과제 3	교육적 대응방안 : 인권감수성 함양

(1) 혐오표현 예방교육 실시

세부과제 3-1. 혐오표현 예방교육 실시
혐오표현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일방적인 전달식 교육보다는 민주적인 토론 방식의 교육이 실시되어야 하고, 학생들이 자치적으로 직접 사건처리를 경험해보는 과정을 교육의 일환을 진행하는 환류시스템도 필요하다. 학급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과목별 수업내용을 재구성하여 혐오표현에 관한 주제를 다루는 교육도 필요하다.

74) 한국일보 (2020.10.8). 쌍욕 바꾸고 지우고… AI, 한달 1억건 걸러도 진화하는 악플,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92812570002916?did=NA 에서 2020년 12월 1일 인출

청소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혐오나 차별 표현을 하는 사람은 언론인(18.2%)이나 정치인(16.5%)도 많았지만 가장 많은 사람은 “친구(22.3%)” 였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방안으로써 ”교육현장에서 혐오표현 및 차별 관련 교육(67.5%)“이 필요하다는 청소년도 많았다.

전문가 면접조사 결과에 따르면, 혐오표현의 원인으로 들고 있는 요인 중에서 학업성적 중심의 학교문화와 질서, 나이와 서열을 중시하는 문화, 혐오표현이 정당하다는 잘못된 믿음 등을 제시했다. 이러한 요인들은 법적 제도적 방법으로 개선할 필요도 있지만, 우선적으로는 교육을 통해 이러한 문화와 믿음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와 학생 전체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방식은 일방적인 전달식 교육보다는 민주적인 토론 방식의 교육이 실시되어야 하고, 학생들이 자치적으로 직접 사건처리를 경험해보는 과정을 교육의 일환을 진행하는 환류시스템도 필요하다.

주목해야 할 대상자로는 방관자 집단이 있다. 이들은 상당 부분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침묵하는 경우가 많아서 방관자라기보다는 동조자에 가깝다. 따라서 학교폭력처럼 가해자를 징계하고 피해자를 보호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학교 공동체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주기적인 토론식 인권교육이 필요하다. 청소년 면접조사 결과에 따르면, 혐오표현의 피해경험이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시작되었고, 전문가들은 향후 저연령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방교육의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혐오표현도 학교폭력이 될 수는 있지만 혐오표현 예방교육이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전문가가 회의적이었다. 혐오표현은 학교폭력과 달리 가피해자를 구분하는 것이 의미 없고 인권 감수성을 높여 차별적인 공동체 문화를 바꿔 나가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혐오표현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법정교육으로 의무화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편 법정교육이 갖는 효과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급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과목별 수업내용을 재구성하여 혐오표현에 관한 주제를 다루는 교육도 필요하다. 앞에서도 미디어리터러시를 강조했지만 혐오를 담고 있는 미디어에 대한 분별력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이라든지, 정상가족 신화나 외모 지상주의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가능하도록 하는 수업 재구성을 통해 학급 단위에서부터 혐오문화를 극복해나가야 한다(이혜정 외, 2018: 224-230). 이 연구의 제3장에서 〈표 Ⅲ-7〉의 표로 제시했던 Generation Global의 토론 중심 교실활동이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포함하여 혐오표현의 쟁점 주제들은 특히 민주 시민의 자질을 육성하기 위한 교과목인 사회과교육의 일환으로 적절하다. 혐오표현은 혐오의 가피해자와 그들을 바라보는 공동체 구성원의 시민성을 위협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구정화, 2018: 7-8).

(2) 여성혐오 예방을 위한 포괄적 성교육 실시

세부과제 3-2. 여성혐오 예방을 위한 포괄적 성교육 실시
여성혐오 예방을 위한 포괄적 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여성혐오와 차별, 성폭력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성평등 교육을 포함하는 포괄적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생 대상의 성교육 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 대상의 성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청소년이 사용하는 혐오표현 중에서 가장 많은 빈도로 나타나고 심각한 내용은 여성혐오이다. 전문가들은 보수적인 성교육으로 인해 성의식이 왜곡된 것이 혐오표현의 한 요인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보수적인 성교육에는 학부모의 관여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게다가 2015년 페미니즘 리부트[75]와 2018년

스쿨미투[76]로 인한 남녀 학생의 인권 감수성 괴리가 커지면서 여성혐오가 심화되었다.

청소년 설문조사에서는 "페미니스트에 대한 혐오"의 심각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남성인 청소년보다는 여성인 청소년이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고, 초〈중〈고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더욱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더욱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페미니스트에 대한 혐오의 수준은 가장 강도가 높은 "폭력(4.5%)" 수준의 가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답변이 모든 유형의 소수자 혐오 중에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주배경 청소년이나 장애청소년 등에 대한 소수자 편견과 차별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했을 때 적어도 겉으로는 반발하지 않는다. 하지만 여성이나 페미니스트에 대한 편견과 차별, 그리고 여성을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로 보는 관점에 대해 많은 젊은 또는 어린 남성들은 노골적인 반발심을 드러낸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이 연구에서 면접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혐오표현 피해자를 표집할 때 남성인 청소년 피해자를 구하기는 너무나 어려웠다. 여성인 청소년 피해자들은 그들 각자가 갖고 있는 이주배경이나 장애, 성소수 등의 소수자성 때문에 혐오표현의 피해를 받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들은 여성이기 때문에 그러한 비난과 차별을 받았을 수 있다. 청소년 면접조사에 따르면, 자신이 혐오표현 피해를 입은 이유로 "만만해서"라고 답했는데, 이주배경이나 장애, 성소수자라는 특성과 함께 여성이 결합되어 더욱 만만해지는 이중혐오를 당한 것일 수 있다.

스쿨미투 운동을 주도해온 청소년 페미니즘 네트워크 '위티(WeTee)'는 2019년 2월 제네바에서 열린 UN아동권리위원회 "사전심의에 참석해 스쿨미투에 대해 증언(이데일리, 2020.9.21)[77]하였고, 9월에 열리는 본심의 쟁점 질의

75) "2015년, 페미니즘이 리부트되었다" 라고 진단한 바 있다(손희정, 2015a: 14).

76) 스쿨미투는 2018년 2월 22일 전교조 여성위원회가 학교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피해 경험을 고백할 수 있도록 페이스북 계정(@schooolmetoo)을 만들면서 시작되었다(남미자, 2019: 51).

77) 이데일리 (2020.9.21). "스쿨미투 2년...위계적 학교문화 개선해야",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264006625902416&mediaCodeNo=257

목록 중 하나로 스쿨미투가 선정되어 국제사회의 관심도가 높아졌다(뉴스1, 2019.7.9.).[78]" 위티의 양지혜 대표는 미국 CNN의 '올해 아시아를 변화시킨 청년 운동가'로 선정되기도 했다(SBS뉴스, 2019.12.27).[79]

이처럼 여성혐오가 만연한 우리나라의 학교문화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이 주목된 상황이다. 이러한 여성혐오와 차별, 성폭력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성평등 교육을 포함하는 포괄적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부 포괄적 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가 있지만 학부모의 강력한 항의를 받고 중단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학생 대상의 성교육 뿐 만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 대상의 성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여성혐오에 대항하기 위한 미러링으로써의 남성혐오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내용도 성교육에 포함되어야 하고, 미러링에 대해 혐오표현과 동일한 잣대로 제재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3) 청소년 혐오표현 예방 대응 가이드라인 보급 활성화

세부과제 3-3. 청소년 혐오표현 예방 대응 가이드라인 보급 활성화
청소년 혐오표현 예방 대응 가이드라인의 보급을 활성화해야 한다. 학교 밖 청소년 역시 혐오표현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므로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의 혐오표현 예방 대응 가이드라인과 인권존중 학교를 위한 평등 실천 안내 해설서에 준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혐오표현은 방치할 경우 인권 감수성이 낮아지고 소수자 집단에 대한 차별은 더욱 심화되어 언제든지 혐오범죄로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학교나 청소년시설

에서 2020년 12월 1일 인출

78) 뉴스1 (2019.7.9). 우리 청소년, '스쿨미투' 해결 목소리 모아 UN에 전달한다, https://www.news1.kr/articles/?3665584 에서 2020년 12월 1일 인출

79) SBS뉴스 (2019.12.27). '스쿨 미투' 양지혜 씨, CNN 선정 "올해 아시아 변화 이끈 청년 운동가",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580910&plink=SEARCH&cooper=SBSNEWSSEARCH 에서 2020년 12월 1일 인출

등 청소년이 있는 공동체에서는 예방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대처할 필요가 있다.

혐오표현 예방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으로 정례화된 예방교육 외에도 모든 교과목에서 모든 교사의 혐오 및 인권 감수성을 높여야 한다. 피해가 발생했을 때, 1차적 대응은 주변의 친구나 교사, 부모가 피해 사실을 비판 없이 들어주고, 2차적 대응은 신고나 사건처리 등으로 피해자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며, 3차적 대응은 피해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연계해주어야 한다.

이러한 예방과 대응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2018년에 연구용역을 통해 '혐오표현 예방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문제 현황, 혐오표현 가이드라인의 목적, 법적 근거, 적용범위, 혐오표현의 개념과 판단기준, 구성원의 책임과 역할, 예방, 사건 처리 원칙과 절차, 검토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고, 초·중·고등학교와 대학, 공공기관, 언론, 온라인을 위한 별도의 고려사항이 포함되어 있다(홍성수 외, 2018: 202-210).

국가인권위원회는 더 나아가 2020년에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인권존중 학교를 위한 평등 실천 안내' 해설서와 소책자, 포스터를 만들어 PDF파일과 함께 일선 초·중·고등학교에 보급했다. 이 해설서는 혐오표현의 개념과 문제점, 학교영역의 혐오표현 대응, 혐오표현 처리의 원칙과 고려사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처리의 원칙과 절차 및 처리 시 고려사항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20: 1-28).

이와 같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일선학교에 보급하고 있으나, 이러한 자료들이 일선학교에서 실제로 구동되는지 여부는 학교현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전문가 면접조사에 참여했던 초·중·고등학교 교사에게 문의한 바로는 교육청과 일선학교 별로 편차가 크다고 한다. 인쇄물과 파일을 모든 학교에 배포한 경우도 있고, 파일만 배포하거나 파일을

게시판에 탑재하고 공지만 보낸 경우도 있다.

이러한 자료들을 받은 일선학교에서는 인권부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곳에서 접수를 하고, 없는 곳에서는 보통 생활부나 학생자치부에서 접수를 한다고 한다. 대부분 포스터는 벽보에 게시를 하지만 책자나 PDF 파일은 접수한 교사나 책임자의 관심 여부에 따라 모든 교사에게 공유된 학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었다. 파일이 공유된 학교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교육 자료로 활용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교사에게 달려있는 실정이다. 전문가 면접조사에 참여했던 교사 중에는 이 자료들을 활용해 학습 자료를 만들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한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교육 자료와 가이드라인이 제공되면 각 학교에서는 이것을 자료로만 보관할 것이 아니라 학교별 혐오표현 예방 대응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 배포된 자료가 그대로 학교에 적용될 수 있다면 그대로 만들면 되고, 특수한 상황이 있는 학교는 수정하면 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러한 작업이 진행된 학교는 거의 없다고 한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모든 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다면 이러한 학교별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도 연동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학교 밖 청소년 역시 혐오표현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므로 청소년 시설이나 단체 등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의 혐오표현 예방 대응 가이드라인과 인권존중 학교를 위한 평등 실천 안내 해설서에 준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림 Ⅵ-1]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학교를 위해 마련한 '혐오표현 사후 처리절차'를 참고하여 청소년 관련 기관에 맞게 재구성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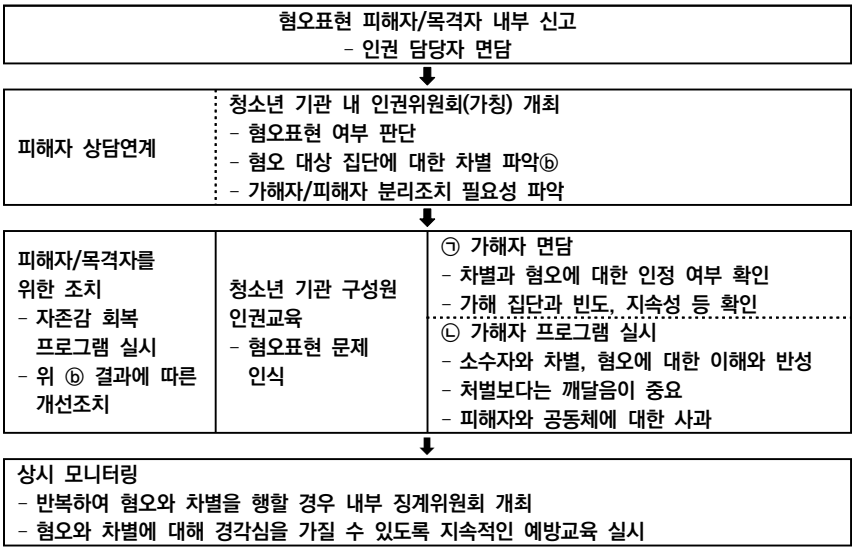

*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2020: 26, 재구성.

그림 Ⅵ-2 청소년 관련 기관의 혐오표현 사후 처리절차

(4) 혐오표현 대항문화 활성화

세부과제 3-4. 혐오표현 대항문화 활성화
혐오표현 대항문화를 활성화해야 한다. 대항표현을 하려면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하기 때문에 그러한 힘을 기르기 위해 평소에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트레이닝해서 대항표현이 익숙해지도록 해야 한다.

청소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편견이나 차별적 행위를 하게 된 이유로 “친구들이 모두 사용하니까(17.9%)”가 제일 많았고, “친구집단과 잘 어울리려면 같이 사용해야 하니까(12.8%)”도 적지 않았다. 또한 전문가 면접조사 결과, 청소년의 혐오표현 원인으로 집단 내에서 강해보이고 싶거나 일탈적인 하위문

화를 공유하는 청소년기 발달특성과 재미로 혐오표현을 하는 측면이 언급되었다. 그렇다면 그들의 또래문화를 개선하고 더 재미있는 청소년 놀이문화 활성화로 자연스럽게 대항표현을 할 수 있는 대항문화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대항표현을 하려면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하기 때문에 그러한 힘을 기르기 위해 평소에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시뮬레이션 하는 방식으로 트레이닝해서 대항표현이 익숙해지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대항표현은 당사자보다 주변인의 집단적 대항이 더 큰 영향력이 있고, 피해자 못지않게 피해를 목격한 주변 청소년도 우울감이나 분노를 경험하고 다양성을 해치는 간접적인 피해를 입기 때문에 공동체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대항문화 형성이 필요하다.

혐오표현 금지 정책은 심각한 영역에 국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대항표현 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홍성수, 2019b: 53). 대항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학교 등 청소년이 속해있는 공동체에서 공개적인 지지 발언이 필요하다. 혐오표현은 가피해의 문제라기보다는 공동체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화를 개선하는 노력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청소년 면접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에 대한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교사나 청소년지도자로부터 대항표현으로 지지를 받은 경험이 전무 했다. 대항문화 형성을 위해서는 청소년 인권동아리 등 자치활동도 필요하지만 그들을 지도해줄 교사와 청소년지도자들의 인식개선이 선결되어야할 과제이다.

4) 피해자 지원방안

정책과제 4	피해자 지원방안 : 소수집단 청소년 보호

(1) 피해자 신고 및 상담 · 심리치료 지원

세부과제 4-1. 피해자 신고 및 상담 · 심리치료 지원
피해자 신고 및 상담 · 심리치료 지원이 필요하다. 일차적으로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신고하기 용이하도록 익명의 신고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피해 청소년이 자책하지 않고 피해 경험이 트라우마가 되지 않도록 상담과 심리치료 지원이 필요하다.

청소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혐오표현이나 차별적 행위를 보았을 때나 직접 당했을 때 느낀 감정으로 “흥분감과 분노(35.6%)”가 가장 많았으나, “개인적으로 저항(25.1%)”한 경우와 “위축감을 느끼고 침묵(22.8%)”한 경우가 비슷하게 나타났고, “주변에 알리고 공동 대응(19.1%)”한 경우는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이 받은 피해에 비해 대응이 미온적인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신고하기 용이하도록 익명의 신고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학교내 신고센터, 상담센터, 교육청 학생인권센터,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면접조사에 결과에 따르면, 대신 신고해줄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따라서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주변인 누구라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피해 청소년이 자책하지 않고 피해 경험이 트라우마가 되지 않도록 상담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피해는 성인에 비해 강도가 강하고 지속적 영향력도 강하기 때문에 2차 피해가 우려된다. 평생 잊을 수 없는 트라우마가 생기고, 편견

과 낙인을 스스로 내면화하면서 자존감이 낮아지며, 열등감과 자기부정, 스트레스와 우울감, 분노 등 복합적인 감정적 피해가 지속된다. 또한 학교를 중퇴하고 공동체에서 위축됨으로써 이후 사회생활이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다.

청소년 면접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해를 당한 이유가 자신이 가진 약점 때문이라 생각하고 있고, 자퇴를 고민했으며, 스트레스로 인해 잔병치레를 하기도 했고, 왕따 피해를 당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로 인해 트라우마가 생기고, 두려움이 2년 이상 지속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고통에 시달리면서도 자신의 약점이 드러날까봐 상담을 받을 용기를 내지 못한다.

따라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사실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또한 전문가에 의한 상담과 심리치료 및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병행되어야 한다. 상담과 심리치료를 위해 자기방어 워크북을 개발해 보급하고, 상담의 일환으로 자존감 회복 및 자기방어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2) 회복적 정의 실천 프로그램 운영

세부과제 4-2. 회복적 정의 실천 프로그램 운영
회복적 정의 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방안은 가피해자를 분리하기 보다는 관계의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가피해 청소년과 공동체 전체의 회복을 위해서는 회복적 정의 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혐오나 차별 표현을 하는 사람으로 그 누구보다 “친구(20.7%)”가 가장 많았다. 그렇다면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방안은 가피해자를 분리하기 보다는 관계의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가피해 청소년과 공동체 전체의 회복을 위해서는 회복적 정의 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혐오표현 사건을 학교폭력 담당교사에게 맡길 경우 현행 학교폭력 처리절차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가피해 청소년을 분리하고 가해청소년의 인성 문제로 축소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혐오표현은 차별의 문제이고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이러한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 피해자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가해청소년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이루어져야 하고, 공동체의 문화까지 개선되어야만 진정한 문제해결이라고 볼 수 있다.

혐오표현 가피해 청소년, 공동체 전체의 회복을 위한 회복적 정의 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대화서클'이나 '집단협의'의 중재자가 될 수 있는 교사나 청소년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따라서 교사나 청소년지도자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또래조정 동아리나 인권 동아리의 자치활동으로 해결해볼 수도 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실시되었던 또래조정으로 인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도 회복적 처리의 필요성과 가치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었고(이유진, 이창훈, 강지명, 2014: 218), 시범사업이 중단된 이후에도 또래조정 동아리 운영을 지속하고 있는 학교들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가피해 분리정책과는 다른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혐오표현 사안에 대해서도 또래조정에 의한 회복적 실천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3) 특별 보호가 필요한 소수집단 청소년 지원 강화

세부과제 4-3. 특별 보호가 필요한 소수집단 청소년 지원 강화
특별 보호가 필요한 성소수자 청소년과 범죄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성소수자 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쉼터와 성소수자 전문상담센터가 필요하다. 소년원 출원 청소년을 지원하는 한국소년보호협회에 대한 홍보와 인력 및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

편견과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청소년들은 앞에서 제안한 것과 같은 다양한 피해지원이 이루어져야하는 것은 공통된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더 소수자성이 강해 특별보호를 요하는 청소년들이 있다. 성소수자 청소년과 소년원 출원 청소년이다.

청소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수집단의 혐오표현 피해 심각성에 대해 모든 유형 중에서 "성소수자(32.8%)" 집단이 3위를 차지했다. 또한 청소년 면접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소수자 청소년은 쉼터와 같은 청소년시설 종사자와 다른 이용 청소년에 의한 혐오와 차별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 성소수자 청소년의 특성상 법적인 성별과 본인의 성적지향이 다른 경우나 외모의 차이 때문에 기존의 남녀로 구분된 청소년 쉼터를 함께 이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별도의 쉼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성소수자 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지원센터도 필요하다. 일반적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경우 성소수자에 대한 상담과 지원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현재 청소년 성소수자만을 특화하여 상담 등의 지원을 하고 있는 기관으로는 띵동과 드림캐쳐 두 군데가 있는데, 모두 서울에 위치하고 있어 지방의 성소수자 청소년들은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이들 기관은 100% 후원으로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를 신설하거나,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중 일부에 성소수자 전문센터를 지정하여 성소수자 청소년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상담자가 배치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청소년은 범죄를 저질러 보호관찰 처분을 받거나 소년원에 다녀오더라도 소년법 제32조 제6항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에 근거해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80]하지만 소문에 의해 자신의 생활영역에서 받는 편견과 차별은 피할 수 없다. 이들 청소년은 원래도 취업

80) 국가법령센터. 소년법, 법률 제15757호, https://www.law.go.kr/법령/소년법 에서 2020년 12월 30일 인출

이나 진학을 도와줄 사회자본이 취약한 환경에 처해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러한 낙인효과로 인해 더욱 어려움에 빠지곤 한다. 게다가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로 인해 소년범죄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더욱 심화되고 있어, 뉴스에 달리는 댓글에는 온갖 혐오표현이 난무한다. 이러한 현실은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의 재활의지를 꺾어 놓는다.

청소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수집단의 혐오표현 피해 심각성에 대해 모든 유형 중에서 "범죄청소년(39.3%)" 집단이 1위를 차지했다. 게다가 범죄청소년에 대한 혐오의 수준은 가장 강도가 높은 "폭력(7.8%)" 수준의 가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답변이 모든 유형의 소수자 혐오 중에 제일 높게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 면접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년원 출원 청소년이 취업과정에서 소년원 경력으로 인해 차별받은 경험이 나타났고, 그로 인해 취업지원을 받고 싶은 강한 욕구를 나타냈다. 소년원 출원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법무부 산하 '한국소년보호협회'에서 주거지원, 취업지원, 창업지원, 장학지원, 원호사업 등을 하고 있다. 2019년에 협회를 통해 취업한 청소년은 130명이다(법무부 소년범죄예방팀 내부자료, 2019). 연간 2천명이 넘는 청소년이 소년원을 출원[81]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인원이다.

이와 같이 지원을 받는 소년원 출원 청소년이 적은 이유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한국소년보호협회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청소년이 적은 것도 있지만, 현재의 인력이나 예산 상황으로는 그 이상의 지원을 할 여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2008년에 이루어진 서은경과 윤옥경의 연구에서도 협회의 인력부족을 지적하고 있는데, 2020년 현재도 여전히 같은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어 인력확충이 시급하다(서은경, 윤옥경, 2008: 133-134).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충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81) 2018년에 2,416명이 출원하였는데, 이 중 전체 취업인원도 352명에 불과했고, 진학인원도 165명에 그쳤다(여성가족부, 2019: 500-503).

참고문헌

참고문헌

구정화 (2018). 사회과교육에서 혐오표현 관련 교육에 대한 시론. 시민교육연구, 50(3), 1-22.

국가인권위원회 (2018). 혐오표현 예방 대응 가이드라인.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9a). 혐오차별 국민인식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9b). 혐오표현리포트.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9c). 혐오표현에 대한 청소년 인식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20). 인권존중 학교를 위한 평등 실천 안내 해설서.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권형둔 (2020).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와 그 규제법리 -혐오표현·거짓정보에 대한 독일의 대응을 중심으로. 사법, 1(51), 3-34.

김성희, 성나경, 성현준, 김성현, 김민선, 이연제, 권준성. (2019). 혐오표현의 이해 및 특성에 대한 고찰: 해외 혐오표현 규정을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18(1), 3-26.

김세은, 이설희, 홍남희, 김현정 (2019). 인터넷에서의 성차별적 혐오표현에 대한 심의방안 연구. 서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김지혜 (2015). 차별선동의 규제 - 혐오표현에 관한 국제법적,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 法曹, 64(9), 36-77.

김지혜, 김지림, 김철효, 김현미, 박영아, 이완, 허오영숙 (2019). 한국사회의 인종

차별 실태와 인종차별철폐를 위한 법제화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남미자 (2019). 지금 여기, 청소년 페미니즘 운동의 의의. 교육비평, 43. 39-62.
노재철, 고준기 (2016). hate-speech 등 인종주의적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의 동향과 시사점. 법학논총, 40(3), 3-31.
문연주 (2017). 인종차별적 혐오표현에 대한 일본사회의 법제도적 대응. 일본학, 44, 105-132.
박미숙, 추지현 (2017). 혐오표현의 실태와 대응방안.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아란, 양정애 (2016). 혐오표현과 여성혐오에 대한 인식. Media Issue, 2(7), 1-14.
박지원 (2016). 혐오표현의 제재 입법에 관한 소고. 美國憲法硏究, 27(3), 103-136.
배상균 (2017). 일본의 혐오표현 형사규제에 관한 검토: 헤이트스피치해소법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8(2), 65-93.
법무부 소년범죄예방팀(2019) 내부자료
서은경, 윤옥경 (2008). 퇴소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 시설의 현황과 개선방안. 소년보호연구, 제11호,129-157.
성중탁 (2018). Hate Speech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와 우리 법제의 대응 방향. 시계헌법연구, 24(1), 149-177.
손희정 (2015a). 페미니즘 리부트. 문화과학, 83, 14-47.
손희정 (2015b). 혐오의 시대 - 2015년, 혐오는 어떻게 문제적 정동이 되었는가. 여성이론(32), 12-42.
신선미 (2017). 인종차별적 혐오표현의 민사법적 연구: 법 비교 및 입법제언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심나리 (2017). 소셜 네트워크의 페이크뉴스와 혐오표현, 법적 규제 가능할까 - 독일 네트워크시행법(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 言論仲裁, 144, 100-106.
여성가족부 (2019). 2019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이성식 (2004). 사이버 공간에서의 익명성과 청소년의 언어 폭력,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수연, 윤지소, 장혜경, 김수아 (2018). 여성혐오표현에 대한 제도적 대응방안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승현 (2016). 혐오표현에 대한 헌법적 고찰.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이승현 (2017). 해외 인권위원회의 혐오표현 대응정책 소개와 시사점. 언론과법, 16(2), 1-34.

이유진, 이창훈, 강지명 (2014).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회복적 정의모델 도입방안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준석 (2019). SNS상의 표현의 자유와 보호 법익에 관한 연구 :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한국의 법제 및 판례분석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이혜정 (2019). 제18차 한국인권교육포럼 혐오표현 근절, 학교에서 인권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이혜정, 김아미, 남미자, 민윤, 박진아, 이신애, 이정연 (2018). 학교 안 혐오 현상과 교육의 과제. 수원: 경기도교육연구원.

전경옥, 김영란, 김현숙 (2019). 혐오표현 위험성 조사를 통한 사회통합 정책 연구. 수원: 경기도의회.

정다교, 김현진 (2018).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리터러시 역량모델 개발. 교육공학연구, 34(4), 1053-1077.

정다영 (2018). 혐오표현과 민주주의. 법학논총, 31(2), 123-164.

정대현 (2019). 서평 김선희, 혐오 미러링. 철학연구, 125, 1-6.

조소영, 김종철, 이승현 (2016). 인터넷에서의 혐오표현 규제 개선 방안 연구. 서울: (사)한국언론법학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성우 (2019). 독일의 혐오표현 관련 규범 및 판례에 대한 헌법적 평가. 성균관법학, 31(4), 407-444.
최숙기 (2019). 민주시민역량 측면에서의 청소년의 미디어 리터러시 수행 양상 연구-사회적 참여 요소와 책임감 있는 미디어 사용 요인을 중심으로. 청람어문교육, 71, 389-422.
최종선 (2018). 국내외 혐오표현 규제 법제 및 그 시사점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35(3), 33-57.
한국언론진흥재단(2016), 온라인설문조사, 서울:한국언론진흥재단
한위수 (2019). 혐오표현의 규제에 대한 인권법적 고찰 - 국제조약상 입법화 의무를 중심으로. 헌법논총, 30, 141-200.
홍성수 (2018). 혐오표현 예방 대응 가이드라인 마련 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홍성수 (2019a). 2010년 이후 한국의 혐오표현: 문제와 대응, 혐오를 넘어 공존의 사회로. 한독국제콘퍼런스자료집.
홍성수 (2019b). 혐오표현의 해악과 개입의 정당성: 금지와 방치를 넘어서. 법철학연구, 22(3), 27-64.
홍성수 (2020). 혐오표현 표준교안,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홍성수, 김정혜, 노진석, 류민희, 이승현, 이주영, 조승미 (2016).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홍성수, 김지혜, 민지원, 송윤진, 유민석, 이승현, 이은진 (2018). 혐오표현 예방 대응 가이드라인 마련 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황수옥 (2015). 독일 일반평등대우법 일반과 차별 정당성의 범위. 노동법논총, 33, 25-47.
Arroio, A. (2019). Education as a human right against hate speech and intolerance. Problems of Education in the 21th Century, 77(3), 314-316.

교육내시경. (2017.12.10.). hate speech 금지론.
https://blog.naver.com/herrihm103/221159908469 에서 2020년 2월 13일 인출
국가법령센터. 국가인권위원회법 법률 제16928호,
https://www.law.go.kr/법령/국가인권위원회법 에서 2020년 12월 30일 인출
국가법령센터. 근로기준법 법률 제17326호,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에서 2020년 12월 30일 인출
국가법령센터.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10호,
https://www.law.go.kr/행정규칙/방송광고심의에관한규정/(110,20141230) 에서 2020년 12월 30일 인출
국가법령센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41호,
https://www.law.go.kr/행정규칙/방송심의에관한규정/(141,20190927) 에서 2020년 12월 30일 인출
국가법령센터.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7436조,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447647에서 2020년 12월 30일 인출
국가법령센터. 소년법, 법률 제15757호,
https://www.law.go.kr/법령/소년법 에서 2020년 12월 30일 인출
국가법령센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44호,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에서 2020년 12월 30일 인출
국가법령센터.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16호,
https://www.law.go.kr/행정규칙/정보통신에관한심의규정/(116,20151216) 에서 2020년 12월 30일 인출
국가법령센터. 청소년보호법 법률 제17761호,

https://www.law.go.kr/법령/청소년보호법/(17761,20201229) 에서 2020년 12월 30일 인출
국가법령센터. 형법 법률 제17511호, https://www.law.go.kr/법령/형법 에서 2020년 12월 30일 인출
국가인권위원회. 인종차별협약_일반권고 35호_인종주의적 혐오표현의 근절,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currentpage=5&menuid=001003007007&pagesize=10&boardtypeid=7065&boardid=7603379 에서 2020년 12월 30일 인출
국가인권위원회. 혐오차별대응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boardtypeid=187&menuid=001003001001&boardid=7603666 에서 2020년 12월 30일 인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홈페이지. 세계인권선언, https://amnesty.or.kr/resource/%EC%84%B8%EA%B3%84%EC%9D%B8%EA%B6%8C%EC%84%A0%EC%96%B8/ 에서 2020년 12월 30일 인출
국회도서관 정보시스템. 공공질서법, http://dl.nanet.go.kr/law/SearchDetailView.do?cn=TLAW1201700655 에서 2020년 8월 10일 인출
네이버 시사상식백과. 학생인권조례,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006723&cid=43667&categoryId=43667 에서 2020년 12월 30일 인출
뉴스1 (2019.7.9). 우리 청소년, '스쿨미투' 해결 목소리 모아 UN에 전달한다, https://www.news1.kr/articles/?3665584 에서 2020년 12월 1일 인출
뉴스1 (2020.7.9). "네이버·카카오는 어떤 혐오표현 규제하나...정보 공개해야", https://www.news1.kr/articles/?3991366 에서 2020년 12월 1일 인출

뉴스1 (2020.1.16). "미디어, 혐오표현 자제한다"…인권위, 언론계와 선언식, https://www.news1.kr/articles/?3818029에서 2020년 2월 13일 인출
대전시티저널 (2020.6.8). 충남도의회 학생인권 조례 공청회 찬반 '팽팽'. https://www.gocj.net/news/articleView.html?idxno=108781 에서 2020년 12월 30일 인출
두산백과. 제노사이드조약,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41084&cid=40942&categoryId=31659에서 2020년 2월 13일 인출
미 연방 정부 공식 웹사이트. Hate Crimes, https://www.fbi.gov/investigate/civil-rights/hate-crimes 에서 2020년 8월 10일 인출
서울신문 (2019.12.12). 새 규제 내놓는 유튜브 '표현의 자유 VS 적절한 통제',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212500181에서 2020년 12월 1일 인출
세계법령정보센터. 독일 일반평등법,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CTS_SEQ=11471&AST_SEQ=1254& 에서 2020년 2월 10일 인출
세계법령정보센터. 독일 형법,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AST_SEQ=69&CTS_SEQ=17831&ETC=0& 에서 2020년 8월 10일 인출
세계법제정보센터.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CTS_SEQ=46882&AST_SEQ=309& 에서 2020년 8월 10일 인출
세계법제정보센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AST_SEQ=30

9&(2020.8.10.=&CTS_SEQ=5235& 에서 2020년 8월 10일 인출
세계법제정보센터.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jsessionid=LJUYOx6BskP2r46OCVDg7qgKvMe1YXIi7wxDDdGcVUlbIF0p0X5URpYRap1BKYqX.eduweb_servlet_engine7?A=A&AST_SEQ=309&CTS_SEQ=5100&ETC=2& 에서 2020년 8월 10일 인출
슬로우뉴스. (2020.5.21). 프랑스 '인터넷 혐오 표현 금지법', 결국 통과하다. https://slownews.kr/76333 에서 2020년 8월 10일 인출
외교부. 인종차별철폐협약, http://www.mofa.go.kr/www/brd/m_3998/view.do?seq=303433 에서 2020년 12월 30일 인출
이데일리 (2020.9.21.). "스쿨미투 2년...위계적 학교문화 개선해야",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264006625902416&mediaCodeNo=257 에서 2020년 12월 1일 인출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2020.6.29). 차별금지법안,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2K0Y0Y6O2J9K1Y0N4I2J2X1D0Y0A5 에서 2020년 12월 30일 인출
파이낸셜뉴스 (2020.2.10). 혐오와 배제에 짓밟힌 두 여성의 꿈, https://www.fnnews.com/news/202002101635034467 에서 2020년 12월 30일 인출
프레시안 (2019.6.25). 박종훈 경남교육감, 학생인권조례 무산에 '유감'.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46330?no=246330&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에서 2020년 12월 30일 인출
한겨레. (2019.7.10). 프, 온라인서 '혐오' 철퇴…곧장 삭제 않으면 16억 벌금.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901266.html 에서 2020년 8월 10일 인출

한국경제TV (2020.6.30). “유튜브에 나오는 아동·청소년 보호지침 나왔다”,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006300275&t=NN 에서 2020년 12월 1일 인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자율규제 DB 안내, https://www.kiso.or.kr/%ec%9e%90%ec%9c%a8%ea%b7%9c%ec%a0%9c-db-%ec%95%88%eb%82%b4/ 에서 2020년 12월 1일 인출
한국일보 (2020.10.8). 쌍욕 바꾸고 지우고… AI, 한달 1억건 걸러도 진화하는 악플,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92812570002916?did=NA 에서 2020년 12월 1일 인출
한국일보 (2018.11.21). 혐오사회에서 청소년 구하기,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11201313027321 에서 2020년 12월 30일 인출
헌법재판소. 차별금지법 입법 권고 등 위헌확인[2020헌마936], http://search.ccourt.go.kr/ths/pt/selectThsPt0101List.do 에서 2020년 12월 30일 인출
ADL. Mini lesson: The pyramid of hate, https://www.adl.org/education/educator-resources/lesson-plans/mini-lesson-the-pyramid-of-hate 에서 2020년 8월 17일 인출
ADL. No place for hate, https://www.adl.org/who-we-are/our-organization/signature-programs/no-place-for-hate 에서 2020년 8월 17일 인출
BRICKS. Hate speech in the lives of teenagers, http://www.silencehate.eu/wp-content/uploads/2019/10/BricksModulePresentation-2018_EN.pdf 에서 2020년 8월 17일 인출
BRICKS. Media education and hate speech workbook,

http://www.silencehate.eu/wp-content/uploads/2019/10/BricksModulePresentation-2018_EN.pdf 에서 2020년 8월 17일 인출
Common sense education. Digital citizenship curriculum, https://www.commonsense.org/education/digital-citizenship/curriculum 에서 2020. 8. 17 인출
Common sense education. The consequence of online hate speech, https://www.commonsense.org/education/digital-citizenship/lesson/the-consequences-of-online-hate-speech 에서 2020년 8월 17일 인출
Council of Europe. No hate speech youth campaign, https://www.coe.int/en/web/no-hate-campaign/compendium/-/asset_publisher/PyHuON7WYezs/content/report-on-training-seminar-countering-hate-speech-through-human-rights-education-and-narratives-?inheritRedirect=false 에서 2020년 8월 10일 인출
FORME. 전체 수업지도안, https://www.forme.or.kr/teach/all.cs?school=&subject=&searchKeyword=%ED%98%90%EC%98%A4&searchCondition=&searchEndDt=&grade=&year=&searchStartDt=&pageIndex=1 에서 2020년 8월 17일 인출
Generation Global. Hate speech & Human rights, https://generation.global/assets/resources/hate-speech-english.pdf 에서 2020년 8월 17일 인출
legislation.gov.uk. 공공질서법, http://www.legislation.gov.uk/ukpga/1986/64 에서 2020년 8월 10일 인출
legislation.gov.uk. 범죄 및 무질서 관련 법률,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1998/37/part/II/crossheading/raci

allyaggravated-offences-england-and-wales 에서 2020년 8월 10일 인출
legislation.gov.uk. 인권법,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1998/42/contents 에서 2020년 8월 10일 인출
legislation.gov.uk. 평등법,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10/15/contents 에서 2020년 8월 17일 인출
legislation.gov.uk. 형사법,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03/44/contents에서 2020년 8월 10일 인출
Maltese Safer Internet Centre. Education and hate speech, https://www.betterinternetforkids.eu/web/portal/practice/awareness/detail?articleId=2596586 에서 2020년 8월 17일 인출
MediaSmarts. Diversity and media toolbox, https://mediasmarts.ca/sites/default/files/tutorials/facing-online-hate/html5.html 에서 2020년 8월 17일 인출
MediaSmarts. Facing online hate, https://mediasmarts.ca/tutorial/facing-online-hate-tutorial 에서 2020년 8월 17일 인출
MediaSmarts. Our mission & belief, https://mediasmarts.ca/about-us/our-mission-beliefs 에서 2020년 8월 17일 인출
SBS뉴스 (2019.12.27). '스쿨 미투' 양지혜 씨, CNN 선정 "올해 아시아 변화 이끈 청년 운동가",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580910&plin

k=SEARCH&cooper=SBSNEWSSEARCH 에서 2020년 12월 1일 인출
Titley, G., Keen, E., & Foldi, L. (2014). Starting points for combating hate speech online. Council of Europe. https://rm.coe.int/starting-points-for-combating-hate-speech-online/16809c85ea 에서 2020년 8월 10일 인출
UNESDOC Digital Library. Countering online hate speech,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233231에서 2020년 8월 10일 인출
UNESDOC Digital Library. COVID-19 education response webinar; The COVID-19 pandemic of disinformation and hate speech: how can education and digital citizenship help, syntesis report,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73789?posInSet=1&queryId=N-99258bb2-6a74-4879-9570-5f2afc46a934 에서 2020년 8월 10일 인출
United Nations. Strategy and plan of Action and hate speech, https://www.un.org/en/genocideprevention/documents/UN%20Strategy%20and%20Plan%20of%20Action%20on%20Hate%20Speech%2018%20June%20SYNOPSIS.pdf에서 2020년 8월 10일 인출

부 록

1. 청소년 설문지
2. 전문가 면접조사지
3. 청소년 면접조사지
4. 기초통계표

부록

부록1. 청소년 설문지

조사학교 ID
(기록하지 마세요)

청소년 혐오표현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각종 조사연구와 정책개발 업무를 맡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지는 각 문항마다 본인의 경험이나 생각을 중심으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무기명으로(이름을 밝히지 않고) 처리**되어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자료로만 활용되므로 개인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모든 질문에는 맞고 틀린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정확하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문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쁘신데 본 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동의	1. 나는 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2. 나는 내가 원하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3. 나는 내가 응답한 내용이 연구목적으로 제3자(연구자)에게 제공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스스로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청소년 혐오표현 설문조사 관련 의견수렴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별, 가족구성, 부모의 학력, 키, 몸무게, 출신지역, 장애여부 ·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문 1. 다음과 같이 우리 사회 내에서 나타나는 '**혐오표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번호에 동그라미(O) 표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사회는 외국인을 우리국민과 같이 대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사회는 인종(백인, 황인, 흑인)에 따라 다르게 대우하고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사회는 자신의 종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나 그 종교에 대해 비난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사회는 성 소수자(남녀 이성관계외 다른 성별에 애정을 느끼는 관계)인 사람들이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사회는 몸과 마음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놀리거나 피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우리사회는 페미니스트(남성중심 사회에서여성이 억압받는 현실에 저항하는 사람) 활동을 사회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비정상적 활동으로 본다.	①	②	③	④	⑤
7) 우리사회는 다문화가정이나 그 자녀들을 놀리거나 피한다.	①	②	③	④	⑤
8) 어른들은 청소년의 의견과 행동을 어리다고 무시한다.	①	②	③	④	⑤
9) 청소년들은 노인을 고지식하거나 꼰대라고 무시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우리는 상대 부모집이 가난하면 친구로 사귀지 않거나 무시하는 말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우리는 상대 부모의 직업이 좋지 않으면 친구로 사귀지 않거나 무시하는 말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사람들은(유명대학을 나오지 않아) 학벌이 좋지 않은 친구와는 사귀지 않거나 무시하는 말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사람들은 본인이 속한 지역이외의 타 지역 사람을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말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 2.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혐오 표현 문제는 **우리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번호에 동그라미(O) 표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나라에서 혐오 표현 문제는 추후 사회 전반으로 더욱 확대 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나라에서 혐오 표현 문제는 추후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나라에서 혐오 표현 문제는 폭력 등 더 큰 사회문제로 나타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나라에서 혐오 표현 문제는 세대간 지역 간 갈등을 강화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나라에서 혐오 표현 문제는 이를 이용하는 집단과 세력을 더욱 확대하게 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6) 우리나라에서 혐오 표현 문제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게 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7) 우리나라에서 혐오 표현 문제는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침해하게 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8) 우리나라에서 혐오 표현 문제는 보편적인 인간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9) 우리나라에서 혐오 표현 문제는 국제사회의 공통기준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 3. 아래와 같은 **소수집단에 대한 혐오표문제가** 어느정도라고 생각하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번호에 동그라미(O) 표시를 해주세요.

	전혀 심각하지 않음	별로 심각하지 않음	보통이다	심각한 편	매우 심각함
1) 타 국적 외국인에 따른 혐오	①	②	③	④	⑤
2) 타 인종에 대한 혐오	①	②	③	④	⑤
3) 다른 종교에 대한 혐오	①	②	③	④	⑤
4) 성소수자(이성관계 외 다른 성별에 애정을 느끼는 관계)에 대한 혐오	①	②	③	④	⑤
5) 장애인에 대한 혐오	①	②	③	④	⑤
6) 페미니스트(남성중심 사회에서여성이 억압받는 현실에 저항하는 사람)에 대한 혐오	①	②	③	④	⑤
7) 다문화가정에 대한 혐오	①	②	③	④	⑤
8) 노인에 대한 혐오	①	②	③	④	⑤
9) 청소년에 대한 혐오	①	②	③	④	⑤
10) 빈곤층에 대한 혐오	①	②	③	④	⑤
11) 지역에 대한 혐오	①	②	③	④	⑤
12) 해외이주노동자 집단에 대한 혐오	①	②	③	④	⑤
13) 탈북민 / 고려인 / 국내거주 교포집단에 대한 혐오	①	②	③	④	⑤
14) 근로청소년 집단에 대한 혐오	①	②	③	④	⑤
15) 범죄청소년 집단에 대한 혐오	①	②	③	④	⑤

문 4. 우리 사회가 아래와 같은 **소수집단에 가하는 행위**를 수준별로 제시한 것입니다. 각 항목별로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수준의 가해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번호에 동그라미(O) 표시를 해주세요.

	편견	비난	모욕	차별	폭력
1) 타국 적 외국인에 따른 혐오	①	②	③	④	⑤
2) 타 인종에 대한 혐오	①	②	③	④	⑤
3) 다른 종교에 대한 혐오	①	②	③	④	⑤
4) 성소수자(이성관계 외 다른 성별에 애정을 느끼는 관계)에 대한 혐오	①	②	③	④	⑤
5) 장애인에 대한 혐오	①	②	③	④	⑤
6) 페미니스트(남성중심 사회에서 여성이 억압받는 현실에 저항하는 사람)에 대한 혐오	①	②	③	④	⑤
7) 다문화가정에 대한 혐오	①	②	③	④	⑤
8) 노인에 대한 혐오	①	②	③	④	⑤
9) 청소년에 대한 혐오	①	②	③	④	⑤
10) 빈곤층에 대한 혐오	①	②	③	④	⑤
11) 지역에 대한 혐오	①	②	③	④	⑤
12) 해외이주노동자 집단에 대한 혐오	①	②	③	④	⑤
13) 탈북민 / 고려인 / 국내거주 교포집단에 대한 혐오	①	②	③	④	⑤
14) 근로청소년 집단에 대한 혐오	①	②	③	④	⑤
15) 범죄청소년 집단에 대한 혐오	①	②	③	④	⑤

문 5. 여러분은 어디에서 **혐오나 차별 표현**을 가장 많이 경험하나요? (보거나 들은 것 포함)

① 인터넷 커뮤니티, SNS ② 신문, 방송 등 대중매체 ③ 집 및 지역사회
④ 학교 및 학원 ⑤ 기타

문 6. 여러분이 **혐오나 차별 표현**을 가장 자주 듣게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① 가족 ② 교사 ③ 친구 ④ 지역주민 ⑤ 언론인 ⑥ 정치인 ⑦종교인
⑧기타

문 7. 여러분은 아래와 같은 **혐오/차별 표현에 대한 대응방안**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번호에 동그라미(O) 표시를 해주세요.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하다
1)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를 강화	①	②	③	④	⑤
2) 교육현장에서 혐오표현 및 차별 관련 교육	①	②	③	④	⑤
3) 청소년을 대상으로 혐오표현이나 차별에 대한 개선방법을 홍보	①	②	③	④	⑤
4) 혐오표현을 사용한 사람들에 대해 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5) 학교 내 혐오 및 차별 방지 내용 제도화	①	②	③	④	⑤
6) 온라인에서 허용되지 않는 혐오 및 차별 표현의 기준을 제시	①	②	③	④	⑤
7) 신문 방송 등 언론의 혐오 및 차별 표현 윤리 기준 강화	①	②	③	④	⑤

문 8. 여러분은 **혐오표현이나 차별적 행위를 보았을 때나 직접 당했을 때**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행동을 하였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번호에 동그라미(O) 표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일 상과 같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정신적으로 긴장되고 괴로웠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자괴감과 무력감을 느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공포를 느끼고 패닉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흥분하고, 화가 났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불안하고 우울해졌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위축감을 느끼고 조용히 침묵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가해자나 가해 장소를 피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해당표현에 반대하고 저항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이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공동 대응했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외출을 하지 않게 되고 대인관계가 힘들었다.	①	②	③	④	⑤

문 9. 여러분이 **편견이나 차별적 행위를 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래 각 항목을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번호에 동그라미(O) 표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모르겠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친구들이 모두 사용하니까	①	②	③	④	⑤
2) 어떤 표현이 편견과 차별 표현인지 잘 모르니까	①	②	③	④	⑤
3) 친구집단과 잘 어울리려면 같이 사용해야하니까	①	②	③	④	⑤
4) 신문 방송 등 언론인들이 자주 사용하니까	①	②	③	④	⑤
5) 온라인에서 대화하려면 사용해야하니까	①	②	③	④	⑤
6) 정치인들이 자주 사용하니까	①	②	③	④	⑤
7) 어른들이 모르게 우리들만의 언어를 사용해야하니까	①	②	③	④	⑤
8) 어른들과 세대 차이를 느껴 사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여러분에 관한 일반적인 질문입니다. 잘 읽고 각 질문에 답해주세요.

배문 1. 성별은 무엇인가요? ① 여자 ② 남자

배문 2. 나는 장애를 가지고 있나요? ① 예 ② 아니오

배문 3. 우리 가족의 경제적인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V표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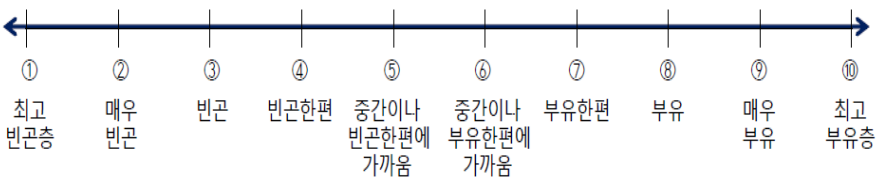

배문 4. 나와 부모님은 어디에서 태어났나요?

1) 나	① 대한민국	② 북한	③ 그 외 다른 나라
2) 아버지	① 대한민국	② 북한	③ 그 외 다른 나라
3) 어머니	① 대한민국	② 북한	③ 그 외 다른 나라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혹시 빠뜨리고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

부록2. 전문가 면접조사지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 기관으로 청소년의 인성 함양과 잠재력 계발, 디지털,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본 연구원은 '청소년의 혐오표현 노출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전문가를 모시고 면접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의 혐오표현 노출실태에 대한 의견, 혐오표현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 혐오표현 제한에 대한 의견 등을 질문할 예정입니다.

여러분께서 이야기 한 내용은 이름을 밝히지 않고 처리되어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자료로만 활용되므로 개인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의견이 정확하게 연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질문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면접에 참여한 전문가분들께는 소정의 면접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2020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 나는 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2. 나는 내가 원하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3.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스스로 동의합니다.

☐ 동의 ☐ 비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면접조사관련 정보수집 및 면접비 지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이름, 소속, 성별, 연령, 근무기간, 담당업무,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비동의

2020년 월 일

성 명 : _____(서명)

◎ 면접조사 개요

- 일시 : - 장소 :
- 소요시간 :

◎ 면접조사 대상자 인적사항

- 이름 : - 성별 :
- 소속 : - 연령 :
- 근무기간 : - 담당업무 :
- 주민등록번호 : - 계좌번호 :

◎ 면접조사 내용

조사영역	세부항목	질문내용
청소년의 혐오표현 노출실태에 대한 의견	노출경험	현재 우리 사회의 청소년 혐오표현 노출실태는 심각합니까? 청소년에 대한 혐오표현과 청소년에 의한 혐오표현 중에 어느 쪽이 더 심각합니까?
	노출장소	청소년의 혐오표현 노출이 일어나는 곳은 생활공간, SNS, 인터넷, 방송, 언론 등 주로 어디입니까?
	내용 / 방법	청소년의 혐오표현 노출내용은 성별, 인종, 정치, 지역, 종교, 성적기호 등 주로 어떤 것입니까? 구체적인 혐오표현의 방법은 욕설, 비난, 편견, 차별 등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원인	청소년들이 혐오표현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청소년에게 혐오표현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터넷이나 SNS의 익명성이 혐오표현을 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변화추이와 혐오범죄 전망	우리 사회는 예전에 비해 청소년에 대한/ 청소년에 의한 편견과 차별, 혐오표현이 증가 또는 감소했다고 생각합니까? 향후 혐오표현이 증가 또는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전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청소년 혐오표현이 왕따나 괴롭힘, 폭행 등의 혐오범죄로 심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청소년의 혐오표현 가피해	2차 피해 경험에 대한 의견	청소년의 혐오표현 피해는 청소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영향은 어느 정도 지속되고, 그들의 일상이나 인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요?

경험의 영향에 대한 의견	피해이후 대처경험에 대한 의견	청소년은 혐오표현 피해를 당한 후에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피해 청소년에 대해 부모, 교사, 친구 등은 어떤 도움을 주어야 할까요? 우리 사회는 피해청소년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가해경험 이후에 대한 의견	혐오표현을 사용한 청소년은 사용전과 비교해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혐오표현 가해청소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가해청소년에 대해 규제를 어느 수준까지 정책화할 수 있을까요?
혐오표현 제한에 대한 의견	현재 혐오표현 대처방법	귀하가 청소년을 직접 지도하고 계신 분이라면, 귀하가 속한 기관에서 청소년의 의한 또는 청소년에 대한 혐오표현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떤 절차에 의해 대처하고 있습니까?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의식	청소년 혐오표현에 대해 '차별금지법' 같은 법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교사나 청소년지도사와 같은 청소년 대상 종사자에 대해 좀더 강화된 규제가 필요할까요?
	혐오표현 예방에 대한 의견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같이 혐오표현에 대해서도 '혐오표현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교육의 대상은 누구(초·중·고등학생/ 교사)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혐오표현 피해자 지원에 대한 의견	협오표현의 피해 청소년에게는 어떤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까? 피해자 지원을 위해 우선적으로 변화하거나 마련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대항표현에 대한 의견	청소년 혐오표현에 대항하여 어떤 대항표현이 필요할까요?
청소년이 사용하는 혐오표현 (복수응답)	-	들어본 청소년 혐오표현을 모두 말씀해주십시오.

부록3. 청소년 면접조사지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 기관으로 청소년의 인성 함양과 잠재력 계발, 디지털,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본 연구원은 '청소년의 혐오표현 노출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청소년에게 면접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혐오표현 노출경험, 혐오표현에 대한 의식, 혐오표현 제한에 대한 의견 등을 질문할 예정입니다.

여러분께서 이야기 한 내용은 이름을 밝히지 않고 처리되어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자료로만 활용되므로 개인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의견이 정확하게 연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질문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면접에 참여한 청소년에게는 소정의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2020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 나는 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2. 나는 내가 원하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3.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스스로 동의합니다.

☐ 동의 ☐ 비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면접조사관련 정보수집 및 상품권 지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이름, 소속, 성별, 연령 등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비동의

2020년 월 일

성 명 : _____(서명)

◎ 면접조사 개요

- 일시 : - 장소 :
- 소요시간 :

◎ 면접조사 대상자 인적사항

- 이름 : - 성별 :
- 소속 : - 연령 :

◎ 면접조사 내용

조사영역	세부항목	질문내용
혐오표현 노출경험 (단순목격 및 가피해 경험 여부에 대해 모두 질문)	주체	혐오표현을 사용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직접 아는 사람, 사이버공간에서만 아는 사람, 또는 모르는 시람인가요?
	시기 / 빈도	혐오표현을 처음 접한 때는 언제인가요? 그런 일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였습니까?
	장소 / 공간	혐오표현을 접한 곳은 어디입니까? 생활공간, SNS, 인터넷, 방송, 언론 등 어디에서 접했습니까?
	내용	혐오표현의 내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방법 / 유형	구체적인 혐오표현의 방법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혐오표현의 유형은 욕설, 비난, 편견, 차별 등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나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원인 / 인식	그런 혐오표현을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혐오표현에 대해 어떤 생각이나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까?
	혐오범죄	혐오표현이 왕따나 괴롭힘, 폭행 등의 혐오범죄로 심화된 적이 있습니까?
혐오표현 피해 경험의 영향	2차피해 경험 (피해경험자만 질문)	혐오표현의 피해를 당하고 충격을 받았습니까? 그 충격은 어느 정도 지속되었고,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습니까? 혐오표현이 사실이라고 생각된 적이 있습니까? 자신감을 잃거나 실제로 어떤 일을 중단한 일이 있습니까? 피해를 당했을 때 누군가 어떻게 해주었더라면 도움이 되었을까요?
	피해이후 대처경험 (피해경험자만 질문)	혐오표현 피해를 당한 후에 어떻게 대처하였습니까? 가해자의 혐오표현을 중단시키거나 사과를 요구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대처결과 도움을 받지 못했다면, 또는 대처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혐오표현에 대한 의식	혐오표현 실태에 대한 의식	소수자(사회적 약자)에 대해 편견을 갖고 차별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에 대해 혐오표현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회는 이러한 편견과 차별, 혐오표현이 얼마나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혐오표현 원인에 대한 의식	사람들이 혐오표현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넷이나 SNS의 익명성이 혐오표현을 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회는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혐오표현에 대해 관대한 편이라고 생각합니까?
	혐오표현 변화추이에 대한 의식	우리 사회는 예전에 비해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혐오표현이 증가 또는 감소했다고 생각합니까? 향후 혐오표현이 증가 또는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전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혐오표현 제한에 대한 의식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의식	혐오표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차별금지법' 같은 법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공직자(공무원, 교사, 언론인, 공공기관 종사자 등)의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좀더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혐오표현 예방에 대한 의식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같이 혐오표현에 대해서도 '혐오표현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교육의 대상은 누구(직장인과 초 · 중 · 고등학생)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혐오표현 피해자 지원에 대한 의식	혐오표현의 피해자에게는 어떤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까? 피해자 지원을 위해 우선적으로 변화하거나 마련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대항표현에 대한 의식	혐오표현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대항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본인에게 직접적으로 대항표현을 해준 사람들이 있습니까?

부록4. 기초통계표

1) 혐오표현에 대한 인식도

	문1. 외국인에 대한 차별 혐오 인식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9.무응답
빈도	2778	1463	970	437	232	34
%	47.0%	24.7%	16.4%	7.4%	3.9%	0.6%
	문1. 타인종에 대한 차별 혐오 인식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9.무응답
빈도	1993	1218	1355	1033	274	42
%	33.7%	20.6%	22.9%	17.5%	4.6%	0.7%
	문1. 타종교에 대한 혐오 인식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9.무응답
빈도	2235	1460	1256	731	183	49
%	37.8%	24.7%	21.2%	12.4%	3.1%	0.8%
	문1.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 인식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9.무응답
빈도	1812	1081	1367	1107	499	49
%	30.6%	18.3%	23.1%	18.7%	8.4%	0.8%
	문1. 장애인에 대한 혐오 인식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9.무응답
빈도	2245	1288	1238	886	219	39
%	38.0%	21.8%	20.9%	15.0%	3.7%	0.7%
	문1. 여성 페미니스트에 대한 혐오 인식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9.무응답
빈도	1854	927	1269	1000	806	58
%	31.3%	15.7%	21.5%	16.9%	13.6%	1.0%
	문1. 다문화가정에 대한 혐오 인식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9.무응답
빈도	2683	1569	1076	445	106	34
%	45.4%	26.5%	18.2%	7.5%	1.8%	0.6%

	문1. 청소년에 대한 혐오 인식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9.무응답
빈도	1657	1042	1397	1223	558	35
%	28.0%	17.6%	23.6%	20.7%	9.4%	0.6%
	문1. 노인에 대한 혐오 인식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9.무응답
빈도	1882	1153	1356	1091	395	37
%	31.8%	19.5%	22.9%	18.4%	6.7%	0.6%
	문1. 경제수준에 따른 차별 혐오 인식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9.무응답
빈도	3407	1504	735	181	52	36
%	57.6%	25.4%	12.4%	3.1%	0.9%	0.6%
	문1. 직업의 종류에 따른 차별 혐오 인식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9.무응답
빈도	3621	1411	654	144	45	39
%	61.2%	23.9%	11.1%	2.4%	0.8%	0.7%
	문1. 학벌에 따른 차별 혐오 인식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9.무응답
빈도	2973	1308	940	496	158	38
%	50.3%	22.1%	15.9%	8.4%	2.7%	0.6%
	문1. 출신 지역에 따른 차별 혐오 인식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9.무응답
빈도	3046	1322	963	411	137	35
%	51.5%	22.3%	16.3%	7.0%	2.3%	0.6%

2) 혐오표현 문제의 사회적 영향력

	문2. 사회 전반으로 더욱 확대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9.무응답
빈도	817	964	2029	1534	499	71
%	13.8%	16.3%	34.3%	25.9%	8.4%	1.2%

	문2. 사회전반으로 다양화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9.무응답
빈도	795	858	1812	1798	591	60
%	13.4%	14.5%	30.6%	30.4%	10.0%	1.0%
	문2. 더 큰 사회문제로 발전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9.무응답
빈도	909	969	1741	1622	608	65
%	15.4%	16.4%	29.4%	27.4%	10.3%	1.1%
	문2. 세대 간 지역 간 갈등을 강화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9.무응답
빈도	893	923	1915	1533	578	73
%	15.1%	15.6%	32.4%	25.9%	9.8%	1.2%
	문2. 혐오문제를 이용하는 집단과 세력의 확대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9.무응답
빈도	968	935	1926	1436	580	68
%	16.4%	15.8%	32.6%	24.3%	9.8%	1.2%
	문2. 더 큰 개인의 자유 침해 확대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9.무응답
빈도	987	955	1797	1420	688	66
%	16.7%	16.1%	30.4%	24.0%	11.6%	1.1%
	문2. 자유로운 민주적인 의사결정 침해 확대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9.무응답
빈도	1050	997	1923	1287	580	77
%	17.8%	16.9%	32.5%	21.8%	9.8%	1.3%
	문2. 보편적인 인간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9.무응답
빈도	1087	917	1858	1299	687	67
%	18.4%	15.5%	31.4%	22.0%	11.6%	1.1%
	문2. 국제사회의 본편적 기준을 심각하게 침해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9.무응답
빈도	1148	1025	2022	1139	509	70
%	19.4%	17.3%	34.2%	19.3%	8.6%	1.2%

3) 혐오 및 차별 표현의 심각성

	문3. 타인종에 대한 혐오					
	1.전혀 심각하지 않음	2.별로 심각하지 않음	3.보통이다	4.심각한 편	5.매우 심각함	9.무응답
빈도	1423	1481	1890	840	221	58
%	24.1%	25.0%	32.0%	14.2%	3.7%	1.0%
	문3. 타 종교에 대한 혐오					
	1.전혀 심각하지 않음	2.별로 심각하지 않음	3.보통이다	4.심각한 편	5.매우 심각함	9.무응답
빈도	1502	1543	1936	669	199	66
%	25.4%	26.1%	32.7%	11.3%	3.4%	1.1%
	문3.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					
	1.전혀 심각하지 않음	2.별로 심각하지 않음	3.보통이다	4.심각한 편	5.매우 심각함	9.무응답
빈도	1184	954	1775	1250	690	62
%	20.0%	16.1%	30.0%	21.1%	11.7%	1.0%
	문3. 장애인에 대한 혐오					
	1.전혀 심각하지 않음	2.별로 심각하지 않음	3.보통이다	4.심각한 편	5.매우 심각함	9.무응답
빈도	1601	1306	1717	837	385	67
%	27.1%	22.1%	29.0%	14.2%	6.5%	1.1%
	문3. 여성 페미니스트에 대한 혐오					
	1.전혀 심각하지 않음	2.별로 심각하지 않음	3.보통이다	4.심각한 편	5.매우 심각함	9.무응답
빈도	1303	886	1631	1110	905	78
%	22.0%	15.0%	27.6%	18.8%	15.3%	1.3%
	문3. 다문화가정에 대한 혐오					
	1.전혀 심각하지 않음	2.별로 심각하지 않음	3.보통이다	4.심각한 편	5.매우 심각함	9.무응답
빈도	1953	1544	1678	481	197	61
%	33.0%	26.1%	28.4%	8.1%	3.3%	1.0%
	문3. 노인에 대한 혐오					
	1.전혀 심각하지 않음	2.별로 심각하지 않음	3.보통이다	4.심각한 편	5.매우 심각함	9.무응답
빈도	1905	1462	1644	584	262	56
%	32.2%	24.7%	27.8%	9.9%	4.4%	1.0%
	문3. 청소년에 대한 혐오					
	1.전혀 심각하지 않음	2.별로 심각하지 않음	3.보통이다	4.심각한 편	5.매우 심각함	9.무응답

빈도	2006	1472	1651	498	233	54
%	33.9%	24.9%	27.9%	8.4%	3.9%	0.9%
	문3. 빈곤층에 대한 혐오					
	1.전혀 심각하지 않음	2.별로 심각하지 않음	3.보통이다	4.심각한 편	5.매우 심각함	9.무응답
빈도	1841	1383	1716	664	243	68
%	31.1%	23.4%	29.0%	11.2%	4.1%	1.1%
	문3. 출신 지역에 대한 혐오					
	1.전혀 심각하지 않음	2.별로 심각하지 않음	3.보통이다	4.심각한 편	5.매우 심각함	9.무응답
빈도	2163	1398	1593	470	229	61
%	36.6%	23.6%	26.9%	8.0%	3.9%	1.0%
	문3. 해외이주노동자에 대한 혐오					
	1.전혀 심각하지 않음	2.별로 심각하지 않음	3.보통이다	4.심각한 편	5.매우 심각함	9.무응답
빈도	1820	1359	1689	700	274	72
%	30.8%	23.0%	28.6%	11.8%	4.6%	1.2%
	문3. 탈북민 / 고려인 / 국내거주 교포 집단에 대한 혐오					
	1.전혀 심각하지 않음	2.별로 심각하지 않음	3.보통이다	4.심각한 편	5.매우 심각함	9.무응답
빈도	1651	1374	1751	765	308	63
%	27.9%	23.2%	29.6%	12.9%	5.2%	1.1%
	문3. 근로청소년 집단에 대한 혐오					
	1.전혀 심각하지 않음	2.별로 심각하지 않음	3.보통이다	4.심각한 편	5.매우 심각함	9.무응답
빈도	1926	1461	1747	483	225	71
%	32.6%	24.7%	29.5%	8.2%	3.8%	1.2%
	문3. 범죄청소년 집단에 대한 혐오					
	1.전혀 심각하지 않음	2.별로 심각하지 않음	3.보통이다	4.심각한 편	5.매우 심각함	9.무응답
빈도	922	833	1767	1397	931	64
%	15.6%	14.1%	29.9%	23.6%	15.7%	1.1%

4) 소수집단에 대한 혐오 가해 행위 수준

	문4. 타국적 외국인에 따른 혐오					
	1.편견	2.비난	3.모욕	4.차별	5.폭력	9.무응답
빈도	3292	481	353	1563	55	170
%	55.7%	8.1%	6.0%	26.4%	0.9%	2.9%

	문4. 타인종에 대한 혐오					
	1.편견	2.비난	3.모욕	4.차별	5.폭력	9.무응답
빈도	3077	525	425	1646	62	180
%	52.0%	8.9%	7.2%	27.8%	1.0%	3.0%
	문4. 타 종교에 대한 혐오					
	1.편견	2.비난	3.모욕	4.차별	5.폭력	9.무응답
빈도	2599	1570	600	903	49	192
%	44.0%	26.6%	10.1%	15.3%	0.8%	3.2%
	문4.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					
	1.편견	2.비난	3.모욕	4.차별	5.폭력	9.무응답
빈도	2209	1485	866	1010	150	193
%	37.4%	25.1%	14.7%	17.1%	2.5%	3.3%
	문4. 장애인에 대한 혐오					
	1.편견	2.비난	3.모욕	4.차별	5.폭력	9.무응답
빈도	2731	544	568	1763	130	179
%	46.2%	9.2%	9.6%	29.8%	2.2%	3.0%
	문4. 여성 페미니스트에 대한 혐오					
	1.편견	2.비난	3.모욕	4.차별	5.폭력	9.무응답
빈도	1912	1839	847	871	249	196
%	32.3%	31.1%	14.3%	14.7%	4.2%	3.3%
	문4. 다문화가정에 대한 혐오					
	1.편견	2.비난	3.모욕	4.차별	5.폭력	9.무응답
빈도	3300	452	467	1458	54	183
%	55.8%	7.6%	7.9%	24.7%	0.9%	3.1%
	문4. 노인에 대한 혐오					
	1.편견	2.비난	3.모욕	4.차별	5.폭력	9.무응답
빈도	3031	934	771	855	152	170
%	51.2%	15.8%	13.0%	14.5%	2.6%	2.9%
	문4. 청소년에 대한 혐오					
	1.편견	2.비난	3.모욕	4.차별	5.폭력	9.무응답
빈도	3177	940	581	842	198	176
%	53.7%	15.9%	9.8%	14.2%	3.3%	3.0%
	문4. 빈곤층에 대한 혐오					
	1.편견	2.비난	3.모욕	4.차별	5.폭력	9.무응답
빈도	2852	746	790	1246	89	191
%	48.2%	12.6%	13.4%	21.1%	1.5%	3.2%
	문4. 타지역에 대한 혐오					
	1.편견	2.비난	3.모욕	4.차별	5.폭력	9.무응답
빈도	3100	821	629	1118	60	186
%	52.4%	13.9%	10.6%	18.9%	1.0%	3.2%

	문4. 해외이주노동자 집단에 대한 혐오					
	1.편견	2.비난	3.모욕	4.차별	5.폭력	9.무응답
빈도	3020	816	548	1229	109	192
%	51.1%	13.8%	9.3%	20.8%	1.8%	3.2%
	문4. 탈북민 / 고려인 / 국내거주 교포 집단에 대한 혐오					
	1.편견	2.비난	3.모욕	4.차별	5.폭력	9.무응답
빈도	2934	707	564	1416	109	185
%	49.6%	12.0%	9.5%	23.9%	1.8%	3.1%
	문4. 근로청소년 집단에 대한 혐오					
	1.편견	2.비난	3.모욕	4.차별	5.폭력	9.무응답
빈도	3275	951	576	811	117	185
%	55.4%	16.1%	9.7%	13.7%	2.0%	3.1%
	문4. 범죄청소년 집단에 대한 혐오					
	1.편견	2.비난	3.모욕	4.차별	5.폭력	9.무응답
빈도	1825	1843	810	774	475	187
%	30.9%	31.2%	13.7%	13.1%	8.0%	3.2%

5) 혐오 및 차별 표현의 생산 및 가해 장소

	문5. 혐오 및 차별 표현의 생산 및 가해 공간					
	인터넷 커뮤니티, SNS	신문, 방송 등 대중매체	집 및 지역사회	학교 및 학원	기타	무응답
빈도	4403	558	125	285	382	161
%	74.4%	9.4%	2.1%	4.8%	6.5%	2.7%

6) 혐오 및 차별 표현의 생산 및 가해자

	문6. 혐오나 차별 표현의 생산 및 가해자								
	가족	교사	친구	지역주민	언론인	정치인	종교인	기타	무응답
빈도	203	86	1227	275	972	965	391	1562	234
%	3.4%	1.5%	20.7%	4.7%	16.4%	16.3%	6.6%	26.4%	4.0%

7) 혐오 및 차별 표현에 대한 대응 방안

	문7.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를 강화					
	1.전혀 필요하지 않다	2.필요하지 않다	3.보통이다	4.필요하다	5.반드시 필요하다	9.무응답
빈도	322	282	1602	2411	1214	83
%	5.4%	4.8%	27.1%	40.8%	20.5%	1.4%

	문7. 교육현장에서 혐오표현 및 차별 관련 교육					
	1.전혀 필요하지 않다	2.필요하지 않다	3.보통이다	4.필요하다	5.반드시 필요하다	9.무응답
빈도	278	230	1332	2391	1601	82
%	4.7%	3.9%	22.5%	40.4%	27.1%	1.4%
	문7. 청소년을 대상으로 혐오표현이나 차별에 대한 개선방법을 홍보					
	1.전혀 필요하지 않다	2.필요하지 않다	3.보통이다	4.필요하다	5.반드시 필요하다	9.무응답
빈도	296	269	1537	2294	1437	81
%	5.0%	4.5%	26.0%	38.8%	24.3%	1.4%
	문7. 혐오표현을 사용한 사람들에 대해 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					
	1.전혀 필요하지 않다	2.필요하지 않다	3.보통이다	4.필요하다	5.반드시 필요하다	9.무응답
빈도	313	358	1642	2018	1494	90
%	5.3%	6.0%	27.8%	34.1%	25.3%	1.5%
	문7. 학교 내 혐오 및 차별 방지 내용 제도화					
	1.전혀 필요하지 않다	2.필요하지 않다	3.보통이다	4.필요하다	5.반드시 필요하다	9.무응답
빈도	286	274	1578	2247	1441	88
%	4.8%	4.6%	26.7%	38.0%	24.4%	1.5%
	문7. 온라인에서 허용되지 않는 혐오 및 차별 표현의 기준을 제시					
	1.전혀 필요하지 않다	2.필요하지 않다	3.보통이다	4.필요하다	5.반드시 필요하다	9.무응답
빈도	301	251	1441	2217	1619	86
%	5.1%	4.2%	24.4%	37.5%	27.4%	1.4%
	문7. 신문 방송 등 언론의 혐오 및 차별 표현 윤리 기준 강화					
	1.전혀 필요하지 않다	2.필요하지 않다	3.보통이다	4.필요하다	5.반드시 필요하다	9.무응답
빈도	297	191	1537	2148	1653	88
%	5.0%	3.2%	26.0%	36.3%	28.0%	1.5%

8) 혐오 및 차별 표현에 따른 심리적 피해 행동

	문8. 자괴감과 무력감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 일상과 같아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9.무응답
빈도	2047	1061	1361	1082	242	121
%	34.6%	17.9%	23.0%	18.3%	4.1%	2.1%

	문8. 공포감과 패닉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 일상과 같아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9.무응답
빈도	2231	1148	1473	749	181	132
%	37.7%	19.4%	24.9%	12.7%	3.1%	2.2%
	문8. 흥분감과 분노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 일상과 같아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9.무응답
빈도	1671	820	1188	1604	504	127
%	28.2%	13.9%	20.1%	27.1%	8.5%	2.2%
	문8. 불안감과 우울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 일상과 같아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9.무응답
빈도	2065	974	1445	1024	278	128
%	34.9%	16.5%	24.4%	17.3%	4.7%	2.2%
	문8. 위축감과 침묵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 일상과 같아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9.무응답
빈도	2045	1007	1381	1087	259	135
%	34.6%	17.0%	23.4%	18.4%	4.4%	2.3%
	문8. 가해자 및 가해 장소 회피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 일상과 같아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9.무응답
빈도	2046	905	1370	1139	325	129
%	34.6%	15.3%	23.2%	19.3%	5.5%	2.2%
	문8. 개인 저항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 일상과 같아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9.무응답
빈도	1675	945	1677	1131	353	133
%	28.3%	16.0%	28.4%	19.1%	6.0%	2.2%
	문8. 주변공유 및 공동 대응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 일상과 같아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9.무응답
빈도	1764	1113	1771	843	284	138
%	29.8%	18.8%	30.0%	14.3%	4.8%	2.3%
	문8. 외출 및 대인관계 회피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 일상과 같아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9.무응답
빈도	2816	1095	1344	399	133	127
%	47.6%	18.5%	22.7%	6.7%	2.3%	2.1%

9) 혐오 및 차별적 표현 사용 동기

	문9. 친구들이 모두 사용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 일상과 같아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9.무응답
빈도	1989	974	1770	941	117	123
%	33.6%	16.5%	29.9%	15.9%	2.0%	2.1%
	문9. 어떤 표현이 편견과 차별 표현인지 잘 모름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 일상과 같아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9.무응답
빈도	2147	1221	1643	690	86	127
%	36.3%	20.6%	27.8%	11.7%	1.5%	2.1%
	문9. 친구집단과 잘 어울리기 위해 사용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 일상과 같아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9.무응답
빈도	2288	1156	1586	668	86	129
%	38.7%	19.6%	26.8%	11.3%	1.5%	2.2%
	문9. 신문 방송 등 언론인들이 자주 사용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 일상과 같아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9.무응답
빈도	2258	1159	1747	555	70	125
%	38.2%	19.6%	29.5%	9.4%	1.2%	2.1%
	문9. 온라인에서 대화시 사용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 일상과 같아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9.무응답
빈도	2279	1151	1584	663	104	134
%	38.5%	19.5%	26.8%	11.2%	1.8%	2.3%
	문9. 정치인들도 자주 사용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 일상과 같아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9.무응답
빈도	2423	1159	1781	337	83	130
%	41.0%	19.6%	30.1%	5.7%	1.4%	2.2%
	문9. 어른들이 모르게 우리들만의 언어를 사용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 일상과 같아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9.무응답
빈도	2650	1201	1576	288	73	126
%	44.8%	20.3%	26.6%	4.9%	1.2%	2.1%
	문9. 어른들과 세대차이를 느껴 사용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 일상과 같아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9.무응답
빈도	2600	1148	1609	358	75	125
%	44.0%	19.4%	27.2%	6.1%	1.3%	2.1%

ABSTRACT

A Study on How Seriously Adolescents are Exposed to Hate Speech and Solutions to Address the Issue

This is the first large-scale survey of adolescents with regard to bias, discrimination, and hate speech. The study aimed to flesh out how seriously adolescents are exposed to various types of hate groups and hate speech, thereby developing corresponding policy solutions.

In terms of research methods, the study framed its conceptual discussion and key research details on the problem of hate speech through a literature review, and identified implications as to educational programs and legal devices through an analysis of related foreign cases. For its investigative approach, the study conducted a nationwide survey, analyzing 6,000 adolescents in elementary, middle, or high schools with respect to hate speech, and performed interviews with the adolescents and experts.

The survey of the adolescents showed that in answering the question of what changes hate speech would bring about in South Korean society, many of the adolescents thought that it would increase, become a big social problem, and breach human rights. The survey further found that the adolescents experienced hate speech and discriminatory behavior most often on the internet, in web communities, and on social media, followed by newspapers, TV, and radio; thus, mass media accounted for most of their exposure to such experiences. People who engaged in hate speech included many journalists or politicians, but the largest group was composed of friends. The respondents found that the damage of hate speech to

minority groups was serious, in the order of juvenile delinquents, feminists, and sexual minorities. The most highly rated solution to address hate speech was education on hate speech.

In the expert interviews, most of the experts were in favor of the creation of a discrimination prohibition law, and said that such a law was absolutely necessary, at least on behalf of adolescents. Saying that hate speech by adolescents increased when compared to its previous level, the experts predicted that it would increase even more. The experts suggested as the causes of hate speech school culture and order focusing on academic achievement, a culture that respects age and rank, the incorrect belief that hate speech is justified, the developmental characteristic of adolescents in which they want to pose as the strongest member of a group or share deviant subcultures, and/or hate speech committed for fun.

From the interviews with the adolescents, it was determine that the offenders who used hate speech were ordinary people such as their friends, teachers, acquaintances, family, and relatives. The locations where they were victimized were also ordinary living spaces such as in the classroom, at school or hagwon, in the street, at home, and in the workplace. As for their imposed victimhood, the adolescents ascribed it to their own weaknesses, they seriously considered withdrawing from school, frequently fell ill from stress, or were treated as outcasts. Such experiences traumatized them, and their fear lasted for at least two years.

Based on these survey results, the study has developed the following policy tasks.

First, the study suggests legal solutions to address the problem. To create a basis for policy implementation, the country should create a comprehensive discrimination prohibition law, establish a government-wide cooperation system, strengthen the management of

people who work in adolescent facilities, and enforce a student human rights ordinance.

Second, the study proposes media solutions. To promote self-regulation and improve perception, the country should bring more substance to online self-regulation designed to protect adolescents, reinforce adolescents' media literacy competencies, and increase media publicity to improve public perception.

Third, the study suggests educational solutions. To raise human rights awareness, the country should conduct education for hate speech prevention, conduct comprehensive sex education to prevent misogyny, spread guidelines to prevent and respond to hate speech by adolescents, and activate a counterculture against hate speech.

Finally, the study proposes solutions to support victims. To protect adolescents as minorities, the country should support victims' reporting,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operate restorative justice implementation programs, and increase support for adolescents as minority groups that require special protection.

Key word : Hate Speech, Bias, Discrimination, Minority Group, Counterculture

2020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간자료 목록

기관고유과제

20-R01 청소년의 혐오표현 노출실태 및 대응 방안 연구 / 김영한·이유진·조아미·임성택

20-R02 청소년·청년 디지털 플랫폼노동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 유민상·최정원·이수정·장혜림

20-R03 Z세대 10대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 연구 / 오해섭·문호영

20-R04 청소년활동의 사회적 가치 제고방안 연구 / 최용환·성유리·박윤수·김보경

20-R05 청소년지도자 양성시스템 재구축방안 연구 Ⅱ : 청소년상담사를 중심으로 / 최창욱·좌동훈·이종원·남화성·정지희

20-R06 청년 사회·경제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Ⅴ / 김형주·연보라·배정희

20-R06-1 청년 사회·경제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Ⅴ - 전년도 공개데이터 심층분석연구 / 김형주·연보라·배정희

20-R06-2 청년 사회·경제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Ⅴ - 기초분석보고서 / 김형주·연보라·배정희

20-R07 국가 미래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성장과 지원방안 연구 Ⅲ / 김경준·김정숙·윤철경

20-R08 청소년 빅데이터 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 서정아·성윤숙·송태민

20-R08-1 청소년 빅데이터 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데이터 분석 보고서 1_청소년 비만에 대한 비정형 빅데이터 연구 / 송태민

20-R08-2 청소년 빅데이터 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데이터 분석 보고서 2_청소년 행복 결정요인에 대한 정형 빅데이터 연구 / 홍성효

20-R09 청소년의 주거권 실태와 보장방안 연구: 사회배제 관점을 중심으로 / 김지연·김승경·임세희·최은영

20-R10 2020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총괄보고서 / 김영지·황세영·최홍일·이민희·김진호

20-R10-1 2020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심화분석보고서 / 박환보·주경필

20-R10-2 2020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기초분석보고서 / 김영지·황세영·최홍일

20-R11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 방안 연구 Ⅱ / 최인재·강경균·송민경·조윤정·김가희

20-R12 2020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사업보고서 / 하형석·황진구·김성은·이용해

20-R12-1 2020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데이터분석보고서 / 김성은·황영식

20-R13 2020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총괄보고서 / 양계민·장윤선·정윤미

20-R13-1 2020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기초분석보고서: 1기패널 / 양계민·장윤선·정윤미

20-R13-2 2020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기초분석보고서: 2기패널 / 양계민·장윤선·정윤미

협동연구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2-01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 Ⅲ : 질적패널 조사를 중심으로 / 김희진·장근영·이동훈·윤철경(자체번호 20-R14)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2-02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 Ⅲ : 학교 밖 여성 청소년을 중심으로 / 오은진·장희영(자체번호 20-R14-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3-01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Ⅲ : 청년 이직자 - 총괄보고서 / 김기헌·신동훈·변금선·고혜진·신인철(자체번호 20-R15)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3-02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Ⅲ : 청년 이직자 - 심층분석보고서 / 김기헌·신동훈·고혜진·신인철(자체번호 20-R15-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4-01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Ⅱ : 위기청소년 / 백혜정·임희진·송미경·김양희(자체번호 20-R16)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4-02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Ⅱ : 위기청소년 - 국내·외 주요 법령 및 건강정책 분석 / 류정희·이상정·박선영·전민경(자체번호 20-R16-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4-03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Ⅱ : 위기청소년 - 기초분석보고서 / 백혜정·임희진(자체번호 20-R16-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5-01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 Ⅰ : 초등학생 / 배상률·이창호·이정림(자체번호 20-R1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5-02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 Ⅰ : 초등학생 - 해외사례 조사 / 정현선·심우민·윤지원·김광희·최원석(자체번호 20-R17-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5-03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 Ⅰ : 초등학생 - 기초분석보고서 / 배상률·이창호(자체번호 20-R17-2)

연구개발적립금

20-R24 위기청소년 현황 및 실태조사 기초연구 / 황여정·이정민

20-R24-1 위기청소년 현황 및 실태조사 기초연구 : 예비조사 데이터분석보고서 / 황여정·이정민·김수혜

20-R25 10대 청소년 포럼 운영 / 모상현

20-R26 코로나 19 확산 및 이후 사회변화에 따른 청소년정책의 대응방안 / 김현철

수시과제

20-R18 학생 인권교육을 위한 현장 실천 강화 방안 연구 / 이정민·이종원

20-R19 청년정책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 배정희·김기헌

20-R20 가출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시설 재구조화 연구 / 황진구·김지연

20-R21 선거법 개정에 따른 청소년 정책 및 활동 지원 방안 연구 / 이창호

20-R22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과목 개편 방안 연구 / 김경준·이종원·박정배

20-R23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모형 개발 / 김희진·백혜정

수탁과제

20-R27 청소년 비즈쿨 활성화를 위한 고교교육 정책 연계방안 연구 / 강경균·안재영·황은희

20-R28 청년정책 현황 진단 및 정책추진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 김기헌·유민상·변금선·배정희

20-R29 (가칭)청양군 청소년재단 설립타당성 연구 / 김영한

20-R29-1 (가칭)청양군 청소년재단 설립타당성 연구(요약본) / 김영한

20-R30 2020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 매뉴얼 / 성윤숙·양미석

20-R31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기본 프로그램(5종)

20-R31-1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기본 프로그램(초등학교 1~2학년용) / 성윤숙·서정아·장윤선·서고은·김성은

20-R31-2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기본 프로그램(초등학교 3~4학년용) / 성윤숙·서정아·장윤선·서고은·김성은

20-R31-3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기본 프로그램(초등학교 5~6학년용)/ 성윤숙·서정아·장윤선·서고은·김성은

20-R31-4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기본 프로그램(중학교용) / 성윤숙·서정아·장윤선·서고은·김성은

20-R31-5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기본 프로그램(고등학교용) / 성윤숙·서정아·장윤선·서고은·김성은

20-R32 2019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프로그램 적용효과 분석 / 성윤숙·양미석

20-R33 지역단위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적용방안: 회복적 생활교육을 중심으로 / 성윤숙·양미석

20-R34 2018~2019 학교폭력 예방교육 연구학교 결과보고서

20-R34-1 2018~2019 학교폭력 예방교육 연구학교 결과보고서(초등학교) / 성윤숙·이윤소

20-R34-2 2018~2019 학교폭력 예방교육 연구학교 결과보고서(중학교) / 성윤숙·이윤소

20-R34-3 2018~2019 학교폭력 예방교육 연구학교 결과보고서(고등학교) / 성윤숙·이윤소

20-R35 교육과정 기반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사례 / 성윤숙·이윤소

20-R36 어울림 자유학기 프로그램(5종)

20-R36-1 어울림 자유학기 주제선택 프로그램(놀러와! 어울림 세상) / 성윤숙·이선희·정미선·선보라·이혜옥·이윤소

20-R36-2 자유학기 프로그램 동아리활동 / 성윤숙·배은정·이윤소

20-R36-3 어울림 자유학기 교과연계 주제선택 프로그램(사회) / 성윤숙·선보라·이윤소

20-R36-4 어울림 자유학기 교과연계 주제선택 프로그램(도덕) / 성윤숙·이혜옥·이윤소

20-R36-5 어울림 자유학기 교과연계 주제선택 프로그램(국어) / 성윤숙·이선희·정미선·이윤소

20-R37 외국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정책 및 프로그램 동향 / 성윤숙

20-R38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종합성과평가 평가지표 개선 용역 / 김형주·김혁진·김정주

20-R39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 김기헌·유민상·변금선·배정희

20-R40 학교 안·밖 청소년정책 협력체계 구성 및 연계방안 연구 / 최창욱·좌동훈·남화성

20-R41 소년원학생 재범방지 통합프로그램 개발 연구 / 이유진

20-R41-1 꿈과 친구사이 : 소년원학생 재범방지 통합프로그램 매뉴얼 / 이유진

20-R42 청소년 주도적인 활동지원을 위한 법률개정 방안 연구 / 최창욱·문호영

20-R43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사업 사례관리사 및 자립업무종사자 직무분석 연구 / 김지연·백혜정·이상정

20-R44 2020년도 청소년 인터넷 건전이용제도 적용 게임물 평가 / 배상률·유홍식·김동일

20-R45 청소년 교육·문화공간 확충을 위한 지자체-교육청 협력 강화 방안 / 김영지·황세영·손진희·박명선·박종원·조기영

20-R46 2020년 청소년특별회의 정책과제 연구 / 최창욱·좌동훈

20-R47 농업인력 유입 확대를 위한 농촌 청소년 실태조사 / 오해섭·최홍일

20-R48 성남시 청소년시설 확충 및 개선 연구 / 황진구·남화성

20-R49 다함께돌봄센터 현장적용 프로그램 개발연구 / 황진구·좌동훈

20-R50 2020년 청소년수련시설종합평가 / 김경준·김영지·최창욱

20-R51 지역센터 관리운영을 위한 평가지표 개선방안 / 최용환·곽창규·이성규

20-R52 수원시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연구 / 최용환·김보경

20-R53 202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연구 / 양계민

20-R54 2020년 학교 내 대안교실 모니터링 연구 / 최인재·송원일·박지원

20-R55 2020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실태조사 연구 / 최인재·송원일·배수인

20-R56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생의 성장관리 및 성과측정 방안 연구 / 이정민·성유리·김혜원

20-R57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 김지연·김승경·백혜정·황여정

20-R57-1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위기청소년 결과 분석) / 김지연·김승경·백혜정·황여정

20-R57-2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부록 : 기초통계결과표) / 김지연·김승경·백혜정·황여정

20-R58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직업계고 혁신 지원 방안 연구 - 특성화고 혁신지원 운영모형 개발 / 강경균·김영만·김용성

20-R59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20 / 김희진·임희진·정윤미

20-R60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지역기관 연계 시범사업 모니터링, 평가 및 모델 개발 / 연보라·최정원·김성은

20-R61 학업중단 현황 및 지원 방안 / 김성은·박하나·김현수

20-R62 환경 변화에 따른 후기청소년 정책 발전 방향 연구 / 장근영·김기헌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20-S01 2020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워크숍(1.30)

20-S02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성과보고회(1.31)

20-S03 2020년 제28회 청소년정책포럼 : 학교밖 청소년 취업 및 자립지원 방안(1.22)

20-S04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집(1.31)

20-S05 제25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 : 강원국 교수의 매력적인 글쓰기 특강(4.23)

20-S06 제26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 : 김병완 작가의 퀀텀 독서법 및 책쓰기 특강 (4.21)

20-S07 2020년 제29회 청소년정책포럼 : 학교 밖 청소년 규모 추정 방안(6.19)

20-S08 2020년 제30회 청소년정책포럼 : 18세 선거권 이후 청소년 정치교육의 방향 및 과제(7.17)

20-S09 2020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실무 역량 강화 연수(초등, 중등, 고등)(7.28)

20-S10 2020년 제31회 청소년정책포럼 : 청소년정책 관련 법제도 개선 방향(7.28)

20-S11 제30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 : 플랫폼 노동의 미래를 묻다 〈별점 인생〉(8.5)

20-S12 2020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상반기 성과보고회(8.11)

20-S13 제31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 : Z세대의 SNS 마켓에서의 소비자사회화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 인스타마켓을 중심으로(8.26)

20-S14 2020년 제32회 청소년정책포럼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청소년 활동과 정책의 방향(8.18)

20-S15 청소년 이슈 관련 네트워크 분석(8.25)

20-S16 2020년 제33회 청소년정책포럼 : 학교 안밖 청소년 협력체계 구성 연계 방안(9.23)

20-S17 제32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 청소년의 혐오표현 노출실태 및 대응방안(10.6)

20-S18 2020년 대안학교 관리자 협의회 및 담당자 역량 강화 워크숍 (10.5)

20-S19 2020년 학교 내 대안교실 모니터링 위원 워크숍(10.5)

20-S20 2020년 제34회 청소년정책포럼 : 코로나 시대 청소년 성장지원의 방향(10.21)

20-S21 2020 유로필로조피 서울 대회(11.12~13)

20-S22 2020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관리자 및 담당자 역량 강화 온라인 워크숍(11.13)

20-S23 제35차 청소년정책포럼 : Z세대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와 정책적 대응방안(11.18)

20-S24 2020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발전방안 포럼(해외 사이버폭력 정책 동향 및 국내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방향 모색)(12.18)

20-S25 제3회 한일진로교육포럼(11.28)

20-S26 제9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자료집(11.20)

20-S27 제36차 청소년정책포럼 : 우리나라 한국아동·청소년의 삶은 어떠한가?(12.1)

20-S28 제37차 청소년정책포럼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지원 체계의 과제와 방향(12.8)

20-S29 제1차 10대청소년목소리포럼 : 코로나로 세겨진 우울의 시대 우리의 꿈과 이상을 쏘다 - 동고동락, 각양각색 청소년의 희망이야기(12.5)

20-S30 제38차 청소년정책포럼 : 후기청소년 지원정책의 과제와 방향(12.17)

20-S31 제39차 청소년정책포럼 :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주요 결과와 과제(12.22)

20-S32 진로위기학생 유형별 진로교육 실천과제 성과보고회 자료집(11.27)

학술지

「한국청소년연구」 제31권 제1호(통권 제96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1권 제2호(통권 제97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1권 제3호(통권 제98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1권 제4호(통권 제99호)

기타 발간물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9호 :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질 제고 방안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0호 :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Ⅱ : 학교 졸업예정자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1호 : 민간 위탁형 공립 대안학교의 운영 현황 및 발전 과제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2호 : 국가 미래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성장과 지원방안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3호 :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 지원방안 모색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4호 : 정보기술을 활용한 위기청소년 사회서비스 확충 방안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5호 : 미래지향적 청소년관계법 정비 방안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6호 : 「청년기본법」제정 전·후 정책형성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7호 : 청년예술인 지위 및 권리보장을 위한 '예술 활동 증명' 기준의 적정성 검토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8호 : 청년종합실태조사(안) 시행을 위한 조사 설계 방향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9호 :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정책참여 현황과 과제

NYPI Bluenote 통계 49호 : 청소년 '일 경험' 제도 운영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Ⅱ : 대학교 실습 학기제를 중심으로

NYPI Bluenote 통계 50호 : '학교 밖 청소년'이 얼마나 있을까?

NYPI Bluenote 통계 51호 : 청소년지도사 양성제도 관련 실태조사

NYPI Bluenote 통계 52호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제2차년도 주요 조사 결과

연구보고 20-R01

청소년의 혐오표현 노출실태 및 대응 방안 연구

인 쇄 2020년 12월 31일
발 행 2020년 12월 31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김 현 철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나라인쇄 전화 044)866-6384 대표 이호분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263-6 93330